제 9 권 제 3 호

1987 가을

韓國開發研究

、社會間接資本投資(1970~85)가 地域成長에 미친 效果

金 鍾 基

· 우리나라 特別消費稅制의 所得再分配 效果

郭 泰 元

國民醫療費 推移의 國際比較分析

權 純 源

· 損益시뮬레이션에 의한 公務員年金給與構造改善方案 研究 閔 載 成 崔 秉 浩

北韓의 經濟開放化政策 分析

延 河 清金 炯 元

・日本 經濟社會의 動因과 進化

李奎億

「TVBVAR模型을 이용한 三低效果의 分析」 論評 金 基 禾 應答 朴 佑 奎

「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 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論評 金 在 源 應答 金 仲 秀

權

『地方財政調整制度 와 財源配分』: 書評 車

『公企業 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郭 秀

技法』: 書評



韓國開發研究院

季刊韓國開發研究

제 9 권 제 3 호

1987 가을

社會間接資本投資(1970~85)가 地域成長에 미친 效果 ·······金鍾	基…	3
우리나라 特別消費稅制의 所得再分配 效果 ····································	元…:	27
國民醫療費 推移의 國際比較分析權純	源… ′	45
損益시뮬레이션에 의한 公務員年金給與構造改善方案 硏究 橫東	成 _{…(} 浩	67
北韓의 經濟開放化政策 分析延河金炯	清… · 元	95
日本 經濟社會의 動因과 進化李奎	億…12	21
「TVBVAR模型을 이용한 三低效果의 分析」	禾 _{…1} 5 奎	53
「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 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論評 金在 應答 金仲	源 _{…16} 秀	61
『地方財政調整制度의 財源配分』:書評車耕	權…1′	71
『公企業 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技法』:書評	 ···17	77

---編 輯 陣---

委員長 楊 秀吉

委員 郭泰元 姜 文秀

姜 信逸 張 鉉俊

實務 沈守燮 宋尚勲

實務補 韓 英美

編輯問議:編輯委員會(960-2672) 購讀問議:發刊資料相談室(960-3283)。

本 季刊誌는 本誌에 發表된 論文과 本院에서 發刊되는 研究叢書 및 其他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들의 論評 혹은 書評을 揭載하고 있읍니다.

研究主題 및 그 內容과 관련되는 研究方法論 혹은 國家政策上의 爭點을 表出시켜 向後의 研究課題와 政策方向 設定에 寄與하고, 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的인 批判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자는 것이 그 趣旨입니다. 이를 諒知하시어 아래와 같은 要領에 의하여 虛 心坦懷한 所感과 批評을 寄稿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길이는 200字 原稿紙 基準 30枚 內外로 限定하되 原稿紙에 淨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論評은 該當論文에 담긴 誤謬 혹은 爭點을 內容으로 하여 가급적 論文이 發刊된 후 3個月 以內로, 書評은 該當報告書의 主要內容 紹介, 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向後 研究課題 提示를 內容으로 하되 原則的으로 報告書가 發刊된 후 6個月 以內로 作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原稿는 郵便 혹은 人便으로 『韓國開發研究』編輯委員長에게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寄稿된 論評과 書評은 本院 所定의 審查節次를 거치도록 되어 있읍니다. 論評은 該當 論文 執筆者의 應答과 함께 揭載하겠읍니다. 채택된 原稿는 稿料를 支給합니다.

社會間接資本投資(1970~85)가 地域成長에 미취 效果

鍾 基 金

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韓國의 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가 均衡發展에서 당당 한 역할과 그 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道路, 通信 등 주요 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치 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成長의 地域間 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首都閥을 중심으로 하는 成長地域의 立地與件의 비 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首都閥地域의 立地的 利點을 상쇄할 만한 投資環境이 지방 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 방에 企業投資를 誘引할 수 있는 稅制, 金融 및 行政節次上의 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광 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I. 序 論

人口 및 經濟活動의 大都市集中을 억제하고

地域均衡開發政策의 樹立이 중요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정부는 地域間 均衡開發을 위해 首都圈地域에는 새로운 공장입지의 억제, 개 발제한구역 설치, 대학 이전 등의 정책을 추 진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地方工業의 育成을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 촉진하기 위해 移轉工場에 대한 稅制惠澤, 金 融支援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도권 의 인구집중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 이와 같은 國土利用構造의 중요한 원인은 우리 경제의 成長戰略에서 찾을 수 있다. 즉,

筆者:本院 研究委員

^{*}草稿를 읽고 有益한 조언을 해 준 本院의 楊秀吉 博士와 서울大學校의 朴杉沃 敎授에게 감사드린다.

內需基盤이 취약하고 賦存資源이 빈약한 여건 하에서 우리 경제는 對外指向的 經濟成長戰略 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投資政策을 추구한 결과 立地 與件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首都圈과 釜山圈에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經濟活動 의 基本與件을 형성하는 社會間接資本의 投資 는 현재와 같은 國土利用構造 形成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地域間의 均衡發展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政策은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社會間接資本의 중요성만 인식되었을 뿐실제로 과거의 投資特性에 대한 연구가 드물게 추진되었고, 특히 地域發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분석이 거의 되지 못하였다.

本稿의 目的은 地域均衡發展을 위해 社會間接資本의 投資方向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이와 함께 과거 社會間接資本이 지역발전에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형태로 地域配分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이와 같은 목적하에 本 研究는 그 構成上 第II章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검토하고,第III章에서는 지역발전의 특성과 地域別 社會間接資本 現況을 분석하였다.第IV章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投資推移 및 地域別 投資特性을 분석하였고,第V章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地域發展과 社會間接資本 과의 關係

本章에서는 地域開發과 관련하여 社會間接

資本의 機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社會間接資本部門에 대한 投資財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는 지역발전단계에 적합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단계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역할을 세분하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실제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社會間接資本의 機能

地域發展의 概念은 기본적으로 매우 다원적인 것이나, 일반적으로 지역의 발전 정도는 雇傭, 生產 또는 所得指標로 나타내고 있으며地域間의 隔差는 이와 같은 지표의 지역격차로 인식되어 왔다.대부분 地域政策의 主要目的은 지역간 발전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 형평에 입각한 社會·經濟的 構造를 유도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租稅惠澤, 補助金支援 및 投資支援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추진되어 왔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 중의 한 방법에 불과하나 지역의 社會·經濟的 活動을 위한 기본적인 여 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 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短期的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을 통한 公共支出이 乘數效果를 유발하여 지역의 수요를 창출하게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 當該地域의 經濟的 開發潛在力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통한 地域開發戰略은 有效需要의 創出을 통한 직접적

인 효과와 지역의 개발 여건을 변화시키는 간 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사회간접자본은 地域發展의 潜在力과 生 產要素에 直·間接的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발전의 정책수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地域發展을 위한 社會間接資本의 필요와 중 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그 機能에 대 한 평가에는 많은 異論이 대두되고 있다. 一 部 學者들은2) 사회간접자본의 역할이 經濟・ 社會發展 過程에서 대두된 애로요인을 제거 하는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 자는3) 사회간접자본이 지역경제와 사회발전 을 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기능에 대해 異見이 대두되는 요인 중의 하나 는 사회간접자본 자체가 同質的이 아니기 때 문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生產에 대한 기 여는 생산에 필요한 다른 要素의 「스톡」에 의 존하므로 同一한 國家內에서도 이들 要素의 構成과 水準에 따라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지역 발전에 주는 효과는 지역경제의 特性과 사회 간접자본의 形態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또한 社會間接資本의 特性中에는 道路, 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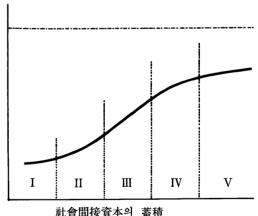
道 및 通信施設의 投資의 경우에서 볼 수 있 듯이 不可分性(indivisibility)과 限界規模 (threshold)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投資의 效率性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2. 地域發展段階에 따른 社會間接 資本의 機能

지금까지의 研究結果에 의하면⁴⁾ 地域의 發展段階와 社會間接資本의「스톡」간에는 經濟成長過程을 나타내는 S型(logistic)의 관계가 존재하며 [圖 1]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圖 I] 社會間接資本과 地域發展

1 人當 所得水準



地域發展의 初期段階(I地域段階)에서는 농촌과 같이 社會間接資本施設이 불충분한 상태이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도다른 經濟與件이 구비되지 못하여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낮다. 다음 地域發展段階

^{1)「}Hirschman」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地域發展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로 1次產業, 2 次產業 및 3次產業의 生產活動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형성하고 그 중에서도 敎育, 保健, 社會·文化的 環境 및 輸送施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生產資本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보완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²⁾ Glover and Simon(1975) 참조.

³⁾ Voigh(1974) 참조.

⁴⁾ Nijkamp(1986) 참조.

(II地域段階)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한 의 社會間接資本施設이 갖추어진 상태로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地域發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지역이나 사회간접자본이 불충분한 상태이다. 地域發展 III段階에서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投資效率性이 높아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다. 第IV段階에서는 成熟段階를 지난 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投資效率性이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며,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에 의한 外部非經濟效果가 나타나기시작한다. 끝으로 V段階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도 住民의 所得增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地域發展段階에 따른 社會間接資本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Hansen(1965)은 사회간접자본투자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⁵⁾. 즉, 社會間接資本(infrastructure)을 經濟的 間接資本(economic overhead capital)과 社會的 間接資本(social overhead capital)으로 구분하고,經濟的 間接資本의 特性은 기본적으로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道路, 기타輸送手段,電氣,用水,橋梁 등이 이에 속하고,社會的 間接資本은 基本的으로 人間資本(human capital)을 향상시키는 것이 主目的으로 敎育,保健 등에 대한 투자가 이에 속하

Hansen에 의하면 地域間의 不均衡成長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6) 각지역의 특성을 社會間接資本投資의 效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過密地 域에서는 추가되는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한 社會的 限界費用(social marginal cost)이 社 會的 限界利益(social marginal benefit) 보다 클 수 있는 지역이다. 반면에 中間地域은 計 會的 限界費用보다 社會的 限界利益이 클 수 있는 지역으로 經濟的 間接資本投資에 의해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한편 落後地域에는 기업을 유인할 만한 요인 이 적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小規模 農業이 나 斜陽產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經濟 的 間接資本의 投資效果는 적은 반면, 오히려 社會的 間接資本이 필요한 지역이다.

社會間接資本과 地域과의 관계규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變動一割當分析方法(shift-share analysis)이 응용되고 있다. 즉,變動一割當分析方法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요인을 地域內의 產業構造의特性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產業構造的인 要素와 社會間接資本施設 등 地域의 成長潛在力에 의하여 결정되는 地域構造的인 要素로 구분할 수 있다. 雇傭資料를 이용하여 變動一割

5) Hansen (1965).

〈表 I〉 變動-割當分析에 의한 地域의 類型

		地域構	造要素
		+	
產業構造	+	I	II
要 素	_	III	IV

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⁶⁾ Hansen은 地域을 過密地域(congested region), 中間地域(intermediate region) 및 落後地域(lagging region)으로 구분하였고, 過密地域은 앞의 地 域區分 중에서 第4 및 第5段階에 해당하고 中間地 域은 第2 및 第3段階地域, 그리고 落後地域은 第1 段階地域에 해당된다.

當分析을 통하면 지역의 성장요인은 產業構造 要素와 地域構造要素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들 각각을 "正"의 효과와 "負"의 효과로 나 타내면 地域의 類型은 〈表 1〉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대별될 수 있다").

地域類型 "I"은 產業構造와 立地與件이 양 호하기 때문에 工業成長이 빠른 속도로 실현 될 수 있는 지역이다. 地域類型 "II"는 이미 성장산업이 많이 입지하여 산업구조가 유리하 게 나타났지만 입지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같은 성장업종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보다 성장이 둔화되거나 낮은 지역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이 지역이 이미 外部非經濟 效果가 나타나고 있거나 또는 政府의 成長抑 制政策 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地域類型 "III"은 產業構造가 상대적으로 뒤떨 어져 있으나 지역의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地域類型 "IV" 는 產業構造뿐만 아니라 地域의 立地與件도 불리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자본정책 과 함께 성장산업을 유치하고 산업구조를 고 도화시킬 수 있는 產業育成政策이 동시에 추 진되어야 한다.

III. 地域發展과 社會間接資本 現況

本章에서는 1970~85년간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所得과 產業構 造 측면에서 분석하고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地域別 蓄積現況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과 거 지역간 불균형성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社會間接資本部門의 지역별 축적상황과 지역 별 유형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1. 地域間 發展現況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規模와 集積의 利益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수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成長據點開發戰略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重化學工業의 戰略的 育成을 위한 新工業都市 建設, 高速道路建設 등 경제발전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던 70년대의 國土開發政策은 고도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간의 發展隔差를 야기시켜 大都市와 地方都市, 都市와 農村 그리고 地域間의 不均衡成長을 초래하였다.

全國土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전인구의 23%가 집중되고 國民生活의 주요 서비스가 대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地方中小都市들은 상 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었다. 또한 급격한 都市化 및 工業化의 진행은 大都市 및 工業都市의 발전을 촉진시킨 반면에, 농촌지역의 발전

⁷⁾ 事業構造要素에서 "正" 의 부호는 特定地域의 產業 構造가 양호하여 제조업 성장에 프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負" 의 부호는 產業構造 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제조업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地域構造要素 에서 "正" 의 부호는 해당지역의 입지여건이 유리 하여 제조업 성장에 프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 負"의 부호는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마이너스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을 상대적으로 정체시켜 都·農間의 심한 격차를 노정시켰다. 國土利用의 空間的 構造面에서도 서울·釜山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지역에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져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반면, 其他地域의 發展은 부진하여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1972 ~81)의 수립을 계기로 서울・釜山 중심의國土利用 構造를 완화시키고 이들 大都市地域에 인구가 더 이상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人口의 地方定着을 誘導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大都市 특히 서울에서는 都市內의 工場移轉促進, 大學分散,「그린벨트」設置 政策 등을 실시하였으며 都市圈 整備計劃을 수립하여 人口,產業의 誘因要素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함께 인구의 地方定着을 促進하고 就業機會를 확대하기 위한

道路鋪裝, 文化施設 및 福祉向上을 위한 社會 間接資本部門에 대한 투자가 추진되었다.

이상과 같은 大都市地域의 人口集中抑制와 地方育成政策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지역적 편 중은 심화되었다. 1971~85년간 인구의 地域 別 成長推移를 보면 首都圈의 人口는 29.1% 에서 39.1%로 증가하였으며, 釜山圈은 15. 8%에서 17.4%로 증가하였다. 반면, 餘他地 域의 人口는 감소 내지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首道圈內의 人口成長 特性을 살펴 보면, 1970년 중반까지는 서울의 인구가 급속 한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1970년 중반 이후에 는 서울의 人口成長은 점차 둔화되어 가고 있 는 반면 城南, 議政府, 水原, 安養 등 서울 주변의 衞星都市를 중심으로 하는 京畿道地域 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 라 인구의 空間的 分布는 大都市地域으로 집 중되면서 동시에 大都市地域內에서는 外廓地

<表 2> 人口 및 地域總生產의 變化推移

(단위:%)

			人 口		地	域 總 生	產
	à	1971	1978	1985	1971	1978	1983
서	울	18, 3	21.4	23.8	27.5	28.7	28.3
仁川·	京畿	10.8	12.2	15.3	9.9	13, 3	14.3
江	原	5.8	5.1	4.3	4.7	3.9	3,8
忠	北	4,5	4.0	3.4	4.2	3, 3	3, 2
忠	南	9.0	8.2	7.4	7.1	6.0	5.9
全	北	7.6	6.6	5.4	6.4	4.8	4.2
全	南	12.6	11.0	9.3	10.1	7.9	7.8
大邱·	・慶北	14.4	13,5	12,5	12.1	11.2	11.8
釜山。	慶南	15.8	16.9	17.4	17.1	19.7	19.6
濟	州	1.2	1, 2	1.2	1.2	1, 1	1.1
全	國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1971년 및 1978년은 常住人口이며, 1985년은 센서스 인구의 잠정치임.

資料: 서울市,『서울市 統計年報』,各年度。 内務部,『住民所得年報』,各年度。

國土開發研究院 資料.

帶로 擴散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 편, 首道圈과 釜山圈을 제외한 지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人口比重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地域總生產(gross regional product)의 地 域分布 역시 人口分布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首都圈과 釜山圈에 집중되고 其他地域은 비중 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首都圈의 경우 國民總生產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1년 에는 37.4%에서 1983년에는 42.6%로 증가하 였으며, 釜山圈은 동 기간에 17.1%에서 19. 6%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地域總生產의 地域不平等을 나타내는 「지니」係數가 1971년 에 0.390에서 1983년에는 0.484로 증가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지니」係數가 다소 개선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주 로 서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周邊 地域으로 확산되어 가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 로 해석된다. 특히 1971~83년간 京畿道地域

<表 3> GRP에 의한 國土利用不平等係數

-	1971	1975	1980	1983
지니係數	0.390	0.432	0.497	0.484

의 GRP比重이 가장 현저히 증가되었다.

地域別 隔差는 產業別 構造에서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表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71~83년간 전국의 產業構造는 1次產業이 감소하고 鑛工業部門이 현저히 증가하는 構造轉換이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간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 기간중에서 산업구조가 현저히 변화된 곳이 京畿道地域이다. 京畿道地域은 1次產業比重이 37.5%에서 16.2%로 감소한 반면 鑛工業部門은 22.4%에서 47.9%로 증가하여전국에서 鑛工業部門의 比重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되었다. 이러한 產業의 變化는 釜山・慶南地域에서도 비슷해 이 지역은 동기간중에 鑛工業部門은 22.7%에서 44.7%로 증가된 반

<表 4> 地域別 產業構造 變化

(단위:%)

				1971			•	1983	
		1次	2 次	3 次	地域總生產	1 次	2 次	3 次	地域總生產
서	울	2.1	20.4	77.5	100.0	0.8	21.0	78. 2	100.0
仁川·	京畿	37.5	22.4	40.2	100.0	16, 2	47.9	35.8	100.0
江	原	35.1	21.0	43.9	100.0	24.2	28.5	47.4	100.0
忠	北	50.7	15.0	34.3	100.0	38.3	24.9	36.8	100.0
忠	南	53.8	11.1	35.1	100.0	34.0	23.5	42.6	100.0
全	北	56.3	9.9	33.8	100.0	41.1	16.8	42.1	100.0
全	南	55.9	10.9	33.2	100.0	31, 1	27.6	41.3	100.0
大邱·	慶北	44.8	14.8	40.4	100.0	21.7	31.3	47.0	100.0
釜山•	慶南	26.9	22.7	50.4	100.0	10.5	44.7	44.8	100.0
濟	州	48.6	4.2	47.2	100.0	44.2	3.1	52.7	100.0
全	國	31.6	17.7	50.7	100.0	15.9	31.4	52, 7	100.0

資料: <表 2>와 同一.

면, 農·林·水產業의 占有率은 26.9%에서 10. 5%로 떨어졌으며 大邱·慶北地域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中部圈地域과 湖南圈地域은 1次產業比重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한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全北地域의 경우는 1次產業의 比重이 41%나 되고 있다.

2. 地域別 社會間接資本의 蓄積現況

인구와 경제활동의 地域的 偏重現象과는 달리 主要社會間接資本部門의 地域間 隔差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1970~85년간 道路鋪裝, 工業團地, 電力, 通信(電話) 등 經濟的 間接資本과 教育 등 社會的 間接資本의 地域別 蓄積現況과 隔差를 보면 다음과 같다(附表 참조).

가. 道路部門

道路網의 擴充은 비단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활동의 반경을 넓히고 지역간의 접근도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전국의 道路鋪裝率은 1970년에 8.3%에서 1985년에는 49.9%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道路網 擴充을 위한 投資는 주로 高速道路와 國道鋪裝事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서울과 각 지방을 연결하는 道路網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地方과 地方間을 연결하는 道路網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1985년만 현재 一般國道의 鋪裝率은 73.7%에 달하고 있으나 地方道의 鋪裝率은 29.1% 수준이며, 특히 郡道의 경우는 鋪裝率이 1985년만

현재 14.6%에 지나지 않는다.

1970~85년간 전반적으로 각 지역의 道路鋪 裝率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역간의 격차도 크게 완화되었다. 즉, 道路部門의 地域變異係數는 1970년에 0.80에서 1985년에는 0.23으로 감소되었다.

나. 工業團地部門

60년대 이후 據點開發戰略에 의한 丁業育成 政策은 서울, 釜山 등 大都市와 그 周邊地域 및 東南海岸 工業地帶에 집중됨으로써, 其他 地域은 상대적으로 産業發展이 부진하여 지역 간 불균형성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 다. 工業立地 중에서 計劃立地의 地域別 分布 를 보면 [圖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慶北과 慶南地域에 집중되어 있는바, 특히 重化學工 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던 70년대 중반 이후 에 현저하게 나타났다. 80 년대 이후의 工業 團地育成政策이 대규모 工團開發을 지양하고 中小規模工業團地의 地方造成을 촉진하여 지 역간의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다. 이에 따라 工業團地의 地域變異係數는 1971년의 1.21 에서 1980년에는 1.34 로 심화 되었으나 1985년에는 1.15 로 다소 완화되었 다.

다. 電力 및 電話

電力販賣量의 地域分布는 地域의 都市化, 工業構造 등에 의하여 크게 결정되는바, 單位 人口當 慶南과 江原道地域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들 지역이 에너지多消費型 工 業이 立地해 있기 때문이다. 電力은 他社會問 接資本部門보다 상대적으로 지역격차가 없었 던 부문으로 電力供給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表 5> 社會間接資本의 各 部門別 變異係數

1970	1975	1980	1985
0.80	0,55	0.41	0, 23
1. 211)	1, 13	1, 34	1, 15
0.63	0.54	0, 44	0.40
0.65	0.49	0.34	0, 23
1.38	1.00	0.44	0.25
1.10	0.97	0.74	0.50
	0.80 1.21 ¹⁾ 0.63 0.65 1.38	0.80 0.55 1.21 ¹⁰ 1.13 0.63 0.54 0.65 0.49 1.38 1.00	0.80 0.55 0.41 1.211 1.13 1.34 0.63 0.54 0.44 0.65 0.49 0.34 1.38 1.00 0.44

註:1) 1971년 統計資料에 의한 것임。 資料:遞信部,『遞信統計年報』,各年度。 建設部、『建設統計便覽』,各年度

動力資源部・에너지經濟研究院,『에너지統計年報』, 1986,

經濟企劃院,『韓國統計年鑑』,各年度。 國土開發研究院,『工業立地資料便覽』,1986。

電話普及도 지역격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70년 이후 각 지역의 電話普及이 균등히 성장하여 地域變異係數는 1985년에 0.23에 불과하다.

라. 大學施設

教育에 대한 가치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큰 요인중의 하나는 우수한 教育施設이 서울에 집중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大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首都圈人口分散施策이나 地方均衡開發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외같은 大學의 分布는 1970년에는 서울과 부산에 심하게 편중되어 變異係數는 무려 1.38을나타내어 社會間接資本施設 중 가장 편중이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首都圈 大學의定員抑制 및 地方大學의育成策 등으로 地方大學이 양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됨으로써 지역간 격차가 현저하게 완화되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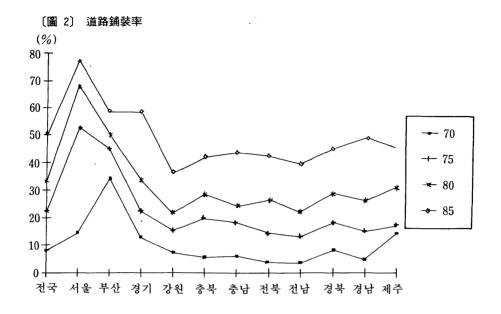
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서울과 지방간에는 아 직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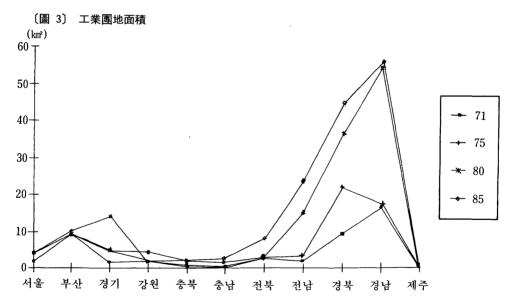
마. 給水施設

國民生活便益施設中의 하나인 用水는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그동안 投資가 擴大되어 전국적인 普及率은 67%, 1日 1人當 給水量은 282 l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上水道普及率이 저조한 형편이고, 특히 도시와 농촌간에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는바, 1986년 현재 都市의 上水道普及率은 94% 수준이나 農村地域은 불과 22%에 지나지 않는다. 單位人口當 給水量의 變異係數는 1970년의 1.10에서 1985년에는 0.50으로 개선되었다.

3. 社會間接資本과 地域構造 變化

地域間의 所得隔差가 深化된 것과는 달리 1970~85년간 主要社會間接資本部門의 지역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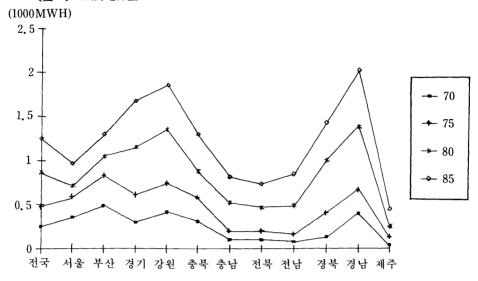


격차는 현저히 완화되었다. 특히 道路鋪裝率 이나 高等教育機會의 지역간 격차는 대폭 완 화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 경제성장이 추 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스 톡」이 蓄積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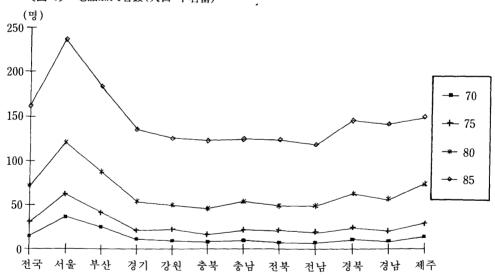
社會間接資本의 地域間 隔差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사실은 製造業從業員을 활용한 變動—割當分析에 의한 地域別 成長類型의 變 化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바, 市·道別 製造 業의 成長要因을 1963~75년과 1975~84년의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63~75년간에 全國 製造業 成長을 상회하는 성장을 보인 지역은

〔圖 4〕 販賣電力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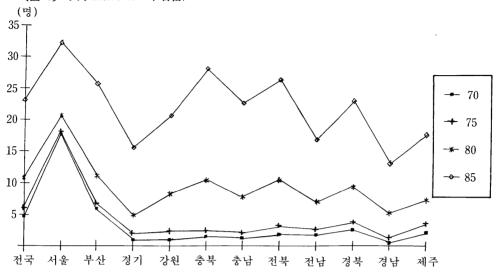
〔圖 5〕 電話加入者數(人口 千名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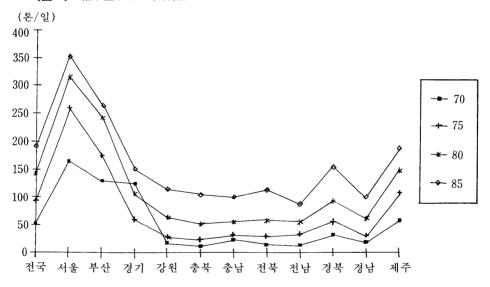
서울, 釜山, 京畿 및 慶南地域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產業構造의 영향으로 他地域보다 빠르게 성장한 지역은 서울과 釜山이며, 京畿 와 慶南地域은 他地域에 비해 立地的 與件이 양호한 때문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製造業成長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중에서 江原 및 忠北地域은 產業構造가 취약한 점에 기인하고, 忠南, 全北, 全南地域은 주로 立地 與件이 불리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5~84년간의 地域別 製造業의 成長要因은 1963~75년간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製造業成長率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京畿, 慶

[圖 6] 大學生數(人口 千名當)



[圖 7] 給水量(人口 千名當)



北 및 慶南地域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과 釜山은 전국 평균 성장보다 낮은 지역으로 나 타나고 있다. 서울과 釜山의 成長이 부진한 것은 주로 立地與件이 불리하게 된 점에 기인 한 바, 이는 都市內 土地價의 上昇, 公害發生 등으로 外部非經濟效果가 集積의 利益을 능가 하여 工業立地與件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 다. 한편 京畿道의 成長이 월등한 요인은 이지역이 서울에 근접하여 있어 立地的으로 매우 유리하게 때문이다. 한편 1963~75년 기간 동안에 忠南, 全北, 慶北地域은 地域構造要因, 즉 입지적 여건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75~85년 기간 동안에는 입지적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く表 6> 地域別 製造業 成長要因

(단위:名)

	一般	製造業 從業員	1數		1963	1963~75			1975~84	~84	
	1963	1975	1984	增加	全國成長 效果 (G)	產業混合 效果 (M)	地域競爭 效果 (C)	增加	全國成長 效果 (G)	產業混合 效果 (M)	地域競争 效果 (C)
서울	119,096	433, 313	480, 213	314,217	303, 713	51,406	△40,902	46,900	282, 798	△10,598	△246, 295
終日	1 68, 997	250, 673	351,884	181,677	175, 953	22,832	$\triangle 17, 107$	101, 211	163, 599	21,910	$\triangle 84,299$
	£ 40,799	252, 401	626, 168	211, 602	104,044	$\triangle 11,059$	118, 617	373, 767	164, 727	14, 146	194,894
	i 8, 166	20, 464	21,534	21, 298	20,825	$\triangle 6,257$	$\triangle 2,270$	1,070	13, 356	$\triangle 3,740$	$\triangle 8,547$
电	9,952	29,896	46,545	19, 944	25, 379	△6, 396	961	16,649	19, 521	$\triangle 9,006$	6, 142
忠	i 23, 576	58, 997	92,641	35, 401	60, 122	$\triangle 1,905$	$\triangle 22,816$	33, 664	38, 491	$\triangle 9,952$	5, 126
全	21,905	40,358	60, 179	18,453	55, 861	$\triangle 8,612$	△28, 796	19,821	26, 341	$\triangle 12,452$	5, 930
	ī 24,830	48,054	67,765	23, 224	63, 320	7560	△39,836	19, 711	31, 363	$\triangle 4,819$	△6,834
慶北	58, 109	161, 446	286,949	103, 337	148, 187	$\triangle 3,934$	$\triangle 20,916$	125, 503	105, 366	$\triangle 23, 161$	43, 298
慶南	j 21, 272	120, 188	305,881	98, 917	54,247	△8, 399	53,070	185,693	78,440	16, 466	90, 787

資料:經濟企劃院,『鑛工業統計 調查報告書』,各年度.

製造業의 成長要因을 產業構造要因과 地域 構造要因으로 구분하여 지역을 類型別로 나누 어 보면 〈表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3 ~75년간에는 類型 "I"에 속하는 지역은 없 고 서울. 釜山市가 類型 "II"에 속하고 있 다. 이는 서울과 釜山市가 이미 規模의 經濟 에서 오는 이익보다 外部非經濟의 효과가 더 크고 政府의 양 지역에 대한 成長抑制策에 영 향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地域類型 "III"에 속 하는 지역은 京畿, 忠北, 慶南으로 이들 지역 은 상대적으로 社會間接資本施設 및 地域의 立地與件이 양호하나 產業構造面에서는 상대 적으로 落後狀態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地域 類型 "IV"에 속하는 지역은 江原, 忠南, 全北 및 慶北으로 이들 지역은 당시까지만 해도 產 業構造의 落後뿐만 아니라 社會間接資本施設 도 공업을 유치할 만큼 정비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地域類型이 1975~84년간에는 많 은 변화를 보였다. 즉, 京畿와 慶南地域은 社 會間接資本施設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產業構 造도 고도화되어 가장 바람직한 工業立地地域 으로 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들 지역이 각 각 서울과 釜山의 外廓地帶로 양 대도시의 外 部擴散效果에 의하여 공업이 분산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서울과 釜 山市는 地域類型은 전에 비하여 변하지 않았 으나 地域構造에 의한 成長抑制效果가 훨씬 심화되었다. 한편 1963~75년간에는 地域類型 "IV"에 속하여 있던 지역중에서 忠南, 全北 및 慶北地域은 類型 "III"으로 재구분되었는 바, 이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리적으로 서 울・釜山과의 접근도가 향상된 결과 產業立地 與件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表 7> 地域類型의 變化

	1963~75	1975~84
地域類型 I		京畿, 慶南
地域類型 II	서울,釜山 京畿,忠北,慶	서울, 釜山
地域類型 III	京畿, 忠北, 慶	忠北, 忠南, 全
	南	北,慶北
地域類型 IV	江原, 忠南, 全	江原,全南
	北,全南,慶北	

그러나 이들 지역의 產業構造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는 成長產業을 유치하거나 기존산업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등 產業構造 高度化 政策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끝으로 江原 및 全南地 域은 地域類型 "IV"에 분류됨으로써 이들 지 역의 발전을 위하여는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함께 社會間接資本投資 등 地域構造의 改善政 策이 동시에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다

IV. 社會間接資本投資의 推移와 特性

社會間接資本의 投資를 부문에 따라 변화되어 온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경제발전과정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특성과 지역별로 사회간접자본투자 자료가 이용 가능한 1983~85년간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방향과 지역균형개발과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별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부문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地域發展現況에 따라 投資配分의 추이를 분석하고자한다.

1. 社會間接資本投資의 推移

社會間接資本部門의8) GNP構成比는 附加價值를 기준으로 할 때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에 GNP의 4.4% 수준에서 1970년에는 12.5%, 1985년에는 20.1%로 상승하였다. 50년대에는 주로 전쟁으로 파괴된 社會間接資本과 產業施設의 복구에 주력하였으나可用財源의 限界로 投資規模는 미미하였다. 60년대에는 國內貯畜 및 外資導入의 增大 등으로 財源調達側面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民間產業活動에 대한 지원과 일부 산업활동에 대한 참여 등으로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는 선택적이고 제한적이었으나 京仁 및 京釜高速道路가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蔚山, 昌原 등의 重化學工業團地建設 등 大型事業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社會間接資本投資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1972~81)이 수립된 7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70년대에는 高速道路의 建設, 一般道路網의 擴充 등 道路, 港灣, 工團 및 農業關聯投資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70년대 後半期에는 산업과 직접 관련된 부문보다는 住宅,教育 등 社會開發關聯部門의 投資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80년대의 社會間接資本部門은 70년대에 비해 직접적인 產業支援보다는 地域

均衡開發과 國民生活의 便宜 등에 중점적으로 投資되었다⁹⁾.

이와 같은 社會間接資本의 投資推移를 그特性에 따라 人口定着基盤造成部門, 國土開發基盤擴充部門, 資源開發 및 環境保全部門과國民生活環境整備部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表 8〉과 같다¹⁰. 먼저 民間部門의 投資를 포함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住宅, 上·下水道, 文化 등 國民生活環境整備部門에 대한 投資의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1982~85년간에는 55% 이상을 점하고 있다.

社會間接資本部門에 대한 投資의 또 다른 특성은 70년대에는 國土開發基盤擴充部門과 資源開發 및 環境保全部門에 投資가 중점적으 로 이루어졌으나 80년대에는 이들 부문에 대 한 投資比重이 현저히 감소한 데 있다. 國上 開發基盤擴充部門에 대한 投資는 道路, 通信, 鐵道, 港灣, 工業團地의 建設과 整備로 重化 學工業育成政策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資源開發 및 環境保全部門은 에너지 資源의 開發을 통하여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하면서 에너지의 국내 自給度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第1次 石油波動이 있 던 7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의 投資額은 약 2.5배의 증가를 나타냈다. 70년대의 이 두 부 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이른바「據點開發 에 의한 集積利益의 追求」의 결과이며 이에 따라 人口定着基盤造成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중 인구의 大都市集中, 都・農間 및 地域間의 隔 差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시책이 정부에 의하 여 마련되었으나 투자의 절대 미흡으로 지역 간의 격차는 계속 심화되어 왔다.

⁸⁾ 建設業, 電氣・가스・水道業, 運輸・倉庫 및 通信 業을 포함한 것이다.

⁹⁾ 郭泰元, 「社會間接資本의 產業支援效果分析」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韓國開發研究院, 1986 _赴~

¹⁰⁾ 社會間接資本의 구분은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 劃에 따른 것이다.

〈表 8〉 社會間接資本의 部門別 投資推移 (1985년 價格)

門 民 間 部 共 部門 $1972 \sim 76$ 1977~81 $1982 \sim 85$ $1972 \sim 76$ 1977~81 1982~85 人口定着基盤造成 1, 267 4,069 1,692 663 746 1,541 (3.0)(8.6)(8, 8)(7.0)(10, 1)(4, 4)國土開發基盤擴充 5, 119 10,953 8,302 4,639 9,812 2,882 (26, 6)(25, 8)(17, 5)(48, 8)(57.8)(18, 8)資源開發 및 環境保全 8,870 2, 161 2,946 2,358 4,988 10,864 (26.0)(25, 6)(18, 7)(22,7)(17, 4)(15, 4)國民生活環境整備 7.413 19, 289 26, 133 2,040 3,467 8,548 (38.6)(45, 5)(55, 2)(21, 5)(20.4)(55, 8)19, 212 47, 374 9,503 14,897 合 計 42, 373 16,971 (100.0)(100, 0)(100, 0)(100, 0)(100,0)(100, 0)

註:1) 人口定着基盤造成部門: 州中 多事業, 都市 및 地域開發事業

- 2) 國土開發基盤擴充部門:交通, 工業立地 擴充
- 3) 資源開發 및 環境保全部門:農業, 林業, 漁業, 蓄蠶業
- 4) 生活環境整備部門:住宅, 上·下水道, 流通, 社會·文化, 清掃衞生, 災害對策, 觀光

資料:國土開發研究院,『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評價分析(資料集)』, 1982 및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推 進實績評價(Ⅲ)(資料編)』, 1986.

80년대의 社會間接資本部門에 대한 投資의 특징은 生活環境整備部門의 계속적인 投資擴大와 人口定着基盤造成部門에 대한 投資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國土開發基盤擴充, 資源開發 및 環境保全部門의 投資優先에서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投資重視의 政策方向 轉換을 의미한다. 都市開發, 地域開發, 住宅, 教育, 上·下水道 등의분야에서 투자가 증대하였으며 水資源開發, 通信과 地下鐵 등 生活環境 改善을 위한 투자가 증대하였다.

한편, 公共部門(中央政府 및 地方政府)에 의한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投資는 민간부문이 포함되었을 경우와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70년대의 공 공부문에 의한 투자는 道路, 鐵道, 港灣 및 工團造成 등 산업활동지원을 위한 國土開發基盤擴充에 집중되었다. 1977~81년간에는 약 58%가 이 부문에 투자되었다. 반면에 住宅, 上·下水道 등 國民生活環境整備를 위한 投資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70년대의 投資特性은 80년대에는 사무 다른 양상으로 변하였다. 산업활동지원을 위한 國土開發基盤擴充部門의 投資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國民生活環境整備를 위한 投資 比重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70년대에 이 부문에 대한 投資比重이 20% 수준이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56% 수준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는바, 이는 政府의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方向이 生產基盤擴充에서 生活環境整備로

(단위:10億원,%)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社會間接資本部門中에서 產業立地, 交通, 通信 및 上·下水道 등 主要 4部門에 대한 投 資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 다.

產業立地造成을 위한 投資는 70년대 중반까 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0년대초 產業立地部門 投資의 比重이 증가한 것은 重化學工業을 育 成하여 産業構造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重化學工業基地의 造成이 강조되었 기 때문이다11). 1982년 이후 產業立地造成을 위한 投資比重은 미미하지만 점차 증가하였는 데 이는 光陽灣工業基地開發과 農工團地의 造 成에 대한 中央政府의 支援에 의한 것이다. 최근 產業立地를 선정하는 政策基準이 立地與 件이 유리한 지역에 투자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성장이 부진한 지역에 工業團地를 조 성하여 人口의 地方定着과 나아가서 地域均衡 開發을 달성하고자 하는 均衡開發로 전화한 것을 의미한다.

輸送部門의 投資도 產業立地造成政策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70년대초 이두 부문에 대한 投資構成比가 큰 이유는 이들이 他社會間接資本과는 달리 生產基盤施設로서 경제개발의 초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

하였기 때문이다. 道路部門에 대한 投資는 1975년까지 輸送部門 投資의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에는 그 비중이 29%까지 감소하였다. 道路部門 投資의 特性을 보면, 70년대 초에는 高速道路의 건설과 產業道路의整備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었으나 80년대에는 地域間 隔差緩和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地方道路의 整備에 집중되었다. 鐵道部門을 위한投資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과 함께 鐵道의 寄與度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通信部門投資는 〈表 9〉에서 보듯이 他社會間接資本部門에 비해 80년대 초까지 투자가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通信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중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0년에는 財政規模의 7.6%를 通信部門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이 부문의 投資比重이 1980년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는바, 이는 通信事業特別會計의 資本計定 중 通信施設擴充 등에 소요되는 電務資產取得費가 韓國電氣通信公社의설립과 함께 移管됨으로써 中央政府 投資에는郵政事業만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70년대 上·下水道部門 投資는 中央政府 財源의 限界와「受惠者 및 原因者 負擔의 原則」에 따라 주로 地方費에 의존하여 왔다. 上水道部門에 대한 中央政府 投資는 1976년 이후부터 본격화하여 首都圈 廣域上水道事業 이외에 水系別 廣域上水道事業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0~85년간에는 地方上水道事業을 지원하는 中央政府 投資가 廣域上水道事業을 등가하였다. 따라서 동 기간에 급격히 증가한地方費와 함께 地方上水道의 확충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1986~87년간에는다시 廣域上水道事業費의 占有率이 높아졌다.

^{11) 1974~80}년에는 產業立地 豫算의 90% 이상이 重化學工業基地 建設에 投資되었다. 70년대 말에는 重化學工業에 대한 重複·過多投資의 문제가 발생하고, 第2次 石油波動 등의 海外經濟與件이 악화되어 投資調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는 重化學工業基地에 대한 豫算이 4,800億원으로서 產業立地豫算의 94.2%에 달하였다.

〈表 9〉 主要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投資推移

(단위:億원, %)

	B.L.T.L.+日+共1)		主要	長 社會間接資本語	那門	
	財政規模中	計	產業立地	交通	通信	上·下水道
1972	10, 216	1, 319	69	913	325	12
ĺ	(100.0)	(12, 9)	(0.7)	(8.9)	(3, 2)	(0, 1)
1974	14, 704	1,707	150	985	536	36
	(100.0)	(11.6)	(1.0)	(6.7)	(3, 6)	(0, 2)
1976	30, 831	4, 278	441	2, 333	1, 361	143
	(100.0)	(13.9)	(1.4)	(7.6)	(4.4)	(0.5)
1978	47,816	5,625	473	2,621	2, 348	213
	(100.0)	(11.8)	(1.0)	(5, 5)	(4.9)	(0.4)
1980	88, 142	11,625	509	4, 170	6, 656	290
	(100.0)	(13, 2)	(0.6)	(4.7)	(7.6)	(0.3)
1982	120, 355	8,064	375	6, 981	181	527
	(100.0)	(6.7)	(0.3)	(5.8)	(0.2)	(0.4)
1984	136, 843	8,573	529	6, 701	258	1,085
	(100.0)	(7.1)	(0,4)	(5, 6)	(0, 2)	(0.9)
1986	172, 083	12, 303	973	9, 160	459	1, 711
	(100.0)	(7.1)	(0.6)	(5, 3)	(0, 3)	(1.0)
1987	194, 811	14, 349	1, 100	10,806	438	2,005
	(100.0)	(7.4)	(0.6)	(5, 5)	(0, 2)	(1.0)

註:1) 一般會計의 特別會計의 純計임. 資料:經濟企劃院,『豫算概要』,各年度.

한편 下水道部門에 대한 投資는 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龜尾, 半月 등 6개 工業都市, 釜山, 大邱 등 6개 地方大都市 및 首都圈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地域別 投資現況

60년대 및 70년대의 社會間接資本投資에 대한 地域別 資料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投資內譯과 推移를 분석할 수 없지만, 地域間 社會間接資本 投資特性은 앞에서 논의된 變異係數의 變化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地域間 社會

間接資本蓄積의 隔差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용가능한 1983~85년간 지역별 투자배분에서는 오히려 서울·釜山과 같은 大都市地域에 집중되어 있다.

〈表 10〉은 1983~85년간 地方政府가 주체가되어 추진한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投資를 나타낸다. 동 기간에 서울의 投資比重은 36.2%로전체의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京畿道地域과 仁川市를 포함하면 首都商地域에 45.7%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全南地域은 8.5%로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慶南地域으로 7.9%에 이르고 있다. 慶南地域에 釜山市를 포함하는 釜山圈에 15.1%가 투자된

〈表 IO〉 地域別 社會間接資本部門 投資推移, (1983~85) (經常價格)

•		地 域 構	成 比(%)			1 人 當	投 資 比	
	1983	1984	1985	1983~85	1983	1984	1985	1983~85
서울	38, 6	44.2	29.2	36, 2	1, 67	1, 88	1.22	1, 60
釜山	9.2	11.9	7.3	7.2	1.07	1, 38	0.84	1, 11
大邱	4.4	3.5	2.8	3.7	0.90	0.70	0.55	0.71
仁川	1.6	1.7	2.8	1.9	0.52	0, 52	0.81	0.62
京畿	4.8	6.7	10.7	7.7	0.44	0,60	0.91	0.66
江原	4.4	3.0	6.4	4.7	0.96	0, 66	1.49	1.02
忠北	6.0	3.1	5.8	4.8	1.68	0.88	1.67	1, 39
忠南	4.5	3.8	1.9	4.0	0.59	0.51	0.26	0.45
全北	2.6	4.3	8.2	5.0	0.45	0.77	1.52	0.90
全南	10.1	5.1	9.3	8.5	1.05	0.54	1.00	0.85
慶北	5.1	5.5	6.8	6.5	0.65	0.72	0.91	0.76
慶南	6.8	5.3	7.5	7.9	0.77	0.60	0.87	0.74
濟州	1.8	1.8	1, 3	1.6	1.49	1,50	1.07	1, 35
全國	100.0	100.0	100.0	100.0	1.00	1.00	1.00	1.00

資料:國土開發研究院,『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推進實績評價(III)(資料編)』, 1986.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투자비율은 각년도마다 심한 기복을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市의 경우 1984년에는 投資比重이 44. 2%까지 달하였으나 1985년에는 29.2%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地下鐵建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釜山市의 경우도 연도에 따라 비중이 다른데, 1984년의 경우 11.9%를 점유하고, 1985년에는 7.3%로 감소되었다. 한편 京畿道의 경우는 1983년에는 4.8%에 불과하였으나 投資比重이 계속 상승하여 1985년에는 무려 10.7%까지 상승하였다. 반면에 忠南地域은 동 기간에 4.5%에서 1.9%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地域別 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동 기간에 인구 1인당에 대한 投資比重으로 보면 서울에 전국 평균보다 60%가 더 투자되었고, 그 다음은 忠北地域으로 전국 평균의 139%가 투자되었는데, 주요원인은 충주댐 건설 때문이다. 반면에 1인당 社會間接資本의 投資가가장 낮은 지역은 忠南地域으로 전국 평균의 45%에 불과하다.

社會間接資本의 地域別 投資는 그 構成比側面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釜山市의 경우 國土開發基盤擴充部門에 대한 投資比重이 他地域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특히 釜山市는 이 부문에 대한 投資比重이 무려 69%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지하철 건설 때문이다. 이에 따라 釜山市는 都市再開發事業 등 人口定着基盤造成을 위한 투자가현저히 낮다. 大邱市의 경우는 上·下水道施設, 醫療施設 및 社會福祉施設에 대한 投資 등 生活環境整備部門에 대한 投資比重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京畿道는 50% 이상

〈表 11〉 地方事業의 投資實績, 1983~85

(단위: 億원, 1985年 不變價格, %)

	人口定着 基盤造成	國土開發 基盤擴充	資源開發 및 環境保全	生活環境 整 備	其 他	合 計
서 울	9, 683	12, 461	8	11,503	143	33, 798
	(28.6)	(36.9)	(0.02)	(34.0)	(0.4)	(100.0)
釜 山	10	5, 928	7	2,553	107	8,605
	(0.1)	(68.9)	(0.1)	(29.7)	(1, 2)	(100.0)
大邱	198	550	2	2, 427	16	3, 193
	(6.2)	(17.2)	(0.1)	(76, 0)	(0.5)	(100.0)
仁川	262	487	14	932	107	1,802
	(14.5)	(27.0)	(0.8)	(51.7)	(5.9)	(100.0)
京 畿	1,690	650	956	3, 418	0	6,714
	(25, 2)	(9.7)	(14.2)	(50, 9)	(0,0)	(100,0)
江 原	1, 206	463	962	1, 451	0	4,082
	(29.5)	(11, 3)	(23, 6)	(35, 5)	(0,0)	(100.0)
忠 北	1,878	619	908	987	1	4,393
	(42,7)	(14, 1)	(20, 7)	(22.5)	(0.02)	(100.0)
忠 南	492	829	577	1,093	70	3,061
	(16, 1)	(27.1)	(18, 9)	(35, 7)	(2, 3)	(100.0)
全北	384	907	2, 083	1, 126	66	4,566
	(8.4)	(19.9)	(45, 9)	(24, 7)	(1, 4)	(100, 0)
全 南	1, 331	1, 932	2, 155	1,801	8	7, 227
	(18.4)	(26.7)	(29.8)	(24, 9)	(0.1)	(100.0)
慶 北	1, 167	715	1,882	1, 440	9	5, 213
	(22.4)	(13.7)	(36, 1)	(27.6)	(0, 2)	(100.0)
慶 南	1, 148	585	1, 682	2, 214	240	5,869
	(19.6)	(10, 0)	(28.7)	(37.7)	(4.1)	(100.0)
濟 州	383	114	228	730	8	1, 463
	(26, 2)	(7.8)	(15, 6)	(49.9)	(0,5)	(100.0)
全 國	19, 832	26, 240	11, 464	31, 675	775	89, 986
	(22, 0)	(29, 2)	(12, 7)	(35, 2)	(0, 9)	(100.0)

資料:〈表 10〉과 同一。

을 住宅,體育施設 및 糞尿處理施設 등 生活 環境整備部門에 투자하였고,道路建設에는 상 대적으로 낮은 투자를 하였다. 忠北,全南·北 및 慶北地域의 投資類型의 特性은 대도시지역 에 비하여 生活環境整備部門 및 人口定着을 위한 基盤造成에 대한 投資比重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에 이들 지역에는 耕地整理,農業 用水開發 등 農業基盤造成을 중심으로 하는 資源開發 및 環境保全部門의 投資比重이 높 다. 특히 全北地域의 경우 46%가 이 부문에 투자되었다.

한편 社會間接資本部門의 地域別 1人當 投 資比率이〈表 12〉에 나타나 있다. 人口定着基 盤造成을 위한 投資比率은 忠北地域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으나 이는 忠州댐 수몰지구에 대한 대책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 부문 에 대한 投資比重이 높은 지역은 서울市로 전 국평균의 2배가 넘은 수준이다. 釜山市는 전 국평균의 1% 수준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의 원인은 地下鐵建設에 可用財源의 대부분이 투 자되어 이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財源의 한 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國土開發基盤造成을 위한 投資는 서울과 釜山市가 전국 평균에 비 해 월등히 높은데 주요원인은 양 도시의 지하 철건설 때문이다. 道路와 工團이 주종을 이루 고 있는 이 부문은 京畿道와 慶南地域 등 대 도시 周邊地域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 이다. 資源開發 및 環境保全과 관련된 투자는 대도시의 경우 投資比重이 현저히 낮다. 이는 이 부문의 투자가 農業등 1次產業의 育成과 관련된 투자가 대부분이고 아직 環境保全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大都市圈 이외의 지역에는 이 부문의 投資

比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全北地域의 경우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의 投資比重을 보여주고 있다. 住宅, 上·下水道 建設 등 生活環境部門에 대한 投資는 大都市地域이 높고 忠南, 全南·北 및 慶北地域 등 大都市圈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의 投資比重이 낮다. 결론적으로 部門別 社會間接投資의 1人當 地域投資의 特性은 서울市의 경우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農業部門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유하는 지방의 경우 農業과 관련된 投資以外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V. 結 論

本稿에서는 과거 地域間 不均衡成長過程에서 社會間接資本의 機能을 분석하고 均衡發展을 위한 投資方向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별 투

〈表 12〉 部門別 社會間接資本의 I人當 投資比

		人口定着基盤	國土開發基盤	資源開發	生活環境
서	울	2.08	2.02	0.003	1,54
釜	Ш	0.01	2,62	0.007	0,93
大	邱	0,20	0.42	0.004	1,54
仁	Щ	0.41	0.57	0.04	0,91
京	終	0, 75	0.22	0.73	0, 95
江	原	1, 37	0.40	1.89	1,03
忠	北	2,70	0.67	2.25	0.89
忠	南	0.33	0.42	0.67	0.46
全	北	0.34	0.61	3, 26	0.63
全	南	0.71	0.78	1.99	0.60
慶	北	0.77	0.36	2.15	0.59
慶	南	0.66	0.25	1.67	0.79
濟	州	1,61	0.36	1.65	1,92
全	或	1.00	1.00	1.00	1.00

資料:〈表 10〉과 同一

자특성을 분석하였다.

公共部門에 의한 社會間接資本投資는 70년 대에는 주로 大單位 工業團地造成, 高速道路 및 港灣施設의 建設 등 國土開發基盤擴充部門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80년대에는 生活環境整備를 위한 투자의 비중이 증대되는 등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또한 중요한 社會間接資本部門의 지역간 차이는 1971~85년간에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社會間接資本部門에 대한 投資配分에는 지역의 여건과 발전 정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역은 社會間接資本投資의 상당부문이 農業開發을 위한 資源開發에 집중되고 生產基盤造成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결과 主要社會間接資本 蓄積의 地域間 차이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와 경제활동의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 지 못하였는바, 社會間接資本投資의 效率性을 높이고 地域均衡發展을 유도하기 위하여 향후 社會間接資本投資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地方의 주요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投資가 중대되어 대도시 지역과 社會間接資本施設의 隔差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고 지방의 경제활동 여건은 이미 大都市地域에 유리하게 형성된 경제활동 여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地域經濟發展을 위한 必要條件이지 그 자체가充分條件은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갖는 社會間接資

本投資의 限界性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가 지역발전과 연계되기 위하여는 生產要素의 유치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落後地域의 원인은 社會間接資本投資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生產構造가 落後된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므로 이들 地域에는 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과 함께 產業構造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社會間接資本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는 70년대의 地域別 投資資料가 미비하므로 정확한 추이는 알 수 없으나 1970~85년간의 社會間接資本施設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 소되었다. 그러나 지역간 投資資料의 이용이 가능한 1983~85년 사이에 서울市에 투자된 1 인당 社會間接資本投資가 전국 평균보다 60%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社會間接資 本의 投資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 기보다는 각 지역의 財政與件과 投資의 必要 性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社會間接資本投資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성장이 침체된 지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財源配分方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社會間接資本의 部門別 必要性과機能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 정도에 알맞도록 부문간의 投資順位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地方政府에서 지역의 필요성에 맞는 投資의 優先順位를 결정할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參考文獻 ◁

- 經濟企劃院,『豫算概要』, 各年度.
- ———,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地域開發部門計劃』, 1987.
- 郭泰元,「社會間接資本의 產業支援效果分析」, 『國家豫算과 政策目標』,韓國開發研究院, 1986, pp. 214~245.
- 國土開發研究院,『工業立地資料便覽』, 1986.
- ————, 『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評價 分析(資料集)』, 第1編, 1982.
- ————,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推進 實績評價(II)(資料編)』, 1985.
- ————,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推進 實績評價(III)(資料編)』, 1986.
- 金鍾基,「社會間接資本과 地域均衡發展」,『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韓國開發研究院, 1987.
- 內務部,『地方自治團體 豫算概要』, 1987.
- Biehl, D., "Determinants of Regional Disparities and the Role of Public Finance," *Public Finance*, Vol. 35, No. 1, 1980, pp. 44~71.
- Glover, D. R. and J. L. Simon, "The Effect of Population Density on Infrastructure: The Case of Road Building",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23, 1975, pp. 453~468.
- Hansen, N., "Infrastructure and Secondary Cities in Spatial Decentralization Strategies", *The Korean Journal of Regional*

- Science, Vol. 1, 1985, pp. 71~83.
- Regional Development", Western Economic Journal, Vol. 4, 1965, pp. 3~14.
- Hirschman, A.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New Haven, 1958.
- Looney R. and P. Frederiksen, "The Regional Impact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Mexico", *Regional Studies*, Vol. 15, No. 4, 1981, pp. 285~296.
- Nijkamp P.,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Regional Infra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Å. E. Andersson, W. Isard, and T. Puu(eds.), Region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ories, North-Holland: Amsterdam, 1984,
- Development: A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Empirical Studies*, Vol. 11, Issue 1, 1986, pp. 1~21.
- Nurkse, R.,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Blackwell, 1953.
- Voigh, F., "The Tasks of Modern Transport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ortation Economics*, Vol. 1, 1974, pp. 255~262.

우리나라 特別消費稅制의 所得再分配 效果

郭 泰 元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負擔의 累進度 혹은 逆進度를 측정할 수 있는 指標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해 同 稅制의 所得再分配效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품목에 대한 소득계층별 지출비중만으로 편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稅負擔의 逆進性指數를 개발하고 都市家計調查資料를 이용하여 특별소비세 관련 품목에 대한 上記 逆進性指數를 試算하였다. 試算結果는 全國的인 資料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特別消費稅 과세대상과 家計調查項目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特別消費稅負擔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예상되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試算結果에 의하면 特別消費稅 같은 個別消費稅로서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稅制의 改善은 外部效果 矯正 등 개별소비세 고유의 제한된 정책기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은 副次的目的으로 고려하는 方向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 序 論

間接稅의 負擔이 逆進的이라는 것은 하나의 通說처럼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筆者:本院 研究委員

租稅體系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편인데 이 비중을 낮추어 直接稅의 役割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도 결국은 간접세의 부담이 逆進的이라는 假 說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부담이 대체로 逆進的이라는 점은 실증적인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전산처리, 원고 정리 등에 큰 도움을 준 이재학·조성민 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본고의 모든 남은 오류가 저자의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초고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해준 外國語大 崔 洸 教授와 本院의 楊秀吉·李啓植 博士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계산과정에서 여러 모로 협조해 준 統計局의 김경중 국장과 신호중 사무관께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1)

그러나 간접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特別消 費稅는 附加價値稅의 單一稅率 적용에 따른 稅負擔의 逆進性 緩和를 중요한 목적의 하나 로 하여 도입되었다. 물론 이것이 법에 明示 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 다수의 사람들은 特別消費稅의 과세대상이 대 부분 고소득층의 消費品目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高價品 혹은 奢侈品이라고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세율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 거나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급속한 所得增大와 技術發展 등에 따른 消費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特 別消費税의 課税對象品目 및 税率調整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아 逆進性 緩和라는 이 稅制 의 당초 機能은 최근에 와서 크게 후퇴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特別消費稅를 가지고 稅負擔의 逆進性을 완화하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관한 논의는 접어두기로 하더라도 우선 特別消費稅가稅負擔의 逆進性을 완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를實證的으로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반드시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 같은稅目이 아니더라도 個別消費稅 項目의 所得分配側面에서의 效果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있는일이다.

本稿는 家計調查資料를 이용하여 特定支出

項目에 대한 個別消費稅가 分配面에서 어떤의미를 갖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指標를 개발하고 이것의 실증적 적용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다음 章에서는 기왕에 사용되고 있는 租稅의 累進度 測定指標들을 개관하고 第III章에서는 個別消費稅의 逆進性을 나타내는 새로운 指標를 제시한다. 그리고 第IV章에서는 1978, 1984 및 1985년 우리나라 都市家計調查資料를 이용하여 支出項目別로 이 指標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第V章에 간단한 結論을 첨부한다.

II. 租稅負擔의 累進性測定 指標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租稅負擔의 累進性 測定指標들의 內容과 特性을 간략하게 살펴본다²⁾.

租稅의 累進性指標는 視角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이 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개 이러한 지표들은 租稅負擔의 所得階層別 分布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租稅制度가 所得分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려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보면 정의된 累進性指標의 값을 결정하는 要因이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도 累進性指標를 분류할 수 있다. 이론적인 분석에서는 租稅函數(tax function)만을 가지고 어떤 租稅가 累進的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의 累進性指標는 構造的 累進性指數

¹⁾ 李啓植(1986)에 의하면 間接稅 전체의 負擔分布는 所得基準의 경우 遊進的인 구조를 나타내며 消費支出基準의 경우에는 거의 比例的인 構造을 나타낸다.

²⁾ 本章의 內容은 Kiefer(1984)를 주로 참조한 것이다. 李啓植(1986)에서도 중요한 累進性指標들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後者의 研究는 우리나라의_자료를 이용하여 間接稅의 몇 가지 累進性指標등을 계산한 바 있다.

(structural progressivity index)라고 말한다. 한편 租稅函數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所得分配 狀態까지도 指標값에 영향을 주도록 정의된 경 우에는 이것을 分配的 累進性指數(disributional progressivity index)라고 부른다.

實證的인 分析에서는 주로 後者의 개념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며 더구나 個別消費稅의 累進性을 따질 때는 租稅構造 자체에 累進性 이나 逆進性의 要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分配的 累進性指數만 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分配的 累進性指數의 대부분은 지니係數 (Gini index)와 같은 集中度指數나 로렌츠曲線(Lorenz curve)과 같은 集中曲線의 概念을 이용하고 있다. 대개는 이러한 개념들을 이용하여 稅負擔分布를 單一指標로 요약하거나 稅前 및 稅後의 所得分配 狀態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所得分配指標로서 지니係數가 가지고 있는 결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지니係數가 함축하고 있는 社會厚生函數的特性中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社會厚生函數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累進性의 測定을 시도하기도 한다. 本稿에서는 주로 지니係數를 이용한 累進性指數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社會厚生函數를 이용한 指數는 本章의 末尾에서 概念만 간단하게 설명한다.

1. 지니係數를 이용한 累進性指數

지니係數를 이용한 累進性指標로 다음의 여 섯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Musgrave-Thin(1948)의 有效累進度 (effective progression: *EP*)

이 指數는 다음 式과 같이 稅前 및 稅後의 지니係數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EP = \frac{1 - G_a}{1 - G_b}$$

이 式에서 G_a 는 稅後의 지니係數이고 G_b 는 稅前의 지니係數이다. 문제의 稅制가 비례적이면 $G_a = G_b$ 이어서 EP = 1이 된다. 稅制導入後 稅後 所得分配가 개선되면 $G_a < G_b$ 가 되므로 EP > 1이 된다. 반대로 EP < 1이면 이 稅制는 逆進的이다. EP가 클수록 더 累進的인稅制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니係數의범위가 0에서 1까지이므로 이론적으로 EP는 0에서 ∞ 까지 사이의 값을 갖는다 3 .

나. Pechman – Okner指數(PO)

Pechman-Okner(1974) 및 Okner(1975) 는 稅制導入에 의한 지니係數의 變化率로 稅 制의 累進度를 측정하려고 하였다. 이들의 指 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O = \frac{G_a - G_b}{G_b}$$

稅制導入後 지니係數가 감소하면 PO < 0이 되고 지니係數가 증가하면 PO > 0이 되므로 $PO \leftarrow EP$ 와는 달리 값이 작을수록 稅制가 상대적으로 더 累進的임을 나타내는 指數이다. PO = 0이면 稅制가 比例的이고 PO > 0이

³⁾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母集團의 總家口數를 n 이라고 할 때 지니係數의 範圍는 0에서 1-1/n 이 된다. 물론 n이 ∞에 접근하면 지니係數의 理論的 上限은 1 에 收斂한다.

면 稅制는 逆進的이다. 이 값이 변할 수 있는 니係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KP 指數 범위는 -1에서부터 $+\infty$ 까지이다.

다. Reynolds-Smolensky 指數(RS)

Reynolds-Smolensky(1977)는 稅後의 지 니係數와 稅前의 지니係數의 단순한 차이로써 累進性을 측정하였다. 즉,

$$RS = G_a - G_b$$

그러므로 RS<0이면 이 稅制는 累進的이고 RS=0이면 比例的, 그리고 RS>0이면 逆進的이 된다. RS의 可變範圍는 -1에서 +1이다. 그러나 지니係數 자체가 경험적으로 0.3~0.5 사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RS값의 變化範圍도 실제적으로는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라. Khetan – Poddar指數(KP)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指數들은 사실상 똑같은 情報, 즉 稅前 및 稅後의 지니係數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지수의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 결함은 稅後 지니係數를 사용하기 때문에 總稅收規模에 따라서 指數값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Khetan—Poddar(1976) 가제시한 累進性指標는 이들과는 달리 稅前 지니係數와 稅負擔 自體의 集中度指數를 비교함으로써 分析對象稅制 累進性을 측정한다. 따라서 이 指數는 稅收規模와는 獨立的이며 租稅의 상대적인 負擔分布에만 영향을 받으므로보다 합리적인 累進性指標라고 말할 수 있다.이들이 제시한 累進性指標를 식으로 나타내면다음과 같다.

$$KP = \frac{1-G_b}{1-C_a}$$

여기서 C_t 는 稅負擔의 集中度指數이며 지

니係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KP 指數의 變動範圍는 0에서 ∞ 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_b 가 1일 때 다시 말해서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할 때는 C_t 값도 1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KP값은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하게 KP=0인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KP가 1이면 租稅制度는 比例的이고 1보다 작으면 逆進的, 그리고 1보다 크면 累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마. Kakwani指數(P)

Kakwani(1977 a, b)도 稅前 지니係數 G_b 와 稅負擔의 集中度指數 C_t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指數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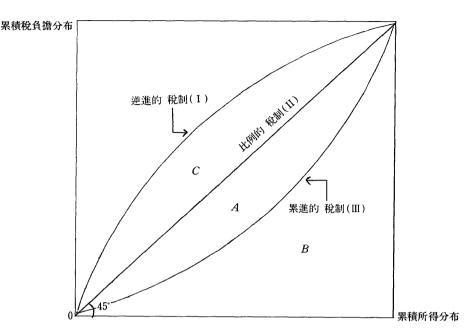
$$P = C_t - G_b$$

稅負擔의 集中度가 稅前의 지니係數보다 더 낮으면 P(0)이 된다. 이 경우에는 稅制가 遊 進的이라고 할 수 있고 P=0이면 比例的, 그리고 稅負擔의 集中度가 높아서 P(0)이면 이 稅制는 累進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指數가 다음에 설명할 KPS指數와 함께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長點은 稅制가 몇 가지 다른 종류의 稅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全體 稅制의 P 指數는 각 個別稅의 P 指數의 加重平均値와 같다는 점이다. 이때 加重値는 각 個別稅의 平均實效稅率(혹은 稅收規模)이다.

바. Khetan - Poddar - Suits指數(KPS)

Khetan-Poddar(1976) 및 Suits(1977)에 의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매우 비슷한 指數가 개발되었다. *KPS*는 稅負擔의 集中度를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앞의 두 가지 指數와 비슷하나 集中度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소 다르다.

[圖 |] 累積稅負擔比率曲線과 累進性



즉 이들은 稅前所得에 대비한 稅負擔의 相對 的 集中度指數를 계산하는 것이다.

[圖 1]에서처럼 水平軸을 累積所得分布로 하고 垂直軸을 累積稅負擔分布로 하여 로렌츠曲線과 같은 集中度曲線을 그리면 이 曲線의 모양으로 稅制의 累進度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集中度曲線이 45°線과 일치하면 累積所得分布와 累積稅負擔分布가 일치하는 것이므로 稅制는 比例的이다. 集中度曲線이 45°線의 위쪽에 있으면 稅制는 逆進的이고 아래쪽에 있으면 累進的이다.

Suits는 이 그림을 이용하여 지니係數 計算과 같은 방식으로 集中度指數를 산출하였다. 즉 만일 累積稅負擔比率曲線이 [圖 1]의 맨아래쪽 曲線(累進的 稅制)과 같다면 Suits의 累進性指數(KSP_s)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KPS_s =$ <u>面積 A</u> 面積A + 面積B

 KPS_s =0이면 稅制는 比例的이고, KPS_s >0이면 累進的이며 KPS_s </br>
이면 累進的이며 KPS_s </br>
이면 累進的이며 KPS_s </br>
이는 사용한다. 그림에서 만일 集中度曲線이曲線 I과 같으면 지니係數와 같은 방식으로 KPS_s 를 계산할 때 面積 C는 마이너스가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KPS_s 는 이론적으로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Khetan-Poddar가 사용한 指數(KPS $_k$)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나 Suits의 指數와 다소 상이한데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KPS_k = 1/(1-KPS_s)$$

이 값은 0.5에서 ∞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1보다 작으면 該當稅制는 逆進的이고 1과 같으면 比例的, 그리고 1보다 크면 累進的

이다.

一般的 社會厚生函數를 이용한 累進性指數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지니係數가 함축하고 있는 社會厚生函數는 社會厚生에 관한일반적 통념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있는 社會厚生函數에 근거한 所得分布指數가개발되었다⁴⁾. 이 指數는 均等分布等價(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의 所得水準 概念을 이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不平等을 기피하는 社會厚生函數에 있어서 주어진 所得水準과 分配狀態로서 달성할 수 있는 社會厚生函數의 값과 동일한 厚生水準을 完全均等한 所得分配狀態로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平均所得水準을나타낸다. 이것이 Yede로 표하면 所得分布指數(I)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 1 - \frac{\text{Yede}}{\bar{V}}$$

여기서 \bar{Y} 는 平均所得을 나타낸다. 원래부터 완전하게 균등한 소득분배를 가지고 있다면 Yede= \bar{Y} 이므로 I=0이 된다. 그러나 원래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할수록 \bar{Y} 가 주어졌을 때 社會厚生函數의 값은 낮을 것이며 따라서 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Yede의 값은 낮을 것이므로 I 값은 커진다.

새로운 所得分配指數를 이용하여 Black-orby-Donaldson(1983)은 다음과 같은 累進 性指標를 제시하였다.

$$BD = \frac{1 - I_a}{1 - I_b}$$

여기에서 I_a 와 I_b 는 각각 稅後 및 稅前의 I指數이다. BD=0이면 稅制는 比例的이고 正이면 累進的, 負이면 逆進的이 된다.

이 밖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나 이 방법의 가장 중요 한 약점은 不平等忌避파라미터(inequality averse parameter)값이 주어진 구체적인 社 會厚生函數를 가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III. 個別消費稅 負擔의 逆進性係數

우리의 문제는 個別消費稅의 累進性 혹은 逆進性을 측정하는 것인데 우선 어떤 유형의 지표를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먼저 明示的으로 社會厚生函數를 가정해 야 하는 指數들은 이론적으로는 더 합리적인 指數일 수 있으나 社會厚生函數의 形態와 不 平等忌避係數를 비롯한 파라미터값의 결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應用分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니指數를 이용한 指標를 선택하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니指數를 이용한 指標中에서 累 進性指標가 稅收水準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은 個別消費稅의 累進度分析에 적합하지 않다. 예컨대 보석에 대한 特別消費稅와 세탁 기에 대한 特別消費稅中 어느 것이 더 累進的 이냐 하는 문제에 稅收規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累進的 指標를 가지고 대답한다면 비록 보석에 대한 지출이 더 高所得層에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탁기로부터의 稅收規模가 더

⁴⁾ Kolm(1969), Atkinson(1970), Sen(1973).

커서 세탁기에 대한 特別消費稅가 더 累進的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 個別項目으로부터의 個別消費稅 稅收規模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지니係數로 보면 매우 미미한 영향밖에 주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稅收規模와 관련을 갖지 않은 指數들(KP. P, KPS) 중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稅負 擔分布의 集中度이다. 특히 個別消費稅의 累 進度分析에 있어서 可用한 데이터는 所得階 層別 課稅項目別 稅負擔額이 아니고 支出額이 다. 稅率이 일정한 것으로 假定하면 支出構成 比의 集中度와 稅負擔의 集中度는 같아진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국내소비자 에 대한 免稅등이 포착되지 않으므로 사후적 인 의미에서 정확한 稅負擔의 集中度를 측정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家計調査資 料에 이와 같은 정보가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支出構成比의 集中度만 가지고 만 족할 수밖에 없다. 한편 稅制改編에 있어서 個別消費稅 課稅對象項目이나 혹은 課稅對象 이 될 項目에 대한 累進度의 分析은 事後的인 累進度보다는 事前的인 累進度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는 事後的으로 稅負擔集中度에 영향을 주는 免稅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合理化된다.

本章에서 지니係數에 個別消費稅 函數를 도입함으로써 個別消費稅의 所得再分配效果 판정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指標들보다 좀더 단순한 指標를 導出한다. 이 指標는 결국 KP나 P 指標를 다소 變形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지니係數와 稅負擔 集中度間의 關係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租稅가 도입되기 전의 지니係數(G)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G=1-2\sum_{j=1}^{n}\phi_{j}/n$$
(1)

단 여기서 ϕ_i 는 累積所得比率이고 n은 總家口數 혹은 分位數를 나타낸다. G를 다시풀어쓰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G = 1 - \frac{2}{n Y} \sum_{i=1}^{n} \sum_{j=1}^{j} y_i \cdots (2)$$

여기에서 y_i 는 i번째 家口의 所得 (혹은 i번째 分位의 下均所得)을 나타내며 모든 y_i 에 대하여 $y_i < y_{i+1}$ 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시 말해서 i는 所得이 낮은 家口(혹은 分位)부터 順次的으로 번호를 붙인 것이다. 그리고 $Y = \sum_{i=1}^{n} y_i$, 즉 所得의 總合計 (혹은 各分位 平均所得의 合計)를 나타낸다.

租稅를 지니係數에 導入한다. 所得이 y_i 인 家口가 부담하는 稅金을 z_i 라고 하고 이러한 종류의 稅金 總合計를 Z라고 하면(즉 $Z=\Sigma z_i$) 稅後의 지니係數(G_a)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G_a = 1 - \frac{2}{n(Y-Z)} \sum_{i=1}^{n} \sum_{j=1}^{j} (y_i - z_i) \cdots (3)$$

稅後의 로렌츠曲線 아래쪽의 面積을 A 라고 하면 式 (3)에서 이것을 바로 導出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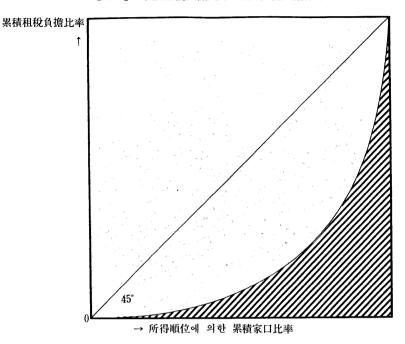
$$A = \frac{1}{n(Y-Z)} \sum_{j=1}^{n} \sum_{i=1}^{j} (y_i - z_i)$$

$$= \frac{nY}{n(Y-Z)} \cdot \sum_{j=1}^{n} \sum_{i=1}^{j} y_i - \frac{nZ}{n(Y-Z)}$$

$$\cdot \sum_{j=1}^{n} \sum_{i=1}^{j} z_i - \dots$$
(4)

즉 이것은 稅前의 로렌츠曲線 아래쪽 面積 과 累積所得比率 대신 累積租稅負擔比率을 가

[圖 2] 累積租稅負擔比率曲線과 稅負擔集中度



지고 만든 로렌츠曲線 아래쪽 面積의 加重平 均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租稅가 지니係數로 측정한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圖 2] 의 累積租稅負擔比率曲線 아래쪽의 面積이다. 이것은租稅負擔의 集中度를 逆으로 나타낸다.

이 面積을 *m*이라고 나타내면 *m*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 = \frac{\sum_{i=1}^{n} \sum_{i=1}^{j} z_i}{nZ}$$
 (5)

한편 特定品目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租稅函 數를 보다 구체적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z_i = t s_i y_i \cdots (6)$$

여기서 s_i 는 i번째 家口가 문제의 特別消費 稅 課稅對象品目에 지출하는 支出比重을 나타 내고 t는 從價稅로 假定한 特別消費稅 稅率 을 나타낸다.

따라서 式 (5)의 *m*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게 된다.

$$m = \frac{\sum_{j=1}^{n} \sum_{i=1}^{j} s_i y_i}{n \sum_{i=1}^{n} s_i y_i}$$
 (7)

즉 m은 特別消費稅의 稅率 t와는 무관하며 다만 문제의 品目에 대한 社會全體의 支出中에서 特定家口 혹은 所得分位가 차지하고 있는 支出比重의 分布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支出比率($\frac{S_i V_i}{\sum S_i V_i}$)을 r_i 라고 부르기로하면 式 (7)로부터 다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⁵⁾ m 은 앞의 KP指數 혹은 P 指數 등에 있어서의 C_t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 이것은 郭泰元(1986)에서 정의된 M을 n으로 나누어 준 것과 같다.

$$m = \frac{1}{n} \{ nr_1 + (n-1) r_2 + \dots + 2 r_{n-1} + r_n \}$$

= $\sum_{i=1}^{n} \frac{(n-i+1)}{n} r_i \dots (8)$

그리고 이것은 [圖 2]에서 垂直軸의 累積租稅負擔比率을 累積 r_i 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特別消費稅의 所得階層別 負擔分布가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 支出比重의 所得階層別 分布와 동일하다는 지극히 당연한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r_i 는 정의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r_i 의 합계는 1이 되어야 하므로 式 (8)에서 볼 때 m의 값은 $\frac{1}{n}$ 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된다. 예를 들어 문제의 課稅對象品目이 最下位所得階層에 의해서만 소비되는 품목이라면 r_i =1이고 r_i =0 $(i \neq n)$ 이므로 m=1이 될 것이다.

위의 式 (8)을 보면 앞에서 정의한 m 係數가 매우 구체적인 社會厚生函數 혹은 社會的加重值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所得序列에 따라 最下位 所得家口(혹은 階層)에 2/(n-1)이라는 社會的加重值를 부여하고 있으며 n 번째 계층, 즉 제일 높은 계층의加重值는 2/(n-1)로 最下位所得階層에 부여한 加重值의 2/n에 해당한다. 그리고 隣接階層間의 所得隔差에 관계없이 한 계층이 변할때마다 加重值의 값은 2/n(n-1) 만큼씩 변동한다.

이 係數의 값이 클수록 特別消費稅의 負擔이 低所得層에 集中되는 것이므로 지니係數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m을 이용하여 G_a 를 다시 쓰면 다음 식을 얻는다.

$$G_a = 1 - 2\left\{\frac{nY}{n(Y-Z)} \cdot \frac{\sum_{i=1}^{n} \sum_{i=1}^{j} y_i}{nY} - \frac{nZ}{n(Y-Z)} \cdot m\right\} \dots (9)$$

式 (10)에서 G_a 를 m에 관해 偏微分하면 다음 결과를 얻는다.

$$\frac{G_a}{m} = \frac{2Z}{Y - Z} \cdots (10)$$

Z가 Y보다 클 수 없으므로 $G_a/m > 0$ 이며 Z값이 커집에 따라 m의 變動에 대한 G_a 의 變動이 민감해짐을 보여준다. 이 결과도 매우 상식적인 것으로 아무리 高所得層에 消費가集中된 '理想的' 特消稅課稅品目에 課稅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課稅로부터의 稅收가크지 않다면, 즉 이 品目에 대한 지출이 크고稅率도 높지 않다면 실제적인 所得分配 改善效果는 미미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m 係數가 낮은 품목일수록 상대적으로 所得分配 改善效果가 좋은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임은 명백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特別消費稅를 과세하는 것이 소득분배를 개선할 것인가 악화시킬 것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없으면 m係數는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 選定에 있어서所得再分配效果와 관련된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 이 기준은 당연히 현재의 소득분배상태, 즉 稅前 지니係數 G에 의존하게된다. 이 기준이 되는 m의 係數의 값을 m*라고 표시하기로 하면 m*는 다음 條件을 만족하는 값이어야 한다.

$$G_a - G < 0$$
 (11)

式 (2)와 式 (9)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 의 값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m^* < (1-G)/2$$
 ····· (12)

이 式에 의하면 G가 커질수록 m*의 값이 작아진다.

稅前 所得分配狀態가 나쁠수록 m이 더 낮은 품목을 찾아서 課稅해야 所得分配改善效果가 생긴다. 稅前 所得分配狀態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個別消費稅로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그 소비가 소득분배보다 더 심하게 高所得層에 집중된 품목을 찾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해서 G가 $(1-\frac{1}{n})$ 이면 m은 $\frac{1}{2}$ 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特定品目의 消費가 완전히 最上位所得階層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라도 m은 $\frac{1}{n}$ 보다 작아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個別消費稅를 가지고 소득분배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한편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해서 G가 0인경우 m은 $\frac{1}{2}$ 보다 작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m이 $\frac{1}{2}$ 보다 작은 품목이 있다면여기에 特別消費稅를 과세함으로써 소득분배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G가 0이어서 어떤 경우라도 분배를 더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것은 논리적으로모순된 결론이다. 이러한 모순의 원인은 바로G가 0인 경우, 즉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에는 m이 一意的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소득분배가 균등하다고 해서 特定品目에 대한 지출도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m은 소득의 순위

이상의 性格과 特性을 갖는 m 係數는 支出의 所得階層別 分布를 나타내는 有用한 要約指標로서 個別消費稅의 逆進性을 나타내는 指標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指標 m 係數를 앞으로 個別消費稅의 逆進性 係數라고부르기로 한다.

이 指標가 앞의 KP, P 혹은 KPS 등의 指標와 다른 점은 稅前 所得分配 자체가 指數값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稅負擔集中度의 變化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指標 가 소득재분배의 방향은 나타내 주고 있으나 그 크기는 나타내 주지 못한다는 제약성을 갖 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해당 소비항목의 지출비중 혹은 해당 과 세항목으로부터의 稅收規模가 실제의 소득재 분배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 이러한 분석은 대체로 租稅의 歸着 에 대해서 강한 가정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 에서도 暗默的으로 個別消費稅가 대부분 소비 자에 귀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個別 消費税의 경우 需要 및 供給彈力性이 課稅項 目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 차이에 따라 租稅의 歸着패턴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支 出比重 혹은 稅收規模가 같고 m 係數가 같다 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재분배효과는 해당항목 의 需要 및 供給彈力性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다.

가 정해져야 정의될 수 있는 것이나 *G*가 0인 경우에는 소득의 순위가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⁶⁾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政府의 收入側面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支出側面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m가 1/n인 품목에 높은 稅率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이것으로 다른 계층에 대한 移轉支出을 증가시키거나 支出歸着(expenditure incidence)이 最高所得階層에만 집중되지 않는 임의의 支出項目을 증가시키므로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IV. 逆進性係數의 推定

앞에서 우리는 비교적 간단한 個別消費稅의 逆進性 係數를 導出하였다.이 係數의 기본적 인 성격은 일종의 租稅負擔의 集中度 指數라 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어 온 여러 가지 分配的 累進性指標 (distributional progressivity index)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이 係 數는 個別消費稅의 단순한 租稅函數 때문에 特定項目에 대한 支出의 構成比만 가지고 쉽 게 계산할 수 있으며 지니係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때문에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판 정하기 쉽다는 현실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本稿에서는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全國 全家口를 대상으로 한 個別消費稅의 逆進性係數를 추정하지 못하고 都市家口만을 대상으로하여 1978, 1984 및 1985년의 主要支出項目에대한 個別消費稅 逆進性係數를 추정하였다.

資料는 經濟企劃院의 『都市家計調查資料』를 이용하였다. 所得階層은 10分位로 구분하여 主要分析對象 支出項目別로 階層別 構成比를 계산하고 式 (8)을 이용하여 깨係數를 계산하였다. 所得階層을 많이 구분할수록 보다 정밀한 逆進性係數를 계산할 수 있으나 個別消費稅의 逆進性 測定의 目的이 실제의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정밀성이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수치로 요약된 集中度係數뿐 아니라 階層別 分布形態 자체를 참고할 필요가 생기는데 10分位 이상으로 넘어가면 분포의 모습 자체를 보는 것이 불편해진다.

主要支出項目에 대한 例示的 推定結果는 〈表 1〉에 요약되어 있다. 이 表의 각 列 下段에는 都市家計의 지니係數와 m*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 表에 나타난 推定結果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1) 이 表에 포함된 家計調査支出項目이 모두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이 아니며 (2) 特別消費稅 課稅對象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特別消費稅 課稅對象品目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고 (예컨대 寫眞機는 1개 價格이 30萬원 이상인 것만 課稅) 또 (3) 農家家口,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특히 (2)와 (3)의 條件은 대체로 m係數의 推定結果가 上向偏倚를 갖게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명 백하게 나타나는 特別消費稅 課稅對象 혹은 課 稅可能支出項目(表에서 * 表를 붙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支出項 目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앞의 사진기의 例에 서와 같이 품질수준으로 課稅對象을 제한한다 면 m係數가 m*보다 낮은 항목은 훨씬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特別消費 稅 課稅對象品目中의 상당항목은 이와같이 소 득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품목들일 것으로 짐 작된다. 또 이 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서비스業種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에 소비가 지 출된 항목을 다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 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가전제품, 기호품, 음료 등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個別所得稅를 과세할 경우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特別消費稅가 전면적으로 도

<表 I> 主要支出項目의 m 係數 推移

特消稅 課稅對象物品1)	学 斗理木士山番月		m 係數 ²⁾	
付用倪 苯倪到多初而	家計調査支出項目 	1978	1984	1985
보석, 진주, 장갑 등	기타장신구	0.390	0.391	0.418
귀 금 속	귀 금 속	0.322	0.293*	0.262*
가 구	장 룡	0.309	0.305*	0.301*
	장 식 장	0.520	0.304*	0.366
	침 대	0.208*	0.186*	0.202*
	응접세트	0.173*	0.270*	0.158*
	식 탁	0.424	0.282*	0.319
특수화장품	기타화장품	0.365	0.419	0.436
냉 장 고	냉 장 고	0.320	0.511	0.427
세 탁 기	세탁기	0.236*	0. 284 *	0, 338
TV 흑백, 컬러	텔레비젼	0.476	0.430	0.448
전기음향기	전 축	0.295	0, 326	0.329
	녹음기	0.332	0.404	0.478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곤로	0.522	0.561	0.597
	가스기구	_	0, 394	0.448
	보온밥통	0.471	0.486	0.517
승용자동차	개인교통유지수리	_	0.238*	0.229*
피아노	피아노	0.211*	0.154*	0.234 *
고급시계	손목시계	0.371	0.380	0.338
고급사진기	카메라	0.185*	0.310*	0.415
커피, 코코아	커 피	0.320	0, 379	0.393
사탕	설 탕	0.466	0.475	0.487
청량음료	콜 라	0.413	0.484	0.484
	사이다	0.422	0.456	0.455
	기타탄산음료	0.444	0.450	0.452
빙과류, 발효유산성음료	유산균음료	_	0.440	0.449
빙과류, 발효유산성음료 천연과실음료 모사와 직물	쥬 스	0.358	0.347	0.362
	신사복	0.337	0.343	0.326
	숙녀복	0.326	0.370	0.358
	양복지	_	0.325	0.314*
	양장지	_	0.309*	0.380
	실	0.434	0, 425	0.447
非農家 지니	係數	0,41183)	0, 3655	0. 36554)
m*		0.2941	0.3148	0.3173

註:1) 課稅對象品目과 支出項目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課稅對象에 대한 보다 具體的인 特性과 稅率은 〈表 3〉에 정리되어 있음.

²⁾ 都市家計調查資料에서 推定. 推定方法은 本文 參照.

^{3) 1976}년 지니係數임.

^{4) 1984}년 지니係數임.

^{5) *}表한 것은 m*보다 작은 추정치들임.

입된 1978년과 1984 및 1985을 비교해 볼 경 우 支出項目에 따라서는 m 係數가 상당히 크 게 변화한 것들이 눈에 띄고 있으나 일정한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많지 않다 (세탁기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음). 그러나 전 체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特別消費稅 도입 당 시보다 최근에 와서 特別消費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 렵다. 한편 단기간내에서도 m係數의 값이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家計調査資料가 標本調 查資料이므로 標本의 變化에 따라 깨係數가 달라지는 경우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한편 개별소비세를 통한 소득분배개선 노력에서 안 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일면을 보 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가능성 은 家計調查資料로 추정한 加係數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게 한 다.

이 表에서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소득 분배가 70년대 중반으로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사이에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m*의값이 커지고 이에 따라 m*보다 작은 m係數를 갖는 支出項目의 數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소득분배가 나아질수록 個別消費稅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소득재분배효과는 支出側面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당초의 분배상태가 좋을수록 분배를 더욱 개선하는 支出政策이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表 2〉와 〈表 3〉에는 각각 우리나 라 特別消費稅의 主要項目別 稅收實績規模와 稅率 및 具體的 課稅對象의 條件 등이 요약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깨係數가 높은 품목들과 관련된 항목의 稅收比重은 대체로 크지않은 편이어서 이들의 소득분배개선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한편 油類에 대한 特別消費稅는 비중이 큰 稅源인데 앞의 表의 "개인교통유지수리"項目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볼 때 실제적으로 상당한 분배개선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特別消費稅 課稅對象이면서 都 市家計調査에 제대로 계상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연구에 누락된 항목으로는 (1) 投錢機, 오 락용 射倖機器,기타 오락용품 (2) 당구 및 골 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3) 공기조절기 (4) 모터보트, 요트 (5) 영사기, 촬영기 (6) 융단 (7) 輕油 (8) LPG (9) 투전기시설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업소, 스키장 등에 대한 입장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의 항목은 고소득층에 소비가 집중되어 있다고 짐작된 다. 그러나 실제 稅收規模面에서는 〈表 2〉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 품목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큰 편은 아니어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로 현저한 소득분배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유흥업소등에 대한 과세는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稅率引上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稅收增大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V. 結 論

本稿는 個別消費稅의 所得再分配效果를 추 정할 수 있는 간단한 指標를 지니係數로부터

<表 2> 特別消費稅 項目別 稅收規模

(단위:億원, %)

≕π ₹Δ w.L.45	19	978	19	184	19	85
課稅對象	稅額	構成比	稅額	構成比	稅額	構成比
1, 보석, 진주, 장갑등	1.3	0.0	1.2	0.0	0.8	0.0
2. 귀금속제품	33	1.0	58	0.7	59	0.6
3. 가 구	20	0.6	15	0.2	18	0.2
4. 특수화장품	35	1, 1	93	1.1	102	1.1
5. 공기조절기	39	1.2	138	1.6	185	1.9
6. 냉장고	397	12.3	619	7.1	683	7.2
7. 세탁기	56	1.7	259	3.0	295	3.1
8. TV	284	8.8	769	8.9	536	5,6
9. 전기음향기	101	3.1	103	1.2	46	0.5
10. 전기, 전열,	63	1.9	18	0.2	17	0.2
가스이용기구						
11. 승용자동차	232	7.2	725	8.3	880	9.3
12. 피아노	_	_	108	1, 2	113	1,2
13. 고급시계	_	_	0.3	0.0	0.9	0.0
14. 사진기	_	_	_	_	_	_
15. 커피·코코아	56	1.7	222	2.6	285	3, 0
16. 사 탕	322	9.9	538	6.2	493	5.2
17. 청량음료	220	6.8	495	5, 7	528	5.6
18. 빙과류, 발효유	27	0.8	181	2.1	222	2.3
산성음료 .						
19. 천연과실음료	_	_	80	0.9	102	1.1
20. 모사와 직물	40	1, 2	67	0.8	62	0.7
21. 휘발유와 경유	1, 205	37.1	3, 265	37.6	3, 946	41.5
22. 과세장소	28	0.9	218	2.5	225	2.4
23. 기 타	82.7	2.6	711.5	8.2	713.3	7.5
24. 小 計	3, 159, 3	97.4	7,972.5	91.8	8, 798, 7	92.5
總計	3, 242	100.0	8, 684	100.0	9, 512	100.0

註:輸入分은 포함되지 않았음.

도출하고 家計調查資料를 이용하여 이 指標値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個別消費稅 負擔의 遊進性係數라고 부를 수 있는 이 指標의 推定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 特別消費稅의 많은 항목들이 뚜렷한 소득재분배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령 個別消費稅 對象品目들이 모두 고소득층에 집중된 支出項目에

해당되는 것들이어서 個別消費稅制가 지니係 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지하 는 것처럼 이것은 垂直的 衡平을 提高시키면 서 水平的 衡平을 沮害할 가능성이 크다. 각 家計의 特定品目에 대한 선호도는 반드시소득 수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結論的으로 말할 수 있는 이 硏究의 政策的

〈表 3〉 特別消費稅 主要稅率 推移

課稅對象	1978	1984	1987	비고
보석, 진주, 별갑 등	100	100	100	87년에 보석 및 귀금속제품에 대한 과세최저한 제도를
귀금속제품	30	30	30	도입.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각각 15 만원 이상인 것
				에 한함.
가 구	20	15	12	78년에는 1개 또는 1조가 10만원 이상, 84년과 87년은
				15만원 이상에 한함.
특수화장품	20	20	20	마스카라, 매니큐어, 향수, 헤어린스, 오데코롱, 탈취제,
				표백제 등.
냉장고 大型	40	40	32	전기가스 유류식의 것으로 대형은 250 리터 이상임.
小型	40	28	22.4	
전기세탁기	40	40	32	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기계, 기구의 세척에 전용
				되거나 공업용시설기재로 특수제작된 것은 포함안됨.
텔레비젼 수상기				87년에 천연색 액정 TV 에 잠정세율 적용.
칼라 大型	40	40	40	
t wil		20		45.72cm 를 초과하는 것임.
小型	40	28	22.4	
흑백	40	5	5	보이의 레이지를 소기되어 드리시 변시기
동관련제품	20	40	32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음향기기 大型	30	25	25	축음기, 레코드 플레이어, 스피커, 녹음기 등.
小型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	30	10	10	키기천시 회원
선거, 선물, 가스이용기 승용자동차	40	28	22.4	가정형에 한함.
공동사동사 지프	20	10	10	 4 륜구동.
기 <u>=</u> 1,500cc 이하	20 15	15	15	
1, 500000 -1 01	10	10	13	10.5% 적용
2,000cc 이하	20	20	20	10, 0/0 -1 6
2,000cc 이하	_	30	30	6 기통 이상.
2,000cc 초과	40	40	40	
피아노 그랜드형	_	30	30	
기타	_	20	20	올갠을 포함.
고급시계	-	30	30	1개가 15만원 이상인 것.
고급사진기	_	40	40	1개 또는 1조가 30만원 이상인 것.
커피와 코코아	40	40	40	
설 탕	30	30	24	
청량음료	20	20	16	천연약수도 포함됨.
빙과류, 발효유와 이와				87년에는 빙과류로 대용분유를 원료로 제조한 빙과류만
유사한 산성음료				이 과세대상이 됨.
	20	10	8	78년에는 발효유와 산성음료가 청량음료의 과세대상이
				었음.
천연과실음료	_	10	10	과채류를 포함.
모사와 동직물				
소모사와 동직물	20	20	16	
방모사와 동직물	10	10	8	
휘발류	160	100	100	87년 무연휘발유에 대해서는 85% 적용.
경유	10	10	10	
액화석유가스		10	8	

含意는 特別消費稅로 형평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特別消費稅 전체로서 어느 정도의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있어서 間接稅 전체의逆進性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이 稅制의 주된 목적이 소득분배개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個別消費稅의 稅負擔分布는 반드시 안정적이지 않으며 또 동일시점에서 보더라도 水平的 衡平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課稅對象品目의 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제한된 품목에 대한 特別消費稅로서 상당히 큰소득분배 개선효과를 얻으려고 할 때 稅率이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個別消費稅의 귀착은 個別消費項目에 대한 需要 및 供給彈力性에 크게 좌우되기 때 문에 消費分布의 集中度와 消費比重만을 가지 고 소득분배개선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어떤 奢侈性消費財가 있어서 그 소비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품목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라고 할 경우 個別消費稅 課稅分의 대부분이 공급자에게 귀착되므로 높은 率의 特別消費稅를 부과하더라도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크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奢侈性 消費需要의 價格彈力性이 크다고 한다면 特別消費稅가 消費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만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特別消費稅制의 개선방향은 소득분배의 개선보다는 외부효과의 矯正 등 稅導入이전에 존재하는 相對價格體系 歪曲의 시정, 사용자부담의 효율적 징수, 사회적 고려에 의한 특정소비활동의 억제 같은 제한된 政策機能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시각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郭泰元,「特別消費稅制度의 主要問題點과 改善善의 基本方向」,郭泰元·李啓植(編),『租稅政策 과 稅制發展』,韓國開發研究院,1986, pp. 123~156.

李啓植·裵垵皓,「우리나라의 間接稅 負擔分布 分析」, 郭泰元·李啓植(編),『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韓國開發研究院, 1986, pp. 61~114.

Atkinson, A.B.,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2, September 1970, pp.

 $244 \sim 263$.

Blackorby, C. and D. Donaldson, "Ethical Social Index Numbers and the Measurement of Effective Tax / Benefit Progressivity," mimeo,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83.

Kakwani, N.C.,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 Journal*, Vol. 87, March 1977, pp. 71~80 (a).

Kakwani, N.C., "Applications of Lorenz

- Curves in Economic Anlaysis," *Econometrica*, Vol. 45, April 1977, pp.719~727 (b)
- Khetan, C.P. and S.N. Poddar, "Measurement of Income Tax Progression in a Growing Economy: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9, November 1976, pp. 613~629.
- Kiefer, D. W., "Distributional Tax Progressivity Indexes," *National Tax-Jouranl*, Vol. XXXVII, No. 4, December, 1984. pp. 497~513.
- Kolm, S. C., "The Optimal Production of Social Justice," in J. Margolis and H. Guitton(eds), *Public Economics*, London: MacMillan, 1969, pp. 145~200.
- Musgrave, R. A. and T. Thin, "Income Tax Progression, 1929-4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6, December

- 1948, pp. 498~514.
- Okner, B. A., "Individual Taxes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J. D. Smith (eds.), *The Person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NBER, 1975, pp. 45~73.
- Pechman, J. A. and B. A. Okner, Who Bears th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 C., 1980.
- Reynolds, M. and E. Smolensky, "Post Fisc Distributions of Income in 1950, 1961 and 1970," *Public Finance Quarterly*, Vol. 5, October 1977, pp. 419~438.
- Sen, A., On Economic Inequality, Oxford: Clarendon Press, 1973.
- Suits, D.B.,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7, September 1977, pp. 747~752.

國民醫療費 推移의 國際比較分析

權 純 源

本稿의 目的은 우리나라의 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諸國의 資料를 이용하여 國際比較에 의한 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醫療費의 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論爭을 再照明하고 "各國間의 所得隔差로서 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檢證하였다.

그 결과 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國民醫療費의 GNP比率이 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醫療費支拂制度등 制度的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醫療費動向은 所得 이외에도 高齡人口比率 및 醫療保險制度의 實施 등을 가지고 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高率成長은 國民皆保險을 앞두고 國民醫療費의 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支拂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수 있다.

I. 序 論

최근의 社會保障動向을 보면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財政의 安定化에 관심을 쏟고 있는 데 保健部門도 예외는 아니어서 醫療費의 節減이 主要政策「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 나라에 있어서 保健醫療에 투입되는 모든 資源費用을 합산한 것을 흔히 國民醫療費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NHE)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그 나라 국민들이 각종 醫

筆者:本院 研究委員

성의껏 필자를 도와준 鮮于惠 硏究員과 高明女 硏究 助員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내용 은 필자의 책임이며 여하한 잘못과 미비점도 필자에 게 있음을 밝혀 둔다.

^{*} 筆者는 本稿를 읽고 비판과 助言을 해준 本院의 楊秀吉·金明淑 博士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梁奉敏 教授에게 감사드리며 본고의 집필과정에서

療서비스 이용, 藥品購入 등 消費支出에 쓰여 진 費用뿐만 아니라 病·醫院등 醫療施設의 新·增·改築, 醫療機器 및 裝備의 購入등 投資 費用 또한 포함되며 이 밖에도 醫藥關聯研究 및 開發費用 그리고 既存 醫療人力의 再教育 費用도 포함된다.

醫療費用을 支拂하는 主體로는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가 있고 政府 역시 公衆保健事 業등 보건의료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있으 며, 財源調達 측면에서는 보험을 통하든 이용 자가 직접 부담하든 정부가 지불하든 상관없 이 모든 경비를 합쳐 의료비를 계산하게 된 다.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保健醫療費는 비교적 빠르게 신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國民健康水準 이 提高될 수 있고 그 나라 경제가 부담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으나 醫療費支 出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國民健康이 계속 증진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적 부담의 측면에서도 다른 부문에 압박을 가 하면서 保健部門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문 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本稿의 目的은 우선 우리나라에 있어서 醫療費의 規模와 최근의 動向을 살펴봄으로써 保健部門의 成長推移를 검토해 보는 데 있다. 특히 醫療保險이 단기간에 빠르게 확대·보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 많은 자원이 保健醫療部門으로 투입되고 있어 國民醫療費의 動向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保健部門에 쓰여진 總資源費用의 增加傾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흥미를 끌게 하고 있는데 本稿의 두번째 目的은 醫療費上昇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규명에 두어질 것이다. 醫療費推 移의 分析을 위해서는 흔히 國際比較資料가 사용되고 있는바 최근 國際比較分析의 方法論 을 둘러싸고 保健經濟學者들간에 활발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음을 본다. 국제간의 醫療費變 動을 所得이라는 單一變數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Newhouse의 분석에 대하여 Leu. Parkin 등은 그 假說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本稿의 세번째 目的은 國際比較分析의 方法論과 分析結果의 해석에 대하여 綜合的인 評價를 내림으로써 이 分野의 硏究進展에 보탬을 주자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먼저 第II章에서 지금까지 나타 난 醫療費研究의 主要內容을 소개함과 아울러 國際比較分析의 意味와 制限點을 설명할 것이 다. 이어서 第III章에서는 暫定推計한 우리나 라 國民醫療費의 動向을 검토한 다음 第IV章 에서는 實證分析을 통하여 적절한 研究方法論 을 제시할 것이며 分析結果의 解析에 대하여 綜合的으로 考察할 것이다. 끝으로 第V章에 서는 本 研究의 결과를 要約하고 結論을 내릴 것이다.

II. 國際比較에 의한 醫療費 變動의 檢討

醫療費의 國際比較에는 큰 難關이 놓여 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醫療費에 대한 定義가다르고 資料事情이 다를 뿐만 아니라 醫療서

¹⁾ 所得水準이 낮은 단계에서는 限界的인 醫療費支出의 健康增進效果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限界效果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서 本文中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이다.

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制度, 利用慣行 등 環境要因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民醫療費의 內譯別 比較보다는 總支出額을 가지고國際比較를 행하는 편이 比較可能性이란 관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겠으나 上記한 制限點을고려할 때 比較分析이 제시하는 결과에 대한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단 保健醫療部門에 투입되는 總支出이 알려지고 產出物의 多少를 파악할 수 있다면 費用效果分析을 통하여 현행 醫療費支出의 適正與否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국민건강수준의향상을 저울질할 수 있는 포괄적인 指標가 없어 醫療費의 產出物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인 것이다². 통상 保健醫療費² 는 對GNP比率로 표시되며 所得에 대한 相對的 比率을 가지고 國際比較分析을 행하거나한 나라의 時系列分析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醫療費와 所得과의 關係

각국의 醫療費統計는 특히 OECD諸國을 대 상으로 상호비교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整備・ 改善되어 왔다. 주로 國民所得資料에 기초를 두고4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總醫療費 및 公共 혹은 民間 등 部門別 醫療費에 치중하여 집 계되고 있는 醫療費關聯統計는 그동안 Abel-Smith, Maxwell 등의 노력에 힘입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OECD 統計當局의 관심이 높아져 종전보다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집계되었다".

가. Newhouse의 假說

美國의 保健經濟學界에서 가장 활발하게 研究活動을 하고 있는 學者中의 한 사람인 Newhouse는 "무엇이 保健醫療部門에 投入되는 資源의 量을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OECD 各國의 保健醫療費와 所得과의 關係를 검토한 바 있다⁶.

그는 1974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국제비교를 행하였는데 醫療費統計의 不正確性이 문제가되겠지만 1人當 醫療費變動의 90% 이상을 1人當 GDP의 變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그는 醫療費의 所得彈力度가 1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醫療費는 奢侈財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NHE/GDP)의 比率이 또한 1人當 GDP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고있다.

Newhouse는 전통적으로 醫療서비스가 必須財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자신의 分析結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 그단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限界的으로보아(at the margin)' 醫療서비스는 奢侈財라고 규정지은 바 있다. 一國의 時系列分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一定時點에서 본 橫斷面分析에서는 所得彈力度가 1보다작거나 심지어 負의 數值를 나타내는 경우도

²⁾ 代理變數로서 租死亡率, 嬰兒死亡率, 平均壽命 이 사용되고 있으나 어느 것도 斷片的인 近似指 標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³⁾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民醫療費, 保健醫療費 그리고 醫療費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여 併用할 것이다.

⁴⁾ 經濟統計中 가장 체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精度가 비교적 높아 醫療費關聯 國際比較資料 를 인출하는 데 신뢰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⁵⁾ 이에 대해서는 Abel-Smith (1967), Maxwell (1981) 및 OECD(1985) 참조.

⁶⁾ Newhouse(1977) 참조.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그는 부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時系列分析 및 國際比較分析과 横
斷面分析의 差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가? Newhouse에 의하면 醫療서비스의 價格
이, 주어진 시점에서 一國의 消費者들간에는
제대로 資源配分機能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醫療保險의 擴大普及으로 第3者支拂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低所得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國家間이나 異時
點間에는 가격이 醫療서비스를 분배하는 기능
을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醫療費의 變動을 설명함에 있어서 소
득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는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1人當 所得水準이 높을 수록 실질적으로 그만큼 더 많은 양의 자원 이 保健醫療部門으로 할당되어 醫療費支出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고 있으나 비용이 증가하 는 만큼 健康水準이 提高되는 것은 아니고 다 만 주관적으로 健康 意識的이 되어 醫療利用 (care)이 증대될 뿐 治癒(cure)效果는 적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가 시사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국가간 醫療費變動의 대부분이 소득의 격차로 설명될 수 있는 한 다른 變數들, 이를테면 價格의 차이나 醫療費支拂方法(payment methods)의 차이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 지적인데 醫療서비스市場이 그만큼 自由競爭市場의 性格을 결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한편 Kleiman, Maxwell 그리고 Leu 역시 유사한 연구결과를 報告하여 Newhouse의 假 說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⁹. 그러나 Leu는 일 단 國際比較分析의 制限點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Newhouse의 분석 과 해설에 대하여 몇 가지 비판을 가하고 있 다.

첫째, 高度로 集計된 자료를 이용, 醫療費 에 대한 所得彈力度를 계산하여 醫療서비스가 奢侈財냐 必須財냐 하는 논의는 적절하지 못 하며 다만 소득증가에 따라서 一, 時系列이든 國家別이든― 醫療費支出이 빨리 늘어나고 있 는 정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供給者 가 主導하고 있는 매우 불완전한 醫療서비스 市場에서 消費者가 주관적으로 保健醫療費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서 醫療保險이 일반화되면 道德的 危險 (moral hazard) 現象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過剩消費傾向이 있게 된다고 Leu는 서 술한다10). 뿐만 아니라 醫療保護나 扶助 등 公共醫療費 역시 그에 발맞추어 증가하는 양 상을 보여주게 되어 의료수요가 급속히 신장 될 뿐만 아니라 誘導需要(induced demand) 등 供給側面에서도 利用增加를 부추기게 되며 더우기 의료기술의 발달로 高價의 機器가 고

⁷⁾ 같은 橫斷面分析이라도 家計消費資料를 사용하게 되면 Kleiman(1974)과 Musgrove(198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所得彈力度가 1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特別家口調査에 의해서 個人的 特 性을 감안하게 되면 彈力度가 매우 낮게 나타난 다

⁸⁾ 이와 같이 第3者負擔制가 보편화될수록 서비스價 格의 相對的 重要性이 時間費用에 비하여 하락하 는 경향이 있다.

⁹⁾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Kleiman(1974), Leu (1986) 및 Maxwell(1981) 참조.

¹⁰⁾ 費用分擔(cost-sharing)으로 第3者支拂이 醫療費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되면 源泉徵收되는 보험료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利用時지불하는 本人負擔分이 實際費用보다 훨씬 적을 것이므로 過多利用이 초래된다.

안되어 그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國民醫療費 增加의 템포가 소득증가의 그것을 상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Leu는 설명하고 있다.

둘째,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의료비를 단순 히 소득만의 함수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옳 치 못하며 關聯主要變數를 포함시켜야 할 것 이라고 Leu는 주장하면서 醫療費支出 增加가 그만큼 實質資源의 使用增加를 의미한다면 制 度的 要因과도 관계될 것이라는 점과 醫療費 增加가 반드시 그만큼 健康向上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시 制度的 變數가 醫療費決 定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그 근 거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그는 OECD 자료를 사용하여 單純回歸 대신 多重回歸分析을 채용 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公共部門의 比重이라 든가 都市人口比率 등의 有意性이 높은 것으 로 판명되었으며 특히 英國, 뉴질랜드 등 政 醫療體系11)를 가진 국가들의 의료 비 수준이 낮다는 점 또한 統計的으로 有意하 였으나 老齡人口의 比率은 Kleiman의 분석에 서처럼 有意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 Parkin의 反論

前記한 Newhouse假說을 놓고 Parkin등은 硏究方法論이나 分析結果의 解析에 대하여 강 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들의 反論을 한 마디로 요약하여 보면 Newhouse類의 研究는 巨視的資料에다 微視 的 分析方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고 평가하고 올바른 접근방법을 채택할 경우 醫療서비스는 奢侈財가 아니라 오히려 必須財에 속한다고(Newhouse의 分析들에 맞출 때) 結論짓고 있다.

Parkin등의 비판은 첫째 國家別 比較統計 를 작성함에 있어서 自國 貨幣表示의 國民醫 療費를 美弗로 환산하기 위하여 공정환율을 적용한 점에 내려지고 있다. 자의성이 개입되 어 있고 국가간 구매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 하는 그야말로 근사치에 불과한 換率 대신, 購買力評價指數를 사용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국가간 구 매력의 격차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실제적인 문제는 있으나 購買力評價方法은 개 념상 상당한 유리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방 법에 의한 實質醫療費를 계산하여 單純回歸分 析을 행한 결과 所得彈力度가 0.9(換率方式에 의할 경우 1.12)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국가간 相對價格의 隔差를 감안한 다면 醫療서비스에 대한 支出規模의 差異는 어느 정도 縮小調整(flattening)되어 Newhouse의 結果와는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고 풀이한다.

한편 보다 엄격한 檢證을 위해서 그들은 (NHE/GDP)比率을 1人當 GDP의 函數로 놓고 回歸分析을 한 결과 係數의 부호가 負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가 아주 작아 有意性이 없었으므로 두 변수간에 진밀한 관계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醫療費의 彈力度가 1에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시금 醫療서비스가 必須財인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Parkin등의 두번째 批判은 분석의 기초가된 자료가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集計値인데 비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微視的 方式을 택하고 있는 점에 두어졌다. Newhouse

¹¹⁾ 英國의 國家保健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代表되는 國營制度로서 政府가 保險財政 및 醫療機關을 직접 관할하는 制度이다.

등의 접근방법은 巨視經濟學的으로 보아 消費 函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의 保健經 濟學 수준으로는 거시적인 분석에 대해서 어떤 推論을 전개할 만큼 理論體系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微視經濟學的으로 보면 엥겔曲線 이 되는데 통상 價格이나 趣向이 주어져 있다는 假定下에 한 나라를 대상으로 수집된 橫斷 面資料를 이용하여 所得과 特定消費品目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그 財貨가 必須財냐 奢侈財 냐를 판별하게 되므로 總量資料에 대한 微視 經濟學的 分析과 그 解析은 적당치 않다는 것 이 그들의 지적이다.

세째로는 분석방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료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별도로 하더라도 模型設定¹²⁾과 函數形態¹³⁾등 추정과 관련하여 이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特定化(specification) 측면에서도 Newhouse의 方法論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나라가얼마나 많은 資源을 醫療部門에 투입하는가를설명함에 있어서 GDP만이 유일한 변수라는特定化는 巨視經濟學的인 觀點에서는 이해가되나 추정결과에 대하여 微視經濟學的인 解析을 내릴 경우 過小特定化(underspecification)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각국별로 醫療서비스價格이 주어졌고 醫療傳達體系등 制度的 條件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總量資料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微視的인 論議를 전개하기보다는 다만 醫療서비스의 한계적 이용증가에 따른 費用增 加現象을 설명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Parkin등은 올바로 지적한 다음 소득과 더불어 疾病類型의 變化 또는 醫療技術의 發展 등이 醫療費 伸張과 관련된다고 풀이하면서 Newhouse類의 硏究는 近似的인 접근방법을 쓰고 있을 뿐이며 總量資料에 의한 國際比較分析의 制限點을 認知하고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Newhouse假 없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第IV章으로 미루기로 한다.

2. 國際比較의 有用性

前述한 바와 같이 의료비의 국제비교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이슈」가 가로 놓여 있는 데 앞으로 이 분야의 研究進展을 위하여 현 단계에서 그 有用性을 검토해 보기로 한 다.

國家間 比較分析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總量資料를 가지고 국제비교를 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분석이 지니는 잠정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그 결과를 해석해야할 것이다.

比較保健經濟學(comparative health economics)이 아직도 記述的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고 단순한 모형을 사용한 近似的인 接近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國際比較研究는 有用하고 價值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이는 자료의 신빙성 제고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때까지 集計概念의 巨視指標를이용할 수밖에 없어 資源配分上의 效率增進과관련하여 國家政策의 상대적 效果改善에만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다. Poullier가 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決定要因의糾明은 어렵겠지만 觀測된 醫療費의 動向으로

¹²⁾ 互視理論에 立脚할 것이냐 微視理論에 기초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¹³⁾ 線型이냐, 線型代數냐 半代數냐에 따라서 推定結果가 다를 것이다.

보아 現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왜 그와 같은 增加推移를 보이는가 하는 要因 分析을 위한 전제가 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⁴).

III. 우리나라의 國民醫療費 推移

현재 우리나라의 保健部門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정책과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해 나가면서 어떻게 醫療費增加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에 두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先進國·開發途上國을 막론하고 國民醫療費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시점은 대체로 의료보험의 보급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觀測된다.

OECD諸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國民 所得資料를 이용하고 기타 필요한 補助資料를 묶어 1975~85년에 걸쳐 國民醫療費를 暫定推 計¹⁵⁾하였는데 그 概要를 소개하면 〈表 1〉과 같다.

먼저 國民醫療費는 保健醫療서비스利用, 醫療關聯研究 및 醫療施設建築으로 大分되는데 후자의 경우 특히 자료의 미비로 推計上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이 분야의 資料整備 및 補完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일단 基礎資料가지니는 문제점을 접어둔다면 總醫療費의 推移를 파악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經常市場價格으로 표시한 國民醫療費는 지난 10년간 약 12배 정도 불어나 1985년에는 3 兆 5,205億원에 달하였는데 醫療保險이 導入・ 普及되기 시작한 1977~78년 이후부터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중 經常 GNP는 7배 조금 넘게 성장하여 의료비는 經濟規模의 擴張速度보다 훨씬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그만큼 다른 부문의 비중을 줄이면서 保健醫療部門의 對GNP比重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民醫療費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民間醫療費가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個人醫療서비스의 比重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公衆保健등 公共醫療費의 比重은 대체로 15%¹⁶⁾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研究開發費는 總醫療費中 아직 2%에 못미치고 있고 醫療施設의 建築費 역시 최근 수년간 전체 의료비의 5~6%線을 유지하고 있다.

國民醫療費를 GNP로 나누어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상대적 비중의 推移를 〈表 2〉에서 검 토해 보기로 한다. 國民醫療費의 對GNP比重 은 1975년의 3.0% 수준에서 의료보험이 시작

¹⁴⁾ Poullier(1986) 참조.

¹⁵⁾ 우리나라의 경우 國民醫療費의 公式推計機關은 없고 KDI의 朴宗淇 博士가 1976년에 처음 試算을 시도한 이후 筆者가 두번째로 推計를 행하였으며 최근에는 保健社會部가 推定值을 內部資料로 내놓고 있는 정도이다. 筆者가 행한 推計와관련하여, 資料源, 方法論 등에 대해서는 「國民醫療費:推計와 分析」 및 「國民醫療費 動向」을 參照하기 바란다.

¹⁶⁾ OECD의 定義에 따르면 財源調達側面에서 보아 租稅收入에서 支出되는 政府醫療費와 强制的인 醫療保險을 합쳐서 公共醫療費로 규정하고 있는데 後者를 合算하는 이유는 政府가 社會保險財政에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政府의 役割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나 이와 같은 概念을 採用할 경우 公共醫療費는 1985년의경우 약 30%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公共部門 比重의 高低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부여하기보다는 費用效果的인 醫療費支出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表 I〉 國民醫療費의 推移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國民醫療費 總額	298.0	393.4	521.8	800.5	1,113.9	1,454.8	1,817.8	2,289.4	2,751.2	3,114.8	3,520.5
保健醫療서비스	282.1	365.0	480.2	702.7	997.2	1,375.1		2,132.3	2,587.7	2,894.8	3,229.2
個人醫療	240.7	305.8	381.4	554.9	758.4	1,016.5	1,234.2	1,486.5	1,739.1	1,913.0	2,066.6
保險醫療	8.1	9.6	19.1	35.1	109.1	184.2	248.7	367.4	497.4	647.7	771.5
公衆保健	33.3	49.6	79.7	112.7	129.7	174.4	219.5	278.4	351.2	334.1	391.1
研究 및 醫療施設	15.9	28.4	41.6	8.76	116.7	7.62	115.4	157.1	163.5	220.0	291.3
研究	3.6	5.0	9.9	8.8	12.5	16.2	21.0	28.0	36.9	48.0	62.5
醫療施設의 新・増・改築	12.3	23.4	35.0	89.0	104.2	63.5	94.4	129.1	126.6	172.0	228.8

國民醫療費의 GNP關聯分析指標 (表 5)

	(%) dNJ/ 审辩额百牌	114 帝 国日殿城市(9)	年平均增加率(%)	率(%)	**/ 41X() 字 - **
	原員	1八百 四八四次頁(元)	國民醫療費	1人當	1八虽 GNP(ج界)
1975	3.0	8,446	l		590
1976	2.8	10,970	32.0	29.9	262
1977	2.9	14,321	32.6	30.5	1,008
1978	3.3	21,624	53.4	51.0	1,892
1979	3.6	29,677	39.2	37.2	1,640
1980	4.0	38,160	30.6	28.6	1,589
1981	4.0	46,944	25.0	23.0	1,719
1982	4.5	58,216	25.9	24.0	1,773
1983	4.7	68,902	20.2	18.4	1,914
1984	4.7	76,884	13.2	11.6	2,044
1985	4.8	85,749	13.0	11.5	2,047

資料: (表 1)과 韓國銀行, 『국민계정』, 1987.

된 1978년부터 급속히 提高되어 80년대 초에 4%線을 넘어섰고 그 후에도 계속 올라가 1985년에는 4.8%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의료비가 급속하게 상승한 1978~80년과 1982~83년의 시기에는 醫療保險人口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國民醫療費를 人口로 나누어 1人當 醫療費를 계산해 보면 1975년의 8,446원에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26%로 증대되어 1985년에는 10배 이상 늘어난 85,749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經常醫療費를 적절한 換價指數¹⁷⁾로 나누어 醫療價格變動要因을 제거해 주면 이용량증가만을¹⁸⁾ 추출할 수 있어 實質醫療費의 增加推移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간 實質國民醫療費는 3.5배 늘어났고 人口增加를 감안한 1人當 實質醫療費는 3배 불어난반면 實質GNP는 같은 기간중 2배 증가에 그치게 되었다. 名目醫療費增加를 편의상 價格上昇要因과 利用量增加要因으로 大分해 보년

49 對 51로 나타나 利用增加의 寄與가 조금 더 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表 3〉에서 國民醫療費의 構成을 財源面에서 보면 醫療費支出을 위한 財源構成이 점차변화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醫療保險의擴大普及으로 投資 및 研究項目 제외 總醫療費에 대한 保險醫療費(產災 및 自動車保險中醫療費關聯支出 포함)의 比重이 1975년의 2.8%에서 10년 뒤인 1985년에는 23.4%로 높아진 반면 利用者 自己負擔의 比率은 같은 기간중 84.2%에서 62.7%로 떨어지고 있어 좋는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國民의 약 1/2이 醫療保障制度에 들어가 있다고는 하나 醫療保險醫療費의 比重이 전체 醫療費의 18%(1985年度 基準)에 불과하다는 점인데 그만큼 醫療保險의 給與(benefits)水準이 낮다는, 다시 말해서 本人 一部負擔率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최근 들어 實效給與率19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추세에서도 總醫療費에서 점하는 消費者 直接支出分의 比率이 점점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IV. 國民醫療費의 推移分析

總量概念에 立脚한 醫療費分析의 主要目的 은 國民醫療費를 결정하는 重要變數를 찾아 보려는 것이며 微視資料가 입수될 경우 醫療 費增加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糾明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國民醫療費는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의 醫療

¹⁷⁾ OECD諸國의 경우에도 적절한 價格指數의 開發이 問題點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醫療費價格指數는 實相을 반영할 만큼 포괄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한 형편이다. 여기서는 民間醫療費指數(國民所得 資料에서 계산된)를 사용하였으나 消費者物價指數中 保健醫療費指數와도 상당히다르며 만족스럽지 못하나 兩者山 擇一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醫療서비스의 單位價格은 모호한 개념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酬價體系가保險・一般으로 兩分되어 있고 保險酬價가 정부에의해서 강력히 규제되고 있는 한편 서비스供給者들의 對應(利用回數를 늘리게 한다든지 서비스項目을 추가한다든지)으로 진정한 平均醫療價格의포착이 어렵다는 점을 부언해 두고자 한다.

¹⁸⁾ 理論的으로는 이와 같은 설명이 타당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利用强度(intensity in uses)뿐만 아니라 1回 利用에 포함되는 서비스組合(servicemix) 의 變動 및 서비스의 質的改善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¹⁹⁾ 事後的으로 總給與를 總診療費로 나눈 比率이다.

〈表 3〉 國民醫療費의 財源構成

								() Sall CT
							,	
457	國民醫療費	民間醫療費	民間醫療			ህ은 44 ደ4 6월	公米	研究
		-	서비스	直接支拂	保險(醫療保險)	窗炼施政		
1	298.0	257.8	248.7	240.6	8.1(–)	9.1	36.6	3.6
	393.4	332.0	315.2	305.6	9.6(–)	16.8	56.4	2.0
	521.8	424.8	400.2	381.1	19.1(4.7)	24.6	90.4	9.9
	800.5	654.9	589.6	554.5	35.1(15.4)	65.3	136.8	8.8
,	1,113.9	947.1	8.998	7.57.7	109.1(71.8)	80.3	154.3	12.5
	1,454.8	1,239.0	1,199.8	1,015.6	184.2(132.8)	39.2	199.6	16.2
	1,817.8	1,540.5	1,481.8	1,233.1	248.7(184.1)	29.7	256.3	21.0
• •	2,289.4	1,938.2	1,852.5	1,485.1	367.4(280.2)	85.7	323.2	28.0
• •	2,751.2	2,323.9	2,234.8	1,737.4	497.4(394.8)	89.1	390.4	36.9
	3,114.8	2,682.7	2,558.7	1,911.0	647.7(502.3)	124.0	384.1	48.0
	3,520.5	3,002.4	2,835.7	2,064.2	771.5(591.6)	166.7	455.6	62.5

資料:(表 1)과 同一.

需要를 반영하는 지표라고도 설명될 수 있겠 는데 결국 이는 資源制約下에서 保健部門에 할당되는 資源費用이며 따라서 소득의 함수라 고 기대될 수 있겠다. 醫療需要理論에 의하면 醫療서비스 購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健康水準의 增進을 위해서 投入되는 中間財라 고 간주된다. 따라서 國民健康水準이 높을수 록, 즉 健康資本의 스톡(the stock of health capital)이 클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醫療費支出의 必要性이 減少(다시 말해서 健 康增進을 위한 限界生產費가 下落)될 것이다. 또한 다른 支出項目, 예하면 食品, 衞生, 住 居 등 關聯支出이 건강을 돕기도 해치기도 하 므로20) 반드시 醫療서비스에 대한 지출만이 健康의 維持・增進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지출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健 康水準(과거의 健康關聯支出이 決定한)이나 앞으로 健康增進에 도움이 되는 항목에 대한 消費規模는 궁극적으로 所得과 正의 關係를 맺는다.

이와 같은 理論的 背景下에서 국제비교가 주는 有用性을 살려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 를 검토하고 他國의 經驗과 成果를 통해서 有 益한 推論을 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記述的인 分析을 행한 다음 計量的 分析 을 통하여 Newhouse, Parkin 등이 전개한 論爭의 要點을 再照明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1. 記述的 分析

일반적으로 보아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GNP(혹은 GDP) 對比 國民醫療費의 比率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보면 同比率이 대체로 안정화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諸國의 (NHE/GDP)比率은 해를 달리할수록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가간 資料事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고 하겠으나自由競爭型 醫療市場을 지니고 있는 美國의경우 1983년의 동 비율이 10.8%를 기록하여가장 높는 편에 속하고 英國이나 뉴질랜드처럼 國家管掌의 醫療保險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1982년까지 6%에도 미달하여 국가간에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人當 所得水準을 감안하여 醫療費의 對GNP 相對的 比率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반드시 兩者間에 正의 相關關係가 있는 것은 아니며²¹⁾ 오히려 制度的 要因의 差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附表 1〉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일랜드, 스웨덴을 예외로 한다면 公共部門의 比重이 높은 편에 속하는 國家群, 예를 들면 벨기에,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및 英國의(NHE/GDP)比率이 OECD 平均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附表 2〉에서 醫療서비스이용과 관련 되는 主要指標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低醫療 費 國家群일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入院利用

²⁰⁾ 이를테면 술, 담배 등에 대한 支出은 心理的 效 用을 증가시킬지 모르나 健康에 危害를 줄 것이 다. 반면 콩, 보리 등 雜穀混食은 健康에 도움을 줄 것이다.

²¹⁾ 이를테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西獨의 1983 년도 1人當 GDP는 10,000~11,000달러 사이로 비슷하나 (NHE/GDP)比率은 6.6~9.3%로 큰 폭을 보이고 있다.

〈表 4〉 OECD諸國과 韓國에 있어서 國民醫療費의 對GDP比率, 1960~1983

(단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21)	19831)
호 주	5.1	5.3	5.7	7.6	7.4	7.6	7.5
오스트리아	4.4	4.7	5.3	6.4	7.0	7.3	7.3
벨 기 에	3.4	3.9	4.1	5.5	6.3	6.2	6.5
캐 나 다	5.5	6.1	7.2	7.4	7.3	8.2	_
덴 마 크	3.6	4.8	6.1	6.5	6.8	6.8	6.6
핀 란 드	4.2	4.9	5.6	5.8	6.3	6.6	6.6
프 랑 스	4.3	5.3	6.1	7.6	8.5	9.3	9.3
서 독	4.8	5.1	5.6	8.1	8.1	8.2	8.2
그 리 스	2.9	3.1	3.9	4.0	4.2	4.4	4.7
아 이 슬 랜 드	5.9	6.1	8.7	11.4	7.7	7.6	_
아 일 랜 드	4.0	4.4	5.6	7.7	8.7	8.2	_
이 탈 리 아	3.9	4.6	5.5	6.7	6.8	7.2	7.4
일 본	3.0	4.5	4.6	5.7	6.4	6.6	6.7
룩 셈 부 르 그	_	deres	4.9	5.9	6.6	6.5	
네 덜 란 드	3.9	4.4	6.0	7.7	8.3	8.7	8.8
뉴 질 랜 드	4.4	_	4.5	5.2	5.7	5.7	
노 르 웨 이	3.3	3.9	5.0	6.7	6.8	6.8	6.9
포 르 투 갈	_	-	_	6.4	6.1	5.7	_
스 페 인	_	2.7	4.1	5.1	5.9	6.3	_
스 웨 덴	4.7	5.6	7.2	8.0	9.5	9.7	9.6
스 위 스	3.3	3.8	5.2	7.1	7.2	7.8	_
영 국	3.9	4.2	4.5	5.5	5.8	5.9	6.2
미 국	5.3	6.1	7.6	8.6	9.5	10.6	10.8
한 국 ²⁾	_	_	_	3.0	4.0	4.5	4.7
OECD 평균³)	4.1	4.7	5.6	6.7	7.2	7.4	7.6

註:1) 1982년 및 1983년 수치는 暫定値임.

資料: OECD, Measuring Health Care, 1985.

權純源,『國民醫療費動向』,1987。

에서 OECD 平均値를 하회하고 있으며 醫師 人力面에서는 英國, 日本, 뉴질랜드 등 低支 出型 國家들이 高級人力을 상대적으로 절약해 서 활용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病 床當 人口로 대표되는 醫療施設面에서는 뚜렷 한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데 벨기에나 덴마크 등은 醫師와 施設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入院으로 代辨되는 醫療利用 慣行에 낭비가 적어 國民醫療費를 비교적 저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

²⁾ GNP에 대한 비율임.

³⁾ 룩셈부르그,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 20개국의 평균임.

^{* 1975}년 이전의 각년도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연도에 대한 수치로 하였으며, 일부국가의 경우 國民醫療費 추계방식이 時系列에 따라 다름.

〈表 5〉 國民醫療費의 對GDP 比率과 1人當 GDP(OECD 20개국 평균)

(단위 : %)

	1960	1970	1975	1980	1982	1983
國民醫療費 比率	4.1	5.6	6.7	7.2	7.4	7.5
(公共醫療費 比率)	(2.5)	(4.0)	(5.2)	(5.3)	(5.8)	(5.8)
1 人 當 GDP(美 弗)	1,249	2,565	5,605	10,297	9,392	9,169

資料: A.J.Culyer and Bengt Jönsson, Public Private Health Services, 1986, Table 2-3. OECD, Measuring Health Care, 1985.

다22)

그럼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는 어떠한가? 〈表 5〉에서 OECD 平均値를 가지고 對GDP 國民醫療費比率과 1人當 所得의 關係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1人當 GDP가 1,200달러線에이른 해가 1977~78년경이었는데 그 당시 醫療費比重은 3.1%로 나타나 비슷한 소득을 보였던 1960년의 OECD 平均値 4.1%보다 훨씬낮았으나 1人當 所得이 2,500달러를 넘어설것으로 보이는 금년의 동 비율은 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여 1970년 당시의 OECD 平均値인 5.6%(所得은 2,565달러)에 거의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醫療費增加速度가 相對的으로 빠르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例示가 [圖 1]에 소개되고 있다.

OECD 主要國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國民醫療費比重의 趨勢를 1人當 GDP와 같이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우리나라는 醫療費 高成長型인 美國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英國, 西獨, 캐나다 등은 최근 대체로 醫療費 安定化 趨勢를 보여주고 있어 대조를 보

〈表 6〉에서 國民醫療費의 所得彈力度를 보더라도 濠洲, 西獨, 노르웨이 등은 1975~82년기간에 1.0을 기록함으로써 醫療費가 안정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한편 벨기에, 日本, 네덜란드, 스웨덴, 美國 등은 같은 시기에 OECD 平均値인 1.2를 상회하여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975~85년중 醫療費의 所得彈力度가 1.6에 달하여 醫療費 高成長國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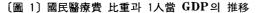
總計資料이긴 하나 國民醫療費의 對所得比率이나 所得彈力度를 가지고 흥미있는 推論을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醫療費推移가 상대적으로 急速하고 앞으로 國民皆保險時代를 앞두고 당분간 의료비의 高成長이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國民醫療費의 抑制對策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우리는최근 들어 의료비의 안정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濠洲, 덴마크, 西獨, 노르웨이의 경험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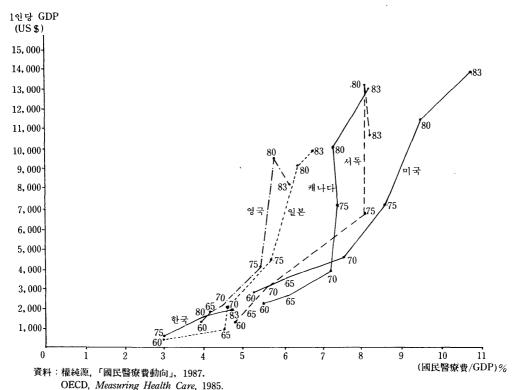
2. 計量的 接近

우선 우리나라 國民醫療費의 時系列이 11년 밖에 되지 않아 試算임을 전제하고 單純回歸 模型과 多重回歸模型 두 가지로 접근하여 前

이고 있다.

²²⁾ 물론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效率的 醫療保險制度의 運營으로 대표되는 醫療體系의 費用效果性 그리고 醫療費支拂制度의 特徵 등 制度的 特色이 관련되고 있을 것이다.





者는 Newhouse類의 엥겔曲線 分析에 적용할 것이며 後者는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主要變數들을 가려 뽑는 Leu類의 분석에 採用될 것이다. 다시 單純回歸模型을 첫째 消費函數, 둘째 엥겔曲線, 세째 (NHE/GDP)比率과 1人當 所得과의 관계를 보는 방정식으로 구분하였고, 多重回歸模型 또한 몇 가지 變數組合을 시도하여 보았다. 函數型으로는 線型, 線型代數 등이 사용되었으나 다른 연구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線型代數의 결과가 나은 편이었다.

推定技法으로는 最少自乘法(OLS)과 自己相關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Cochrane-Orcutt(C-O) 技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일단 국제비교 분석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時系列資料 역시 年平均 換率을 사용하여달러貨로 換算²³⁾한 다음 計量分析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表 7〉과 같다.

이와 같은 推定結果는 일단 分析上 問題點을 제쳐 둘 경우 Newhouse假說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時系列分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R^2 는 0.92~0.97로 매우 높으며 1人當 醫療費의 所得彈力度 역시 1.63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1人當 GDP와 (NHE/GDP)比率의 推移 사이에도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前者의 變動은 後

²³⁾ OECD諸國에 대해서는 購買力評價(PPP)指數가 나와 있으나 우리나라의 그것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므로 PPP指數가 가지는 概念上의 有利點 은 인정하나 換率方式을 채용하였다.

〈表 6〉 OECD諸國의 國民醫療費 所得彈力度

	威	民 醫療	費	公	共 醫 療	費
	1960~75	1975~82	1960~82	1960~75	1975~82	1960~82
호 주	1.3	1.0	1.2	1.6	0.9	1.3
오스트리아	1.3	1.3	1.3	1.3	1.2	1.3
벨 기 에	1.4	1.4	1.4	1.6	1.5	1.6
캐 나 다	1.2	1.1	1.2	1.6	1.1	1.4
덴 마 크	1.4	1.1	1.3	1.4	1.0	1.3
핀 란 드	1.2	1.2	1.2	1.4	1.1	1.3
프 랑 스	1.4	1.2	1.3	1.5	1.2	1.4
서 독	1.5	1.0	1.3	1.6	1.0	1.5
그 리 스	1.2	1.1	1.2	1.2	1.4	1.3
아 일 랜 드	1.4	1.1	1.3	1.5	1.2	1.3
이 탈 리 아	1.4	1.1	1.2	1.4	1.0	1.2
일 본	1.3	1.3	1.3	1.4	1.4	1.4
네 덜 란 드	1.5	1.3	1.4	2.0	1.3	1.9
노 르 웨 이	1.5	1.0	1.3	1.7	1.0	1.4
스 웨 덴	1.4	1.3	1.4	1.6	1.3	1.5
영 국	1.3	1.1	1.2	1.3	1.1	. 1.2
미 국	1.5	1.3	1.4	2.0	1.3	1.7
OECD 평균*	1.4	1.2	1.3	1.5	1.2	1.4

註: * 상기한 17개국 平均임.

資料: OECD, Measuring Health Care, 1985, Table 3.

〈表 7〉 國民醫療費와 所得과의 關係

函數型	從屬變數	獨立變數	Ĉ	β̂	D-W	R^2
1. 線型	NHE	GDP	-1401.01	0.06	2.01	0.95
			(-3.97)	(12.51)		
線型代數	NHE	GDP	-9.79	1.59	2.41	0.99
			(-12.79)	(23.04)		
2. 線型	1人當 NHE	1人當 GDP	-37.45	0.06	1.79	0.92
			(-3.15)	(-9.48)		
線型代數	1人當 NHE	1人當 GDP	-7.94	1.63	1.99	0.97
			(-10.00)	(15.29)		
3. 線型	(NHE/GDP)	1人當 GDP	1.15	0.002	2.19	0.90
			(3.44)	(8.47)		
線型代數	(NHE/GDP)	1人當GDP	-3.82	0.70	1.96	0.88
			(-5.71)	(7.75)		

註:()안은 t값인데 모든 변수의 有意性이 높으며 自己相關 때문에 C-O技法을 채택함.

者의 變動을 90% 가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1人當 GDP의 10% 증가는 (NHE/GDP)比率을 7%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컨대 所得의 上昇은 우리나라의 醫療費 伸張趨勢를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基本變數라고 간주될 수 있겠다.

한편 국제비교를 위하여 일정한 시점에서의 國家間 橫斷面分析(OECD 18個國對象) 과 個 別國家의 時系列分析(1960~82년 기간중)을 병행하였는데 前者의 엥겔曲線 推定에서는 대 체로 所得彈力性이 1.3 정도로 나타났으나 後 者의 國家別 엥겔曲線의 경우 彈力性이 0. 84~1.36에 걸쳐 분포됨으로써 큰 격차를 보 여주었다. 특히 1.0 이하를 기록한 국가들도 덴마크등 5개국에 이르러 國家別 時系列分析 結果는 반드시 Newhouse假說을 지지하지 않 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1人當 GDP와 (NHE/GDP)와의 관계도 그 설명력이 매우 떨어지는 한편 係數의 크기가 낮게 나타나 有 意한 結果를 얻을 수 없었다. 이로써 각국내 에서나 국제적으로 보아 所得이 醫療費推移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 (NHE/ GDP) 比率은 1人當 所得水準과 같은 방향으 로 有意性있게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時系列(1975~82)과 橫斷 面資料를 함께 묶어 回歸分析을 시도해 보았 는데 의료비의 所得彈力度는 다음과 같다.

從屬變數	獨立變數	彈力度	R^2
1. NHE	GDP	1.00(1.02)	0.98(0.97)
2.1人當 NHE	1人當 GDP	1.26(1.33)	0.89(0.95)

註:() 안은 韓國을 포함시킬 경우이며 Ĉ와 ĝ 모두 1% 水準에서 有意하였음.

이 결과는 시간적으로 국제적으로 所得이 醫療費 動向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變數 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 이 所得과 醫療費가 같은 방향으로 급속히 상 승하는 국가를 국제비교에 포함시킬 경우 所 得彈力度가 有意하게 커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醫療費推移를 설명함에 있어서 다른 變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며 그 證據로 (NHE/GDP) 比率을 1人當 所得水準으로 잘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時系列 및 橫斷面 分析에서)을 들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각국의 制度的 特徵이 같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醫療費上昇率이 국제적으로 보아 빠른 편에 속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구체적인 醫療費內譯이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現時點에서 醫療費推移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主要變數들을 抽出해 보기로 한다.

醫療費의 伸張은 크게 보아 價格上昇과 利用增大(訪問回數 增加 및 利用强度 增加 포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醫療費 인플레이션의 要因은 投入要素의 價格上昇 또는 人件費上昇에 의해서 초래될 것인바 前者는 一般物價指數(GNP디플레이터 혹은 消費者物價指數),後者는 醫療人力의 俸給指數로 접근할수 있다고 보여진다. 醫療서비스 利用增大要因으로는 먼저 人口增加나 國民健康狀態 變化에 따른 自然增加 이외에도 老齡人口의 增加,都市人口의 增加²4) 등 人口變數의 영향을 들수 있고 所得增加 및 消費者嗜好의 變化에 의

한 需要曲線의 上方移動이 중요하며 醫療保險, 醫療費支拂制度 등 制度的 特色과 醫療技術發展에 의한 高級醫療開發 등이 또한 열거된다.

그런데 前記한 價格要因은 資料不足과 單位 價格의 測定難 등으로 일단 事象한 다음 이용 량을 표시하는 實質醫療費 系列을 從屬變數로 사용하였고 獨立變數로는 측정가능한 諸變數 中에서 段階式 回歸分析(step-wise regression)을 통하여 人口變數, 所得變數 그리고 醫療保險變數를 다음과 같이 選定하였다.

$$\log NHE = -17.39 + 0.98 \log GNP \\ (-10.47) \quad (3.94) \\ +4.00 \log AGE + 0.13D \\ (3.65) \quad (2.49)$$

여기서,

AGE: 45歲以上 人口/15~44歲人口25)

D:醫療保險의 實施 前・後時期을 가리키 는 더미(dummy)變數(實施前 O, 實 施後 1),

() 안은 t값이며 D-W: 2,66,

 $R^2: 0.995, F: 488.06$

時系列이 짧다는 資料의 制約條件下에서나 마 모든 係數가 有意하고 R^2 도 매우 높아 추정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나라의 國民醫療費推移는 所得增加, 高齡年齡層의 相對的 比率增加 그리고 醫療保險 實施라는 세 가지 主要變數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²⁶).

한 가지 特記할 만한 점은 高年齡人口比率의 彈力度가 4.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所得彈力度는 크게 줄어들어 1보다 작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료의 時系列分析에서도 所得이 醫療費變數의 決定的인 變數라고 하는 Newhouse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時系列分析에서 1人當 概念을 사용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1보다작은 所得彈力度를 보이는 등 비슷한 결과를얻게 되는데 이는 所得이 유일의 變數는 결코아니고 그 나라의 制度的 要因이 醫療費 增加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²⁷⁾.

$$GNP + 4.1 \log AGE + 0.13D$$

(4.85) (2.94)

 $R^2: 0.994, \quad D-W: 2.73$

²⁴⁾ 人口의 都市集中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住宅 難, 交通難, 公害增加 등을 초래하여 주거환경이 劣惡해지고 事故發生率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醫療費上昇의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²⁵⁾ 이 比率은 45歲以上人口를 사용할 경우 所得變數 (GNP)와 어느 정도 相關이 될 것이어서 비교적 건강한 經濟活動年齡層에 대한 健康弱化年齡層의 比率로 표시하였는데 실제의 醫療保險統計를 보더라도 45歲以上人口의 件當診療費는 상당히 중가하고 있으며 특히 入院費用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다(附表 3 참조).

²⁶⁾ 한 가지 代替的인 模型은 國民醫療費를 所得,高 年齡人口比率 그리고 都市人口比率로 설명하는 것인데 獨立變數間의 相關關係로 所得을 제외한 나머지 變數들에 대한 係數의 有意性이 떨어지고 있다.

²⁷⁾ 이를테면 우리나라 醫療保險制度는 入院의 경우本人負擔率이 상대적으로 낮아 따라서 값비싼 入院醫療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더불어 行為別酬價制(fee-for-service payment system)는 需要·供給 兩面에서 醫療利用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人口要因과 制度的 要因을 統制하지 않은 엥겔曲線의 所得彈力度만 가지고 奢侈財·必須財를 論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V. 結 論

本稿에서는 참정추계한 우리나라의 國民醫療費와 OECD諸國의 의료비 통계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상승추세와 의료비의 상승요인을 검토한 다음 국제비교 분석을 행하였으며 의료비 추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의료비의 국제비교 분석은 資料의 不足,未備 등 기초적인 문제 이외에도 換率에 의한 換價方式,醫療價格의 모호성,接近方法上의 巨視 및 微視的 視角의 混在 등많은 「이슈」들이 未解決狀態인 채로 제한된범위 내에서이긴 하나 그 有用性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諸國의 醫療費는 대체적으로 안정화의 道程을 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總計概念인 각국의 國民醫療費는 그 推移의 상당부분이 所得의 變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記述的인 分析및 計量的 分析을 통해서 制度的 要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端的인 例로서 (NHE/GDP)比率이 1人當 所得水準과 밀접하게 관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 可用 人的・物的資源의 費用效果的 活用이나 醫療制度 運營上의 效率增進이 變數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는 公共部門의 比重이나 醫療保險의 특징 등이 醫療費 增加速度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되는데 美國에서의 支拂制度 改善努力이나 이탈리아에서의 給與幅 縮小 試圖가 안정화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결국 Newhouse의 假說은 醫療費變動을 所得變動으로 상당한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受容될 수 있다 하겠으나 總量概念의 醫療費에서 구한 所得彈力度만가지고 醫療서비스를 奢侈財냐 必須財냐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며²⁸⁾ 制度的 要因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지나친 單純化에서 나온 추론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國民醫療費는 對GNP 比率面에서나 所得彈力度面에서 OECD諸國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통상 1人當 所得水準이 올라갈수록 醫療費支出이 조금씩 서서히 증가한다고 보여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醫療保險의 급격한 擴大普及,高年齡層의 착실한 증가등 所得以外에도 人口的・制度的 要因 역시 國民醫療費動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므로 앞으로의 醫療費推移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만일 우리 경제가 부담하기 어려울 만큼 빨리 醫療費가 증가한다고 판단된다면 國民醫療費 安定化 方案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를데면 醫療費支拂方法을 현행 行爲別酬價制에서 診斷別 定額制(flat payments per diagnosis) 혹은 段階的으로 總額豫算制(global budgets)로 전환하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醫療機關으로 하여금 經營 合理化를 유도하도록 誘因을 제공함으로써 需要・供給 兩面에서 費用意識的인 자세를 가지

²⁸⁾ 美國의 經濟學原論 교과서에서도 醫療서비스의 所得彈力度가 1.9로 추정되어 彈力的이므로 奢侈 財에 속한다고 풀이하고 있다(Stanley Fisher and Rudiger Dornbusch, Economics(1983)의 p. 95 참조).

도록 정책적인 충격이 요구되는 것이다.

總額爲主의 巨視的 分析에서 구체적인 政策 代案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선 醫療費 內譯을 파악하기 위해서 '醫療費支出 및 財源 調達에 관한 特別家口調查'를 조속히 실시하 도록 건의하는 한편 醫療費 研究를 위한 資料 整備 및 接近方法 改善에 계속적인 노력이 投 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 權純源,『國民醫療費:推計斗 分析』,翰林大學 社會醫學研究所,1986.
- ----,「國民醫療費 動向」, 『醫療資源과 管理體系에 관한 워크샵 討議資料』, 韓 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Abel-Smith, B., An International Study of Health Expenditure, WHO, Geneva, 1967.
- Kleiman, E.,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Outlay on Health", in M. Perlman (ed.), The Economics of Health and Medical Care, London: Macmillan, 1974.
- Leu, R.E., "Public-Private Mix and International Health Care Costs", in A.J. Culyer and B. Jönsson(eds.), *Public and Private Health Services*,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Maxwell, R.J., *Health and Wealth*,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1.
- Musgrove, P., "Family Health Care Spending

- in Latin America",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1983), 245~257.
- Newhouse, J., "Medical Care Expenditure: A Cross-National Survey",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1977), 115-125.
- OECD, Measuring Health Care, 1960-83, Paris, 1985.
- Parkin, D., A. McGuire, and B. Yule, "Aggregate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National Income: Is Health Care a Luxury Good?", *Journal of Health Economics*, 6(1987), 109~127.
- Poullier, J., "Levels and Trends in the Public-Private Mix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Health Systems", in A.J. Culyer and B. Jönsson(eds.), *Public and Private Health Services*, Oxford: Basil Blackwell, 1986.

〈附表 1〉 國民醫療費에서 차지하는 公共部門의 比重, 1960~83

(단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2	1983
47.6	54.0	55.8	72.9	62.8	62.5	65.9
65.3	64.7	62.9	63.7	64.3	61.1	(61.7)
61.6	75.3	87.0	80.9	87.4	92.3	92.3
43.1	50.3	70.2	76.6	74.4	74.2	(74.0)
88.7	85.9	86.3	91.9	85.2	86.4	84.5
54.4	64.3	72.1	78.6	78.2	79.7	78.8
57.8	68.1	71.7	72.2	72.0	71.1	71.2
66.1	70.8	75.7	81.0	81.0	80.6	(80.0)
57.9	71.1	53.9	61.6	83.9	74.4	79.3
40.0	46.2	47.4	58.4	(82.6)	82.6	_
76.0	76.2	77.8	82.5	93.5	93.6	92.0
83.1	87.8	86.4	86.1	87.8	84.6	83.8
60.1	61.4	64.8	70.4	72.6	71.6	74.5
33.3	68.7	84.3	76.5	78.2	79.6	78.8
(80.0)	(78.8)	(78.4)	82.6	83.5	(87.6)	(87.4)
77.7	80.6	91.5	96.2	98.4	99.7	88.8
-	_	_	58.9	68.9	71.1	_
-	52.6	54.7	70.4	73.5	72.4	(72.0)
72.6	79.5	86.0	90.2	92.0	91.8	91.5
-	60.8	_	66.5	65.4	(66.0)	_
85.2	85.8	87.0	90.3	89.8	88.4	88.4
24.7	26.2	37.0	42.5	42.7	42.1	41.9
61.3	67.4	71.6	72.9	79.4	79.6	78.6
-	_	-	12.3	22.9	26.4	28.5
	47.6 65.3 61.6 43.1 88.7 54.4 57.8 66.1 57.9 40.0 76.0 83.1 60.1 33.3 (80.0) 77.7 - 72.6 - 85.2 24.7	47.6 54.0 65.3 64.7 61.6 75.3 43.1 50.3 88.7 85.9 54.4 64.3 57.8 68.1 66.1 70.8 57.9 71.1 40.0 46.2 76.0 76.2 83.1 87.8 60.1 61.4 33.3 68.7 (80.0) (78.8) 77.7 80.6 - 52.6 72.6 79.5 - 60.8 85.2 85.8 24.7 26.2	47.6 54.0 55.8 65.3 64.7 62.9 61.6 75.3 87.0 43.1 50.3 70.2 88.7 85.9 86.3 54.4 64.3 72.1 57.8 68.1 71.7 66.1 70.8 75.7 57.9 71.1 53.9 40.0 46.2 47.4 76.0 76.2 77.8 83.1 87.8 86.4 60.1 61.4 64.8 33.3 68.7 84.3 (80.0) (78.8) (78.4) 77.7 80.6 91.5 - 52.6 54.7 72.6 79.5 86.0 - 60.8 - 85.2 85.8 87.0 24.7 26.2 37.0	47.6 54.0 55.8 72.9 65.3 64.7 62.9 63.7 61.6 75.3 87.0 80.9 43.1 50.3 70.2 76.6 88.7 85.9 86.3 91.9 54.4 64.3 72.1 78.6 57.8 68.1 71.7 72.2 66.1 70.8 75.7 81.0 57.9 71.1 53.9 61.6 40.0 46.2 47.4 58.4 76.0 76.2 77.8 82.5 83.1 87.8 86.4 86.1 60.1 61.4 64.8 70.4 33.3 68.7 84.3 76.5 (80.0) (78.8) (78.4) 82.6 77.7 80.6 91.5 96.2 - - 52.6 54.7 70.4 72.6 79.5 86.0 90.2 - 60.8 - 66.5 <	47.6 54.0 55.8 72.9 62.8 65.3 64.7 62.9 63.7 64.3 61.6 75.3 87.0 80.9 87.4 43.1 50.3 70.2 76.6 74.4 88.7 85.9 86.3 91.9 85.2 54.4 64.3 72.1 78.6 78.2 57.8 68.1 71.7 72.2 72.0 66.1 70.8 75.7 81.0 81.0 57.9 71.1 53.9 61.6 83.9 40.0 46.2 47.4 58.4 (82.6) 76.0 76.2 77.8 82.5 93.5 83.1 87.8 86.4 86.1 87.8 60.1 61.4 64.8 70.4 72.6 33.3 68.7 84.3 76.5 78.2 (80.0) (78.8) (78.4) 82.6 83.5 77.7 80.6 91.5 96.2	47.6 54.0 55.8 72.9 62.8 62.5 65.3 64.7 62.9 63.7 64.3 61.1 61.6 75.3 87.0 80.9 87.4 92.3 43.1 50.3 70.2 76.6 74.4 74.2 88.7 85.9 86.3 91.9 85.2 86.4 54.4 64.3 72.1 78.6 78.2 79.7 57.8 68.1 71.7 72.2 72.0 71.1 66.1 70.8 75.7 81.0 81.0 80.6 57.9 71.1 53.9 61.6 83.9 74.4 40.0 46.2 47.4 58.4 (82.6) 82.6 76.0 76.2 77.8 82.5 93.5 93.6 83.1 87.8 86.4 86.1 87.8 84.6 60.1 61.4 64.8 70.4 72.6 71.6 33.3 68.7 84.3

註:1) 포르투갈, 스위스를 제외한 20개국의 평균임.

^{* ()}안은 A.S. Culyer의 推定値임.

資料: A.J. Culyer and Bengt Jönsson, *Public and Private Health Services*, Basil Blackwell, Oxford, UK, 1986, Table 2-1. 단, 한국은 OECD의 定義를 좇아 〈表 1〉을 가지고 計算.

〈附表 2〉保健醫療 서비스의 利用에 관한 主要指標, 1982

	1人當 入院利用率 ¹⁾ (日)	入院率 ²⁾ (%)	平均在院期間 ³⁾ (日)	. 病床當人口 (名)	醫師 1人當人口 (名)
호 주	3.2	21.0	7.4	91	509
오스트리아	3.4	20.3	16.8	93	594
벨 기 에	2.8	13.9	13.5	106	384
캐 나 다	2.1	14.7	13.3	145	520
덴 마 크	2.2	18.7	11.9	130	416
핀 란 드	4.8	21.7	22.2	64	480
프 랑 스	3.1	12.1	14.1	90	480
서 독	3.4	18.1	18.7	90	422
그 리 스	1.6	11.9	13.0	162	394
아이슬란드	3.9	20.0	19.1	92	440
아 일 랜 드	1.6	17.6	9.0	103	8454)
이탈리아	2.2	15.6	12.4	127	798
일 본	3.6	6.4	56.1	84	738
룩셈부르크	3.8	17.8	21.0	76	605
네 덜 란 드	4.0	11.9	34.1	83	497
뉴 질 랜 드	2.7	15.6	12.3	100	603
노르웨이	2.0	14.6	13.0	148	477
포르투갈	1.4	9.6	14.4	195	454
스 페 인	1.3	9.2	14.6	185	362
스 웨 덴	4.8	18.9	22.9	71	427
스 위 스	3.1	12.8	25.4	87	641
터 키	0.1	4.0	8.0	487	1,511
영 국	2.4	12.7	18.6	124	775
미 국	1.7	17.0	9.0	169	498
한 국	0.3	2.3	11.0	875	1,387

註:1) 연평균 1인당 入院日數임.

資料: OECD, Measuring Health Care, 1985.

經濟企劃院, 『한국의 사회지표』, 1985.

²⁾ 입원환자수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임.

³⁾ 입원환자의 平均在院日數임.

^{4) 1975}년 수치임.

^{*} 國家間 差異의 일부는 비교가능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입수될 수 없다는 이유에 기인함.

〈附表 3〉 年齡別 件當 診療費, 1985

(단위 : 원)

年齡階層	公教保險		職場保險		
	入 院	外來	入 院	外來	
0~ 4	155,915	7,938	166,844	8,059	
5~14	242,725	9,419	257,895	9,452	
15~44	237,376	13,485	247,057	13,561	
45~54	402,803	15,279	420,495	15,453	
55~64	413,561	16,241	423,958	16,361	
65~	370,561	14,997	382,789	15,619	

資料:醫療保險管理公團 및 醫療保險組合聯合會, 『醫療保險統計年報』, 1985.

損益시뮬레이션에 의한 公務員年金給與構造改善方案 研究

関 載 成崔 秉 浩

本 研究의 目的은 公務員年金制度의 將來 財政安定을 위한 年金給與構造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加入後 年金受給을 마칠 때까지의 醵出 및 給與過程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公務員年金 加入者의 收益率, 損益分岐點 및 給與水 準 등을 分析하였다.

分析結果 公務員年金制度의 現給與構造가 持續된다면 財政危機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退職時點의 最終報酬를 기준으로 年金額을 산정하고 公務員의 退職年齡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受給者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年金額支出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代案으로 國民年金의 算定方法(全加入者平均報酬와 加入者個人의 全加入期間平均報酬를 기준으로 年金을 算定)을 적용하고 年金受給時點을 60세부터로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財政安定效果뿐 아니라 所得再分配效果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改善方案은 年金受給者들에게 충격을 줄 수있으므로 適正收益率을 감안한 漸進的 改善이 바람직하다.

I. 序

우리나라 社會保障制度中 최초(1960년)로 시행된 公務員年金制度 및 軍人年金制度는 비록 그 적용범위가 특정한 職域에 한정되고 있

筆者: 関載成-本院 研究委員 崔秉浩-本院 主任研究員 으나, 우리나라의 年金制度導入과 社會保險制度發展을 위한 基盤造成에는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公的年金制度는 시행된 지27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社會保險制度로서의성숙된 면모를 제대로 갖추려면 해결되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公務員年金制度의 경우 企業의 退職金制度와 유사한 退職年金一時金制度가 있어 退職公務員들의 대부분이 年金보다 一時金을 선호하여(年金受給者對 加入者比가 1970년 0.04%, 1986년 1.52%에 불과) 年金制度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

지 못하고 있고, 軍人年金의 경우 一時金制度 보다는 退職者에 대한 年金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연금제도로서의 기능은 거의 성숙단계에 진입(年金受給者 對 加入者比가 1970년 4. 95%에서 1986년 22.6%로 신장) 하고 있다. 그러나 年金受給資格 取得을 너무 쉽게 열어 놓고, 급여수준 및 범위의 방만한 확장으로 制度施行 初期段階에서부터 赤字를 示顯(給與 支出 對 保險料收入比가 1972년부터 100%를 上週하기 시작하여 1986년 현재 335%임)하여 계속적으로 財政赤字를 확대시키면서 운영되 고 있다".

現行의 公務員 및 軍人年金制度는 1975년부터 실시한 私立學校教職員年金制度와 함께 財源負擔水準이나 給與內容이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이들 3個 公的年金制度는 制度導入 이래 경쟁적으로 급여수준 및 범위를 확장해 음으로써 조만간 年金財政의 불안정문제가 主要政策課題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즉, 軍人年金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이미 재정적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公務員年金은 여태까지 一時金受給者가 많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아직겪지 않고 있으나 年金選好度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1988년부터 실시되는 國民年金制度가 정착하게 되면 制度間의 均衡問題로 인하여 既存制度의 構造와 制度內 變化가불가피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本 硏究는 이러한 3個 公的年金制度中 대표적인 公務員年金의 급여조건, 급여수준 및 급여구조를 기초로 한 財政分析을 통해 장래의

財政的 危機가 어느 정도인가를 몇 가지 指標 를 통하여 추정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으로서 앞으로 시행될 國民年金의 給與構造를 도입하는 방향의 改善代案을 통해 장래의 재 정적 효과를 추정하려고 하였다. 財政分析의 方法은 1960년부터 시행된 公務員年金制度의 加入者를 6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1986년까지 의 年齡-報酬表(age-earning profile)를 작 성하고, 그간의 醵出料, 利殖率,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과 1987년 이후부터는 일 정한 假定을 도입하여 醵出과 給與의 전개상 황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賃金代替率, 相對的給與水準을 분석하 고, 醵出現價總額과 給與現價總額의 收益比와 損益分岐點 分析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전망을 시도하고 改善代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本稿의 構成은 第II章에서 분석방법과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을 기술하고 第III章에서는 분석결과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第IV章에서는 改善代案의 設定과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시해 보고, 第V章에서 向後의 政策方向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理論的 背景과 分析方法

1. 理論的 背景

가. 年金給與算式과 理論的 構造

本稿의 기본적인 분석원리는 現行 公務員年 金給與構造에 의해서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재 정안정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에 대비하여 國民年金給與構造의

여기에 대해서는 関載成,「社會保障의 政策課題와 財政의 役割」,『國家豫算과 政策目標』,韓國開發研究院,1987.9 참조.

給與算式
國民年金의
員年金 呉
> 公税
表

Ī		給與算式	備考
	退職年金 受給	退職年金=最終報酬年額 $(FW) \cdot (0.5+0.02 \cdot n)$	n=20年超過加入年數 但, n≤13
公	1	遺族年金=退職年金×0.5	最終報酬年額은 退職當時의 職級과 號俸에 따라 매년 引上됨.
築	退職年金一時金	$FW' \cdot n' \cdot \{1.5 + 0.001 \cdot (n' - 5)\}$	n'=加入年數 但, n'≤33
員 在	退職年金控除一時金	$FW/12 \cdot n'' \cdot (1.5 + 0.01 \cdot n'')$	FW . 당황報뻐月額으로 본 계산에서는 $FW/12$ 로 대체 $n^{\prime\prime}$. 總加入年數-年金請求期間
- 49	退職給與加算金	退職年金一時金×0.2	但, 年金請求期間≥20년, 여기서는 20년으로 가정 단, 5年 이상 가입자, 1984년 7월 25일 신설하였으나 本 分析 에서는 1980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現行 制度案 (1案)	老齡年金= $0.2(AW(j) + 0.75 \cdot AV(j)) \cdot (1 + 0.05 \cdot n) + AD(i)$	AW(j):最初年金受給年度 $(n'+1)$ 의 受給前年度 (n') 全加入者 平均報酬在額의 在金母於年度 (n) 의 調整額
		遺族年金=0.6×老齡年金	TAGI):加入者 個人의 全加入期間 平均報酬年額의 年金受給年度
			(j)의 調整額(AV의 算定에 있어서 과거 加入期間의 報酬評價는 倦恕리 F率 기주으로 하고, 年金공상용 AV의
穑			調整은 消費者物價上昇率로 slide)
1			ADG):年金受給年度의 家族手當的 性格의 加給年金
出			여기서는 國民年金法施行令에 제시된 1988년 6萬원을
#			기준으로 消費者物價上昇率로 조정함. 단, 遺族年金의
4			경우는 支給對象者가 없다고 가정함.
4	(Ⅱ案)	$(j) + AV'(j) \cdot (1 + 0.05 \cdot n)$	AW(j):年金受給前年度 $(j-1)$ 의 全加入者平均報酬年額.
		+AD(j)	AV'(j):過去加入期間의 報酬의 評價率은 消費者物價上昇率.
			AV의 평가는 過去加入期間의 醵出料率 水準에 따라
			비례적으로 재평가함, 즉, 公務員年金의 醵出에 의하
			면 11%를 기준으로 報酬×(醵出料率/11%)로 평가
			함. 年金受給後 $AV'(j)$ 의 조정은 消費者物價上昇率
	(III &)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ion 마시
	(米III)	る 腎 十 対 - 0.2・(A W (J) + A V (J))・(1+0.05・1)	る 卧 牛 並 = n. z. (A W (1) + A V ″ (1)) (1 + 0.02・N) │ A V ″ (1) ∶ A V ′ (1) 에 A 「醵出料率水準과 報酬의 評價号 非連繫 - 1 1 2 / N
		+ AD(j) 请陈年余=() 6×老齡年令	하는 경우
1			

構成原理를 응용하는 경우 재정안정 등의 효과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公務員年金과 國民年金의 給與構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表 1 참조),

公務員年金算式이 年金給與의 기초로서 最終報酬를 기준으로 급여하고 있는 반면 國民年金算式은 가입자 자신의 全職務生涯 동안의보수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하고 있다. 따라서 公務員年金은 退職時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을 한다는生活給에 기초하고 있어 保障水準은 높지만年金制度의 成熟期에 있어서 부담의 급격한상승 등 재정적 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國民年金算式은 均等部分(AW)과 報酬比例部分(AV)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양자 모두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다. 均等部分은 全加入者平均報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기능을 하게 된다. 報酬比例部分은 職務生涯平均報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입자의 전 가입기간 동안의 生產性을 반영할 수 있으며 또한 最終報酬基準에 비해 保障水準이 낮아진다. 그런데均等部分과 報酬比例部分의 기초가 되는 AW와 AV의 算定時 賃金上昇率과 物價上昇率 등 어떠한 指標를 쓰느냐에 따라 급여수준에 상당한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각 時點別, 즉 加入滿 了時點(退職時點), 最初受給時點(退職後 일정 기간 경과 후 수급하는 경우), 그 以後時點들 에 있어서 AW와 AV의 算定을 어떠한 指標 로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 기된다. 특히 國民年金算式 II案의 경우는 가입기간 중의 醵出料水準에 따라 급여수준이 연계되고 있어, 生產性뿐 아니라 負擔에 따른 給與報償의 성격까지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I案과 III案은 醵出料水準과는 관계없는 給與算式으로 제도초기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低醵出料拂入期間의 世代들과 高醵出料拂入期間의 世代間의 所得再分配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는 世代間 負擔의 衡平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장래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견지에서 부유한 後世代의 應能負擔이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AV의 算式方法에 있어서 I案처럼 最初受給年度 이후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따르는 것은 年金受給 以後時點에서 각 시점의 전체가입자의 生產性의 반영인 평균보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最初受給 직전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분만큼만 반영해 주자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II案과 III案의 年金受給 당시의 전가입자의 평균보수란 당시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므로, 生計水準保障을 강화하자는 입장으로서 I案에 비해소득재분배기능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볼수 있다.

AV의 算定에 있어서는 年金受給前의 過去報酬評價를 I案은 임금상승률에 의하는데 이는 過去報酬, 즉 과거 가입기간중의 生產性을 最初年金受給時點에서 그동안의 전체경제의生產性向上分을 모두 반영해 주는 입장이고, II案과 III案은 과거의 生產性은 과거에 그치고 그동안의 物價上昇分만을 반영시켜 구매력유지만 해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年金受給 이후의 AV의 引上率에 대해서는 세 가지案이 모두 같은 입장이다.

나. 損益시뮬레이션 分析

시뮬레이션 모델을 형성하는 방법(혹은 節次)으로서 여러 가지의 論議²⁾가 있지만, Emshoff, Sisson에 따르면³⁾ (1) 問題의 認知(2) 必要한 資料 및 情報의 分析(3) 下部體制(subsystems)의 모델形成(4) 下部體制모델을 시뮬레이션모델로 統合(5) 資料蒐集 및시뮬레이션 母數推定(6) 프로그램作成(7)시뮬레이션모델의 타당성 검토(8) 시뮬레이션 實驗設計(代案設定)(9) 시뮬레이션實行(10) 結果分析(11) 結果의 現實適用으로 편의상 구분하고 있지만,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아이디어 등의 表出에 의해 처음부터 혹은 중간과정에서「휘드백」(feed back)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本 硏究의 構成上 問題의 認知는 第1章에서 언급하였으며,目的函數(objective function)는 財政安定,더 구체적으로 후술하는 收益比 및 損益分歧點의

균형에 있다. 또한 本 硏究는 年金財政 전체 를 보는 것이 아닌 가입자 개인의 過去資料 (historical data)로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變數, 즉 退職者의 年金選好傾 向, 基金利殖率 등에 대한 예측은 결여되어 있다. 下部體制로서는 醵出過程과 年金給與過 程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과 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動態的 性質을 가지 는 동시에 어느 한 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靜態的 分析이기도 하다. 本 모델은 推定的 (stochastic) 變數보다는 決定的(deterministic) 變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母數 (parameters)推定이 필요없으며, 이에 따라 모델의 妥當性(validity)檢討도 중요하지 않 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시뮬레이션과 는 다르다4). 그리고 實驗設計로서는 割引現 價法(discounted present value method) 에 의한 費用一便益分析5)(cost-benefit analysis) 을 주로 사용하였다.

費用-便益分析에 있어서 現價를 산정하는 割引率(discounted rate of return)의 결정 및 여러 가지 概念上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⁶⁾.

다. 分析指標

- 1) 公務員年金의 경우 세 가지 受給形態, 즉 退職年金, 退職年金一時金, 退職年金控除一時 金에 의한 給與總額의 比較
- 2) 賃金代替率:年金最初受給時의 年金額의 最終報酬에 대한 比率
- 3) 相對的給與水準:年金最初受給時 年金額의 全加入者平均報酬에 대한 比率
- 4) 收益比: 給與現價總額의 醵出現價總額에

²⁾ Mize and Cox는 問題形成, 시뮬레이션 實驗 設計, 컴퓨터모델構成, 시뮬레이션 자료분석으로 나누고 있다(Mize and Cox, 1968, pp. 138~185 참조). 또한 Mihram은 體制分析, 體 制統合, 모델設定, 모델 妥當性 檢討, 모델分析 등으로 나누고 있다(Mihram, 1972, pp. 209~ 260 참조).

³⁾ Emshoff and Sisson(1970), pp. 49~59 참조.

⁴⁾ 經營·經濟學에서의 시뮬레이션의 의미 및 deterministic model에 대한 것은 Meier, Newell, Pazer(1969) 참조.

⁵⁾ 費用-便益分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즉 Cost-Effectiveness, Cost-Benefit, Cost-Feasibility 등 問題의 性質, 時間的 制約, 分 析의 專門性 등에 따라 각 유형의 선택이 결정 된다(Levin, 1983, pp.17~40 참조).

⁶⁾ 여기에 대한 참고로 기본적인 소개서는 Levin (1983), 費用一便益分析方法에 대한 것은 Irvin (1984), 本 論議와 관련한 保險的 側面에서는 Jones-Lee(1976) 참조.

케이스 Ι:9급 4호(24세)부	·터	5급 15호까지 승정	1
케이스 II : 9급 4호(24세)	"	4급 13호 "	•
케이스 III:7급 4호(26세)	"	4급 13호 "	
케이스 IV : 7급 4호(26세)	"	3급 12호 ″	
케이스 V:5급 4호(28세)	"	2급 11호 "	
케이스 VI:5급 4호(28세)	"	1급 10호 ″	

대한 比率

5) 損益分岐點: 給與現價總額과 醵出現價總 터 가입을 시작하여 停年으로 퇴직할 때까지 額을 동일하게 균형시키는 醵出料率 의 6가지 케이스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2. 分析方法 및 假定

1960년부터 실시된 공무원연금제도를 現行 3個公的年金制度의 대표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아 연금가입자 개인과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가입자가 給與條件充足時 받는 受給額을 기초로 상기 분석지표를 추정하는 데에 가입자의 6가지 케이스別로 시뮬레이션(simulation)하였다. 또한 1988년부터 시행되는 國民年金制度의 給與內容을 기초로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6가지 케이스別로 적용하였을 때의 분석도 아울러 비교·검토하였다.

1) 一般職國家公務員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가입을 시작하여 停年으로 퇴직할 때까지의 6가지 케이스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年齡一報酬表(age-earning profile)를 작성하였다(年齡報酬表는 附表 참조).

각 케이스別 年齡-報酬表의 작성은 1986년 一般職國家公務員의 俸給表를 기준으로 그동 안 변화한 公務員俸給引上率, 醵出料의 기초 가 되는 報酬範圍, 平均昇進所要年數 등을 고 려하였다".

- 2) 醵出料率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1960~68 년은 政府 2.3%, 本人 2.3%, 1969년은 政府 3.5%, 本人 3.5%, 1970년 이후 政府 5.5%, 本人 5.5%이다.
- 3) 經濟變數中 俸給引上率,物價上昇率,利 子率(公務員年金基金利殖率) 등은 1986년까 지의 時系列資料를 이용(附表 麥照)하였다. 醵出料現價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公務員年 金基金利殖率을 사용하였고,年金受給後 年金 給與現價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현행 1년만 기 정기예금이자율인 10%를 기초로 하고, 할 인율의 변화에 따른 분석도 시도하였다.

1986년 이후 俸給引上率은 6%, 基金利殖率은 12%, 物價上昇率은 2000년까지 4%, 2001~2020년까지 3.7%, 2021년 이후는 3.5% 로 가정하였다⁸.

^{7) 1960}년부터의 年齡報酬表에 의한 시뮬레이션에 의하지 않고, 經濟變數에 대한 假定에 의해 損益分析을 한 예는 延河清·閔載成, 『國民經濟의 福祉年金制度』, 韓國開發研究院 1982. 2, pp. 212~230 및 閔載成·崔秉浩, 『國民福祉年金의 財政收支推計 및 財政分析』, 1985. 7, 第6章 및 閔載成 外,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 濟社會波及效果』, 1986. 9, 第8章 참조.

⁸⁾ 물가상승률에 대한 가정은 國民年金制 실시를 위한 長期財政推計時 本院 巨視經濟팀에서 제 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것은 関載成 外,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波及 效果』, 韓國開發研究院, 1986. 9, 第5章의 年 金財政推計 및 分析 참조.

4) 年金給與의 受給時期는 가입만료후 즉시 수급하는 경우와 滿60세부터 수급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가입기간(20~35년) 만료후 즉시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20年加入滿 了時 平均餘命(平均受給期間)은 25년, 25年加 入滿了時 平均餘命은 21년, 30年加入滿了時 平均餘命은 17년, 35年加入滿了時 平均餘命은 13년으로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遺族年金 을 7년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滿60 세부터 수급하는 경우의 平均餘命은 13년으로 가정하고, 遺族年金을 7년간 수급하는 것으로 하였다⁹.

5) 구체적인 分析시뮬레이션의 方法(mechanism)은 〈附錄〉을 참조.

III. 分析結果의 解釋

1. 公務員年金의 受給形態別 現價比較

公務員年金의 세 가지 受給形態, 즉 退職年金, 退職年金一時金, 退職年金控除一時金에의한 給與總額을 비교하면(表 2 참조), 退職年金을 기준으로 他受給形態, 즉 退職年金一時金을 받는 경우는 20년 가입한 경우 32.3%에서 35년 가입한 경우 46.7%까지로 약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더욱 불이익을 보게 된다. 한편 退職年金控除一時金을 받는 경우는 20년 가입시 100%로 동일하고, 35년 가입한 경우는 74.3%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해진다. 그러나 退職年金控除一時金이 退職年金一時金보다는 유리하게나타났다. 즉 退職年金一時金現價/退職年金控除一時金現價此가 20년 가입의 경우 32.3%에서 35년 가입의 경우 62.9%로 나타났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20년 초과분에 대한 一時金受給 때문에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결국 연금을 수급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受給形態別 現價比較에서 수급후 將來給與의 現價計算에 사용된할인율은 현행 公金利인 10%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年金受給者마다 느끼는 할인율이 다를 것이고, 우리나라의 金利의 二重性 때문에 公金利와 私金利가 많은 격차를 지니고 있어,현실적으로 느끼는 할인율은 公金利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할인율에 따라 現價總額比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20%일 경우 退職年金一時金現價 對 退職年金現價比는 가입연수에 따라 64.6~80.4%로서 할인율 10%일 경우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되었고, 35년 가입시 80.4%로서 退職年金一時金이 退職年金現價에 근접하고 있다.

60세 受給時는 退職時受給의 경우에 비해 수급기간이 짧아지므로 退職年金現價가 작아 져서 退職年金一時金 對 退職年金比가 커졌 다. 특히 가입연수가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退 職年金現價가 작아지므로 退職年金一時金 對 退職年金比는 커진다. 그리고 60세 수급의 경 우 모든 가입자들이 가입연수에 관계없이 그

⁹⁾ 平均餘命의 算定은 財務部가 발표한 생명보험 협회의 簡易經驗生命表를 참조하였다. 그런데 平均餘命은 앞으로 계속 연장되는 趨勢에 있으 므로 이러한 人口統計的 動學을 고려하여야 좀 더 정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表 2〉。公務員年金給與의 受給形態別 現價比較

(단위: %)

		退	職年金一馬 退職年金		.)/	退職		一時金現價 :現價(B)	(C)/
加入	年數(年)	20	25	30	35	20	25	30	35
	割引率 10%	32,3	39,9	45.1	46.7	100.0	90.5	85.0	74.3
退職時	12%	38.7	46.8	51.7	53, 3	100.0	91.7	87.0	84.6
受給	16%	51.8	61.0	65.2	66.9	100.0	94.3	91.1	84.6
	20%	64.6	75.0	78.5	80.4	100.0	96.8	95.1	90.9
	割引率 10%	48.7	52.0	54.7	49.3	100.0	92.7	87.9	75.3
60세	12%	54.5	58.1	61.2	56, 2	100.0	93.8	89.9	78.9
受給	16%	66. 3	70.6	74.3	70.4	100.0	96.0	93.8	85.9
	20%	78.0	83, 0	87.1	84.5	100.0	98, 2	97.7	95, 5

註:退職年金一時金/退職年金控除一時金現價比는 (A/B)×(B/C)로서 算定함.

年金受給年數가 균등하게 되어 早期退職에 의한 급여상 형평에 어긋나는 이익을 취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연금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어 퇴직자들이 一時金보다 年金을 선호하게 될 때에 예상되는 財政赤字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한다.

2. 賃金代替率과 相對的 給與水準

여기서 賃金代替率은 最初受給時 年金額의 最終報酬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연금의 경우 어떤 케이스이거나 가입기간에 따른 차이만 있지 보수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는 所得比例型이다. 즉 20년 가입시50%, 25년 가입시 60%, 30년 가입시 70%, 33년 이상 76%이다. 그러나 國民年金算式 적용의 경우는 가입자의 전 가입기간 동안의 報酬의 動向과 가입기간에 따라 賃金代替率에 차이가 있으며 과거 가입기간의 보수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年金給與額이 달라지므로 賃金代替率에도 영향을 미친다(表 3 참조).

國民年金算式 適用의 賃金代替率은 전체적 으로 보아 공무원연금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35년 가입한 경우의 賃金代替率이 약 43%인 데, 이는 공무원연금 20년 가입시 50%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낮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무 원연금의 급여수준이 너무 높아 장래에 財政 的 不安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보수수준이 높아질수록 賃金代替 率은 낮아져 所得再分配效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비해 長期加入의 誘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 원연금의 경우 20年加入 對 35年加入은 50% 對 76%인 데 반해 國民年金의 경우 약 15% 對 40%로서 2배 이상이다. 또한 보수수준이 낮은 계층에서의 長期加入이 높은 계층에서의 長期加入보다 유리하다. 즉 20년 가입의 경우 와 35년 가입 경우의 賃金代替率의 격차가 케 이스 I, II의 경우 약 26%이나 케이스 V, VI의 경우 약 23%로서 보수수준이 낮은 경우 가 長期加入이 유리하다.

國民年金		賃金付	学			•	· · · · · · · · · · · · · · · · · · ·	相對的;	給與水準	<u> </u>		11 • 707
算式 (現行案) 適用時 ¹⁾		國民年	金算式)適用時			公務員名	F金算式			國民年(現行案)	金算式 適用時 ²)
加入年數(年)	20	25	30	35	20	25	30	35	20	25	30	35
케이스 I	15.6	32.0	35.5	42.9	106.7	79.2	100.0	111.1	39.0	42.5	49.8	59.2
케이스 II	15, 2	29.3	33.6	40.6	111.7	87.7	108.0	120.4	39.6	43.2	50.9	60.7
케이스 III	15.2	31.0	34.4	42.4	123.8	87.7	110.9	120.4	44.1	45.6	53.5	63.4
케이스 IV	15.2	28.7	34.7	38.9	123.8	95.0	110.9	132.9	44.1	45.8	53.9	64.2
케이스 V	14.8	26, 2	31.8	39.2	148.0	114.4	133, 5	145.0	51.1	50.4	59.5	70.5
케이스 VI	14.8	26.2	29.1	36.0	148.0	114.4	146.6	159.1	51.1	50.4	59.7	71.2
平均	15.1	28.9	33, 2	40.0	127.0	96.4	118.3	131.5	44.8	46.3	54.5	64.9

註:1) 🛮 案 適用時 평균은 각각 12.2, 30.1,34.2, 40.0, 🚻案 適用時 평균은 각각 13.4, 31.4, 35.3, 41.1

또한 과거 가입기간의 報酬評價를 物價上昇 率과 醵出料水準에 연계시킨 II案의 경우 I 案에 비해 20년 가입의 경우는 낮으나 그 외는 근소한 차이로 조금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 났다. 그리고 과거가입기간의 報酬評價를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하고 醵出料水準에 非連繫시켰을 때의 III案은 I 案에 비해 20년 가입의경우는 낮으나 전반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난다. 또한 III案은 II案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 났다¹⁰.

相對的 給與水準이란 最初受給時 年金額의 受給當時 全加入者平均報酬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全加入者平均報酬란 당시의 全體加入者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어느만큼의 연금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年金受給者가 어느정도의 생활보장을 받고 있느냐 하는 指標가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公務員年金算式을 적용하는 경우 대체로 相 對的 給與水準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현행

²⁾ II案 適用時 평균은 각각 36.2, 48.2, 56.1, 64.9(60세 受給時 평균은 30.6,41.9, 53.7, 65.0) III案 適用時 평균은 각각 39.7, 50.3, 58.1,66.8(60세 受給時 평균은 32.4, 43.7, 55.5, 66.9)

¹⁰⁾ 公務員年金施行 이후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앞질러 왔기 때문에(즉 1960년 1.0을 기준으로 1980년의 賃金指數는 30.14, 物價指數는 16.38이고, 1985년의 賃金指數는 39.0, 物價指數는 23.1이었음) 과거가입기간의 보수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임금상승률을 쓰는 것이 훨씬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20 년 가입시의 賃金代替率의 경우 I案이 II案, III案보다 높은 것은 20년간의 임금상승률이 물 가상승률을 앞질러 온 정도가 25~35년 加入時 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20년 가입의 賃金代替率이 25~35년 가입의 경우보 다 특히 낮은 것은 20년 가입시의 最終報酬水 準이 25~35년 가입시의 最終報酬水準보다 상 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즉 1980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 最終報酬水準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¹¹⁾ 이러한 指標의 分母가 되는 報酬는 稅金·保險 料 등을 포함한 소득이지만, 현행 가입자의 생 활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실제 얻는 可處分所得 이다. 年金制度의 成熟時 租稅·保險料負擔率은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이러한 상대적 급여수 준의 分母는 이를 감안한 可處分所得을 사용하 여야 보다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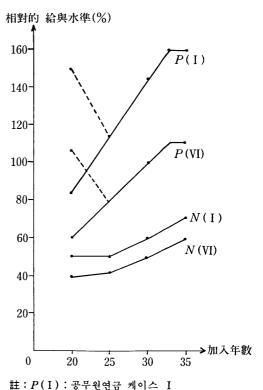
제도는 전 가입자의 平均的 生活水準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년 가입 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全加入者平均報酬의 動向과 가입자 개인의 報 酬의 動向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지 않는 데 에서 오는 것이다. 20년 가입의 경우 年金受 給後 5년째부터는 일정한 급여수준을 유지하 는데, 케이스 I~VI는 각각 60.2%, 63.0%, 69.9%, 69.9%, 83.5%, 83.5%이다. 그런데 相對的 給與水準이 평균 100% 수준이라고 가 정한다면, 앞으로 공무원연금이 成熟化段階에 들어서서 年金受給者/年金加入者比가 先進諸 國과 같이 30% 수준에 이를 때 賦課方式에 의한 醵出料率은 30%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의 醵出料分擔方式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은 보수의 15%가 될 것이어서 현재의 5.5% 에 비해 무려 9.5%를 추가적으로 부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現分析으로는 相對的 給與 水準이 평균 100%를 초과하고 있어 장래의 財政不安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國民年金算式을 적용하는 경우 現行案(I案)에 따르면 相對的 給與水準이 약 40~70% 사이로서 公務員年金算式 適用의 경우의 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案과 III案도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I案, III案이 20년 가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現行案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國民年金算式을 적용하는 경우相對的給與水準 평균이 약 50%라고 한다면,成熟段階(年金受給者/年金加入者比 30% 수준)의 賦課方式에 의한 醵出料率은 15%가 될것이고, 그 중 가입자본인의 負擔分은 7.5%로서 현행 5.5%에서 2%만 추가부담하면 된다는 해석이 된다. 그리고 制度가 완전히 成

熟(年金受給者/年金加入者比 30%, 平均加入 年數 35년, 相對的 給與水準 65% 수준)된다 면, 醵出料率은 19.5%가 될 것이고 본인부담 은 9.75%로서 현행보다 4.25%의 추가부담분 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負擔水準은 公務員 年金給與算式을 적용한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다.

[圖 1]은 相對的 給與水準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케이스 I과 VI의 격차가 공무원연금 의 경우가 國民年金算式 適用의 경우보다 가 입기간이 장기일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또한

〔圖 1〕 公的年金의 相對的 給與水準의 比較



표· P(I). 공무원연금 개이스 I
P(VI): 공무원연금 케이스 VI
N(I): 국민연금 I案 케이스 I 적용
N(VI): 국민연금 I案 케이스 VI 적용
* 公務員年金의 경우 20년 가입 경우의 비정상
적인 수치를 조정하였음.

케이스 I과 VI의 격차가 공무원연금의 경우가 더 크므로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게 나타난다.

3. 收益比 및 損益分岐點

收益比란 자신의 給與現價總額이 醵出現價總額의 몇 배를 받느냐를 나타내는 指標이다 (表 4 및 圖 2, 圖 3 참조). 公務員年金의收益比는 수급형태에 관계없이 거의 1을 초과하고 있어 자신의 醵出 이상으로 많은 급여를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退職年金受給時는 2배 이상이며, 短期加入일수록 收益比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계층에 따라 약간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소득 재분배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退職年金一時金 受給時는 35년 가입의 경우는 거의 1로 나타났고, 최고 약 3배까지 나타나 退職年金受給에 비해 훨씬 낮은 수익을 보이고 있다. 또한 短期加入일수록 收益比가 높아지지만 退職年金受給에 비해 그 격차가 작다.

따라서 退職年金一時金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장래에 퇴직자 수의 증가속도가 빨라지면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예상된다. 더구나 年金選擇者數가 制度의 成熟과 더불어 증가하게 되면 재정위기를 맞게 될 것

〈表 4〉 收益比

			公	務員退職	年金受給	诗	國	民年金算	二式(現行 (現行)	案)
	割引率	加入年數	20	25	30	35	20	25	30	35
	10%	케이스 I	8.7	4.1	3.0	2.3	2.9	1.7	1.2	0.9
		II	8.8	4.4	3, 0	2.3	2.8	1.7	1.1	0.8
		III	8.2	3,8	2,8	2.1	2.7	1.6	1.1	0.8
)	IV		4.1	2.7	2.3	2.7	1.5	1.1	0.8
退職時		V	7.8	4.0	2.7	2.0	2.5	1.4	0.9	0.7
受給		VI	7.8	4.0	2.9	2, 2	2.5	1.4	0.9	0.7
		平均1)	8.3	4.1	2.9	2.2	2.7	1.6	1.1	0.8
	割引	割引率 12%		3.5	2.5	1.9	2.2	1.3	0.9	0.7
		16%	5, 2	2.7	2.0	1.5	1.7	1.0	0.7	0.6
		20%		2, 2	1.6	1.3	1.3	0.8	0.6	0.5
	割	割引率 10%2)		1.8	1.9	2, 2	0.7	0.7	0.7	0.8
60세		12%	1.7	1.6	1.7	1.9	0.6	0.6	0.6	0.7
受給時		16%	1.4	1, 3	1.4	1.6	0.5	0.5	0.5	0.6
		20%	1.2	1, 1	1, 2	1, 3	0.4	0.4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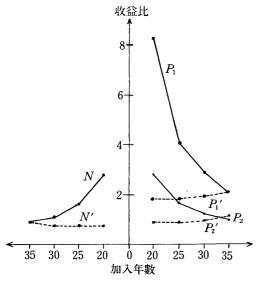
註:1) 退職年金一時金受給時는 加入年數別로 각각 2.7,1.6, 1.3, 1.0 退職年金控除一時金受給時는 加入年數別로 각각 8.3, 3.7, 2.4, 1.6 (단, 이 경우 20년加入分은 年金, 그 超過加入分은 一時金受給) 國民年金算式 II案 적용시는 加入年數別로 각각 3.3, 1.7, 1.2, 0.8 國民年金算式 III案 적용시는 加入年數別로 각각 3.5, 1.8, 1.2, 0.9

²⁾ 退職年金一時金 受給時는 加入年數別로 각각 0.9, 0.9, 1.0, 1.1임.

이다. 할인율이 20%인 경우에도 收益比가 모 든 경우에 1을 초과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 라의 금리체계가 앞으로 안정될 전망으로 있 어 公務員年金基金의 收益率도 예전처럼 높은 收益率을 올리기 어려우리라 예상되므로 앞으 로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國民年金給與算式 適用時의 收益比를 보면 現行案([案)에 의하면 0.7~2.9배로 나 타났는데 이는 공무원연금의 退職年金一時金 受給時 收益比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나타 났다. 또한 短期加入일수록 收益比가 커지고 소득계층별로 일정하게 소득재분배가 어느 정 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가입기간보수를 물 가상승률로 평가하고, 갹출료수준에 연계시킨 Ⅱ案의 경우 Ⅰ案에 비해 전반적으로 收益比

〔圖 2〕 收益比 比較



註:Pi: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시 P2: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시 P_{1}'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60세 수급시 P2':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60세 수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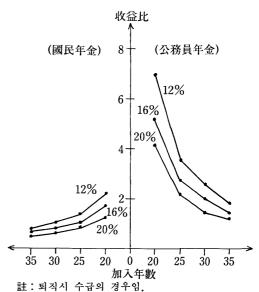
 N_1 :국민연금 산식 적용시(퇴직시 수급) N': 국민연금 산식 적용시(60세 수급)

가 높아졌는데, 가입연수가 短期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收益比가 더욱 높아졌다는 데 특징이 있다. 過去加入期間報酬를 물가상 숭률로 평가하고 非連繫시킨 Ⅲ案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II案보다 높아졌고, I案과 비교 하여 Ⅱ案의 특징과 같이 短期加入의 有利함 과 所得再分配效果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國民年金算式 適用時 制度가 成熟되어 평균 가입연수가 30년 정도 되면 收益比가 1.1이 되어 어느 정도 재정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 게 된다. 더구나 할인율이 높은 경우는 1 이 하로 떨어지게 되며, 年金基金利殖率이 10%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면 재정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60세 수급의 경우 割引率別 收益比의 각 케이스別 패턴은 퇴직시 수급의 경우와 비 슷하였고, 여기서는 그 평균치만 보면 퇴직시 수급에 비해 收益比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그

〔圖 3〕 割引率別 收益比 比較



러나 公務員退職年金의 경우 여전히 收益比가 최저 1.8로서 높고, 할인율이 20%인 경우에도 1.1~1.3으로서 年金受給年齡을 60세로 조정하더라도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데 退職年金一時金의 경우 평균 1 정도로서수지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 國民年金算式 I 案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율 10%의 경우 0.7~0.8 정도로서 收益比가 1 이하로 떨어져 재정안정을 이룰 수는 있으나 社會保障給付로 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公務員年金과 國民年金適用時의 收益比를 비교해 보면 公務員 退職年金의 收益比가 國 民年金適用時에 비해 2배 이상을 보여주며,

또한 양자 모두 短期加入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60세 수급시의 경우는 오히려 장기가입이 약간 유리하게 되어 있다. 割引率別로 보면 양자 모두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加入年數別 收益比의 격차가점점 커지고 있다.

損益分岐點이란 給與現價總額과 醵出現價總額을 동일하게 균형시키는 醵出料率이다. 즉어느만큼의 醵出料를 불입하여야 자신의 給與現價總額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表 5 및 圖 4,5 참조). 공무원연금의損益分岐點을 보면 退職年金受給時 약20~80%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 11%

〈表 5〉 損益分岐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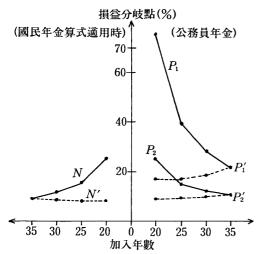
(단위: %)

			公	務員退職	年金受給)時	國	民年金算 適月	式(現行) 用時	案)
	割引率	加入年數	20	25	30	35	20	25	30	35
	10%	케이스 I	80.2	39.8	29. 2	22.7	26.6	16.8	11.6	8.6
		II	81.5	42.3	30.1	23.4	26.2	16.3	11.3	8.4
		III	74.6	36.4	26.9	20.6	24.2	14.8	10.4	7.7
		IV	74.6	39.0	26.6	22.4	24.2	14.8	10.3	7.7
退職時		V	70.4	37.6	25, 8	19.8	22.1	13.0	9.2	6.9
受給		VI	70.4	37.6	28.2	21.5	22.1	14.8	9.2	6.9
		平均1)	75.3	38.8	27.8	21.7	24.2	14.8	10.3	7.7
	割引	割引率 12%		33.1	24.2	19.1	17.0	1, 26	9.0	6.9
		16%	47.0	25.4	19.2	15.2	15.2	9.7	7.1	5,6
		20%		20.6	16.0	12.6	12.1	7.8	5.8	4.7
	割			17.5	18.4	21.9	6.5	6.4	6.8	7.6
60세		12%	15.6	15.6	16, 5	19, 2	5.7	5.6	6.1	6.7
受給時		16%	2,8	12.9	13, 6	15.3	4.7	4.6	4.9	5.5
		20%	10.9	10.9	11.6	12.7	3, 9	3.9	4.1	4.6

註:1) 退職年金一時金 受給時는 각각 24.3, 15.5, 12.5, 10.2 退職年金控除一時金 受給時는 각각 75.3, 35.1, 23.6, 16.2 國民年金算式 II案 適用時는 각각 30.0, 16.3, 11.6, 8.3 國民年金算式 III案 適用時는 각각 31.9, 16.9, 1.0, 8.5

²⁾ 退職年金一時金 受給時는 각각 8.5%, 9.1%, 10.1%, 10.8%임.

〔圖 4〕 公的年金의 損益分岐點 比較



註:P1:공무원퇴직연금 수급시

₽₂: 공무원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시

P':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60세 수급시

 P_{2}^{\prime}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60세 수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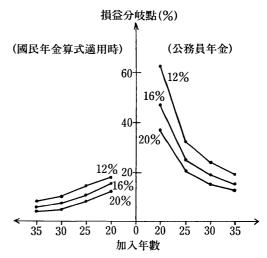
 $N_{
m l}$: 국민연금산식 적용시(퇴직시 수급)

N': 국민연금산식 적용시(60세 수급)

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장 래에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受給者가 많아진다 고 생각할 때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고 본다. 또한 短期加入일수록 損益分岐點은 높아지며, 所得階層別로 小幅의 所得再分配도 이루어지고 있다.

退職年金一時金 受給時는 35년 가입의 경우 11% 미만으로 약간 불리하게 보이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의 醵出料率이 制度施行時부터 11%가 아니라 1968년까지 4.6%, 1969년 7%, 1970년 이후 11%로서 損益分岐點 9.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 35년 가입 이외는 모두가 11% 이상이며 20년 가입의 경우는 23~26%로서 현행보다 거의 2배 이상의 醵出料率을 부담하여야급여총액과 비슷하게 된다.

〔圖 5〕 割引率別 損益分岐點의 比較



註:퇴직시 수급의 경우임.

이러한 분석결과를 收益比의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각 케이스別, 加入年數別로 그 구조가 비슷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損益分岐點이란 收益比를 다른 접근방법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동일한 사실을 서로 다른 접근법에의해 바라본 것뿐이다. 따라서 損益分岐點에 대한 분석은 收益比의 分析과 비슷한 구조에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할인율별로 損益分岐點을 보면 20%인 경우에도 損益分岐點이 최저 12.6%여서 현행의 醵出料水準 11%로서는 앞으로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우리라 예상된다. 더구나 장래의 금리체계는 전반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므로 年金基金利殖率은 점차적으로 저하될 것이다.

國民年金給與算式을 적용하였을 때의 損益 分岐點은 現行案의 경우 20년, 25년 가입의 경우와 30년 가입의 케이스 I, II의 경우는 11% 이상으로 현행 醵出料率보다 높으나 그

외는 모두 그 이하로서 현행 醵出料率下에서 는 불리하게 나타났다. 여기서도 短期加入일 수록 유리하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비교적 유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公務員 年金算式의 退職年金一時金 受給時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II案, III案의 경우 는 I 案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조적인 패턴은 【案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각 할인율별로 보면 할인율 20%下에서 가입 연수 25년 이상이면 損益分岐點이 4.7~7.8% 로서 모두 다 退職年金一時金을 선택하는 것 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현재의 公務員年金給與體制下에서도 연금보다 일시금 을 선호해 온 경향은 退職時의 목돈의 필요성 (자녀의 교육 및 결혼, 사업자금 등)과 더불 어 장래 年金給與의 現價割引率을 公金利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體感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최근 들어 공무원연금의 年金選好傾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12) 이러한 경향을 계속 가속화시켜 진정한 연금제도로서의 기반을 정 착시키고, 장기적으로 給與構造를 개선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兩面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60세 受給의 경우 公的年金의 割引率 別 損益分歧點은 할인율 10%인 경우 公務員 退職年金은 60세부터 受給하더라도 현행 醵出 料率 11%을 초과하며 현행보다 약 6.4~11%의 추가부담을 요한다. 그런데 할인율 20%인 경우는 20년, 25년 가입의 경우가 11% 미만이지만 양자 모두 收益比는 1.1로 나타났다. 현행 公金利水準을 약간 웃도는 할

인율 12%는 현재의 시점에서 현실성이 있으며 이 경우 損益分岐點은 15.6~19.2%로서 현행보다 4.6~7.2%를 추가부담하면 되고, 평균가입연수 30년 기준으로 5.5% 정도를 추가부담, 즉 정부에서 2.75%, 가입자가 2.75%를 각각 추가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國民 年金算式에 의해 60세 受給하는 경우는 損益 分岐點이 너무 낮게 나타나 所得保障的 給與로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公的年金의 損益分岐點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이 國民年金算式 適用에 비해 2배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입연수가 짧아짐에 따라 損益分岐點의 상승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양자 모두 가입연수가 길수록 퇴직시 수급의 경우는 損益分岐點이 하락하고, 60세 수급의 경우는 損益分岐點이 하락하고, 60세 수급시는 加入年數別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年金受給年數가 가입연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또한 35년 가입시는 退職時點과 60세 수급시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인율별로 보면 대체로 할인율이 높을수록 혹은 낮을수록 短期加入에 따른 손익분기점의 할인율간의 격차가 커진다.

IV. 改善代案 設定과 ユ 效果

1. 改善代案의 設定

가. 改善代案 I

기본적으로 현행 最終報酬基準으로 급여하고 있는 公的年金體系를 全加入期間 平均報酬

¹²⁾ 在職期間 20년 이상 公務員退職者의 年金選擇率은 1975년 2.1%, 1980년 14.7%, 1985년 30.5%로서 계속 높아지고 있음(公務員年金管理公團,『公務員年金統計』, 1986 참조).

(AV)基準으로 전환하는 것이다¹³. 여기에서 도 과거가입기간의 보수를 年金給與時點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즉 加入滿了時點, 最初給與時點, 最初給與以後時點 등 세 가지 시점에서 평가기준을 임금상승률에 따르느냐 혹은 물가 상승률에 따르느냐¹⁴⁾에 따라 年金給與額이 달라진다.

즉, 改善代案 I 의 基本給與算式은

 $AV \cdot (0.5+0.02 \cdot n)$

나. 改善代案 II

현행 最終報酬基準으로 급여하고 있는 公的

- 14) 賃金指數化(wage indexing)와 物價指數化 (price indexing)중 어느 것이 適正(equity)한지는 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치판단에 속한다. 賃金指數化는 동일한 소득분포를 지닌他退職그룹간의 급여수준을 동일화시키자는 相對所得(relative earnings) 개념에 입각하고 있고, 物價指數化는 物價指數로 다플레이트된 同一實質所得을 지닌 他退職그룹간의 급여수준을 동일화시키는 實質所得(real earnings)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Kaplan, 1977, pp. 32~33 참조).
- 15) 日本의 경우 현재 公務員, 私立學校教職員, 農林漁業團體職員 등에 대한 年金保險은 1986년부터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원칙적으로 國民年金의 基礎年金(우리나라의 均等部分에해당)의 수급자격을 충족시킨 경우에 給付하도록 되어 있으며, 年金給與의 구성은 國民年金의 基礎年金과 報酬比例年金으로 되어 있고 退職一時金은 폐지되었다. 또한 基礎年金의 수급개시는 원칙상 65세부터이다(日本 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1986, pp.182~185 참조).
- 16) 退職給與加算金을 제외하고, 遺族年金은 均等 部分의 60%, 報酬比例部分의 50%로 산정하였 다.
- 17) 改善代案에 대한 상세한 分析은 앞으로 발간될 報告書에서 다루기로 하고,여기서는 간략한 要 旨만 제시하기로 한다.

年金體系에 國民年金算式에서 채용하고 있는 均等部分을 적용하여, 均等部分과 報酬比例部 分 兩者로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均等部分 의 給與는 國民年金制度에서 급여를 받고, 나 머지 報酬比例部分은 현행 제도대로의 最終報 酬基準으로 각 公的年金制度의 自律에 맡기는 것이다¹⁵).

給與算式의 구성은 國民年金制度의 0.2・ $(AW + AV) \cdot (1 + 0.05 \cdot n)$ 에서 均等部分인 0.2・ $AW \cdot (1 + 0.05 \cdot n)$ 을 취하고, 현행 公的 年金制度의 0.5・ $FW \cdot (1 + 0.04 \cdot n)$ 의 係數 0.5에서 0.2를 차감한 0.3으로 조정하여 0.3・ $FW \cdot (1 + 0.04 \cdot n)$ 을 報酬比例部分으로 구성한다¹⁶.

즉 基本給與算式은

 $0.2 \cdot AW \cdot (1+0.05 \cdot n) + 0.3 \cdot FW \cdot (1+0.04 \cdot n)$

다. 改善代案 III

改善代案 II와 같이 均等部分과 報酬比例部 分으로 나누되,報酬比例部分을 全加入期間平 均報酬基準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基本給與算式은

 $0.2 \cdot AW \cdot (1 + 0.05 \cdot n) + 0.3 \cdot AV \cdot (1 + 0.04 \cdot n)$

2. 改善代案의 分析結果17)

改善代案의 分析結果의 要約은 〈表 6〉과 같으며, 각 改善代案別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을 기술하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행 公務員年金制度下의 賃金代替率 및 相對的 給與水準에 비해 그 수

¹³⁾ 改善代案에서는 退職給與加算金을 제의하였으며, 遺族年金은 退職年金의 50%로 산정하였다.

改善代案別 分析結果의 比較 く表 6>

	改善代	·善代案 I	改善件	改善代案 II	改善化	改善代案 III	現行 公務員年金制度	員年金制度
年金給與 構造式	$AV \cdot (0.5 + 0.02 \cdot n)$	$02 \cdot n)$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05 \cdot n) + (05 \cdot n) + (0.04 \cdot n)$	$0.2 \cdot AW \cdot (1+0.05 \cdot n) + 0.3 \cdot AV \cdot (1+0.05 \cdot n)$	$-0.05 \cdot n) + 0.05 \cdot n$	$FW \cdot (0.5 + 0.02 \cdot n)$	02·n)
任人比如宋11/0/	1-1	1-2	II—1	11-2	III—1	Ш—2	年金	一時金
貝玉八谷本"(%)	29~51	29~41	37~69	41~67	25~53	26~51	50~76	
相對的 給與水準 ¹¹ 60~88 (%)	88~09	56~72	95~118	85~115	64~91	88~29	96 (72) 21 ~ 132	
收益比	国3):1,2~4.6 0.8~3.6 60세 ⁴ :1,0~1,2 0.7~0.8	4.6 0.8~3.6 -1.2 0.7~0.8	国:1.5~5.8 1.4~7.3 60세:1.4~1.5 1.2~1.5	1,4~7.3	国:1,2~3,9 1,1~5,1 60세:1,0~1,2 0,9~1,0	$1.1 \sim 5.1$ $0.9 \sim 1.0$	2.2~8.3 1.0~2.7 (E.60M:1.8~22 0.9~1.1	1,0~2.7
損益分岐點(%)	퇴:11,5~41,5 8,2~32,9 60세:9,4~11,6 6.1~ 8.2	8.2~32.9 6.1~ 8.2	퇴:15.2~53 11.4~66.3 60세:13.4~15.2 11.1~13.6	11. 4~66. 3 11. 1~13. 6	国:11.5~35.1 10.9~46.4 60세:9.7~11.5 8.2~ 9.8	10.9~46.4 8.2~ 9.8	21.7~75.3 10.2~24.3 (E,604):17.4~21.9 8.5~10.8	$10.2 \sim 24.3$ 8.5 ~ 10.8
20/11/44 14 14/14 14 14/11/20	ı	1 7 7						

註:・ 4 數值는 加入年數別(20~35년)에 따른 분석결과치의 범위이며, 장매 給與의 現價割引率은 10%로 가정하였음. AVԵ 全加入者平均報酬, AVE 年金受給者의 全加入期間平均報酬, FW는 年金受給者의 最終報酬이고 n은 20년 超過加入年數일.

改善代案에서는 退職年金一時金의 20%에 상당하는 退職給與加算金을 제외하여 분석하였음.

Ⅰ-1:過去報酬評價率 및 年金引上率을 賃金上昇率로 구성하였음

1-2:物價上昇率로 구성하였음.

• II-1, III-1:過去報酬의 評價率 및 報酬比例部分의 年金引上率을 賃金上昇率로 구성하고, 均等部分의 年金引上率은 物價上昇率로 구성하였을 때의 분석 결과치임.

II-2, III-2:過去報酬의 評價率 및 報酬比例部分의 年金引上牽을 物價上昇率로 구성하고,均等部分의 年金引上奉은 賃金上昇奉로 구성하였을 때의 분석 결과치임. 退職時 受給의 경우의 결과치임.
 20년 加入時 127%로서 특정연도의 불규칙적 數値여서 60세 受給時의 數值 72%를 참고하였음.
 3) 退職時 受給의 경우임.
 4) 60세 受給의 경우인.

준이 많이 하락하였다. 즉 현행의 賃金代替率 $50 \sim 76\%$ 와 비교하면 改善代案 I-1의 경우 $29 \sim 50\%$ 로서 약 $20 \sim 26\%$ 가 감소되었다. 또한 相對的 給與水準도 약 40% 정도가 감소되었다.

相對的 給與水準의 전체평균이 75%라고 가정하면 연금제도 성숙시 年金受給者/年金加入者 30%下에서 賦課方式에 따른 醵出料率은 22.5%가 되어 현행의 11%보다 2 배가 되는 수준이다. 그런데 制度成熟時 退職時 受給의경우는 年金受給者/年金加入者比가 높아지고年金受給年數가 길어지는 반면에 평균가입연수는 짧아질 것이고, 60세 受給의 경우는 반대로 年金受給者/年金加入者比가 상대적으로낮아지고 年金受給有/年金加入者比가 상대적으로낮아지고 年金受給有/年金加入者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年金受給有/年金加入者比가 상대적으로

改善代案 I -1의 收益比 및 損益分歧點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收益比 2.2~8.3 및 損益分歧點 21.7~75.3%에 비해 약 반 정도 로 나타났다. 과거의 報酬評價 및 年金引上 을 물가상승률로 구성한 I -3의 경우 收益比 가 0.8~3.6으로 퇴직자의 平均勤續이 30년이 라면 1.3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된 면을 보이 고 있으며, 이때의 損益分歧點도 12.4%로서 현행보다 1.4%만 추가부담하면 된다. 60세 受給의 경우는 더욱 떨어져 과거 報酬評價 및 年金引上率을 賃金上昇率로 구성한 I-1에 따 르더라도 收益比 1.0~1.2, 損益分歧點 9.4 ~11.6%로서 현행 醵出料率 수준으로서도 안 정된 재정을 유지할수 있다고 볼 수 있다.

改善代案 II의 賃金代替率 및 相對的 給與 水準을 보면 賃金代替率이 저소득계층일수록 높아 所得再分配效果가 나타났다. 이는 II ~ 2가 全加入者 平均報酬部分(AW)의 引上率 은 높게 책정되었으나, 最終報酬部分(FW)의 評價 및 引上率이 물가상승률로 구성되어 전자를 상쇄할 만큼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급여수준은 改善代案 I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所得比例部分을 最終報酬로 구성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收益比 및 損益分岐點은 退職時受給의 경우 短期加入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I의 결과에 비하여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II-2가 II-1에 비해 20년 가입을 제외하고는 낮게 나타났 는데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報酬比例部分의 評價 및 引上率에 따른 것이다. 경우의 收益比 및 損益分岐點은 각 케이스別 로, 加入年數別로 큰 차이 없이 어느 정도 모 든 年金受惠階層에 있어서 형평을 유지하고 있었다. 퇴직시 受給에 비해 많이 낮아졌고, 改善代案 I의 60세 受給時보다는 收益比가 약 0.4 정도 높아졌고, 損益分岐點은 약 3% 높아졌다. 할인율 10%下에서 이 정도의 收益 比 및 損益分岐點 정도면 年金基金의 운용 여 하에 따라서 약간의 부담만 조정하면 재정안 정을 유지하기는 어느 정도 용이하리라 생각 된다. 현재의 公務員年金基金은 계속 누적되 고 있고 아직까지는 年金受惠者數가 많지 않 으므로 이러한 給與構造로 개편된다면 상당히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다.

改善代案 III의 賃金代替率 및 相對的 給與水準은 改善代案 II와 같이 소득재분배효과가나타나고 있으나 報酬比例部分이 全加入期間 平均報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改善代案 II에 비해 賃金代替率이 약 12~16% 정도 낮아 졌고, 相對的 給與水準도 약 27~30% 정도 낮아졌다¹⁸⁾.

改善代案 I-1의 賃金代替率 29~51%, 相對的 給與水準 60~88%와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III-2의 結果値는 III-1에 비해 20년 가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III-2의 報酬比例部分(AV)의 過去報酬評價率이 物價上昇率로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0년 가입의 경우III-2가 높은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물가상승률이 봉급인상률을 상회한 기간 때문이다.

改善代案 III의 退職時 受給의 收益比 및 損益分岐點은 改善代案 II와 같이 短期加入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또한 저소득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 소득재분배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年金給與算式 構造가 소득수준에관계없이 일정액을 급여하는 均等部分 때문에所得再分配效果가 발생하며, 早期退職일수록수급기간이 길어지므로 短期加入時의 收益比 및 損益分岐點이 높아졌다.

III의 結果値가 II에 비해 낮아진 것은 報酬 比例部分이 전가입기간 平均報酬(AV)로 구 성되었기 때문이다. 改善代案 I -1의 結果値 는 收益比 1.2~4.6, 損益分岐點 11.5~41. 5%로서 III-1의 1.2~3.9 및 11.5~35.1% 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I-2와 III-2가 비슷한 結果値를 보이고 있어 연금재 정 안정의 목적에서는 兩 改善代案이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결과는 얻 지만 소득계층별 연금가입자의 收益比가 다르 고, 年金受給者가 느끼는 制度改革에 대한 반 응이나 연금제도의 합리적인 구성상의 문제에서는 異見이 있을 수 있다. 생각컨대 社會保障的 性格의 연금제도에 있어서 소득재분배효과를 고려하고, 앞으로 公的職域年金의 國民年金과의 統合化의 길을 모색한다면 改善代案 III이 더욱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60세 受給으로 제한하는 경우 改善代案 II와 비슷하게 각 케이스별로, 가입연수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평균치만 보면 收益比가 평균 1을 나타내고 있어 收支均衡을 이루지만 수급자가 생각하는 할인율이 12% 이상인 경우 收益比가 너무 떨어지게 되어 所得保障制度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退職年金一時金의 收益比 1.0~2.7(退職給與加算金 제외한 경우 0.9~2.2)보다더 낮아져서 年金制度의 개혁에 큰 반발을 일으킬 것이고, 一時金選擇의 경향으로 환원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V. 結 論

1. 分析結果의 要約

(1) 우리나라의 社會保障年金制度는 1960년부터 도입되어 27년이 경과하고 있다. 현행의 3個 公的年金制度(公務員,軍人,私立學校年金)의 財政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公的年金制度중에서도 대표격인 公務員年金制度를 중심으로 1960년부터의 醵出 및 給與를 6가지 케이스別로 시뮬레이션

¹⁸⁾ 日本 厚生年金의 舊法에 의한 勤勞者의 標準年金은 現役勤勞世帶 所得의 68%(32년 가입)인데,新制度에의하면가입 40년의 경우 69%(舊制度下에서는 83%)로 개정(日本 健康保險組合聯合會(編),『社會保障年鑑』, 1987, pp.40~42 참조).

하여 賃金代替率,相對的 給與水準,收益比, 損益分岐點 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 (2) 먼저 公務員年金의 受給形態別, 즉 退職年金, 退職年金一時金, 退職年金控除一時金에 대한 現價分析을 통해, 장래 年金給與의現價割引率 10%下에서 退職年金이 退職年金一時金에 대해 2배 이상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또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퇴직연금의 現價가 떨어져 退職年金一時金에 근접하게 되나 할인율 20%下에서도 退職年金이 一時金의 1.25배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연금제도가 성숙될 때에 도래할 재정적인 위기에 대비하여 현재의 公務員年金給與構造가장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3) 年金給與構造의 改善을 위하여 受給資 格을 60세부터로 제한하는 경우와 國民年金給 與算式을 적용하는 경우로 각각 분석하였다. 賃金代替率을 분석한 결과 가입연수에 따라 현행 公務員年金은 50~76%인 반면에 國民年 金算式 적용의 경우는 15~40%로서 훨씬 낮 아지나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난 다. 또한 相對的 給與水準의 분석결과 현행 公務員年金은 약 70~130% 정도이나 國民年 金算式 적용의 경우는 약 45~65%로서 거의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 양자간의 급여 수준중 어느쪽이 적정한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더라도 너무 현격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 어 현재의 公務員年金 醵出料率로서 장래의 年金制度 成熟期에 대비하기는 매우 어려우리 라 전망된다.

收益比 및 損益分岐點 分析은 年金財政을

진단하는 같은 내용의 모양을 달리하는 두 가 지 접근방법으로서, 公務員年金의 收益比는 2.2~8.3. 損益分岐點은 약 22~75%로서 현 행 醵出料率 11%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따 라서 公務員年金制度에서 退職年金受給者가 많아지면 재정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將來年金의 現價割引率을 20%로 계상하더라 도 收益比는 1.3~4.1, 損益分岐點은 약 13~38%로서 年金受給者가 유리하게 되어 있 는데, 장래의 年金基金利殖率이 이러한 수준 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재 정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현행의 退職年金給與의 構造改善이 長期 的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退職年金一時金受給時의 收益比는 1.0 ~2.7, 損益分岐點은 10.2~24.3%로서 一時 金制度 중심으로 운영하더라도 장래에 퇴직자 들의 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여태까지 의 基金累積現象이 基金의 잠식으로 전환할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며, 給與制度의 改 編이 장기적 시각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현행의 公的年金制度를 개편하여 受 給開始를 60세부터로 제한한다고 할 때는 어 떻게 되는가를 보았더니, 退職年金의 收益比 는 1.8~2.2, 損益分岐點은 약 17~22%로서 여전히 현행의 부담수준으로써는 재정적 안정 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國民年金給與算式을 적용하는 경우의 收益 比는 0.8~2.7, 損益分岐點은 약8~24%로 나타나 가입연수별 변동폭이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크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의 長期服務 傾向이 일반화되면 연금재정안정에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또한 이 경우 60세 受給 資格條件을 부여하는 경우 收益比는 0.7~0.8, 損益分岐點은 6.4~7.6%으로서 재정안정 및 가입연수별로 큰 차이가 없어 형평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소득보장적 급부로서의 기능을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현행의 國民年金制度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인다. 따라서 國民年金算式 構造의 장점을 도입하되 현행 公務員年金給與 構造에서발생하는 收益率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접근이필요하다고 본다.

(4)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改善代案을 설정하였는데, 代案 I은 最終報酬 基準의 현행 給與構造를 全加入期間平均報酬 基準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代案 II 는 給與構造를 國民年金給與의 均等部分(全加入者平均報酬)과 현행 最終報酬基準의 報酬比例部分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代案 III은 代案 II에서報酬比例部分을 全加入期間平均報酬基準으로 대체하는 것이다(각 改善代案의 分析結果는表 6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각 改善代案의 결과치는 현행 公務員年金制度의 分析結果值보다 財政 安定 側面에서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改善代案別로 보면 I과 III의 分 析指標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兩案이 모두 재정안정면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 게 된다. 그러나 연금가입자의 각 케이스別(즉 소득계층별) 收益比 및 損益分岐點의 구조 가 다르고, 年金受給者가 느끼는 制度改革에 대한 반응이나 年金制度의 合理的인 構成上의 문제에서는 그 효과가 다를 것이다. 즉, 소득 재분배효과와 앞으로 公的職域年金의 國民年 金과의 統合化의 길을 추진하려 한다면 改善 代案 Ⅲ이 Ⅰ보다 궁극적으로 더 합리적이라 고 평가된다.

改善代案 II는 報酬比例部分이 最終報酬基準으로 설정된 때문에 改善代案 III과 구조는 비슷하나 각 分析指標는 재정안정면에서 III보다 약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보다는 재정면에서, 그리고 소득재분배효과등 給與構造面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2. 政策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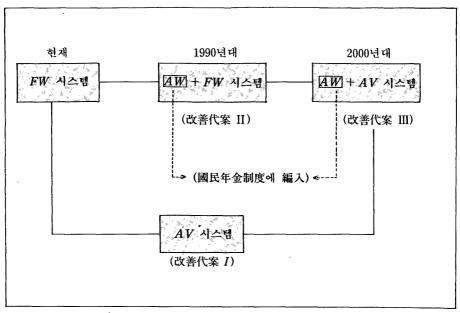
改善代案에 따른 분석결과를 기초로 이 중 어느 하나의 代案을 선택하여 給與構造改善의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狀 況變化를 예측해 가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유 도하는 政策方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장기적인 政策方向으로서 [圖 6]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즉 現行制度에서 均等部分(AW)과 報酬比例部分(最終報酬基準: FW)으로 구성된 改善代案 II 로 먼저 개선을 시도한다. 이때 均等部分은 국민연금제도에 편입하고 報酬比例部分은 공적연금제도의 자율에 맡겨 현행 最終報酬基準대로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醵出料負擔은 國民年金 醵出料率의 1/2을 國民年金에서 醵出하고 그 나머지는 각 職域의 自律에 맡긴다. 이러한 改善代案이 정착되고 난뒤 均等部分과 全加入期間平均報酬의 報酬比例部分으로 구성하는 改善代案 III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이 이외에 다른 정책방향으로서는 먼저 最終報酬基準을 全加入期間平均報酬로 전환하는 改善代案 I의 과정을 거친 후 改善代案 III으

〔圖 6〕 公的年金給與構造改善의 漸進的 政策方向



註:FW:最終報酬基準

AW:全體加入者平均報酬

AV:年金受給者의 全加入期間 平均報酬

로 가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방향이 더 합리적인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분석결과로서는 전자의 방향이 여러 分析指標上의 급격한 저하를 완만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國民年金制度에의 일부 편입을 실행하는 데 장해요인이 많다면 후자의 방향이 더 순조로울 수도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財政豫測을 실시

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財政指標上의 변화는 人口統計的 指標, 즉 退職者增加의 加速, 年金選擇者比率 의 增加(年金受給者/年金加入者比 上昇)가 예상되고, 장기근속의 일반화로 平均加入年數 의 연장, 年金基金利殖率의 長期的 低下趨勢 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 이들 변수들의 推定 을 통한 財政推計에 의해서 좀더 動態的 視覺 으로 公的年金財政을 진단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參考文獻◁

- 經濟企劃院,『主要經濟指標』,各年度.
- 公務員年金管理公團,『公務員年金統計』(內部 資料), 1986.
- 總務處,『總務處年報』,各年度。
- _____,『公務員統計』,各年度.
- 財務部,『簡易經驗生命表』,1986.
- 延河淸·閔載成,『國民經濟斗 福祉年金制度』, 韓國開發研究院, 1982. 2.
- 関載成·崔秉浩,『國民福祉年金의 財政收支推 計 및 財政分析』,韓國開發研究院,1985,
- 閔載成 外,『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 社會波及效果』,韓國開發研究院,1986.
- 延河清·李啓植(編),『國家豫算과 政策目標』, 韓國開發研究院, 1987. 9.
- 日本 社會保險研究所,『目でみる年金』, 1987.
- 日本 健康保險組合連合會(編),『社會保障年鑑』, 1987.
- 日本 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1986.
- Emshoff James R. and Roger L. Sisson, Design and Use of Computer Simulation

- Models, The Macmillan Co., 1970.
- Irvin, George, Modern Cost-Benefit Methods
 -An Introduction to Financial, Economic and Social Appraisal of Development Projects, The Macmillan Press Ltd., 1984.
- Jones-Lee, M.W., The Value of Life-An Economic Analysis, 1976.
- Kaplan, Robert S., *Indexing Social Security*,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77.
- Levin, Henry M., *Cost-Effectiveness-A Primer*, Sage Publications, Inc., 1983.
- Meier, Robert C. Newell William T., and Pazer, Harold L., Simulation in Business and Economics, Prentice-Hall Inc., 1969.
- Mihram, G. Arthur, Simulation-Statistical Foundations and Methodology, Academic Press, 1972,
- Mize, Joe H. and J. Grady Cox, Essentials of Simulation, Prentice-Hall Inc., 1968.

□ 3 附 錄 Σ

시뮬레이션에 의한 醵出 및 給與現價의 算定方法

1. 公務員年金

●醵出現價總額

1) 加入滿了後 受給時

$$CON(j) = WG(j) \cdot RC(j) \cdot \prod_{k=j+1}^{n'+1} (1 + RI(k))$$

$$COT = \sum_{j=1}^{n'-1} CON(j) + WG(n') \cdot RC(n') \cdot (1 + RI(n'+1))$$

$$CW(j) = WG(j) \cdot \prod_{k=j+1}^{n'+1} (1 + RI(k))$$

$$CWT = \sum_{j=1}^{n'-1} CW(j) + WG(n') \cdot (1 + RI(n'+1))$$

$$(n'+1)$$

WG(i): i년도의 報酬

RC(j) : j년도의 醵出料率

n':年金加入滿了年度(亭은 年金加入年 數)

CON(j):加入期間中 j年度의 醵出料現價(現價算定의 基準時點은 年金受給時點, 즉 n'+1)

RI:加入期間中 k年度의 割引率(여기서 는 基金利殖率을 사용함)

COT:加入期間中 醵出料現價總額

CW(j):加入期間中j年度의 報酬現價

CWT:加入期間中 報酬現價總額

但, n'>33일 때, 즉 33年을 超過加入하고

35년 근속(m=35)한 후에 退職하여 受給할때

$$COT = \sum_{j=1}^{33} WG(j) \cdot RC(j) \cdot \prod_{k=j+1}^{m+1} (1 + RI(k))$$

$$CWT = \sum_{j=1}^{33} WG(j) \cdot \prod_{k=j+1}^{m+1} (1 + RI(k))$$

g:60歲 受給時 最初受給時點

2) 60歲 受給時

$$CON(j) = WG(j) \cdot RC(j) \cdot \prod_{k=j+1}^{g} (1 + RI(k))$$

$$COT = \prod_{j=1}^{n} CON(j)$$

$$CW(j) = WG(j) \cdot \prod_{k=j+1}^{g} (1 + RI(k))$$

$$CWT(j) = \sum_{j=1}^{n'} CW(j)$$

年金給與現價總額

가. 退職年金을 受給하는 경우

$$WI(j) = WI(1) \cdot \prod_{k=1}^{j} (1+W(k))$$

(但, $WI(1) = 1.0$, $W(1) = 0$)
 $CPI(j) = CPI(1) \cdot \prod_{k=1}^{j} (1+P(k))$
(但, $CPI(1) = 1.0$, $P(1) = 0$)

WI(j) : j 년도 俸給指數

W(k): 俸給引上率

CPI(j): j 년도 消費者物價指數

P(k): 消費者物價上昇率

1) 加入滿了後 受給時

$$PEN(j) = FW \cdot WI(j) / WI(n') \cdot (0.5 + 0.02 \cdot n) / (1 + RD)^{j - (n' + 1)}$$

$$(\text{$($\pm, n \le 13)$})$$

$$SPEN(j) = PEN(j) \cdot 0.5$$

$$APEN = FW / 12 \cdot n' \cdot (1.5 + 0.01 \cdot (n' -5)) \cdot 0.2 \quad (\text{$($\pm, n' \le 33)$})$$

$$TPEN1 = \sum_{j=n'+1}^{T} PEN(j) + \sum_{j=T+1}^{T+7} SPEN(j) + APEN$$

RD:將來給與의 現價割引率

PEN (j): 年金受給年度 j의 年金給與 現價

SPEN(j): 年金受給年度 j의 遺族年金 給與現價

APEN:退職給與加算金(일시불)

T: n'+ 平均餘命(平均受給年數) (但,60歲 受給時는 g+平均餘命 -1)

TPEN1:年金給與現價總額

2) 60歳 受給時

$$PEN(j) = FW \cdot WI(j) / WI(n') \cdot (0.5 + 0.02 \cdot n) / (1 + RD)^{j-g}$$

$$(\{ \underline{\mathbb{H}}, n \leq 13 \})$$

$$SPEN(j) = PEN(j) \cdot 0.5$$

$$APEN = FW / 12 \cdot WI(g) / WI(n') \cdot n' \cdot (1.5 + 0.01 \cdot (n' - 5)) \cdot 0.2$$

$$(\{ \underline{\mathbb{H}}, n' \leq 33 \})$$

$$TPEN1 = \sum_{i=g}^{T} PEN(j) + \sum_{i=T+1}^{T+7} PEN(i) + PEN(i$$

SPEN(j) + APEN

나. 退職年金一時金을 受給하는 경우

$$LPEN = FW/12 \cdot n' \cdot (1.5 + 0.01 \cdot (n' - 5))$$
 (但, $n' \le 33$)

 $TPEN2 = LPEN + APEN$
 $LPEN$: 退職年金一時金
但, 60 歲 受給時 $LPEN = FW/12 \cdot WI$
 $(g)/WI(n') \cdot n' \cdot (1.5 + 0.01 \cdot (n' - 5))$

다. 退職年金控除一時金을 受給하는 경우

假定: 20年加入分에 대해서는 年金을 受給하고, 20年超過加入分에 대해서는 一時金을 受給

1) 加入滿了後 受給時

$$HPEN = FW/12 \cdot (n'-20) \cdot (1.5 + 0.01 \cdot (n'-20))$$
 $(但, n' \le 33)$
 $PEN'(j) = FW \cdot WI(j) / WI(n') \cdot 0.5 / (1 + RD)^{(j-n-1)}$
 $SPEN'(j) = PEN'(j) \cdot 0.5$
 $TPEN3 = \sum_{j=n'+1}^{T} PEN'(j) + \sum_{j=T+1}^{T+7} SPEN'(j) + HPEN + APEN$
 $HPEN : 退職年金控除一時金$
 $PEN'(j) : 一時金控除後의 年金$
 $SPEN'(j) : 遺族年金$

2) 60歲 受給時

$$HPEN = FW / 12 \cdot WI(g) / WI(n') \cdot$$
 $(n'-20) \cdot (1.5+0.01 \cdot (n'-20))$
(但, $n' \le 33$)
 $PEN'(j) = FW \cdot WI(j) / WI(n') \cdot 0.5 / (1+RD)^{j-g}$

$$SPEN'(j) = PEN'(j) \cdot 0.5$$

 $TPEN3 = \sum_{j=g}^{T} PEN'(j) + \sum_{j=T+1}^{T+7} SPEN'(j) + HPEN + APEN$

2. 國民年金算式適用의 경우

● 醵出現價總額

國民年金의 경우는 加入期間(n')에 제한이 없고, 다만 年齡에 있어서 60歲미만까지 醵出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公務員年金의 例에 일단 따르기로 함.

● 給與現價總額

1) 加入滿了後 受給時

$$AW(j) = AW(n') \cdot CPI(j) / CPI(n')$$

$$AV = \sum_{j=1}^{n'} WG(j) \cdot (WI(n') / WI(j)) / n'$$

$$AV(j) = AV \cdot CPI(j) / CPI(n')$$

2) 60歲 受給時

$$AW(j) = AW(g-1) \cdot CPI(j)/CPI(g)$$
$$AV = \sum_{j=1}^{n'} WG(j) \cdot (WI(g)/WI(j))/n'$$

 $AV(i) = AV \cdot CPI(i) / CPI(g)$

AW(j):年金受給年度(j)의 全加入者 平均報酬年額의 調整値

n':年金加入滿了年度

g:60歲 受給時 最初受給時點

AV:年金加入期間 平均報酬年額

AV(j):AV의 年金受給後 調整値

$$PENN(j) = \begin{bmatrix} 0.2 \cdot (AW(j) + 0.75 \cdot AV \\ (j)) \cdot (1+0.05 \cdot n) + AD \\ (j) \end{bmatrix} / (1+RD)^{j-n-1}$$

$$SPENN(j) = 0.6 \cdot PENN(j)$$

$$TPENN(j) = \sum_{j=n'+1}^{T} PENN(j) + \sum_{j=T+1}^{T+7} SPENN(j)$$

$$SPENN(j)$$

但,60歳 受給時

$$TPENN(j) = \sum_{j=g}^{T} PENN(j) + \sum_{j=T+1}^{T+7} SPENN(j)$$

앞서 給與算式에서 제시한 다른 두 가지 代 案에 의하는 경우의 給與現價總額計算은 생 략.

〈附表〉 公務員의 各 케이스別 年齢報酬表 및 關聯指標

(단위: 千원)

		,			,								(단위	: 千원)
	年齢		케이스	I	ļ 	케이스	: II	年齡		케이스	· III		케이스	- IV
	, rap	직급	및 호봉	月報酬	직급	및 호봉	月報酬	1 49.6	직급	및 호봉	月報酬	직급	및 호봉	月報酬
1960	24	9급	4호.	4	9급	4ই	4	26	7급	4호	5	7급	4호	5
1961	25	"	5	5	"	5	5	27	"	5	6	"	5	6
1962	26	. "	6	5	"	6	5	28	"	6	7	"	6	7
1963	27	"	7	6	"	7	6	29	"	7	8	"	. 7	8
1964	28	8급	6호	8	8급	6호	8	30	"	8	11	"	8	11
1965	29	"	7	10	"	7	10	31	6급	7호	14	6급	7호	14
1966	30	"	8	13	"	8	13	32	"	8	17	"	8	17
1967	31	"	9	16	"	9	16	33	"	9	22	"	9	22
1968	32	"	10	24	"	10	24	34	"	10	31	"	10	31
1969	33	7급	9호	31	7급	9호	31	35	"	11	39	"	11	39
1970	34	"	10	39	"	10	39	36	"	12	49	"	12	49
1971	35	"	11	47	"	11	47	37	"	13	58	"	13	58
1972	36	"	12	57	"	12	57	38	"	14	69	"	14	69
1973	37	"	13	58	"	13	58	39	"	15	71	"	15	71
1974	38	"	14	72	6급	12호	77	40	5급	12호	91	5급	12호	91
1975	39	"	15	111	"	13	120	41	"	13	141	. #	13	141
1976	40	6급	12호	179	"	14	191	42	"	14	223	"	14	223
1977	41	"	13	245	"	15	260	43	"	15	301	"	15	301
1978	42	"	14	303	"	16	319	44	"	"	362	"	"	362
1979	43	"	15	385	"	17	403	45	,	"	447	"	"	447
1980	44	"	16	454	"	"	464	46	"	"	515	"	"	515
1981	45	"	17	511	5급	13ই	540	47	"	"	566	"	"	566
1982	46	"	"	557	"	14	602	48	"	"	617	4급	12호	651
1983	47	"	"	590	"	15	654	49	"	"	- 654	"	13	708
1984	48	"	"	590	"	"	654	50	"	"	654	"	"	708
1985	49	"	"	601	"	"	666	51	"	"	666	"	"	721
1986	50	"	"	636	"	"	705	52	4급	12호	744	"	"	764
1987	51	"	"	674	"	"	747	53	"	13	809	"	"	809
1988	52	5급	13호	755	"	"	792	54	"	"	858	"	"	858
1989	53	"	14	820	4급	12호	886	55	"	"	909	"	"	909
1990	54	"	15	890	"	13	964	56	"	"	964	3급	11호	1036
1991	55	"	"	943	"	"	1022	57	"	"	1022	"	12	1128
1992	56	"	"	1000	"	"	1083	58	"	"	1083	"	"	1196
1993	57	"	"	1060	"	"	1148	59	"	"	1148	"	"	1268
1994	58	"	"	1124	"	"	1217	60	"	"	1217	"	"	1344
1995	59	"	"	1191	"	"	1290	61	"	"	1290	"	"	1424
1996	60	"	"	1263	"	"	1367	62	"	"	1367	"	"	1510
			i											

資料:總務處,『總務處年報』 및『公務員統計』,各年度. 公務員年金管理公園,『公務員年金統計』(내부자료), 1968. 經濟企劃院,『主要經濟指標』,各年度.

〈附表〉의 계속

(단위 : 千원)

	<u> </u>		케이스	V		케이스	VI	全加入者	俸給引上率	消費者物價	基金利殖率
	年齡	 -	및 호봉	月報酬	직급	및 호봉	月報酬	平均月報酬	(%)	上昇率(%)	(%)
1960	28	5급	4호	7	5급	4호	7		0.0	0.0	0.0
1961	29	"	5	8	"	5	8		13.0	8. 2	15, 2
1962	30	"	6	9	"	6	9		7.0	6.5	11.0
1963	31	"	7	11	"	7	11		14.0	20.7	10.4
1964	32	"	8	15	"	8	15		20.0	29.5	10.6
1965	33	"	9	18	"	9	18		18.0	13.6	10.5
1966	34	"	10	22	"	10	22		17.0	11, 2	11.0
1967	35	"	11	28	"	11	28		20.0	10.9	11.0
1968	36	4급	10호	43	4급	10호	43		39.0	10.8	9.7
1969	37	"	11	53	"	11	53		20.0	12, 3	14,6
1970	38	"	12	66	"	12	66	22	20.0	15.9	47.6
1971	39	"	13	78	"	13	78	25	15.0	13.5	14.3
1972	40	"	"	89	"	"	89	29	15.0	11.7	16.1
1973	41	"	"	89	"	"	89	32	0.0	3, 1	12.6
1974	42	"	"	107	"	"	107	38	10.0	24.3	16.2
1975	43	3급	11호	172	3급	11호	172	43	30.0	25, 3	21.3
1976	44	"	12	273	"	12	273	68	45.0	15, 3	18.7
1977	45	"	"	360	"	"	360	90	32.0	10.1	20.2
1978	46	"	"	432	"	"	432	113	20.0	14.4	23.9
1979	47	"	"	534	"	"	534	131	15.0	18.3	25, 5
1980	48	"	"	615	"	"	615	199	10.0	28.7	26.9
1981	49	"	"	677	"	"	677	242	10.0	21.3	23.9
1982	50	2급	10호	782	2급	10호	782	293	9.0	7.2	20.8
1983	51	"	11	853	"	"	853	483	6.0	3.4	24.1
1984	52	"	"	853	"	"	853	474	0.0	2.3	12.8
1985	53	"	"	868	"	"	868	455	1.8	2,5	12.0
1986	54	"	"	920	"	"	920	482	5.9	3.7	12.0
1987	55	"	"	975	"	"	975	511	6.0	3.7	12.0
1988	56	"	"	1033	1급	9호	1102	542	6.0	3.7	12.0
1989	57	"	"	1095	"	.10	1202	574	6.0	3, 7	12.0
1990	58	"	"	1161	"	"	1274	609	6.0	3.7	12.0
1991	59	"	"	1230	"	"	1351	645	6.0	3.7	12.0
1992	60	"	"	1304	"	"	1432	684	6.0	3.7	12.0
1993	61	"	"	1383	"	"	1518	725	6.0	3.7	12.0
1994	62	"	"	1466	"	"	1609	768	6.0	3, 7	12.0
1995	63	"	"	1553	"	"	1706	815	6.0	3.7	12.0
1996	64	"	"	1647	"	"	1808	863	6.0	3, 7	12.0

北韓의 經濟開放化政策 分析

延 河 清 金 炯 元

本稿에서는 최근 北韓의 對西方 合營努力 및 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開放化政策의 現況과 그 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北韓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中共과 같이 實用主義로서의 修正이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이 철코 아니고 硬直된 北韓經濟의 構造的 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官僚的 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北韓의 경우 經濟開放의 先行要件인 私的所有制度의 部分的 許容과 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西方과의 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단된다. 또한 北韓의 產業은對外競爭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比較優位에 의한 國際的 專門化를 이룬 경험이 없고 外貨不足,技術落後,社會間接資本 未備 등 제반 制約要因으로 北韓의 貿易增大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I. 序 論

中央統制的이고 閉鎖的인 經濟體制를 고수해 왔던 北韓은 1984년부터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中共, 蘇聯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 대부분이 經濟活性化를 위한 經濟開放 및 經濟改革을 추진하는 것과 그 맥락을

筆者:延河淸一本院 先任研究委員 金炯元一本院 研究員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北韓의 이러한 動向의 대표적인 예로는 合營法制定 및 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開放化政策, 住民生活水準의 向上을 도모하기 위한 輕工業 및 서비스部門 育成政策, 企業의獨立採算制導入 등 經濟管理體制의 合理化政策, 그리고 科學技術發展政策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合營法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債務問題로 인한 對外信用失墜 및 北韓商品의 對外競爭力 缺如 등으로 貿易擴 大, 특히 對西方 貿易擴大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어 北韓의 開放化政策은 답보상태에 있 다고 할 수 있고 消費財產業보다는 여전히 重 化學工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당분간 住 民生活水準이 크게 향상되리라고는 볼 수 없 으며, 獨立採算制導入도 여전히 中央統制의 색채가 강해 指令型計劃經濟에서 指標型計劃 經濟로의 移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經濟管 理體制의 合理化는 단지 형식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對西方資本 및 技術導入先이 차 단된 상태에서 科學技術의 획기적 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1986년 10월 에 단행된 政務院組織 및 經濟팀 交替에서 경 제개혁이나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北韓經濟의 發展展望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최근 北韓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 나 정도에 있어서 종래의 經濟體制 및 經濟路線의 기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기존의「틀」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諸對策을 緩和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本稿에서는 최근 北韓의 새로운 움직임 중에서 對外開放化政策에 촛점을 맞추어 먼저 合營法의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하고, 對西方貿易을 중심으로 北韓의 전반적인 貿易의 推移 및 現況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北韓의對外經濟協力推移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合營法의 現況과 問題

北韓은 1984년 9월 8일 最高人民會議 常設

會議 명의로 외국인의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26개 조항의 '合作會社運營法'(일명 合營 法)을 공포하였다. 合營法이 발표된 1984년의 北韓經濟는 第2次7個年計劃(1978~84)의 최종 년도 임에도 불구하고 工業 및 農業部門 모두 어떠한 實績發表도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 해 있었고, 資本・技術導入先도 사실상 폐쇄되 어 있었기 때문에, 北韓이 이같은 절박한 상 황을 타개하기 위해 合營法을 발표하여 償還 負擔이 없는 외국의 합작투자를 유치, 技術 및 資本導入을 시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이었을 것이다. 北韓은 1984년 1월에 개최된 最高人民會議에서 對外經濟協力對象으로 社會 主義國家 및 第3世界 외에 우호적인 서방국가 들을 거론하여 北韓社會의 閉鎖狀況을 어떻게 든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그 후 黨幹部, 中央 및 地方官僚들을 中共 對外開放化政策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深圳經濟特區 를 방문케 하는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1984년 9월 合營法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의 對外經濟政策의 方向轉換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合營法制定의 背景은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北韓經濟體制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 즉 閉鎖經濟體制에 따른 資本·技術不足과 對外貿易의 不振, 군사력 위주의 重工業優先政策에 따른 資源配分의 歪曲, 經營管理의非能率과 硬直性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경제전반에 걸친 새로운轉機를 마련해야 할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둘째, 1975년 이후 外債償還延期事態에 직면한 北韓은 西方으로부터의 借款導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第2次 7個年計劃期間(1978~84)중에는 自力更生의 原則

¹⁾ 小村武樹(1987), pp. 26~27 참조.

²⁾ 河合弘子(1985), pp. 20~21 참조.

을 기본으로 불충분한 中·蘇의 對北韓 經濟協力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北韓은 필요한 外貨調達을 위해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의 합작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세째, 北韓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³, 1979년 8월 中外合資企業法을 제정하여, 自由貿易地帶인 經濟特區를 설치하는 등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에 어느 정도 市場經濟原理를 導入, 對外開放政策을 시행함으로써 최근 높은경제성장을 이룩한 中共의 영향이 컸던 것을 北韓이 合營法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들 수 있다.

北韓의 合營法은 合營의 對象, 部門, 出資 比率 등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平等과 互惠의 原則을 내세우고 있는데, 總 5章 26條 로 구성되어 있는 合營法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4). 첫째, 基本事項과 合營對象 및 範圍의 규정으로서 合營對象은 外國의 會社, 企業體 및 個人으로 하고 있는데, 民間企業體나 個人 業體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 北韓이 法人體와 自然人을 合作對象으로 한 것이 특징으로, 合 作會社 設立時 私企業 經營經驗이 전혀 없는 北韓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 나갈 것인가가 주목된다. 또한 外資導入先으로는 在日同胞를 최대의 資金供給先으로 하여 日本을 포함한 西歐諸國, 각지의 해외교포의 경우까지 염두 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合營會社 의 組織과 出資對象 및 範圍에 대한 규정으로 서 出資範圍를 現金, 現物, 發明權, 技術 등 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세째, 經營活動, 理事會構成 및 外國人從業員問題에 대한 규정 으로서 合作會社 形態는 資本主義 民間企業의 대표적 형태인 株式會社이고, 經營은 會社의 理事陣을 중심으로 하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네째, 決算과 利潤配分, 租稅, 合營會 社의 解散과 紛爭解決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여기서는 合作會社의 利潤과 從業員의 所得에 法人稅와 所得稅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74년 이후 '稅金制度 全 面廢止'를 주장해 온 北韓의 旣存體制와 상 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北韓의 合營法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保險問題, 合作投資比率, 理事長選出問題, 海外支社設置問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北韓도 이러한점을 인식하여 1985년 3월에는 「合營法實施와 관련된 施行細則」과 「外國人所得稅法」을발표하여 合營法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세우고있다".

合營法 第1章 第2條는 北韓이 희망하는 合

³⁾ 北韓은 "合營法은 北韓의 自立的 民族經濟路線에 반하지 않고 자립경제를 强化·發展시키는 것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中共의 經濟特區와 결부 시키는 것은 合營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日朝貿易會(1984, No. 297), p.12 참조).

⁴⁾ 合營法에 관한 구체적인 內容은 다음의 文獻을 참조. EIU(1984. 4), pp.36~38 ; 民族問題研 究所(1984, No.270), pp.51~52;金永圭(1985), pp.170~172.

⁵⁾ 이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出資比率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利潤은 出資比率에 따라 분배할 수 있으나 100% 外國人投資는 인정하지 않으며 合營會社의 運營期間은 5년이고 연장 가능하다. 또한 利益金의 海外送金은 銀行口座에 殘高가 있는 한 어떤 제약도 없으며 合作投資를 위한 商品輸入은 關稅가 면제된다. 한편, 法人所得稅는 合作會社 純利益金의25%로 하되, 會社設立後3년간은 면제되고 利潤이 적을 경우 3년후라도 稅稅惠澤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北韓은 이것이 中共이나 東歐共產諸國보다 유리한 稅制上 惠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교또通信, 1985. 3, 29).

作投資의 範圍를 工業, 建設, 運輸, 科學技 術, 觀光業 등 5개부문으로 정하고 있는데 北 韓의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이들 5개부문의 合 營可能性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工業部門 에 있어서 重化學工業은 北韓의 市場이 협소 하여 수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規模의 經 濟를 실현하기 어렵고, 輕工業部門은 北韓의 重工業優先政策과 配給制實施로 인한 消費財 産業의 낙후로 정책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윤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컴퓨터 및 電子部門 등 尖端產業部門은 현시점에서 北韓 에 가장 필요한 合作投資部門이라고 볼 수 있 으나 專門經營人의 確保와 技術蓄積이 이루어 지지 않아 당분간 합작이 어려운 형편이고, 建設・運輸部門은 資本懷姙期間이 길고 投資規 模가 크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中共의 한 보고서는 1984년 9월 合營法 公布 이후 北韓은 여러 부문에 걸쳐 外國企業과의 合作投資를 유치해 왔으며, 1985년 3월의「外國人所得稅法」과「合營法施行細則」의 제정은 이러한 北韓의 合作投資를 용이하게 해주

었다고 분석하고 있다6) 그러나 合營法이 발 표된 이후 실제로 서방국가와의 合營이 이루 어진 예는 在日 朝總聯系 企業과의 合作事業 을 포함시키더라도 단지 몇 건에 지나지 않는 다. 먼저 北韓이 西方과 合作投資를 실현시킨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동강의 羊角島에 건설중인 46층 규모의 국제관광호텔 을 들 수 있는데 이 호텔은 프랑스의 「베르나 르 콩페뇽」(Bernard Campenon)建設會社와 의 합작으로 양측이 같은 비율로 투자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관광호텔의 건 설은 최근 北韓觀光產業의 發展展望에 대해 프랑스측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⁸⁾, 이 호텔건설은 北韓의 觀光部門 合 作可能性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까지 觀光 産業이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자체를 극 히 부정적으로 보아 왔던 北韓이 최근 서방의 民間觀光團 入國을 허용한 사실은 이를 잘 뒷 받침해 주고 있다⁹⁾.

둘째로 北韓이 合作投資 實現을 본 예로는 北韓의 樂園貿易商社와 在日 朝總聯商社인 朝 日商社間의 합작으로 건설한 '樂園百貨店'을 들 수 있다'". 이 백화점은 1985년 2월에 개 설되었으며 평양에 본점을 두고 北韓 各地에 31개 체인을 갖고 있는데 취급상품은 모두 日 製輸入品이고 北韓에 체류하는 日本人등 外國 人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 '樂 園百貨店'이 北韓의 合營希望部門으로 合營法 에 명시된 5개부문이 아닌 商業部門인 점을 감안하면 '樂園百貨店'의 개설목적은 朝總聯 資本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合作會社 設立의 경험과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았나 생각된 다. 세번째로 合作投資의 實現을 본 것은

⁶⁾ EIU(1986, 1), p. 46 참조.

⁷⁾ EIU(1985, 3), p. 35~36 참조.

⁸⁾ 이 호텔은 1987년 9월 完工豫定이었으나 아직까지 이 호텔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은 물론 어느 정도 건설이 진척되고 있다는 報道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건설 자체가 중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小村武樹(1987), p.23 참조].

⁹⁾ 北韓은 최근까지 몇몇 東歐圈國家의 觀光客, 그리고 美國,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소수 海外僑胞의 천척방문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해 왔으나 1985년 말부터는 西獨, 英國, 홍콩 등 일부 西方國家의 團體觀光客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고 최근 1987년 10월에는 日本觀光客의 北韓觀光이 보도되었다(EIU(1986), pp.63~64 및 韓國日報(1987. 10.15)참조].

¹⁰⁾ 金永圭(1985), pp. 165~189 참조.

1986년 4월 '金萬有病院'의 開院을 들 수 있 다11). 이는 日本 東京의 '西新井病院'과의 合 作投資로서 토지와 건물은 北韓側이 제공하고 醫療機器 및 技術援助는 '西新井病院' 측이 제 공하였다. 이외에도 朝總聯과의 合作投資의 예로서는 1986년 9월에 설립된 만경대 알루미 늄「도어」제조공장 등을 들 수 있으며 北韓當 局과 朝總聯間에 合作會社 運營機構의 設立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12). 네째 로 1987년 4월 이후 北韓은 1,000톤의 매장량 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운산금광재개 발을 위해 日本 三井商社와 合作投資事業을 협의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연간 300 kg에 불과한 金生產量을 1988~89년에는 연 간 1톤씩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향후 10년 후 에는 연간 10톤씩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13).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것은 없지만, 北韓은 日本과 南浦金屬工場, 이탈리아企業과 鑛物輸出에 관한 合作投資, 프랑스와 人工衛星中繼所, 술·음료수工場, 西獨과 鋼鐵產業, 스웨덴과 家具工場, 홍콩과 함흥타이어工場 등 현재 서방국가들과 30여건의 合營交涉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¹⁴⁾ 실제로 합작투자가 실현된 것은 없고 현재까지의 合營은 在日 朝總聯系 企業과의 合作事業이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의 對外開放化政策을 대표하

는 合營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鄧 小平의 實用主義路線에 입각하여 對外開放化 政策을 추진한 中共과는 달리, 北韓에는 開放 化의 先行條件이 형성될 이렇다 할 계기가 없 었기 때문에 종래의 自力更生의 自立經濟政策 과의 마찰이 對外開放化의 커다란 제약조건으 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中共의 現代化戰略 은 中央集權的 命令體制에서 市場社會主義로 의 분명한 방향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 해, 北韓은 社會主義經濟의 基本的 敎理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지 않다.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中共만큼 포괄적 이고 광범위한 것이 아니어서 北韓指導層이 여전히 社會主義의 中央統制的 이데올르기樣 式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投資價值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北韓은 市場이 협소하고 資源이 빈약하여 合作投資의 誘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비용적인 측면에 국한되고 있는데 이것조차 北韓의 사 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거의 의미가 없다 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15). 한편 外債支拂延期 로 인해 對外信用이 실추되었고 北韓이 대부 분의 西方國家와 國交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西方企業의 對北韓合作投資에 불안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官僚的 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北韓의 경우, 合營法實施의 필요조건이라할 수 있는 경제개방의 선행요건인 私的所有制度의 部分的 許容과 經營管理改善 등 어느정도의 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서방과의 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北韓 合作投資의 폭과 범위는 크게 확대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¹¹⁾ 日朝貿易會(1986, No. 328), pp. 6~7 참조.

¹²⁾ EIU(1986. 4), p. 30 참조.

¹³⁾ EIU(1987. 2), pp. 46~47 참조.

¹⁴⁾ EIU(1985. 2), pp. 37~38과 EIU(1985. 3), pp. 35~36 및 EIU(1985. 4), p. 47 참조.

¹⁵⁾ 先進國의 多國的企業이 後進國에 진출하는 이유로는 市場指向的인 것, 資本指向的인 것, 그리고 費用的 側面의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Wilczynski, 1970).

III. 北韓의 貿易現況

北韓은 올해부터 착수한 第3次7個年計劃 (1987~93)에서¹⁶⁾ 對外經濟協力 强化方針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北韓의 產業은 대외경쟁으로 부터 보호되어 왔고 輸入代替產業에 주력한 결과, 北韓의 產業構造가 비교우위에 의한 국제적 전문화를 이루지 못하여 北韓商品의 對外競爭力 이 낮은 점이 北韓의 輸出增大 및 經濟成長의 制 約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北韓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輸出擴大努力이 輸入代替發展戰略을 해외시 장을 목표로 하는 輸出擴大政策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고 이는 다만 對外負債를 상환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西歐의 先進資本 및 技術을 계속 도입하려는 北韓 指導層의 의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貿易額의 增加目標를 社會總生產의 增加目標 (1.8배 증가)를 훨씬 상회하는 3.2배로 설정 하여 北韓經濟의 貿易依存度를 높이려는 정책 을 택하고 있다. 즉, 北韓은 현재 自立的 民 族經濟의 建設을 표방하면서도 貿易 및 對外 經濟協力을 통해 資本과 先進技術을 도입해야 하는 딜레머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 지 北韓이 국내시장의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 족함에도 불구하고 對內指向的 工業化政策을 취해 온 데서 찾아볼 수 있다17), 北韓의 對內 指向的 工業化는 對外部門의 役割을 하정하여 貿易은 단지 원활한 擴大再生產을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國內需要 充足에 부족한 商品에 한정시키고 수출은 수 입에 필요한 外貨獲得을 위해서만 추진되었

그런데 이러한 對內指向的 工業化政策이 지니는 커다란 문제점은 技術進步 및 生產增大를 위해 外貨需要가 필요불가결할 때 수출 이외에는 外換調達方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產業部門에 걸쳐 技術水準이 낙후되고 生產施設이 노후화되어 資本·施設財輸入 및 技術導入이 절실히 요구되는 北韓으로서는 현재 輸入代金의 마련 및 그동안 누적된 債務辨濟를 위해 輸出增大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입장이다¹⁸).

北韓은 貿易統計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貿易相對國인 蘇聯,中共,日本 등에서 발표한統計資料나 外國研究機關의 研究結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자료의 推定統計值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本章에서는 筆者의 集計資料를 이용하여¹⁹⁾ 北韓의 圈域別 輸

¹⁶⁾ 北韓은 1987년 4월 最高人民會議 第8期 2次會議에서 1987~93년 기간중에 추진될 第3次7個年計劃을 확정하였다. 第3次7個年計劃에서 주목되는 것은 技術革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基本建設, 小賣商品流通額, 貿易額을 제외하고는 중전보다 計劃目標를 낮게 책정한 점을 들 수 있는데, 다른·共產圈國家와 비교할 때 이 목표 또한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第3次7個年計劃에 대한구체적인 내용은 日本貿易振興會(1987), pp.18~38 및 pp.131~179 참조.

¹⁷⁾ 北韓은 自立・內部指向的 經濟政策으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로 각산업은 생산비가 최저로 되는 最適規模에서의 操業經驗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規模의 經濟가문제시되지 않았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이러한 市場規模의 制約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나 산업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자본집약적으로 됨에 따라 國內需要를 초과하는 大規模操業이요청되고 있다.

¹⁸⁾ 최근 勞動新聞(1985. 4. 7)은 "交易의 促進은 北韓의 유일하고 가장 막중한 經濟的 課題"라고 지적하고, 輸出의 增加만이 負債를 청산할 수 있고이를 위해 貿易規制의 준수, 輸出商品引渡의 날짜 준수 등 對外交易에 있어서의 信用回復을 강조하였다(EIU(1985, 2), p.37 참조).

¹⁹⁾ 北韓과 같이 自國의 貿易統計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交易相對國의 貿易統計를 통해서 간접적 으로 그 나라의 貿易統計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出入構造를 살펴보고 北韓의 對西方貿易의 現 況과 品目別 輸出入構造를 분석한 다음, 北韓 의 對西方貿易에서 나타난 특징을 평가해 보 기로 한다.

1. 北韓의 圏域別 輸出入構造

北韓의 지속적인 貿易相對國은 蘇聯,中共, 日本,西獨을 포함한 소수국가에 한정되고 있다. 그외에 대부분의 국가와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交易量이 급변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北韓의 總貿易規模가 그다지 크 지 않아 이 중 몇몇 국가와의 交易量變化가 北韓貿易規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²⁰.

경우, C.I.F 기준의 輸入額에는 運送料 및 保險料 등의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이하에서는 DOT로 사용)에서는이 費用을 F.O.B. 기준 輸入額의 10%로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北韓의 對西方貿易에 대해서

北韓의 輸出=相對國의 對北韓輸入÷1.1 北韓의 輸入=相對國의 對北韓輸出×1.1 방법으로 貿易額을 추정했다. 단 對共產圈交易에 대해서는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U. N.의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의 共產圈國 家間의 貿易에 관한 統計値도 마찬가지임)北韓의 輸出=相對國의 對北韓輸入, 北韓의 輸入=相對 國의 對北韓輸出이라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 20) 예를 들어 北韓의 對사우디 아라비아 貿易은 1976 년까지는 미미했으나 1977년 이후 對사우디 아라 비야輸出이 급증하여 1977~81년간 北韓 對西方 輸出의 23.6~48.3%를 차지하였고, 1982년까지 전무했던 쿠웨이트와의 貿易은 198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1983~85년간 對쿠웨이트輸出의 경우도 對西方輸出의 17.2~22.1%, 輸入의 경우는 對西 方輸入의 35.6~37.1%를 차지하였다(附表 3, 4 참조).
- 21) 非鐵金屬價格의 하락으로 1975~77년 사이 北韓 의 對西方圈 非鐵金屬輸出은 金額面에서 30%가 각소하였다[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1982), p.190 참조].

〈附表 2〉에서 北韓의 貿易規模는 1970년 輸 出 3.0~3.7億달러, 輸入 3.8~4.4億달러에서 1979년에는 輸出 11.5~16.5億달러, 輸入 11. 6~14.9億달러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중 연평 균증가율이 輸出은 16.1~17.7%, 輸入은 13. 2~14.5%를 보여주고 있다. 北韓經濟에서 貿 易의 役割은 內部經濟의 成長을 위한 보조적 역할밖에 하지 않아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北 韓經濟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北韓의 貿易規模는 그 규모가 최 대였던 1980년을 예로 들더라도 輸出 16.4億 달러, 輸入 17.1億달러에 불과하여 같은 해 韓國의 輸出 175.1億달러, 輸入 222.9億달러 와 비교할 때 輸出은 약 1/11, 輸入은 약 1/ 1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1985년 현재 輸出 12.9億달러, 輸入 19.0億달러로 韓國의 輸出 302.8億달러, 輸入 311億달러와 비교할 때 輸 出은 1/23, 輸入은 1/16 정도에 불과하다.

北韓의 圈域別 輸出入構造를 살펴보면 먼저 輸出의 경우(表 1 참조) 北韓의 總輸出은 1970~8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9.2%인데 이 기간중 北韓의 輸出規模는 일정한 추세를 지 닌다기보다는 世界經濟與件 및 北韓 內部事情 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70~75년간 연평균 18.8%의 증가율을 보여 주던 北韓의 輸出은 70년대 중반의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北韓의 主要 輸出品目인 非鐵 金屬價格의 하락과21) 6個年計劃(1971~76)早 期達成運動의 後遺症으로 인한 北韓經濟의 침 체로 1976~77년은 연평균 7%의 마이너스 成 長을 보이다가 1978~80년간에는 金, 銀, 납, 亜鉛 등 非鐵金屬價格의 상승 및 開發途上國 에 대한 輸出이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29.6% (1978년 58.1%, 1979년 25.1%, 1980년 9.7%

〈表 1〉 北韓의 圏域別 輸出, 1970~1985

蘇聯 中共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970 143.2 (42.0) 54.2 (15.7) 1975 209.7 (26.0) 197.8 (24.5) 1980 437.3 (26.6) 303.3 (18.5) 1981 348.1 (32.2) 231.0 (21.4) 1982 499.3 (38.8) 304.0 (23.6) 1983 437.4 (35.1) 254.3 (20.4) 1984 451.0 (35.1) 272.0 (21.2)										
(42.0) 54.2 143.2 (42.0) 54.2 209.7 (26.0) 197.8 437.3 (26.6) 303.3 348.1 (32.2) 231.0 499.3 (38.8) 304.0 437.4 (35.1) 254.3 451.0 (35.1) 272.0		東歐	田本田	*	OECD	(D1)	開發途上國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各	4
143.2 (42.0) 54.2 209.7 (26.0) 197.8 437.3 (26.6) 303.3 348.1 (32.2) 231.0 499.3 (38.8) 304.0 437.4 (35.1) 254.3 451.0 (35.1) 272.0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209.7 (26.0) 197.8 437.3 (26.6) 303.3 348.1 (32.2) 231.0 499.3 (38.8) 304.0 437.4 (35.1) 254.3 451.0 (35.1) 272.0	(15.7) 35	(10.3)	31.3	(9.2)	67.0	(19.6)	10.3	(3.0)	341.0	(100.0)
437.3 (26.6) 303.3 348.1 (32.2) 231.0 499.3 (38.8) 304.0 437.4 (35.1) 254.3 451.0 (35.1) 272.0	(24.5) 75	(6.6)	58.9	(7.3)	102.3	(12.7)	162.2	(20.1)	805.9	(100.0)
348.1 (32.2) 231.0 499.3 (38.8) 304.0 437.4 (35.1) 254.3 451.0 (35.1) 272.0	(18.5) 125	(9.7)	163.7	(10.0)	262.5	(16.0)	349.7	(21.3)	1,641.5	(100.0)
499.3 (38.8) 304.0 437.4 (35.1) 254.3 451.0 (35.1) 272.0	(21.4) 81	(2.2)	126.8	(11.8)	62.8	(5.8)	230.3	(21.3)	1,081.0	(100.0)
437.4 (35.1) 254.3 451.0 (35.1) 272.0	(23.6) 70	(5.4)	138.2	(10.7)	146.1	(11.3)	131.2	(10.2)	1,288.8	(100.0)
451.0 (35.1) 272.0	(20.4) 65	(5.2)	114.7	(9.2)	141.0	(11.3)	232.7	(18.7)	1,245.1	(100.0)
	(21.2) 43	(3.3)	132.0	(10.3)	151.4	(11.8)	234.7	(18.3)	1,284.1	(100.0)
485.1 (37.7) 244.8	(19.1) 103	(8.0)	163.8	(12.8)	68.5	(2.3)	220.0	(17.1)	1,285.2	(100.0)

註:1) 日本은 제외. () 안은 輸出合計에 대한 비율임. 資料: <附表 1>의 資料 참조.

〈表 2〉 北韓의 圏域別 輸入, 1970~1985

١														
	蘇聯	泰	中共	半	東	東歐	Ш	₩ ₩	OECD	Ωr	開發沒	累發途上國	合計	1100
1/7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2	230.0	(6.09)	6.09	(16.2)	26	(6.9)	25.7	(8.9)	26.1	(6.9)	8.8	(2.3)	377.5	(100.0)
Ö	61.3	(19.3)	243.3	(17.9)	20	(5.2)	277.1	(20.4)	424.6	(31.3)	80.9	(5.9)	1,357.2	(100.0)
2	58.8	(22.4)	284.1	(24.6)	92	(6.7)	199.8	(17.3)	274.8	(23.8)	45.8	(4.0)	1,155.3	(100.0)
4	43.1	(52.9)	374.2	(21.9)	122	(7.1)	411.7	(24.1)	137.6	(8.0)	221.7	(13.0)	1,710.3	(100.0)
ကိ	387.9	(27.4)	300.0	(21.2)	81	(5.7)	320.1	(22.7)	172.6	(12.2)	152.1	(10.8)	1,413.7	(100.0)
4	38.7	(30.6)	281.4	(19.6)	28	(4.0)	344.5	(24.6)	160.8	(11.2)	152.2	(10.6)	1,435.6	(100.0)
က်	52.2	(21.2)	273.4	(16.5)	28	(3.5)	329.8	(21.7)	147.7	(8.8)	468.0	(28.3)	1,659.1	(100.0)
4	28.0	(27.8)	226.2	(14.7)	42	(2.7)	280.2	(18.2)	105.6	(6.9)	457.5	(29.7)	1,539.5	(100.0)
2	85.5	(41.3)	239.0	(12.6)	85	(4.5)	271.8	(14.3)	100.9	(2.3)	417.7	(22.0)	1,899.9	(100.0)

註:1) 日本은 제외. () 안은 輸入合計에 대한 비율임. 資料:<附表 1>의 資料 참조.

성장)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는 1982년 이외에는 工業成長率에 대한 발표가 없을 정도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非鐵金屬의 價格도 다시 하락하여, 1980~85년간 輸出은 연평균 4.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圈域別 輸出構成比를 살펴보면(表 1 참조), 社會主義圈 貿易에만 의존하던 70년대 초반까지 北韓의 輸出은 蘇聯과 中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²²⁾ 70년대에 들어서서 北韓이 對西方圈 貿易을 확대함에 따라 日本및 OECD 등 對西方先進國 輸出이 증가하고 1977년 이후 開發途上國에 대한 輸出이 크게증가하여 1980년의 輸出構成은 蘇聯 26.6%, 中共 18.5%, 東歐圈 7.6%, 日本 10%, OECD 16%, 開發途上國 21.3%로서 北韓의 對西方圈 輸出은 1971년 21.7% 에서 1980년 47.3%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北韓의 對西方輸出은 다시 감소하여 1985년 현재 蘇聯 및 中共이 北韓 輸出의 56.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輸入規模를 보면 1970~8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1.4%인데 輸出規模와 마찬가지로 輸入規模도 변동이 심하다(表 2 참조). 輸入은 1971~74년간 연평균 37.7%의 높은 성장

을 보였으나 外債償還延期事態에 직면한 1975년 이후 西方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1975~77년간 연평균 17.5%씩 감소하였다. 그후 西方先進國에 대한 代替輸入先으로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등장 및 共產圈으로부터의 輸入增加와 특히 10년마다 개최되는 黨大會가 있던 1980년에는 이를 대비한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해 機械・設備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1980년의 輸入은 17.1億달러로 증가하였다. 1981년 이후는 다시 감소추세를보이다가 최근 1985년의 경우는 對蘇輸入의급증으로 北韓의 輸入規模는 19億달러를 기록하였다²³).

輸入構成比를 살펴보면 70년대 초까지는 蘇 聯과 中共으로부터의 輸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1971년의 경우 蘇聯 65.8%, 中共 16.9%, 東歐 5.7%, 日本 5.7%, OECD 4. 5%, 開發途上國 1.4%였으나 1972년 이후 對 西方輸入이 크게 증가하여 1974년의 경우 OECD 31.3%, 日本 20.4%, 蘇聯 19.3%, 中共 17.9%, 開發途上國 5.9%, 東歐 5.2%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外債問題로 OECD諸國으로부터의 輸入이 크게 감소하고 70년대 후반부터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 이 증가하여 1980년의 경우 輸入比重은 蘇聯 25.9%, 日本 24.1%, 中共 21.9%, 開發途上 國 13.0%, OECD 8%, 東歐 7.1%로 나타났 으며, 최근 1985년의 경우는 蘇聯 41.3%, 開 發途上國 22.0%, 日本 14.3%, 中共 12.6%, OECD 5.3%, 東歐 4.5%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北韓의 圈域別 貿易收支現況을 〈表 3〉에서 보면 1970~85년간 北韓의 貿易收支 赤字規模는 總 39.2 億달러로 日本 19.8億달러, 蘇聯 8.9億달러, OECD 7.7億달러, 中共 6.2

^{22) 1971}년 北韓의 圈域別 輸出構成은 蘇聯 43.4%, 中共 23.1%, 東歐 11.8%, 日本 8.7%, OECD 9.7%, 開發途上國 3.3%로 蘇聯과 中共이 66. 5%를 차지하였다.

^{23) 1985}년 北韓의 對蘇輸入은 7.86億달러로 北韓總輸入의 41.3%를 차지하였으며 1986년의 경우는 10.79億달러로 증가하였다(日本貿易振興會, 1987). 이러한 對蘇輸入의 커다란 증가는 北韓經濟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先進技術 및 資本設備의 導入이지만 債務問題로 西方先進諸國으로부터의 輸入先이 차단된 점과 최근 北韓의 對蘇偏重政策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表 3〉 北韓의 圏域別 貿易收支推移, 1970~85

(단위:百萬달러)

	蘇聯	中共	東歐	日本	OECD1)	開發途上國	合計
1970	-86.8	-6.7	9	5.6	40.9	1.5	-36.5
1971	-231.0	-21.9	5	-4.5	5.3	2,6	-244.5
1972	-148.6	-45.8	0	-68.0	-2.0	0.3	-264.1
1973	-122.0	-99.2	-1	-44.5	-91.4	-52.4	-410.5
1974	-61.0	-97.0	8	-178.2	-350.1	12.9	-665.4
1975	-49.1	-86.3	-17	-140.9	-172.5	116.4	-349.4
1976	-83.7	-105.0	-24	-40.6	-108.9	29.9	-332.3
1977	-1.0	-80.0	-11	-77.0	-70.0	155.0	-84.0
1978	36.7	-7.1	25	-104.6	-29.8	267.5	187.7
1979	32.0	13.2	4	-174.0	3.3	230.6	109.1
1980	-5.8	-70.9	3	-248.0	124.9	128.0	-68.8
1981	-39.8	-69.0	0	-193.3	-109.8	78.2	-333.7
1982	60.6	22.6	12	-206.3	-14.7	-21.0	-146.8
1983	84.2	-19.1	7	-245.1	-6.7	-235.3	-415.0
1984	23, 0	45.8	1	-148.2	45.8	-222.8	-255.4
1985	-300.4	5.8	18	-108.0	-32.4	-197.7	-614.7
合計	-892.7	-620.6	39	-1,975.6	−768, 1	293, 7	-3,924.3

註:1) 日本은 제외. 資料:〈附表 1〉과 동일.

p. 32 참조].

億달러 순인데, 다만 開途國에 대해서는 2.9 億달러의 黑字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보면 北韓의 貿易收支赤字는 1970년에 3,650 萬달러이었던 것이 1972년부터 급증하여 1974년에는 6.7億달러로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EIU(1986~4),

그 이후 外債償還의 어려움으로 輸入을 감소하고 開途國에 대한 輸出을 증가시켜 1978년 과 1979년에는 貿易黑字를 기록하였으나 1980년부터는 다시 赤字로 反轉하여 1985년에는 6.1億달러의 貿易赤字를 나타내었다²⁴).

北韓의 貿易收支를 國別로 살펴보면 日本에 대한 赤字가 제일 큰데 1972년 이후 貿易赤字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1970~85년 동안의 對日本 輸出合計인 15.1億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OECD에 대한 赤字는 1973~75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후 점차 감소하였다. 蘇聯과 中共에 대해서는 1978년과 197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貿易赤字를 보여왔으나 長期貿易協定을²⁵⁾ 체결한 1982년 이후 2~3년간은 貿易收支가 黑字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였으며 對開途國의 경우는 70년대 이래 지속

²⁴⁾ 北韓의 1985년 貿易收支(輸入 19.0億달러, 輸出 12.9億달러)는 1984년 貿易收支(輸入 15.4億달러, 輸出 12.8億달러)에 비하여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蘇聯으로부터의 輸入이 약 84% 중가한 반면 OECD에 대한 北韓의 輸出은 55% 정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급작스럽게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5,700萬달러 상당의 穀物을 輸入하게 된

²⁵⁾ 北韓은 1981년 7월 蘇聯과 5년간의 長期貿易協定을 채결하였고, 中共과도 1982년 5년간의 長期貿易協定을 채결하였다. 이의 영향을 받아 1982년의 경우 北韓의 兩國과의 貿易은 前年度에 비해 20.2%가 증가하였고, 특히 輸出은 38.7%가 증가하였다(日本貿易振興會, 1982, 1983a).

적인 黑字를 기록하여 北韓의 貿易收支赤字를 줄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나 1982년 이후는 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2. 北韓의 對西方圈 貿易

北韓은 6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기대했던 中•蘇로부터의 원조가 무산되었고 國內產業成 長이 둔화되는 한편, 韓國의 경이적인 經濟成 長으로 인한 자극 등으로 北韓도 서방세계에 대한 경제적 폐쇄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한 6個年計劃(1971~76)의 目 標達成과 급속한 産業成長을 위한 技術革新을 성취하기 위하여 技術 및 플랜트 등 대규모의 資本裝備를 日本 및 유럽으로부터 수입하였 다. 즉, 1970년에 6,060萬달러에 불과하던 北 韓의 對西方輸入(全體輸入의 16.1%)은 1974 년에는 7億 8,260萬달러(全體輸入의 57.7%) 로 같은 기간중 연평균 89.6%씩 크게 증가하 였다(附表 1 참조). 北韓의 西方側과의 貿易 規模를 살펴보면(附表 1 참조), 1970~74년에 이르는 기간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對西 方輸入의 대폭적인 증가와 輸入代金確保를 위 한 輸出의 증가로 對西方貿易額은 연평균 57. 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나, 7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北韓의 주요 輸出 品目인 非鐵金屬價格의 하락으로 輸出이 감소 하고 이로 인한 北韓의 外債償還延期는 北韓 의 對西方輸入을 감소시켜 1975~77년 사이의 對西方貿易規模는 연평균 17.9%씩 감소하였 다. 한편 1978년부터는 北韓의 對開途國輸出 의 증가와 非鐵金屬價格上昇에 힘입은 日本을 비롯한 西方先進國에 대한 輸出增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80년의 黨大會에 대비,

經濟建設을 위한 設備 및 技術導入 등 輸入增加로 인해 1980년 北韓의 對西方貿易은 15.5 億달러(輸出 7.8億달러, 輸入 7.7億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하지만 1980년 이후는 北韓經濟의 전반적인 침체와 債務問題로 對西方圈貿易은 輸出 및 輸入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主要 地域別 貿易推移를 보면 北韓의 對OECD輸入은 1974년에 4.2億달러로 정점에 달해 對西方圈 輸入의 54.3%,總輸入의 31.3%를 차지하였으나 北韓의 對西方 外債償還延期로 그 규모가 감소하여 1977년 이후는總輸入의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表 2 참조). 한편 北韓의 對OECD輸出은 北韓의 주요 輸出品目인 非鐵金屬價格이 상승했던 1980년에 2.6億달러로 최고에 달해 對西方輸出의 34.0%,總輸出의 16%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85년의 경우 0.7億달러로總輸出의 5.3%에 불과한 실정이다(表 1 참조).

70년대 후반부터 北韓의 對西方 貿易推移는 OECD 등 先進國에 대한 貿易보다는 開發途上國과의 貿易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여주고있다. 1974~79년 기간동안 對開途國 輸入은연평균 15.1%(對OECD輸入은연평균 10%씩 감소)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輸出의 경우는연평균 33.3%(OECD에 대한 輸出은연평균 8.7% 증가)의 높은增加率을 나타내어, 〈表 3〉에서 볼 수 있듯이 1975~81년간의 對開途國 貿易黑字는 北韓의 貿易赤字를줄이는데 커다란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北韓의 對開途國 交易强化(특히 輸出)의 要因으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非同盟圈에서의 리더쉽을 획 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北韓의 第3世界에 대

〈表 4〉 北韓의 對日輸出入規模, 1965~1986

(단위:百萬달러)

	輸入	輸出	合計	貿易收支	對日貿易/ 對西方貿易(%)
1965	18, 2	13.4	31,6	-4.8	_
1970	25.7	31.3	57.0	5.6	33, 7
1975	199.8	58.9	258.7	-140.9	30.7
1980	411.7	163.7	575.4	-248.0	37.2
1981	320.1	126.8	446.9	-193.3	42.0
1982	344.5	138, 2	482.7	-206.3	45.0
1983	359.8	114.7	474.5	-245.1	32.4
1984	280, 2	132.0	412.2	-148.2	30, 3
1985	271.8	163.0	434.8	-108.8	35.0
1986	202.4	157.6	359.9	-44.9	-

註:日本大藏省 通關統計를 IMF의 DOT방식으로 환산한 것임.

資料:日朝貿易會,『日朝貿易』, No. 338, 1987. 2.

한 貿易 및 援助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²⁶⁾. 또한 北韓의 非同盟圈에 대한 武器輸出도 1975년 이후 증대하고 있다²⁷⁾. 둘째, 경제적 측면으로서 北韓의 2次商品 輸出의 경우 상품의 질이 西歐先進諸國의 상품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西方先進國市場의 進入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開途國에

대해서는 市場浸透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北韓의 對開途國 輸出構造를 살펴보면 機械 類를 비롯하여 시멘트, 纖維 등의 輸出이 순 조롭고 아프리카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원조적 성격을 지닌 穀物輸出도 행해지고 있으며 홍 콩,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주로 農 水產品을 수출하고 있다²⁸.

日本은 北韓 對西方貿易의 최대 交易相對國으로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北韓 總輸出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輸入規模에 있어서는 北韓 總輸入의 14~24%를 점유하여蘇聯 다음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表 1,表 2 참조). 특히 債務問題로 西歐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이 거의 차단된 70년대 후반부터 對日本輸入은 先進資本主義國家의 앞선 技術 및 施設을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역할을하여 對西方圈 輸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北韓의 對西方先進國 貿易에 획기적인

²⁶⁾ 北韓은「티토」유고슬라비아大統領 死後, 金日成을 非同盟圈의「리더」(leader)로 삼으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소련서기장「고르바쵸프」가印度를 '非同盟圈의 公認된 리더'로 칭한 사실 등으로 보아 非同盟國家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日本貿易振興會(1987), pp.14~15 참조].

²⁷⁾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의 推定에 따르면 北韓은 第3世界에 대하여 1976년 80萬달러, 1977년 20萬달러, 1978년 70萬달러의 武器 輸出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제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것으로 여겨진다(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1982, p.185). 한편 EIU에 의하면 北韓은 1980년 이후 이란에 石油輸入의 댓가로 상당량의 武器를 輸出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EIU、1985).

²⁸⁾ 日本貿易振興會(1983b), p. 48 참조.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表 4〉에서 北韓의 對日貿易推移를 살펴볼 수 있는데, 北韓은 60년대에는 적은 액수나마대체로 對日貿易黑字를 나타냈지만 對日輸入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1972년 이후부터현재까지는 계속 貿易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1974년 이후로는 매년 輸入이 輸出의 2배 정도가 되는 輸入超過現象이 심화되었고 특히1983년에는 가장 심하여 日本에 대한 輸出은1億 1,470萬달러인 데 비하여 輸入은 3億5,980萬달러에 달하였다.

貿易赤字規模가 점차 커져 北韓의 對日債務가 약 800億엔에 이르게 된 1976년에는 北韓은 日本에 대하여 債務償還延期를 요청하였고이에 日本은 1976년, 1979년, 1983년의 세차례에 걸쳐 債務償還을 연기하여 주었으나1987년 현재에도 北韓의 對日債務는 약 600億엔에 이르고 있다²⁹⁾. 이러한 債務問題로 인해현재 北韓 對日貿易의 80%가 日本 朝總聯系商社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20%만이 日

물론 北韓의 對外貿易中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방국가중에서는 가장 높고 地理的 隣接性과 技術力 등으로 日本은 北韓의 주요 貿易相對國으로 남아 있겠지만, 최근의 경우처럼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 輸出의 약 2배에 이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日本과 北韓間의 貿易은 어느 정도에 가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3. 對西方圈 貿易의 品目別 輸出入 構造

198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北韓의 對西方貿易은 감소추세에 있는데(附表 1 참조),여기서는 먼저 北韓의 주요 31個 西方國과의 品目別 輸出入 構造分析을 통하여³⁰⁾ 北韓貿易構造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北韓의 對西方圈貿易擴大努力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對西方貿易이 점점 더 부진해지는 이유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北韓의 對西方圈貿易에 있어서 品目別 輸出入推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北韓과주요 31個 西方國과의 品目別 輸入構造를 보면(表 5 참조), 1980년에는 非電氣機械, 輸送裝備, 電氣機械 등 機械 및 運輸裝備(SITC7)가 38.1%로 가장 많으며 鐵鋼, 紙 및 紙製品, 繊維絲 및 織物, 金屬雜製品 등 原料別製品(SITC6)이 25.0%, 그리고 殺蟲劑, 化學素材, 化學肥料 등 化學品(SITC5)이 12.2%를 차지하여 이 세 가지 품목이 전체의75.3%를 차지하고 있다.

本商社에 의해 이루어져 사실상 北韓의 對日 貿易은 '朝朝貿易'의 형태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²⁹⁾ 北韓의 對日債務로 인해 日本 債權者들은 輸出保險을 신청, 1986년 9월에 保險金을 수령했으나이는 日本의 國內商社를 위한 구제조치로서 北韓의 債務支拂義務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佐滕勝巳(1987), p. 76 참조).

³⁰⁾ 이는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의 分析으로 1974~80년간의 北韓과 主要 31個 西方國과의 貿易統計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31個 貿易相對國은 벨기에, 덴마크, 西獨,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英國,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 브라질, 캐나다, 이집트, 핀란드, 그리이스, 홍콩, 인도네시아, 日本,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아이슬랜드,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등이다(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1982).

北韓의 機械 및 運輸裝備(SITC 7)의 輸入은 주로 工作機械, 金屬加工機械, 트럭, 掘鑿機, 產業用 冷温裝置 등인데 1975~80년간에는 오히려 연평균 5.1%씩 감소하였다. 이것은 北韓이 서방측으로부터 1974~75년에는 플랜트 및 資本裝備를 대규모로 輸入하였으나그 이후 누적되는 負債로 인해 輸入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이 工業化를 계속추진할 것이라는 점과 이 품목들의 국내생산부족 등을 고려할 때 서방측으로부터 機械類輸入의 증가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原料別製品(SITC 6)의 輸入은 板紙, 鐵管, 纖維絲 및 織物, 金屬雜製品 등이 주요품 목이다. 이 제품들의 輸入比重은 1974년 이후 감소하다가 1977년부터 다시 증가하였으나 1980년의 輸入額은 1974년 수준에 미치지 못 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鐵鋼生產은 加工段階 의 低位性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서방 측으로부터의 特殊鋼輸入은 계속될 것 같다. 化學品(SITC 5)의 輸入은 殺蟲劑, 化學肥料, 플래스틱材料 등으로 1974년 이후 계속輸入이 증가하여 1980년에는 總輸入額의 12. 2%를 나타내고 있으며 플래스틱材料 및 化學素材는 당분간 계속 輸入할 것으로 예상된다.

案 제근 정군산 제국 權人될 것으로 예정된다. 특히 輸入比重이 높은 個別品目을 보면 1980년에 非電氣機械(20.5%), 鐵鋼(9.2%), 輸送裝備(8.8%), 電氣機械(8.8%), 穀物(7.6%) 등으로 나타나 半製品 및 完製品을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輸入構造와 비교해 보면, 1981년 韓國 總輸入額 257億달러는 輸出用原資材 25%, 原油 25%, 資本財 17%, 原料 및 中間財 13% 등 주로 原油와 原資材 및 中間財가 輸入의 대중을 이루고 있어³¹⁾ 北韓의 輸入構造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食料品 (SITC 0,1,4)은 1980년에 輸入比重이 8.8%로 穀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非食用原料(SITC 2)의 輸入은 주로 繊維原料, 생

〈表 5〉 北韓의 對西方 31個國 輸入의 品目別 構成, 1974~80

(단위:百萬달러, %)

								,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年平均 增加率
對西方先進國 輸入	669.6	465.3	288.6	236, 8	334.0	446.1	543.3(100.0)	-3.4
食料品(SITC 0, 1, 4)	148.6	10.9	34.1	33, 4	25.4	39.6	47.7(8.8)	-17.3
原材料(SITC 2)	13.0	10.6	12.0	16.1	33.0	40.4	29.0(5.3)	14.3
鑛物燃料(SITC 3)	0.6	0.9	0.7	3.4	14.2	16.1	22.7(4.2)	83. 2
化學品(SITC 5)	33.3	39.1	32.5	37.4	63.6	54.9	66.1(12.2)	12, 1
原料別製品(SITC 6)	166.8	75.6	39, 2	47.5	75.0	105.7	135.8(25.0)	-3.4
機械 및 運輸裝備(SITC 7)	284.1	304.1	153, 6	83.1	86.6	150.6	207.0(38.1)	-5.1
雜製品(SITC 8)	19.3	14.5	11.7	13.8	12.9	19.2	23.2(4.3)	3.1
기 타	3.9	9.6	4.8	2. 1	23.3	19.6	11.8(2.2)	20.3

註:() 안은 구성비임.

資料: U.N. 貿易統計의 磁氣 테이프,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East-West Trade: The Prospects to 1985, 1982. 8.

³¹⁾ 韓國開發研究院(1983), p. 732 참조.

〈表 6〉 北韓의 對西方 31個國 輸出의 品目別 構成, 1974~80

(단위:百萬달러, %)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年平均 增加率
對西方先進國 輸出	262.8	308.9	180.1	169.3	253, 2	308.9	436.8(100.0)	8.8
食料品(SITC 0, 1, 4)	84.2	111.7	23.1	34.5	97.3	72.3	73, 2(16, 8)	-2.3
原材料(SITC 2)	47.4	42.8	42.3	41.9	50.6	68.3	77.8(17.8)	8.6
鑛物燃料(SITC 3)	8.8	1.2	2.2	1.9	1.4	3, 2	9.9(2.3)	2.0
化學品(SITC 5)	3, 3	3.5	3, 5	4.2	5,5	3, 3	5.7(1.3)	9.5
原料別製品(SITC 6)	113.3	145.7	102.9	78.7	86.8	149.1	262,7(60,1)	15.0
機械 및 運輸裝備(SITC 7)	1.1	1.6	1.2	3, 5	7.2	4.9	2.5(0.6)	14.7
雜製品(SITC 8)	2.5	2, 1	3.7	3.9	3.7	7.6	4.4(1.0)	9.9
기 타	2.2	0.3	1.2	0.7	0.7	0.2	0.6(0.1)	-19.5

註:() 안은 구성비임. 資料:〈表 5〉와 同一.

고무 등으로 1978년에 9.9%까지 증가했다가 고 있다. 1980년에는 5.3%로 감소하였다.

北韓의 對西方輸出構造를 보면(表 6 참조), 1980년에 輸出比重이 높은 것은 原料別製品 (SITC 6)으로 60.1%를 차지하며 이 중 약 80% 정도가 非鐵金屬이다. 다음으로는 非食 用原料(SITC 2) 17.8%, 食料品類(SITC 0, 1,4) 16.8%로 이 세 가지가 전체의 9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輸出比重이 높은 個別品 目으로는 1980년에 非鐵金屬(48.2%), 鐵鋼 (9.6%), 穀物(7.1%), 魚類(6.9%), 天然肥 料 및 鑛物(6.4%) 등으로 1次產品 및 半製品 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輸入品目으로 機械類 및 完製品을 수입하는 양상과는 커다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4. 北韓의 對西方貿易 評價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北韓의 對 西方貿易은 점점 더 침체에 빠지고 있는데 여 기에는 北韓의 많은 經濟的 問題點이 내재하

먼저 北韓 對西方輸出의 制約要因을 살펴보 면 첫째, 輸出增加를 위해서는 生產力增大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北韓의 경우 輸出의 주종 을 이루는 鑛業 및 鐵鋼業部門의 生產增大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北韓의 自體生產이 불가 능한 重機械 등의 대량구입이 요구되고 있으 나 債務問題로 輸入이 어려운 형편이다. 둘 째, 生產擴大 및 이를 위한 投資의 抑制要因 으로 GNP의 20~25%를 차지하는 과도한 軍 事費支出을 들 수 있다. 세번째 요인으로는 에너지문제를 들 수 있는데 北韓은 電力生產 의 대부분을 水力 및 石炭을 이용한 火力發電 에 의존하여(石油가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약 6%에 불과), 石炭生產의 隘路 및 가뭄 등 氣象條件의 악화는 電力供給에 차질 을 가져와 工業生產力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한편 北韓의 對西方輸入의 制約要因으로는 輸入에 필요한 外貨不足을 들 수 있다. 70년 대 중반 이후의 債務問題로 인해 北韓의 對西 方輸入의 대부분은 現金決濟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는데, 北韓은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貿易赤字를 기록하고 있고 國際通貨基金 (IMF)이나 世界銀行(IBRD)에도 가입되지 않은 관계로 國際金融機關의 支援을 받을 수 없다는³²⁾ 점이 北韓의 對西方輸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北韓의 經濟成長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 北韓의 對西方貿易의 퇴조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北韓이 目標 로 하는 經濟成長의 달성을 위해서도 輸出入 의 制約要因 除去는 시급하다고 하겠다.

北韓이 현재「80년대 10大展望目標」의 수행을 포함하여 그들이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플랜트와 裝備導入에 보다 많은 投資가 필요하다는 것은 1984년에 끝난 第2次7個年計劃(1978~84)이 실패하게 된 주요원인의 하나가 生產施設 및 技術水準의 낙후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자명하다고 하겠다. 또한 비록 北韓이 對西方側과 經常收支赤字를나타내고 있으나 이를 相殺하기 위한 더 많은輸出을 위해서는 西方先進國의 機械 및 施設輸入이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北韓은 앞으로도西方側과의 貿易을 계속 추진하기를 원할 것으로 예견된다.

IV. 對外經濟協力 推移

80년대에 들어서 韓半島를 둘러싼 美・日・ 中・蘇 强大國들의 關係變化는 北韓 對外政策 의 變化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北韓은 세계 각국이 이데올로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對 外政策을 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까지 취해 온 閉鎖經濟體制로는 더 이상의 발 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종전의 政經一 致原則의 對外政策에서 탈피하여 對外經濟協 力路線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더우기 中 共이 實用主義路線을 채택하여 美國, 日本 등 資本主義國家와의 協力關係를 강화하고 韓國 과도 間接交易,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 關係改善을 급속히 추진하는 데 자극을 받은 北韓은 韓・中共 關係改善에 대한 불만으로 對 蘇偏向政策을 취하는 한편, 先進 資本主義國 家에 대한 對外經濟協力의 擴大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美國이 최근 南北對話 등 몇 가지 前提條件를 달아 北韓에 대해 藥品과 食糧을 중심으로 한 交易推進을 제의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의 緊張緩和라는 政治的 目的과 최근 北韓의 對蘇貿易依存度의 增加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이외에도 美・北 韓間의 交易이 현실화될 때 韓•蘇 혹은 韓•中 共間의 直接交易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 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本章에서는 최근 韓半島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北 韓이 취하고 있는 對外經濟協力의 政策과 그 展望을 살펴보기로 한다.

³²⁾ 北韓은 최근 들어 國聯開發計劃(UNDP)의 프로 액트援助를 받고 있지만 援助額이 적어 北韓의 國際收支問題의 해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北韓이 받은 UNDP 援助內容은 다음과 같다. 平壤~新城川間 鐵道의 C.T.C.(중앙제어장치)化 (약 300萬달러), 南浦港改修計劃(약 200萬달러), ICI工場建設(약 560萬달러) 등이다[日本貿易振興會(1983b), p.55 참조].

1. 對蘇偏重 및 對中共政策

1984년 5월 金日成의 모스크바訪問을 계기로 蘇聯과 北韓의 關係는 급속도로 가까와지고 있는데, 1984년 蘇聯外相의 平壤訪問,「미그」23機의 北韓提供과 그에 대한 댓가로 南浦港 및 北韓領空의 開放, 1985년 北韓의 解放 40周年紀念日에 蘇聯副首相 및 太平洋艦隊의北韓訪問과 北韓이 '解放者'로서 蘇聯을 평가한 사실³³〉, 그리고 1986년의 長期 雙務貿易協定締結과³⁴〉 1986년 10월 金日成의 蘇聯訪問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蘇聯과 北韓의 接近은 군사력과 경 제력을 강화하고 金日成世襲體制를 인정받으려는 北韓의 의도와 그동안 소홀히 해 온 극 동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蘇聯의 계산이 일치된 것으로³⁵⁾, 北韓은 中共의 對韓國 關係 改善을 견제하고 蘇聯은 北韓의 對中共 偏重 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北韓의 입장에서 中共과 蘇聯의 經 濟水準을 고려해 보면 中共이 經濟開放政策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더라도 北韓이 필요로 하는 資本 및 技術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은 中 共이 아니라 蘇聯 및 東歐共產國家들로서, 北 韓이 「80년대 10大展望目標」를 중심으로 한 第3次7個年計劃 目標達成을 위해서는 對蘇紐 帶强化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으며, 中共式의 開放政策을 도입하는 경우 體制崩壞의 危險性 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체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蘇聯의 경우는 최근 들어 韓·美·日의 軍事關係 및 美・日과 中共의 軍事協力關係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北韓이 蘇聯을 제치고 中 共을 중개자로 한 3者會談을 제의한 사실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對北韓 關係改善의 必要 性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中共과 北韓의 關係를 악화시킬 정도로 北韓의 對蘇偏重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北韓의 對蘇關係는 보다 긴밀해지고, 따라서蘇聯의 對北韓 經濟援助는 증대하리라 예상된다. 蘇聯은 1986~90년 사이에 平壤火力發電所의 建設과 安州炭鑛의 擴大 및 施設改善을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19개부문에 걸친 經濟技術協力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蘇聯의 經濟援助에는 그에상응하는 부담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蘇聯이 현재 힘을 기울이고 있는 '社會主義共同體의 經濟統合新段階로의 接近政策'이라는蘇聯 中心의 「코메콘」(COMECON)體制强化政策에의 參與要求에 대해 北韓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주목된다36).

한편 北韓의 對中共 經濟協力關係는 中共의

³³⁾ 姜成山 首相은 解放 40周年紀念行事에 참가한 蘇聯代表團을 맞는 자리에서 "우리 人民은 解放者, 援助者로서 蘇聯이 한 역할을 잊을 수가 없다."고 발언, 蘇聯의 役割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던 종전의 입장과 비교할 때 蘇聯에 접근하려는 北韓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日本朝鮮研究所(1985, No.255), pp.8~9 및 EIU (1985, 3), p.31 참조).

³⁴⁾ 北韓과 蘇聯은 1986~90년 기간동안 쌍방의 貿易量을 1981~85년 수준의 2배로 증가시킬 것을 협정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蘇聯은 北韓의 對蘇聯 債務償還의 遲延을 방지하기 위하여 蘇聯의經濟技術協力에 의하여 北韓에 건설된 工場들로부터 5년 동안에 걸쳐 연간 바테리 100萬개, 소형전기모터 100萬개, 볼베어링 1,000萬개 및 알루미늄 2萬톤을 蘇聯에 輸出하도록 하여 債務를生產品으로 辨濟하는 制度를 동시에 締結하고 있다(EIU(1987, 2), p,33 참조].

³⁵⁾ 蘇聯의 極東아시아政策 3大戰略目標는 1) 東北아 시아에 있어서 美國 軍事力의 牽制 및 除去 2) 中共의 威脅牽制 3) 日本의 威脅抑制이다(Zagoria(1982), pp.258~266 참조).

³⁶⁾ 日本貿易振興會(1987), pp.11~14 참조.

北韓에 대한 軍事援助,經濟支援,雙務的바터 交易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軍事援助 側面을 보면 지금까지 中共의 對北韓 軍事援助規模는 베트남 다음으로 13~15億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美·中 共 關係正常化가 이루어지던 1970~71년간 정 점에 달했던 中共의 對北韓 軍事援助는 1978 년부터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였고 1982년 이 후에는 無償軍事援助가 완전히 끊긴 상태이 다³⁷

한편, 中共은 第11期 黨中央委 3次全體會議 (1978, 12)에서 文化大革命의 弊害를 시인하고 實用主義路線을 채택, 理念보다 實利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對外政策을 전환하고 있다. 對韓牛島政策에 있어서도 北韓과의 關係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韓國과의 關係改善을통해 實利를 획득함과 동시에, 北韓에 대해서는 實用主義로의 轉換을 권고하고 있다.

韓國과 中共과의 關係는 美國과 日本에 의해 신중히 접근이 중재되어 왔다³⁸⁾. 1981년부터 韓·中共間의 間接交易이 시작되고, 1983년 5월 中共民航機 被拉事件으로 직접 교섭이 이루어진 이래 中共의 서울 아시아競技大會 參加(1986), 中共僑胞의 母國訪問 등 관계개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멀지 않은장래에 韓·中共間의 直接交易도 가능하리라고보고 있다. 中共의 韓國 技術에 대한 관심과 값싸고 풍부한 원료와 방대한 잠재적 시장을 갖고 있는 中共에 대한 韓國側의 관심에서 출발한 韓國과 中共間의 交易은 현재 홍콩, 日

本, 싱가포르를 통한 間接交易이 대부분이나 石炭, 옥수수, 原油 등 特定物品은 直接交易 에 가까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³⁹⁾.

南·北韓 對中共貿易現況은 〈表 7〉과 같다. 먼저 최근 北韓과 中共의 貿易關係를 보면 1986년 9월 향후 5년간(1987~91)의 雙務貿易協定의 再契約이 이루어졌으나, 1979년 北韓의 對中共 輸出 3.3億달러, 輸入 3.2億달러에비하여 1986년 北韓의 對中共貿易은 輸出 2.8億달러, 輸入 2.5億달러로 交易量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반면 韓·中共間 貿易은 1982년초 北韓의 抗議로 잠시 중단된 적도 있지만그 후 계속 증가하여 1986년에 약 8億달러로 北韓과 中共間의 貿易額 5.2億달러를 훨씬 상회하였고, 1987년에는 10億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0).

이와 같은 韓・中共間 關係改善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北韓의 蘇聯接近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北韓의 움직임에 대해 中共은 커다란 우려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中共은 첫 째, 北韓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는 생활습관에서나 관념상으로 蘇聯보다는 中共 에 더 가까와질 수밖에 없다는 것, 둘째, 北 韓이 蘇聯에 대해 접근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蘇聯으로부터 얻는 도움은 극히 한정되어 있 다는 점, 세째, 北韓의 입장에서도 中共 혹은 蘇聯의 어느 한쪽에만 접근함으로써 다른 한 쪽으로부터 배척받는 행동은 택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41). 新華社通信에 따 르면 1985년 1월 17일 北韓에서 中共과 北韓 間의 經濟援助協定이 체결되었고, 상세한 것 은 보도되지 않았으나, 中共은 北韓에 종전과 같이 原油를 공급하고 輕工業施設을 제공하기

³⁷⁾ 吳鎭龍(1987)참조.

³⁸⁾ 金一平(1984), pp.14~24 참조.

³⁹⁾ 金容在(1985), pp.65~71 참조.

⁴⁰⁾ 日本貿易振興會(1987), pp.9~11 참조.

⁴¹⁾ 구체적인 내용은 韓國日報(1985, 9, 10) 참조.

〈表 7〉 南•北韓 對中共交易現況

(단위:百萬달러)

輸出 輸入 計 輸出 輸入 1981 n.a. n.a. n.a. 231 300 1982 210 280 490 304 285	‡ 1)
	. 計
1982 210 280 490 304 28	531
1302 210 200 130	585
1983 150 289 439 254 273	527
1984 259 339 598 272 226	498
1985 174 308 482 245 239	484
1986 n.a. n.a. 800 275 246	515

註:1) 北韓의 貿易統計値는 貿易相對國에서 발표한 統計資料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한 北韓과 中共間의 交易은 社會主義國家間의 交易이므로, 北韓의 對中共輸出=中共의 對北韓輸入, 北韓의 對中共輸入=中共의 對北韓輸出이라는 방법으로 도출한 數值임.

資料: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86. 日本貿易振興會,『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87. 6,

로 하였다고 알려졌다42) 현재 中共의 韓半島 에 대한 입장은 韓半島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면 美・中關係는 다시 악화되고 中共의 開放政 策 및 近代化政策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 문에 中共은 美國과 협조하여 한반도의 緊張 緩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편 中共의 現經濟發展方向은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對北韓 經濟協力關係의 弱化를 가져오 리라고 예상된다. 첫째, 中共의 經濟運營이 投資財源, 原資材, 에너지 등을 가급적 효율 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北韓과의 政治的 紐帶關係를 위해 과거와 같이 많은 원 조를 할 수 없으며, 둘째, 超過需要壓力에 부 딪친 中共經濟는 정치적 목적의 경제협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고, 對美•蘇 等距離外交를 통해 이미 국방예산감소에 성공한 中共은 무 리한 경제지원 없이도 변방에 대한 戰爭抑制 力을 강화했으며, 세째, 경제적 차원에서 이 미 體制的 敵이 없는 상황을 맞이한 中共이

2. 其他國과의 經濟關係

日本은 北韓의 對西方交易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고, 70년대 중반 이후 北韓의 外債支拂延期事態 이후에도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日本·北韓間 交易의 상당부분이 朝總聯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交易相對國으로 남아 있다. 최근 日本과 北韓의 交易은 〈表 4〉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 5.8億달러에 달해 정점을 이루었고 그후에도 연평균 4億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合營法을 통한 對外開放政策과 北韓・中共間의 關係惡化는 日本의 北韓接近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日本은 北韓과의「民間漁業協定」再締結(1984.10), 對北韓制裁措置의 解除(1985.1), 日本社會黨 人士의 北韓訪問(1984.11) 및 日本社會黨의

特定國家에 대한 원조란 부담을 질 때는 특수 성과 함께 엄격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

⁴²⁾ EIU(1985. 2), p. 39 참조.

勞動新聞 代表團 초청, 日·北韓間 經濟交流擴大를 위한 南海電鐵會長의 北韓訪問(1985) 43, 日朝貿易會 會長의 平壤訪問(1986) 등 對北韓接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對北韓關係에는 北韓이 1976년 이후 總 851億엔에 달하는 對日負債를 아직 상환하지 못한 점, 北韓과 日本間에 국교가 없는 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日本이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때 반드시 韓國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으므로 日本과北韓과의 관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北韓의 第3世界와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北韓은 70년대 중반 이후 외채문제로 對西方交易이 벽에 부딪치게되자, 1978년 이후 第3世界로 交易 및 經濟協力路線을 전환, 南南經濟協力에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는 韓國을 의식하여 세계 100여개국과의 외교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40) 정 치적인 목적과 對西方 經濟協力路線이 차단된 상태에서 北韓이 閉鎖經濟가 갖는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第3世界와의 關係改善을 통 한 對外經濟協力路線의 多元化가 필요하다는 경제적 목적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 北韓 은 石油輸入의 댓가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시 멘트를 수출하고 이란에 대해 1982년 이후 연

V. 結 論

北韓이 第3次7個年計劃(1987~93)의 對外經濟協力部門에서 資本主義國家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활발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음은 지금까지 극히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北韓으로서는 상당한 자세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이와 같이 자세변화는 基調的으로 中共과 같이 實用主義로의 修正이나 開放化가 결코 아니고 硬直된 北韓社會의 構造的 沈滯를 타개하기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여 第3次7個年計劃目標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北韓의 對外合作投資誘致를 어렵게 하는 要因으로서 北韓經濟體制 및 그의 運用上의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보편적 현상들인 관료적인타성, 부문간의 불균형, 생산품의 품질저하등이지만, 이 외에도 北韓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정치목적에 대한 經濟의 隷屬化, 지나친 自立·對內指向的 經濟政策 등을들 수 있다. 즉 北韓經濟의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엄격한 정치적 통제는 北韓產業의 國際競爭力을 상실케 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없으면 非效率과 硬直性을 야기시켜 北韓經濟體制의 危機를 더욱

간 4億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고⁴⁵⁾ 있으며, 印度에 대해서는 기술협조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주로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農業技術支援 등 여러 가지 원조를 하고 있다.

⁴³⁾ 여기서는 北韓과 日本의 技術協力 및 北韓의 合 營法發表에 따른 日本企業과의 合作投資에 대해 논의하였다[자세한 내용은 每日經濟新聞(1985 . 9, 18) 및 東亞日報(1985, 9,26) 참조].

^{44) 1984}년말 현재 修交現況은 韓國 119개국, 北韓 105개국이다. 여기서는 領事關係만 맺고 있는 경우는 제외시켰다(日朝貿易會(1985, No. 303), pp. 9~12).

⁴⁵⁾ EIU(1985), pp. 59~61 참조.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그동안 경제적 성과에 기여해 온 大衆組織의 役割, 즉 이데올로기 및 大衆動員手段에는 전적인 의존은 이미 그효과면에서 限界收益遞減의 段階에 도달하였다. 즉 이러한 수단들은 外向的인 初期成長段階에 있는 後發開途國의 경우에는 적절한 전략일지 모르나 앞으로 內的인 成長段階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능률증대와 기술진보 등에 역행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北韓의 貿易政策은 그 자체가 國際收支 均衡을 전제로 하는 縮小均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韓國의 開放體制와는 貿易政策上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北韓經濟는 그동안경제발전에 대해 경직적인 貿易體制를 택하여왔으나 70년대부터는 불가피하게 경제성장을지원하는 開放體制로 부분적인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國際收支의 不均衡, 對外支拂能力의 惡化 등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면서 커다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對西方 債務問題로 北韓經濟는 70년 대 중반 이후 自給自足 中央集權的 經濟體制 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⁴⁶, 이로 인해 第2次7個年計劃(1978~84)에도 실패한 北韓은 1984년 9월 合營法을 공포하는 등 對外開放化 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北 韓이 合營法을 제정하고 西方諸國과의 합작교 섭을 끈질기게 전개하려고 하는 배경으로는 北韓 對內經濟의 限界性, 共產圈經濟에 대한 期待難 등을 들 수 있는데, 對內經濟의 限界 性은 경제운용체제의 모순, 경제개발전략 및 정책의 불합리성, 생산기반의 낙후성 등으로 집약할 수 있고 共產圈經濟에 대한 期待難은 中共 등 共産圏經濟體制의 變化, 西方經濟에 대한 共產圈經濟의 상대적 열세 등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合營法 制定의 배경은 工 業設備의 老朽化로 인한 低生產性, 經濟的 落 後性에 의한 對南優位喪失과 그동안 누적된 外債事情 惡化 등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北韓의 合營法은 北 韓市場의 불확실성과 70년대의 외채상환 불이 행 등으로 인한 서방세계의 계속적인 불신감 으로 西方諸國은 北韓과의 合作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經濟特別區域의 設置 및 投資에 대한 안정성 보장의 미비로 北韓의 計 劃經濟體制와 西方經濟가 아직 원만히 접목될 수 없는 여전이므로 西方先進國은 北韓의 合 營法에 대하여 적극적일 수 없다고 하겠다.

北韓經濟에서 貿易의 役割은 內部經濟成長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北韓 貿易構造의 分析을 통해 北韓經濟 全體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北韓의經濟現實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北韓貿易의일반적인 제약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輸出의 경우 한 나라의 輸出은 그 나라 경제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생산시설 및 기술수준이 낙후된 北韓의경우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輸入設備投資가

⁴⁶⁾ 여기서 유의할 점은 北韓은 「主體」思想에 의한 自立經濟建設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北韓 經濟建設에 있어서 外援의 依存度는 크다. 모스크바放送은 1986년 10월 中共首相의 北韓訪問時期와 때를 같이하여 北韓에 대한 蘇聯의 工場 設備支援의 예로서 北韓 總鐵鋼生產의 28%, 酸化鐵生產의 29% 및 각종 石油製品生產의 50% 및 總電力生產의 66%를 蘇聯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北韓當局의 언급은 없다[EIU(1986, 4), p.33 참조].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과 투자를 제약하는 GNP의 20~25%를 차지하는 과도한 軍事費 支出, 에네지供給의 隘路 등이 생산력 증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또한 輸入의 制約要因으로는 輸入에 필요한 외화부족과 北韓의 전반적 기술수준의 낙후 및 사회간접자본 부족으로 인한 경제의 吸收能力(absorptive capacity)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약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따르지 않는 한 北韓의 貿易增大, 나아가 北韓의 經濟成長은 그들이 원하는 목표와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北韓의 對西方圈 輸出入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첫째, 北韓의 貿易基調는 短期的 輸出入 均衡政策에 기반을 두고 있어 1978년 이후에 는 貿易黑字를 나타낸 적도 있지만, 對西方側 과의 貿易去來는 지속적인 貿易赤字를 나타냈 고,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는 貿易赤字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北韓의 輸入構造는 機械類 및 運輸裝備(SITC 7)와 原料別製品(SITC 6), 그리고 化學品(SITC 5)의 輸入이 1980년에 전체의 75.3%를 차지하여 주로 完製品 및 半製品의 輸入形態를 나타내고 있고, 輸出構造는 非鐵金屬 등 原料別製 品(SITC 6), 食料品類(SITC 0,1,4) 및 鑛產品類 등 非食用原料(SITC 2)가 全體輸出의 94.7%를 차지하여 1次產品과 半製品이 주종을 이루는 輸出形態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세째, 北韓은 현재 추진중인 第3次7個年計劃의 수행 및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을위해, 그리고 1984년에 끝난 第2次7個年 計劃이 실패한 주요 원인의 하나가 생산시설 및기술수준의 낙후였다는 점에서도 西方側으로부터의 技術 및 資本設備의 輸入이 필요하고여겨지는데 債務問題로 인한 신용실추가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최근 北韓의 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의 하나인 北韓의 對外開放化政策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對內·外的 與件上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對外經濟協力의 必要性과 아울러 外債問題解決을 위해 合營法制定 및 貿易擴大政策을 실시한 것은 그동안「自力更生原則」과「人民經濟의 主體化」를 표방해 온 北韓으로서는 하나의 큰 변화로서 조만간 있을지도 모를 金日成一金正日間의 權力世襲에 따른 北韓政治體制의 變化方向과 연관시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金永圭,「北韓의 對西方經濟接近 動向分析」, 『統一論叢』, 第5卷 第1號, 國土統一院, 1985, pp. 165~189.

金容在,「韓·中共의 交流現況」,『統一問題』, 第17輯, 國土統一院, 1985. 2, pp. 65 ~71. 金一平, 「中國の韓半島政策」,『コリア評論』, No. 270, 民族問題研究所, 1984. 11, pp. 14~24.

民族問題研究所, 『コリア 評論』, No. 270, 1984. 11.

小村武樹、「北朝鮮の第三次七か年計劃ガ目指

- すもの」, 『コリア評論』, No.301, 民族問題研究所, 1987. 7, pp.18~29.
- 吳鎮龍,「中共의 對北韓經濟協力」, 學術會議 資料,日海研究所,1987.8.
-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82, 1983a, 1987.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1983b.
- 日本朝鮮研究所, 「手きびしいソ連の態度」, 『現代コリア』, No. 255, 1985. 10.
- 日朝貿易會,『日朝貿易』, 1984(No.297), 1985 (No.303), 1986(No.328).
- 佐滕勝巳,「展望이 흐린 朝・日貿易」,『共産圏 研究』, 1987. 7, pp.76~80.
- 河合弘子,「合營法の背景と問題點」,『現代コリア』, No.247, 日本朝鮮研究所, 1985. 1, pp. 20~21.
- 韓國開發研究院,『經濟運用問題에 관한 短期 政策研究』, 1983.
-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_

- U.S., East-West Trade: The Prospects to 1985, 1982, pp. 182~202.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IU, Country Profile, China, North Korea, 1986 ~ 1987, 1986.

- ————, Quarterly Economic Review, China, North Korea, Annual Supplement, 1985.
- Wilczynsky, J.,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1970.
- Zagoria, Donald S.,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附表 1> 北韓의 圏域別 貿易推移, 1971~1985

																(단위	: 百萬달러	म, %)
			華	井庵	噩					蒸	西方	2				總質	易額	
 _	雧	丑	曫	7	貿易		+	曫	丑	华	7	貿易	,,,,,,	there	42,111		-41 B	1 TE V
	金額	構成比切	金額	構成比의	收支	金額	構成比30	金額	構成比功	金額	構成比20	收支	金額	構成比30	H F	く	貝勿収又	ĮI ĮI
1971	245.2		ļ	(88.4)	-247.9	738.3	(84.8)	6.79	(21.7)	64.5	(11.6)	3.4	132.4	(15.2)	313.1	557.6	-244.5	870.7
1974	424.6				ı	999.2	(48.8)			782.6		-515.4	1,049.8		691.8	1,357.2	-665.4	2,049.0
1975	482.5				ı	1,117.4	(24.0)			520.4		-197.0	843.8		802.9	1,155.3	-349.4	1,961.2
1980	865.6					1,804.9	(53.8)			771.0		4.9	1,546.9		1,641.5	1,710.3	-68.8	3,351.8
1981	661.1				ı	1,429.0	(57.3)			644.8		-244.9	1,064.7		1,080.0	1,413.7	-333.7	2,493.7
1982	873.3					1,651.4	(9.09)			657.5		-242.0	1,073.0		1,288.8	1,435.6	-146.8	2,724.4
1983	7.957	(8.09)	684.6			1,441.3	(49.6)			975.5		-487.1	1,463.9		1,245.1	1,660.1	-415.0	2,905.2
1984	766.0					1,462.2	(21.8)			843.3		-325.2	1,361.4		1,284.1	1,539.5	-255.4	2,823.6
1985	823.9		_		1	1,942.4	(61.0)			790.4		-338.1	1,242.7		1,285.2	1,899.9	-614.7	3,185.1

註:1) 總輸出額에 대한 비율임.

3) 總貿易額에 대한 비율임. 2) 總輸入額에 대한 비율임.

資料: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0~1986.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New York, 1980. 7, 1982. 8, 1985. 7. 日本貿易振興會,『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81, 1987.

北韓의 資料源別 貿易規模比較, 1970~1985 〈附表 2〉

	國	國土統一院即		Rand	and Corporation21	tion ²⁾		C. I. A.3)			E. I. U4)		תיירי	美國國會的		本	本研究의 推計	the
	輸出	輸入	. 貿易收支	輸出	輸入	貿易收支	輸出		貿易收支	輸出	輸入	貿易收支	輸出	輸入	(貿易收支	中	輸入	貿易收支
1970	366.0	439.0	-73.0	599.6	381.5	-81.9	324	403		:	:	:			:	341.0	377.5	-36.5
974	677.2	1,303.1	-625.9	8.629	1,228.2		208	1,295	•	683.9	•					691.8	1,357.2	-665.4
975	819.0	1,092.7			1,071.6		827	1.110		806.8					-216	805.9	1,155.3	-349.4
1979	1,150.0	1,160.0	-10.0	1,611.5	1,413.7		1,430	1,489		1,552.9	1,336.9	216.0	_	1,300		1,489.0	1,379.9	109.1
1980	1,441.0			:	:	:	1,995	1,915	80	:			•		:	1,641.5	1,710.3	-68.8
1985	:	•	:	•	:	:	:	:		:	:	:	:	:	:	1,285.2	1,899.9	-614.7

註:1) 國土統一院, 『南·北韓總力趨勢比較』, 1982, pp.100 ~102.

2) 美國 The Rand Corporation 內部資料.

3) USCIA,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2.

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rterly Economic Review of China, North Korea, Annual Supplement, 1982, p. 34.

5)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East-West Trade: The Prospects to 1985, 1982, p.183.

							(단위 :	(단위:百萬달러, %)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H *	31.3(28.8)	58.9(18.2)	163.7(21.1)	126.8(30.2)	138.2(33.3)	114.7(23.5)	132.0(25.5)	163.8(36.2)
西獨	11.5(10.6)	47.0(14.5)	172.0(22.2)	50.4(12.0)	137.4(33.1)	130.7(26.8)	135.0(26.1)	56.2(12.4)
교랑스	10.3(9.5)	38.2(11.8)	17.4(2.2)	4.6(1.1)	2.8(0.7)	3.5(0.7)	3.4(0.7)	3.9(0.9)
オナナ	I	0.5(0.2)	0.4(0.0)	0.1(0.0)	ı	0.1(0.0)	0.3(0.1)	0.4(0.1)
오스트리아	0.3(0.3)	0.9(0.3)	0.5(0.1)	0.2(0.0)	0.4(0.1)	0.3(0.1)	3.2(0.6)	0.2(0.0)
占기의	1.6(1.5)	1.3(0.4)	0.2(0.0)	1	0.2(0.0)	0.1(0.0)	0.2(0.0)	1
이탈리아	0.3(0.3)	2.2(0.7)	13.7(1.8)	3.0(0.7)	1.3(0.3)	2.2(0.5)	1.5(0.3)	1.0(0.2)
뇌달란드	1.0(0.9)	4.3(1.3)	0.2(0.0)	0.2(0.0)	0.1(0.0)	0.2(0.0)	0.2(0.0)	0.3(0.1)
스페인	1	1.0(0.3)	1.3(0.2)	1.1(0.3)	1.1(0.3)	1.1(0.2)	1.8(0.3)	2.2(0.5)
스웨덴	1	0.5(0.2)	1.3(0.2)	0.6(0.1)	0.5(0.1)	0.4(0.1)	0.4(0.1)	0.5(0.1)
스위스	0.5(0.4)	0.4(0.1)	44.8(5.8)	0.3(0.1)	ı	1	0.1(0.0)	0.2(0.0)
英國	1.3(1.2)	2.9(0.9)	0.8(0.1)	1.2(0.3)	0.4(0.1)	0.5(0.1)	0.8(0.2)	2.6(0.6)
기타 OECD國	40.2(37.0)	3.1(0.9)	9.9(1.2)	1.1(0.3)	1.9(0.4)	1.9(0.4)	4.5(0.8)	0.8(0.2)
OECD國 合計	98.3(90.5)	161.2(49.8)	426.2(54.9)	189.6(45.2)	284.3(68.4)	255.7(52.4)	283.4(54.7)	232.5(51.4)
방글라데시	I	0.2(0.1)	7.3(1.0)	4.6(1.1)	3.3(0.8)	5.0(1.0)	10.6(2.0)	18.5(4.1)
邻	3.6(3.3)	6.3(1.9)	26.4(3.4)	12.8(3.0)	13.4(3.0)	11.4(2.3)	21.2(4.1)	18.3(4.0)
싱가포르	3.2(3.0)	10.5(3.3)	8.5(1.1)	4.7(1.1)	9.5(2.3)	4.3(0.9)	4.5(0.9)	6.1(1.3)
印度	1	4.8(1.5)	49.8(6.4)	22.9(5.5)	20.6(5.0)1)	22.6(4.6)1)	23.8(4.6)1)	22.6(5.0)1)
인도네시아	I	91.4(28.3)	36.2(4.7)	12.6(3.0)	8.4(2.0)	6.7(1.4)	11.0(2.1)	4.2(0.9) ²⁾
말레이지아	I	1.9(0.6)	2.2(0.3)	6.7(1.6)	1.2(0.3)	1.3(0.3)	0.8(0.2)	0.4(0.1)
구웨이트	ı	1	ı	ı	1	107.9(22.1)	97.1(18.7)1)	77.7(17.2) ¹¹⁾
사우디 아라비아	1.1(1.0)	8.1(2.5)	183.3(23.6)	116.4(27.7)	21.0(5.1)	2.8(0.6)	7.3(1.4)	5.8(1.3)1)
<u>이 권</u> 트	1.2(1.1)	24.7(7.6)	1.3(0.2)	3.8(0.9)	2.7(0.6)	5.1(1.0)	0.1(0.0)	0.1(0.0)1)
기中開途國	1.2(1.1)	14.3(4.4)	34.7(4.5)	45.8(10.9)	51.1(12.3)	65.6(13.4)	58.3(11.3)	66.3(14.7)
開途國 計	10.3(9.5)	162.2(50.2)	349.7(45.1)	230.3(54.8)	131.2(31.6)	232.7(47.6)	234.7(45.3)	220.0(48.6)
對西方圈 合計	108.6(100.0)	323.4(100.0)	775.9(100.0)	419.9(100.0)	415.5(100.0)	488.4(100.0)	518.1(100.0)	452.5(100.0)

註:1) 北韓의 貿易相對國도 해당연도의 統計值를 발표하지 않아 그 이전의 3년간 統計를 기준으로 IMF에서 추정한 것임. 2) 5개월 이하만 統計值가 이용가능하고 나머지 경우는 IMF에서 추정한 경우임. 資料: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7, 1979, 1986. 日本貿易振興會,『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堂』, 1987.

< 附表 4) 北韓의 對西方圏 輸入推移, 1970~1985

							(단위 :	(단위:百萬달러, %)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н 4	25.7(42.4)	199.8(38.4)	411.7(53.4)	320.1(49.6)	344.5(52.4)	359.8(36.9)	280.2(33.2)	271.8(34.4)
西獨	8.1(13.4)	83.3(16.0)	36.6(4.7)	33.0(5.1)	36.8(5.6)	25.0(2.6)	24.9(3.0)	27.0(3.4)
旧祀人	5.0(8.2)	24.6(4.7)	5.3(0.7)	75.8(11.8)	49.0(7.5)	50.7(5.2)	14.8(1.7)	8.6(1.1)
개나다	ı	5.3(1.0)	ı	İ	0.1(0.0)	1.1(0.1)	2.2(0.3)	1.0(0.1)
오스트리아	4.3(7.1)	26.5(5.1)	5.4(0.7)	19.0(2.9)	6.6(1.0)	(9.0 0.9)	6.4(0.8)	9.5(1.2)
벨기의	0.1(0.2)	6.9(1.3)	2.4(0.3)	5.3(0.8)	2.4(0.4)	2.5(0.3)	2.0(0.2)	1.1(0.1)
이탈리아	1.7(2.8)	13.2(2.5)	11.4(1.5)	12.1(1.9)	16.4(2.5)	12.2(1.3)	10.0(1.2)	14.4(1.8)
네덜란드	0.1(0.2)	1.5(0.3)	5.3(0.7)	0.4(0.1)	0.9(0.1)	2.4(0.2)	3.0(0.3)	0.7(0.1)
스 프 오	1	0.4(0.1)	3.9(0.5)	0.8(0.1)	4.9(0.8)	0.1(0.0)	0.3(0.0)	2.7(0.3)
人。但	0.1(0.2)	73.3(14.1)	8.5(1.1)	6.9(1.1)	(0.0)	19.5(2.0)	3.5(0.4)	1.3(0.2)
수 소 스	0.2(0.3)	11.1(2.1)	9.9(1.3)	7.7(1.2)	16.9(2.6)	8.7(0.9)	8.1(1.0)	3.1(0.4)
茶國	0.4(0.7)	1.7(0.3)	2.5(0.3)	1.4(0.2)	7.5(1.1)	4.2(0.4)	4.4(0.5)	3.6(0.5)
기탁 OECD國	6.1(10.1)	27.0(5.2)	46.4(6.0)	10.2(1.6)	13.3(2.0)	15.3(1.6)	26.0(3.1)	27.9(3.5)
OECD國 合計	51.8(85.5)	474.6(91.2)	549.3(71.2)	492.7(76.4)	505.3(76.9)	507.5(52.0)	385.8(45.7)	372.7(47.2)
방글라데시	ı	I	3.2(0.4)	1.5(0.2)	1.8(0.3)	0.3(0.0)	0.2(0.0)	5.1(0.6)
的	0.3(0.5)	1.9(0.4)	(28)6.99	49.1(7.6)	50.6(7.7)	35.8(3.7)	52.5(6.2)	55.6(7.0)
싱가포르	4.3(7.1)	8.8(1.7)	36.8(4.8)	39.1(6.1)	31.3(4.8)	16.8(1.7)	26.0(3.1)	24.9(3.2)
印度	0.8(1.3)	8.6(1.6)	39.7(5.1)	4.4(0.7)	4.0(0.6)1)	4.4(0.5)1)	4.6(0.5)1)	$4.4(0.6)^{1)}$
인도네시아	1	I	1.5(0.2)	ļ	1.0(0.1)	4.4(0.5)	17.8(2.1)	$10.7(1.4)^{2}$
말레이지아	1	l	21.7(2.8)	2.7(0.4)	13.0(2.0)	19.0(1.9)	13.0(1.5)	1.4(0.2)
구웨이트			I	i	1	347.3(35.6)	312.5(37.1)	$281.3(35.6)^{13}$
사우디 아라비아	ı	1	0.2(0.0)	0.7(0.1)	0.1(0.0)	$0.1(0.0)^{1}$	$0.1(0.0)^{1}$	$0.1(0.0)^{1}$
<u> </u>	1.6(2.6)	8.9(1.7)	12.1(1.6)	18.1(2.8)	15.4(2.3)	10.9(1.1)	1.6(0.2)	$1.5(0.2)^{1)}$
기中開途國	1.8(3.0)	17.6(3.4)	39.6(5.1)	36.5(5.7)	35.0(5.3)	29.0(3.0)	29.2(3.5)	32.7(4.1)
開途國 計	8.8(14.5)	45.8(8.8)	221.7(28.8)	152.1(23.6)	152.2(23.1)	468.0(48.0)	475.5(54.3)	417.7(52.8)
對西方圈 合計	60.6(100.0)	520.4(100.0)	771.0(100.0)	644.8(100.0)	657.5(100.0)	975.5(100.0)	843.3(100.0)	790.4(100.0)

註:1) 北韓의 貿易相對國도 해당연도의 統計值를 발표하지 않아 그 이전 3년간 統計를 기준으로 IMF에서 추정한 것임. 2) 5개월 이하만 統計値가 이용가능하고 나머지 경우는 IMF에서 추정한 것임. 資料: (附表 3)과 동일.

日本 經濟社會의 動因과 進化

李 奎 億

日本이 先進國 追及을 國民的 努力으로 추구하여 음에 있어 이를 뒷받침한 日本의 社會組織的 特性은 適應的 集團主義로서 기업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經營制度·企業間關係의 諸側面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人口構造·技術 및 產業·意識構造의 變化는 日本의 경제사회를 움직여 온 전통적인 제도 및 조직의 논리와 運動模式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日本의 經濟先進化가 실질적으로 끝남과 동시에 日本을 中心對象으로 하는 國際經濟의 構造的·秩序的 再編成이 촉구되고 있다. 日本은 이러한 전환기에 직면하여 국내외적으로 發想과 行動의 根本的인 변화를 지도하고 있으며, 日本의 將來는 이것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韓·美·日 관계의 전개 및 우리나라의 發展方向에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며, 日本經濟社會의 動因을 이해하려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I. 序 言

1970년대 이래 점증하는 國際政治·經濟體制의 多極化傾向과 汎世界的으로 확산되어 가는 무역마찰 속에서, 國際經濟關係는 각국내 個

別主體의 自由選擇에 따른 財貨와 서비스의 국가간 흐름의 量的合計라는 차원을 넘어 총체적인 國家經濟間의 多面的 關係를 중시해야하는 국면으로 변모하여 왔다. 최근 수년간의 國際經濟關係는 換率調整·貿易自由化 등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제적 마찰과 이를 自國의 利益에 부합하도록 해결하려는 각국 政府間의 通商交涉 및 國內經濟構造調整을 배경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은 근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특히 1986년에 經常收支의 黑字가 시현됨으로써 韓·美·日 三角關係가 크게 부각되어 왔다. 이들 세 나라는 다같이 民主

筆者:本院 先任研究委員

^{*}筆者는 本稿의 作成過程을 통하여 資料의 準備·整理에 勞苦를 다한 李仁淑 研究員, 많은 有益한 助言을 아끼지 않은 李在亨 主任研究員과 金哲鍾 研究員, 그리고 反復되는 原稿의 打字와 校正에 精誠을 다한 吉賢實 研究助員에게 깊이 感謝하는 바이다.

資本主義를 지향하면서 韓美, 美日間에 防衞協定도 맺고 있어 政治理念上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韓國과 日本의 對美貿易黑字 및 韓國의 對日貿易赤字가 방대한 규모로 계속되어 경제관계 면에서는 심각한 불균형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經濟關係의 底流에는 2次大戰中 日本의 對美挑戰과 美國의 勝利, 日本의 韓國에 대한 文化的·人種的 根源意識의 潛在와 近世의 侵略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연유하는 미묘한 감정적 요인의基層도 존재하여 있다. 그 밖에도 각국의 정치·사회적 제도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國際經濟問題의 解決을 經濟의 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美國과 日本과의 雙方的 經濟關係를 韓·美·日 三角關係를 중심으로하는 包括的인 構圖 속에서 해결하여야 함과 동시에 각국의 政治·社會的 根底의 形成과 그進化方向에 대하여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本稿는 이러한 취지에서 韓·美·日 經濟關係를 조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日本의經濟·社會의 動因과 그 進化方向을 論議하고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示唆點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먼저 第II章에서는 適應的 集團主義라고 규정할 수 있는 日本의 社會組織的 特性과 그의미를 규명하고 第III章에서는 최근의 소프트 化를 중심으로 하는 日本의 經濟社會的 變化 過程下에서 일본인의 意識構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다음 第IV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日本企業의 經營制에 分析의 焦點을 두어 그 구조적 특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금후의 進化方向을 論議하고자 한다. 이어 第V章에서는 日本 產業組織의

특징인 下請制度,企業間 連結組織,企業集團 등 企業間 組織 및 關係의 變化를 歷史的·社會組織的 觀點에서 解剖한다. 끝으로 第VI章에서는 綜合的인 視角에서 日本의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政策基調를 검토함으로써 結言에 갈음한다.

II. 日本의 社會組織的 特性

日本社會의 한 가지 특징은 單一宗敎의 압 도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現代日 本社會에 아직도 뿌리깊게 내재하여 있는 儒 教的 屬性의 源流는 徳川家康의 幕府設置 (1603년)이후의 江戸時代에서 찾을 수 있다. 幕府는 忠誠과 奉仕, 責任感, 紀綱・訓練 및 匠人性의 尊重이 정치질서의 安定的 基底를 마련하는 데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하 여 儒教 특히 中央集權國家의 哲學的 基礎를 제시한 朱子學的 思考方式의 擴散을 강조하였 다. 한편 日本의 支配階層인 侍(사무라이:武 士)階級은 幕府體制下에서는 그들 계급의 존 재의의가 감퇴된 위에 특히 下級武士의 경우 에는 지위해체의 우려가 강하여 民間官僚階層 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교육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 戰爭遂行者로서 학문적 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이들은 결국 支配는 德 에 의하여야 한다는 實用的 儒學을 신봉하게 되었다. 日本近代化의 결정적인 계기인 明治 維新(1868년)도 日本에 문호개방의 압력을 가 한 외세에 대항하여 日本의 國家的 獨立性을 유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儒教的 價值觀을 가진 下級武士層이 주동하여 성취한 것이

다1).

이들은 實力·成果基準에 입각한 인재등용의 理想을 추구하였으나 동시에 그들의 직접적 支配者인 大名(다이묘:封建領主)에 대한 충 성심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舊體制가 완전 히 붕괴되면서도 大名의 입장에서는 사실보다 상징성을 강조하는 儒敎傳統의 영향으로 체면 유지를 할 수 있었고 권력을 포기하는 대신 일정한 社會的 地位와 富를 획득하고 이를 企 業化하는 데 성공한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明治期의 產業指導者들은 무사계급 출신이 많 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공공성을 존중하였고 특히 자신들과 기본적으로 같은 가치관과 계 급배경을 갖는 新體制의 政府官僚들과 쉽게 협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公式的 關係의 상급자를 위험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확립할 수 있는 下級者의 權利를 용인하는 것은 日本家族制度의特質에서 연유한다. 日本社會의 基礎單位인 '家'(이에)는 家族보다는 家系에 근접한 개념이다. 明治維新 이전에 家長은 家의 土地의所有者가 아니라 管理者로서 간주되었다. 家系世襲에 있어서 계승자는 반드시 남자이어야했으나 親子, 그 중에서도 長男일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家系繼承은 혈연보다는 법률적내지 계약적 성격이 강하였다. 즉 養子등 혈연관계가 없어도 일단 공식적으로 부모관계가

인정되면 家系繼承에 있어서 親子와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되는 개방적인 양자제도와 家系 繼承者의 선택에 있어서 능력을 중시하는 廢 嫡制度가 통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日本의 家에서는 長子相續에 근거한 家父長的 權威主 義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日本에서의 근대화는 實力主義(meritocracy)를 의미하였다. 明治維新을 수행한 下級武士들은 과감한 危險挑戰者로서 過去의 世襲的 地位의 維持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들에 있어서 實力이란 우월한 학식이나 덕망을 假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능력의 면에서본 업적을 의미하였다. 舊體制의 封建的 位階秩序는 明治維新과 함께 實力基準의 채용·승진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明治初期의 指導者들은 「和魂洋才」2의 기치 아래 日本의 근대화를 위한 학문적 기초를 해외에서 구하였다"3.

日本人은 教條的 宗教觀이 약하여 相衝的인 것을 區劃하고 分化하는 性向을 갖고 있다. 維新 初期의 근대화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주의의 편협성과 세계주의를 융해하려 하였으며 實力主義와 忠誠의 問題를 완전히 구분하였다. 충성은 자명한 가치로 용인될 수 있었지만, 일단 이것이 인정되면 可視的인 業績을 통하여 表出되어야 했다. 동시에 충성은 개인과 집단간의 가치기준의 合致를 요구하나, 日本의 家長이 반드시 우월자로서 명령복종만을 강요하지 않듯이 上級者는 下級者에게 창의와 노력을 요청하고 또한 이를 受容할수 있었다.

日本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사회는 힘의 두 가지 상이한 개념을 분리하고 양자간의 모 순을 부정함으로써 안정을 유지해 왔다. 明治 維新의 仁政思想에서처럼 응집된 국가적 힘

江戸儒學에 대한 朝鮮儒學의 寄與는 매우 크다. 이에 대한 概括的 論議는 上田正昭・姜在彦 (1985) 참조.

²⁾ Morishima (1982).

³⁾ 日本人의 精神 가운데에는 日本을 國家로 形成 시킨 先祖들이 渡來人의 子孫이었다는 記憶이 殘存하고 있어 日本의 支配者階級은 海外의 新 技術, 新文化의 吸收에 積極的이었다는 것이 日本文化의 한 가지 特徵이다. 梅原猛(1984) 참 조.

은 끊임없이 위대성과 완성을 추구하는 倫理 的 原則에 입각하여 전국민을 확대된 「家」로 結束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明示的이며 公式的인 차원에서의 힘은 예컨대 과거에는 日本帝國主義의 教條의 武士道의 힘, 終戰後 에는 民主主義의 理想과 같은 매우 추상적인 가치로 고취된 것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힘은 전통적인 은혜와 의리의 관념과 결부된 情緒的 執着 위에 형성된 매우 私的인 인간관 계의 틀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일 본인은 이러한 두 가지 다른 차원의 힘에 반 응하며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쉽 게 관찰할 수 있다. 日本의 政府組織은 외형 상 中央集權的인 樣態를 보일 수도 있지만 사 실상 지방관청도 중앙정부와의 교섭이나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 며, 같은 행정조직내에서도 下級部署가 행동 의 개시와 책임의 부담에 있어 비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日本人은 幼年期에 체험한 가정의 따뜻함과 안전을 중시하여 사회적 행동에서도 恩惠와 義理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는 그러 한 社會關係를 통하여 가정의 안전에 대한 潜 在的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 본인은 少年期부터 自己確認의 根據가 되는 歸屬集團의 境界內에서 동료와의 水平的 關係 와 윗사람과의 垂直的 關係간에 균형을 취하

4) 日語의 '무라'는 韓國語의 '마을'을 語源으로 한다. 도록 훈련을 받아, 사회내에서도 集團의 母性 的 權能者와의 結合 속에서 正體를 발견하려 고 한다.

이처럼 일본인은 歸屬集團의 範圍와 그 속에서의 자신의 位相을 분명히 하므로 '內'(우치)와 '外'(소토)를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家를 대상으로 하는 따뜻한 集團歸屬意識은 村(무라)⁴⁾ 段階에서의 競爭과 派黨造成의 필요성과 공존하여 있다. 이러한 競爭과 合意의 結合(combining of competition and consensus)⁵⁾이라는 二重性格 때문에 日本의 인간관계는 縱的分割構造를 갖는다. 예컨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縱的社會의 인간관계는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나, 縱的分割社會의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배타적 성격을 가지므로 他企業과는 격심한 경쟁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일본인에 있어서 敬畏心・服從 등 강한 형태의 감정이 거의 전적으로 現世의 現在關 係에 치중되어 있고 따라서 개인의 구체적인 역할에 매우 큰 정신적 집착을 갖는다. 이것 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일본인의 '아마에' (甘え:indulgence 또는 dependency wishes) 根性이다. 이는 단순히 少年期에 체험한 家의 安全性을 사회에서 재획득하려는 욕구를 넘어 상급자에게 愛情・忍耐・寬容・同情 및 典型的인 일본식의 상냥함을 기대하는 것이다⁶⁾. 하급 자는 상급자가 자신에 대하여 실망을 느꼈다 면 심한 罪意識을 갖게 되며, 거꾸로 상급자 는 이러한 敏感性을 이용하여 자신의 失望感 을 암시함으로써 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日本의 상급자는 하급 자의 감정에 민감해야 하며 그의 第一次的 義 務는 集團의 士氣를 유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⁵⁾ Pye(1985),

^{6) &#}x27;아마에'는 無力感과 사랑받으려는 欲求에서 發生하는 것으로서, 프로이트 心理學의 관점에서 보면, 喪失되어 버린 母子間의 準結合(quasiunion)을 회복하려는 欲求를 나타내는 것이라 고 한다. 이것은 夫婦間, 師弟間, 組織內의 上 下間 關係와 같은 成人間의 關係에도 반영된 다.

개인의사를 강요하지 않고 심지어는 정책방향 도 설정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指導者像은 禀議(링기)7)에 의 한 合意形成이라는 일본의 意思決定方法에도 나타나 있다. 日本式 禀議에 있어서 의사결정 은 하급부서의 하급자가 起案할 때 시작되며, 이는 位階를 통하여 上達되는데 상급자는 이 를 인정하거나 때때로 수정을 하기도 하여 部 署의 最高責任者에 도달할 때에는 거의 合意 에 가까운 것이 된다. 그 후에 該當文書는 다 른 關聯部署로 移送되어 그곳의 하급자로부터 마찬가지의 경로를 밟아 이에 대한 찬반 의견 을 收斂한다. 이를 위하여는 「네마와시」(根回 し)라는 모든 당사자간의 意見收斂 過程을 거 친다. 다시 말하여 公的關係와 私的關係를 존 중하면서 양자를 함께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반대를 최소화 내지 중화하면서 集團의 凝集力을 높이려는 것이 일본인의 행동양식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내에서 合意 를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나 일단 결정된 것은 매우 신속히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⁸⁾.

이러한 集團力學(group dynamics)은 일본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활용해 온 각 종「審議會」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60년대에 일부산업에서 의 過當競爭을 제거하고「新產業體制」를 형성 하기 위하여 소위「官民協助方式」에 의하여 產業政策을 시행하려던 것을 들 수 있다. 산 업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審議會에 다수의 민간인이 참여하여 政府가 산업정책을 통하여 產業組織에 개입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적지 않게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좀더기본적으로 審議會制度는 政策決定過程에 각계로부터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보의집중화와 분산화라는 양 방향에서의 전달을 통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각각 자신의 계획이나 태도를 相互調整할 수 있는「메카니즘」으로서 機能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일본인은 權威者에 대한 從屬欲求 때문에 集團의 合意에서 逸脫하거나 기대수준에 미달하지 않으려는 강한 心理的 衝動을 갖고 있다. 집단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硬直的이며 相爭的인 封建制下에서 형성되어 근대에는 軍國主義,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民主資本主義를 위하여 시대상황에 대 응하면서 계속 이어 오고 있다. 이것은 개개 의 일본인으로 하여금 각자의 集團歸屬感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유발하게 되었고 이것 이 나아가 국가적인 힘으로 응집되어 왔다 일본의 노동자들은 歐美에서는 수용될 수 없 는 기업의 여러 가지 압력을 비교적 불평없이 받아주는데 이것도 그들의 從屬倫理에 기인하 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企業에 대한 忠誠心과 上級者의 公平性에 대 한 信賴 때문에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업의 부단한 요구에 응하게 된다.

日本의 集團主義的 性向은 강력한 정치지도 자가 흔치 않다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指導力에 의존하기보

⁷⁾ 禀議는 國語로는 "웃어른이나 上司에게 글이나 말로 여쭈어 議論하는 것"을 意味하여 縱的關係를 强調하지만 日本語에서는 "官廳·會社 등에서 會議에 의하지 않고 係가 文案을 作成하여 關係者에게 돌려 承認을 구하는 것"으로서 橫的關係의 意味가 강하다. 禀議制가 效果를 가지려면, 頻繁한 對面接觸과 같은 非公式的인人間關係에 대한 강한 依存, 參與者間의 高度의 理解 및 價值觀 共有,明示的인 統制機能의不在 등을 前提로 한다.

⁸⁾ アレン・西山川明(1976).

다는 時間이 合意를 導出해 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遲延戰術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에서는 대체로 歐美의 契約社會와 달리 문제해결을 위하여 법적 절차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忌避한다. 이것은 縱的分割社 會의 전통에서 파생되는 성향이지만 契約的 精密性의 忌避와 直接的 對立의 回避는 당사 자간의 의사소통이 불완전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家意識과 村意識이 錯 綜한 가운데 「建前」(다테마에:名分)과 「本 畐」(혼네:內心)을 구별하기 때문에 예컨대 거래 양 당사자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인간관 계를 형성함으로써 상호간에 暗默的으로 숨겨 진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歐美 의 企業이 일본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 도 이와 같은 非契約的 社會關係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9).

日本人은 상급자의 實質的 責任을 최소화하고 상급자들의 獻身的 努力을 강조하는 일면 전체로서의 合意形成을 중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의 對象者가 뚜렷하지 않다. 이것은 일본이 최근의 무역마찰에서 외국과 交涉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특성은 외국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오랜 전통인 한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인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위에서는 適應的 集團主義(adaptive com-

munitarianism) 10) 및 長期的・多角的인 暗默의 決濟(long-term, multi-issued, implicit settlement) 11)라는 일본사회의 특질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음미하여 보았다. 그러한 屬性은 强度의 差異는 있지만 다른 사회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것만으로 일본사회를 특징지을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일본의 경제사회를 움직이는 組織行態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된다. 예컨대, 일본의 勞使關係, 都給關係, 企業經營體制, 政策形成過程 등은 그러한 "特質"의 관점에서 좀더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

III. 日本人의 意識變化¹²⁾

1. 소프트化의 急進展

최근 일본사회의 변화추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프트(soft)化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前近代를 「自然의길」(soft path), 近代化・產業化의 時代를 「人工의 길」(hard path)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선택되는 새로운 길은 「調和의 길」(holonic path), 즉「인공의 길」의 소프트化라는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다」의. 다시 말하여 調和의길은 근대화・산업화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人間・人工・自然의 調和있는 공존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전환은 "均一한 供給으로부터 多樣한 選擇으로"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소프트化에 관하여는 흔히 情報化・知識集約化, 意識變化, 시스템變化, 經濟의 소프트化의 네

⁹⁾ 經濟企劃廳(1986a).

¹⁰⁾ Lodge and Vogel(1987).

¹¹⁾ 村上泰亮(1987)。

¹²⁾ 최근 2~3년 전까지 日本經濟社會의 推移에 관한 좀더 상세한 論議는 大藏省(1984~), 특히 第4卷~20卷을 參照.

¹³⁾ 前掲「시리즈」의 共通序文、

가지 특징이 지적되고 있다. 이것이 앞서 논 의한 일본사회의 특질을 어떻게 변모시키며, 거꾸로 일본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소 화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근래 科學技術의 發展의 한 가지 중요한 양상은 量的擴大로부터 質的向上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정보·전자기술 등 尖端技術의 劃期的革新의 결과로 소프트化,精巧化,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化가 進展되는 것이다.情報技術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文化的·精神的 豐饒를 추구하는 욕구에 대응하여개인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한다.意識面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이제까지 受動體의 입장에서 物量的 均一性을 追求하는 자세로부터 個性化·多樣化를 모색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다양한 主體的 選擇을 행하게끔 되었다!*).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는 균일한 機械的處理가 중시되어 規模의 經濟가 추구되고 科學技術이 重厚長大型 生產方式을 지향함과 아울러 기업의 대형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國家·社會體制도 중앙집권화의 경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消費者欲求의 다양화 속에서 대량생산체제로부터 輕薄短小型의 多品種少量生產體制로 移行하면서 규모의 경제의유효성은 감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대기업에 유리하였던 시대로부터 消費者欲求를 먼저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공급하는 機動力있는 中小企業에 유리한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中小企業의 特性이 再

認識되고 있다.

情報는 집중하는 경향을 가짐과 아울러 정보기술의 발달은 分散型體制의 有效性을 높여, 情報化는 體制의 集中·分散을 동시적으로 진행시킨다. 日本型體制는 본래 集中과 分散이 조화되는 根莖(rhizome)型으로서, 정보화는 그동안 集中化 傾向을 가졌던 國家·社會體制에 分散型體制의 要素를 다시 도입시키고 있다. 일본정부의 정책도 과거의 富國强兵·殖產興業·高度成長 등 균일한 사회적 가치관 내지 목적에 의한 획일성을 벗어나 다양한 자발적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民間活力의 活用등경제·사회정책의 基調를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의「行財政」改革·政府規制의 緩和,民間活力의 活用,自由化,國際化政策은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경제의 소프트化는 서비스產業을 중심으로 한 第3次產業의 比重이 크게 늘어난 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製造工程에 있어서 디자인・廣告・마케팅과 같이 非物質的인 情報投入物의 比重이 현저히 증가하며 雇傭構造에서도 소프트한 서비스產業의 擴大와 女性人力의進出이 괄목할 만하다. 家計支出中 서비스支出의 比重이 증대함과 아울러 財貨에 대한 支出도 高性能化・高感性化 등 財貨 자체의 소프트化에 따라 消費의 質的向上에 대한 支出比率이 증가하고 있다15).

2. 靑年의 意識變化

현재 20대 전반의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하면, 이들의 人格形成期 내지 政治社會化期였던 7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에 있어서의 각종 政治·外交·社會的 混亂이 이미 종결되었

¹⁴⁾ 예컨대, 1950년대 後半에는 '三種의 神器'(黒白TV, 電氣洗濯機, 電氣冷藏庫), 1960년대 後半에는 '3C'(天然色 TV, 冷房機, 自動車)가 普遍的인 消費選擇의 對象이었다.

¹⁵⁾ 大藏省, 第8卷(1984)。

다. 이처럼 평온무사한「原體驗」을 거친 청년 들은 당연히 戰前世代는 물론 30세 이상의 세대와도 다른 意識構造를 갖는다. 이들의 사회 및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그 이전 세대가 같은 연령층에 있을 때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이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은 매우 樂觀的이며 現狀肯定的인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이 경향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價値觀에 있어서도, 일본의 청년층은 '人生의 目標'로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나 재산의 보호보다는 知的·藝術的 充足感이나 자신의 能力發揮를 추구하려고 한다. 현재의 청년층은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나 국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경제적 번영등의 物質的 豐饒로부터 參加나 言論과 같은 脫物質主義的인脫產業化價値(post industrial value)를 지향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周邊人과의 濃密한 人間關係를 추구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위를 위하여 진력하려는 의사는 매우약하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가치관의 변화에따라 삶의 보람이나 관심도 업무보다는 趣味・運動・休養에서 찾는 등 個人指向으로 되어간다.

個人指向과 함께 현재의 청년층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미래보다 현재를 우선하는 「卽時 化」의 性向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대학생이 나 고교생의 會社選擇의 基準에서 將來性이가장 중요시되었으나 최근에는 安定性을 추구하고 있다. 청년층이 자신과 사회 또는 주위와의 관계에 대하여 갖는 의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현재 주거지역에 대한 愛着度와 定着度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역활동에 관해서는 依賴·靜觀한다는 소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 政治的 問題에 있어서는 청년층의 自民黨 支持率이 급증하고 있지만 國旗와 '國歌'에 대한 愛着感의低調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保守化라기보다는 현재의 경제적·물질적 번영을 잃지 않으려는 保身化이며 이 脈絡에서 그들의 革新意識의 缺如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時間과 空間을 초월하여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상당히 다른 의식을 갖게 마련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敗戰을 전후하여 國家體制自體가 大變換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線型的 흐름 속의 通常的인 變移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인은 일단 사회인이되면 쉽게 전통적 조직의 成員으로 變身하지만, 최근의 젊은 세대의 意識變化는 戰後世代인 30대와 40대에 이미 싹이 텄던 것으로 볼수 있는 한 이는 일본의 장래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3. 女性 및 家庭에서의 意識變化

物質的으로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中產層化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욕구도 物的欲求에서 精神的·社會的 欲求로 移行하고 있다. 또한 家計에 있어서 서비스關聯支出이 증대하듯 이¹⁷⁾ 主婦의 '物質離脫'現象이 현저하다. 主婦 들의 제일의 취미는 여전히 '쇼핑'이지만,

化」의 性向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대학생이

16) 日本의 國旗는 '히노마루'(日の丸)로서 1870년 明治에 의하여 비로소 日本의 國旗로 정식 採擇되었다. 日本의 '國歌'에 해당하는 것은 '기미가요'(君が代)이나 아직도 正式國歌로 指定되어 있지 않다.

^{17) 1970}년과 1984년 사이에 (家計消費支出/國民 總支出)은 51.6%에서 57.9%, (서비스支出/ 家計消費支出)은 27.0%에서 34.5%로 크게 増 加하였다. 總務廳,「家計調査」및 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参照.

商品' 자체를 사기보다는 그 상품이 부여하는 '새로운 生活'을 산다고 할 수 있다. 女性社會에서는 '私에서 公으로'라는 자기실현의 형태로 社會參加가 진전되고 있다. 이를 조장하는 요인으로서는 平均壽命의 伸張, ¹⁸⁾ 家事勞動의節約, 자녀양육기간의 단축, 餘暇市場의 擴大, 여성의 高學歷化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성에게서 볼 수 있는 個性化·多樣化 指向은 우선 專業主婦, 兼業主婦, 女子事業家, 獨身主義者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家庭이라는 특정한 들 속에서固定的인 役割을 수행하였던 시대와 달리 모범적인 女性像이 없어지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여성에 있어서의 卽時化 現象은 결혼후에 직업과 사생활이 一變한다는 기대와 불안으로 부터 표출되는 消費의 卽時性, 加工食品 등 食事의 卽席化, 外食・注文料理 등 食事의 外 部化등에서도 나타나 있다. 마찬가지로 家事 代行 서비스의 이용도 主婦의 時間合理性・經 濟合理性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증가하고 있 으며, 外部서비스의 이용으로 얻게 되는 자유 시간을 餘暇 및 社會文化活動에 활용하고 있 다. 현재 子女養育期에 있는 主婦世代는 男女平 等・夫婦同權意識과 家族指向性이 강하고 事物 의 합리적 판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자기욕구 의 卽時的 充足을 추구하는 心性이 강하다. 이들은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전통 적인 家族型主婦의 무거운 役割意識이 아니라 자녀양육과 자신의 사회생활을 兩立시킨다는 새로운 家族觀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생 활의식은 여성의 就業觀과 結婚觀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은 여 성의 價值觀 變化는 직장에서의 雇傭 및 人事 制度, 消費樣態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전통적인 日本의 '家'意識에도 기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다른 중요한 사실로서 人口構造의 變化를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의 老年人口의 比重이 이미 10%를 넘는 高齡化 社會이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가속될 전망이다²⁰⁾. 고령자가 생존해 있는 가정이 급증하면서도 核家族化가 진행되어 單身高齡者의 生活・看護 등이 社會的으로는 물론 家族內的으로도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일본에는 아직도 親子 내지 三世代 同居에 의한 老親扶養意識이 뿌리 깊지만 그러한 경향을 고려한다면 전통적인 일본의 가족관과 부양의식이 앞으로 西歐型의 親子別居・老後獨立型으로 전환해 갈지도 모른다.

4. 會社員의 意識變化

일본의 경제사회가 소프트化하면서 會社員

^{18) 1986}년 현재 日本人의 平均壽命은 男子가 75 歲, 女子가 80歲로 男女 모두 世界에서 1位를 차지하고 있다.

^{19)「}生命保險文化센터」의「女性의 生活意識에 관 한 調査」(1987)에 의하면 日本女性의 바람직한 就勞形態로서 出産 및 初期養育後 再就職型 55.1%, 繼續型 12.0%, 結婚까지 就職型 14. 6%, 出産까지 就職型 10.9%로서 中途退職型 이 적다. 또한 結婚에 대하여는 63.1%가 당연 히 結婚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나 36.1%는 억 지로 結婚할 필요는 없다고 믿으며 특히 25~29歲의 女性中에서는 半數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總理府의「西曆 2000年에 있어 서 女性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豫測硏究」 (1987)에서도 女性의 就業意識은 再就職型이 多數를 점하여 平均的으로 家庭生活 調和型으 로 나타나며 장래 就業을 위해 結婚이나 出產 을 하지 않는 女性의 比重은 增加하지 않을 것 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²⁰⁾ 經濟企劃廳(1982).

의 意識도 특히 20대나 30대의 戰後世代를 중심으로 개성화·다양화하고 있다. 會社觀·勤勞觀에 있어 일본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해 온 $40\sim50$ 대는 아직도 自己犧牲派가 상당히 많으나 젊은 세대에는 私生活重視派가 압도적이다. 또한 業務觀·昇進觀에 있어서는 포괄적능력에 바탕을 둔 승진이나 지위에 중요성을 두었던 40대 이상과 달리 젊은 세대는 자신의기술능력을 심화하는 것에 보람을 느껴 專門職 指向性이 매우 강하다. 일본의 회사원을 歐美와 비교하면 企業歸屬意識이 강하고 아직도 企業의「內·外」意識은 뿌리 깊지만,質的으로 보면 특히 戰後 世代에서 個人優先의 價值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배경으로 회사원의 生活行動樣式(life style)도 다양화하고 있다. 社內情報만에 만족하는 등 회사만을 생활의 중심으로 하는 單屬人間 내지會社人間을 脫皮하여 적극적으로 社外活動에참여하는 複屬人間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회사원에는 '會社'보다도 '業務'를 중시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드시 업무일변도가아니라 여가의 증대를 이용하여 多種多樣한취미를 살려 업무 이외의 創造的 活動을 하는多面的 人間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사로서도이를 인정하거나 장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

會社員의 '即時化'現象은 轉職意識에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정기채용방식이 일반적 으로 中途採用者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자발적으로 轉職하려는 積極轉職派 會社員은 적으나 會社中心脫皮現象이나 尖端技術人力爭奪 등을 배경으로 受動轉職派 혹은 轉職希望者는 상당한 비중에이른다. 또한 젊은 세대의 사원간에는 終身勤務라는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²¹⁾.

풍요로운 시대에서는 회사원도 安定指向性을 갖는다.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타인 이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업무나 지위에 있어서 타인과 같은 정도를 希望하고 있는데 이것은 現狀肯定의 安定指向性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定住指向과 轉勤忌避傾向도 강화되어 회사와의 관계도자기생활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社員意識의 變化는 기업경영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떻게 사원의다양한 慾求·個性과 企業의 必要를 조화시키면서 企業活力을 유지·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청년 및 중견사원을 중심으로 한 會社歸屬意識이나 勤勞意慾의 低下, 殘業이나 轉勤忌避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就業意慾이 왕성한여성이나 노년층을 여하히 활용하고 처우해갈 것인가, 기업의 組織性格이 균일한 집단에서 다양한 개체의 집합체로 변모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여하히 공동체의식을 유지하여組織의 凝集力을 배양하는가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5. 產業勞動의 勤勉性

日本文化論者들에 의하면 일본인의 勤勉性 은 오랜 역사 속에서 배양된 '勤勉은 美德'이 라는 價値觀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²¹⁾ 就業者中 轉職希望者는 13.3%이나 대부분 막 연한 希望者이다. 積極的 轉職希望者의 比重은 3.4%로 그 數에 있어서 失業者에 필적하나 完全失業者에 비해 비교적 젊은층이 많다. 總務 廳,「就業構造 基本調查」(1986) 參照.

한다²²⁾. 그 요인으로서 우선 四季節의 變化속에서 한 곳에 定住하여 최대한의 수확을 얻기 위한 農耕民族으로서의 근면과 노력이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왔으며 日本의 佛教·儒教·神教에는 勞動獎勵의 思想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²³⁾. 또한 島國單一民族으로서의 일본은 同質性을 가지고 폐쇄적 집단주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인의「恥(하지)의 文化」²⁴⁾ 思想은 자연히 남 앞에서의 노력을 誘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면성을 현실적으로 발휘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은 社會的・經濟的 要因으로서 일본인의 근면성에 가장큰 영향을 준 역사적 계기는 明治維新과 2次大戰의 敗北이다.

明治維新에 의한 사회제도의 변혁, 특히 세습적 신분제도의 폐지는 노동자가 노력하는데 따라 社會的·經濟的 地位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勤勉性形成의 基本條件을 整備하였다. 그러나 당시 직장에서는 社員과 工員이라는 조직내의 신분격차를 여전히 유지하였다.明治初期의 產業勞動力의 대부분은 農家의 剩餘勞動力인 之次이었는바, 이들은 교육수준도 낮고, 근무자세나 회사에 대한 歸屬意識이 매우 낮았다. 노동자 자신의 자질을 原初的으로 향상시킨 것은 明治以來의 國民皆教育制度의실시였다. 이에 따라 文盲率이 매우 낮게 되

明治~大正期에는 長時間 勞動, 劣惡한 勞動環境, 前近代的 勞務管理로 노동의욕의 상실과 移職率의 增大를 야기하였다. 기업은 우수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정기채용, 사내교육훈련, 장기근속 등의 시책을 적용하고, 동시에 基幹勞動力을 우대하는 年功的 處遇體系의 原型이 生活給的 賃金體系, 長期勤續型 賃金體系를 기초로 정비되었다. 이것은 노동자에 생활기반의 확보와 장래에 대한 기대감을 초래하여 근면성을 상당히 향상시켰으나, 이러한 시책은 당시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 施惠的 性格이 강하였으며, 그혜택도 職員과 工員,工員中에서도 基幹工員과 其他工員間에 격차가 현저하였다.

그나마 이러한 企業施策은 2次大戰의 勃發 과 함께 崩壞되었으며, 근면성의 기본조건이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은 패전 후이다. 經濟民 主化의 일환으로 도입된 勞動組合法(1945)을 위시하여 勞動關係調整法(1946), 勞動基準法 (1947) 등 소위 勞動三法의 制定과 企業內 社 員과 工員간 신분차별의 철폐 등을 배경으로 敗戰後의 經濟復興을 위한 노동자의 생활안정 을 기하기 위하여 戰時中 軍需產業을 중심으 로 强制化되었던 終身雇傭慣行24)이 全勞動者 에 확대되고 고용확보와 생활임금의 색채가 강화된 年功序列賃金制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생활의 안정과 향상 및 지위의 상승을 기업에서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종래 의 기업내 福利制度가 점차 노동자의 생활영 역을 포괄하게 되어 勞使間의 運命共同體的

었고, 동시에 儒教理念에 입각한 교육이 大正 末期~昭和 初期에는 기업의 새로운 勞動施策 에도 힘입어 勤勉性 向上에 큰 효과를 발휘하 였다.

²²⁾ 高橋龜吉(1981), Nato(1986).

²³⁾ 文化를 罪意識(guilt)文化와 取(shame)文化로 구분한다면 日本의 文化는 恥文化의 性格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罪意識文化는 絕對 的인 道德規範을 注入시켜 他人의 良心의 發顯에 의존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恥文化는 個人의 內的 斷罪보다는 善行의 外的 認定에 依存한다. Kodansha(1983) 참조.

²⁴⁾ 日本의 近代에 있어서 終身雇傭制의 효시는 1 次大戰中 橫須賀 造船廠에서 人力不足을 解消하기 위하여 導入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思考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종래 경영자와 대립 하여 억압되었던 노동운동은 기업내 노동조합 이라는 특유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는 노 동자의 지위·권리를 향상시키는 제도로서 終 身雇傭制·年功序列制·企業內福利 등의 노동환 경을 결정하는 당사자의 일방으로 되어 企業 歸屬感 내지 勞使一體感을 發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日本勞動者의 勤勉性은 노사관계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은 日本經濟의 低成長化, 高齡化, 技術革新에 의한 企業合理化, 企業의 國際化 등에 따라 금후 일본의 실업이 증가하고이에 따라 근면성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餘暇增大25), 傳統的價值觀의 褪色, 會社歸屬意識의 弱化, 특히 社會秩序 및 道德의 惡化가 근면성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設問調査에 의하면 2000년까지의 일본인의 근면성에 대하여 불 안감을 갖고 있는 첩의 비중이 33.7%이고 確信을 갖는 者가 35.5%에 불과하다²⁶⁾.

IV. 日本型 經營制의 進化

1. 日本型 經營制의 構造

日本企業의 經營制는 일반적으로 앞서 논의한 일본사회의 조직적 성격을 반영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이를 부분적으로 否定하는 '日本的 經營崩壞論'²⁷⁾도 있지만 아래에서는 日本企業만의 특징인지 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종래 日本型 經營制의 構造的 性格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日本型 經營制28)는 組織內的 人的關係의 永 續性을 원칙으로 하는 中核(core)部分과 一時 雇傭처럼 여건변화의 충격흡수를 위한 周邊 (fringe)部分이라는 조직의 二重構造를 유지 하고 있다29). 이것은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라 剩餘勞動力을 해고하거나 不足勞動力을 수시 로 新規雇傭하는 歐美型 企業의 방법과 달리 장기적・안정적인 雇傭關係의 維持를 선호하는 日本企業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 한 방편이다. 또한 이러한 二重構造는 소위 終身雇傭이 기업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日本의 下請制 (subcontracting system)도 과거에는 母企業 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인 緩衝 裝置로서 유사한 조직원리에 입각하여 기능해 왔다30)

²⁵⁾ 勞動省의「六十一年 賃金勞動時間 制度 등 綜合調查」(1987)에 의하면 1986년 日本의 從業員의 勞動時間이 최근 減少趨勢에 있다. 從業員 30人 以上 企業의 勞動者當 年間 休日總數는 80.5日이며 특히 從業員 1,000人 以上의 大企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일을 超過하였다. 週休 2日制을 採擇하는 企業의 數는 大企業에서는 이미 92.4%이며 全體的으로는 50.9%의 企業에 擴散되어 있어 이 制度의 適用을받는 勞動者는 全體의 78%에 달하고 있다. 週所定時間은 企業當으로는 44時間 22分, 1人當으로는 41時間 37分이다.

²⁶⁾ 野村總合研究所,「有識者アンケート調査」(1983). 勤勉性에 관한 상세한 統計調査結果는 總合研 究開發機構(1985) 参照.

²⁷⁾ 大前研一(1987).

²⁸⁾ 소위 日本型 經營에 관한 學說은 허다하지만 이를 類型化하여 간단히 정리한 것은 日本經濟 新聞社(編)(1986) 參照.

²⁹⁾ 大藏省, 第5卷(1985).

³⁰⁾ 下請(시타우케)에 관하여는 아래의 第V章에서 다시 論議한다. 下請은 國語로는 都給이라고 하지만 日本 나름의 歷史的 特殊性을 같안하여 本稿에서는 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美國과 같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 의 經營組織은 幹枝(tree)型 構造로서, 각각 의 구성원이 명확한 '職務單位'를 담당하고 이 것이 位階的으로 통합되어 전체로서의 組織目 標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에 대해 일본의 조직은 각 부서를 단위로 하여 집단적 으로 편성되어 있다. 각 부분은 각각 독자성 을 갖고 相互連結이 인간관계등에 의해 복잡 하게 얽혀 전체로서 결합되는 根莖型 構造를 갖는다. 그러므로 일본의 기업에서는 현장의 정보가 집결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企業中樞部 의 戰略立案機能이 약한 점도 있기 때문에 부 분의 활력을 배양하면서 조직의 頂點도 부분 의 하나로 하여 전체로서의 균형과 조화를 달 성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이것은 물론 직무의 성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企業組織이 일반 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비교적 柔軟한 協同 態勢로서 日本型 經營은 有機的・屬人的 組織 을 바탕으로 한다.

人事管理面에 있어서, 매우 장기적인 고용 관계가 일반화한 조건하에서 企業組織의 中核 部分은 新規卒業者의 定期一括採用에 의존하 여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원을 수시 적 필요에 의해 채용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특 정한 직위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에 의해 응모 자를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選拔 의 基準은 應募者의 人品이나 一般的 能力을 중심으로 하며 配置轉換(rotation)도 定期人 事異動의 形態를 갖고 승진도 어느 단계까지 는 定期昇進制度에 의하게 된다.

이러한 管理體制下에서 處遇制度는 年功序 列制(seniority system)의 形態를 갖지만 기 본적으로 능력주의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能力評價가 人間評價로 연결되기 쉽다 는 일본인의 능력관, 조직내의 지위에 매우 민감한 일본인의 지위감각, 동료와의 격차를 嫌惡하는 일본인의 평등감각 등에 적합한 형 태로 형성되어 온 일본적인 能力主義로서 능 력을 계속 평가하면서 시간을 두고 서서히 격 차를 벌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日本企業의 의사결정방식을 흔히 上向式 參加·綜合(bottom-up)型이라고 하지만, 小企業에는 經營陣의 下向式 指揮(top-bottom)型이압도적으로 많다. 경영규모가 확대함에 따라집단적 편성을 취하는 조직구조가 발전·분화되면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점증하여「네마와시」型의 의사결정방식이 발전하고 경영규모가 더욱 확대·복잡화하여 때로는 공간적으로도 거리가 생기게 되며 의사결정방식이 參加·綜合型으로 移行한다. 그러므로 日本型 企業의 의사결정방식의 특징은 參加·綜合型 그 자체라기보다도 경영규모 확대에 따라 그러한移行過程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日本型 經營制에서처럼 雇傭關係가 매우 장기적인 경우에는 빈번한 配置轉換등으로 사내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長期雇傭關係下에서는 敎育投資의 回收가 비교적 용이하며그 효과는 장기에 걸쳐 기업에 대한 기여로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사무직의 경우에도 일본의 대기업에서는 5년간, 중소기업에서는 3년간을 교육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본다면 日本型 經營制는 경직적인 제도가 아니며 일본사회의 전통적 組織論理의 틀 안에서 신축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 企業與件의 變化는 그러한 신축성의 한계내에서 흡수되기도 하며, 때때로 經營制의 基本骨格을 변경시키기도 할 것이다.

經營環境의 變化와 새로운 經營課題

日本型 經營制의 對應을 촉구하는 環境變化 는 의식구조로부터 국제환경의 변화에 이르기 까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高齡化의 進展으로 최근 停年延長이 도입되었고31) 이것 이 高學歷化와 상응하여 年功制下의 企業의 給與負擔 上昇, 管理職位 不足의 深刻化 등 종래의 日本型 經營制에 적지 않은 과제를 제 기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압력 증대와 1986년 「男女雇傭機會均等法」의 실시로 종래 男性中 心이던 日本의 경영조직은 새로운 適應方法을 모색해야만 하게 되었다. 靑年層의 의식 특히 勞動觀의 變化는 종래의 企業內 誘因制度의 有效性을 제약하여 의식을 달리하는 新•舊世 代間의 內的調整을 불가피하게 한다. 또한 소 득의 上昇과 平準化,都市化,價值觀의 個別 化 등에 기인하는 생활행동양식의 변화는 需 要構造의 多樣化와 이에 부응하는 소프트化, 個性化 등 製品市場構造의 變化를 초래하여

多品種少量生產에 의해 대응해야 할 분야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尖端技術의 급속한 高度化(情報化)는 冒險 企業(venture business: 尖端研究開發集約型 中小企業)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한편 대기업의 새로운 조직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의技術革新은 기업의 사업내용을 尖端產業分野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FA(factory automation: 工場自動化), OA(office automation: 事務自動化) 등 技術革新의 성과가 기업의 사업수단으로 채택됨으로써 경영조직의 합리화, 개인의식의 변화와 이에 대한 企業內的 對應 등 새로운 經營課題가 대두되고 있다32).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의 輸入規制, 新興工業國과의 競爭深化 등으로 국제적 산업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円高의 영향으로 日本企業의 海外現地生產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海外進出時에 경영상의 최대문제의 하나는 사회적·문화적 조건이 다른 곳에서 어떠한 경영방식이 유효하며, 이 경우에 日本型 經營制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될 것이다. 경영의 국제화는 문화의 수출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어 필연적으로 文化摩擦을 수반할 것이므로 이를 예방 내지 해소하는 것이 國際化企業의 또 다른 난제이다.

3. 經營環境變化에 대한 對應方向

高度經濟成長이 끝남에 따라 일본의 기업은 '減量經營'으로 전환해 오고 있다. 殘業減縮, 都給外注의 削減,新規採用削減,希望退職 등 을 통하여 기업의 잉여인력을 해소할 뿐만 아 니라 自動化 및 情報化裝置 등에 의한 적극적 인 체질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³³⁾,採用構造

^{31) 1986}년에 制定·施行된「高年齡者등의 雇傭의 安定등에 관한 法律」에 의해 公務員의 停年은 55歲에서 60歲로 延長되었으며 이를 民間企業 에서도 勸獎하고 있다. 60歲 停年을 정한 企業 의 比率은 이미 1987년 1월에 59%로서 實施豫 定을 포함하면 75%에 달하고 있다.

³²⁾ 情報化에 관한 最近 口本의 폭넓은 論議와 政 策展開에 관한 概觀은 李奎億(1987) 參照.

³³⁾ 勞動省의「技術革新이 雇傭에 미치는 影響등에 관한 調查」(1987)를 보면, 企業이 情報化를 導入할 때 바로 減員하는 예는 적으나 高卒者의 新規採用을 延期하는 戰略을 採擇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同省의「六十一年 雇傭動向 調査結果」(1987)에서는 鐵鋼•造船등 不況產業을 중심으로 특히 45歲以上의 中高年齡層의 移職者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個人的'理由에 의한 것이 72.2%, 經營上 형편에 의한 것이 8.5%로 나타나 있다.

面에서도 정규채용보다는 主婦兼業者, 學生 臨時雇傭者 등 周邊部分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한 雇傭均等法의 施行에 자극받아 中核部分에 서도 여성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³⁴⁾.

管理職位의 不足에 대하여는 周邊部分을 확대함으로써 장래의 昇進壓力을 저하시키고, 中核部分도 二分化하여, 轉勤을 않는 조건으로 승진에 일정한 한계를 두는 限定社員制度,故鄉別 採用制度,定着派遣制度 등도 도입되고 있다. 동시에 능력평가에 의한 승진제도를 신중하게 강화하며 전문직 제도도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회사원의 의식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選擇體制로서의 機能도 수행한다.

市場의 成熟과 價値觀의 多樣化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은 事業部制 組織을 채택하여 대폭적인 權限委讓을 하는 등 分權 化의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제품별 조직으로부터 고객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변경하는 등 市場・顧客에의 對應을 중시하고 있다. 예로써 같은 製品系列이라도 大量消費 品으로 양적 증대가 중시되는 부문과 부가가

치가 높은 機能製品의 性格을 가져 少量販賣• 技術서비스가 요구되는 부문으로 分化되는 것 을 지적할 수 있다.

情報化時代에 있어서 기술개발은 기업의 성 장은 물론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新規事業 展開나 新製品開發에 있어서 는 중소기업의 유리성을 援用하여 社內企業制 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일정한 예산과 권한을 주어 활용하고 신규사업의 규모가 확 대되고 채산이 맞을 단계에서는 이를 子會社 로 獨立・育成하여 企業集團으로서 전개해 나 간다. 이와 같은 체제는 개개의 分社의 內部 에서 과도한 능력주의를 억제하여 年功制등 종래의 日本型 經營制의 利點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조직 전체로서는 高度로 能力主義 的인 人事政策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 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體制下에서는 管 理職位의 不足이나 社員의 個性化指向등의 문 제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尖端技術의 發展으로 사업내용의 기술적 특징이 바뀜에 따라 종래의 量的擴大指向의 企業行動原理가 高附加價值를 지향하는 '質의追求'로 移行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분야는高附加價值的·知識集約的인 輕薄短小型分野가중심으로서 특히 이 분야로 대기업이 다변화해 가는 추세 속에서도 대기업의 진입에 적합하지 않은 適所(niche)를 개발하거나 異業種間 提携의 仲介등에서 冒險企業의 發展이 기대되고 있다. 모험기업의 활약에 의해 대기업간에도 異業種間 提携의 形態로 이들을 협력관계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좀더 광범위하게 그러한 중소기업간의 業種橫斷的·立體的 連結을 촉진하기위하여 制度的裝置를 강구하고 있다"

³⁴⁾ 雇傭職業總合研究所의「企業에 있어서 女子의 戰力化·活用에 관한 調査報告書(1987)」는 이 法律의 施行前後의 人事政策의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1985년 이전에는 남녀 구별없이 개인의 能力·適性에 따라 戰略化하고 活用한다는能力中心型이 39.6%, 補助的 活用型이 33.9%이었으나, 1986년 9월에는 이것이 각각 54.8%와 15.3%로 크게 變化하였다. 그리고 女性勞動力 活用의 具體的 手段에 있어서도 女子에게도 昇進·昇格의 機會를 增大시키려는 企業의比重이 法律施行前의 32.4%에서 43.3%로 急增하였다.

³⁵⁾ 通商産業省의「21世紀의 産業社會의 基本構想」 (1986)에서는 經營資源이 부족한 中小企業이 産業構造의 轉換을 克服하여 多品種少量生産・

서비스化의 淮展으로 서비스・情報處理・開發 關係分野에서 적절한 능력을 갖는 인력에 대 한 수요가 증대되는 반면 一般生產工程이나 一般事務의 종사자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퇴한다. 그런데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다양 한 서비스 중에는 직종의 내용이 비교적 간명 하고 機能의 성질이 企業別로 특수화되어 있 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는 外 注가 가능하며 거대한 資本設備를 요하지 않 아 서비스機能에 特化한 子會社・關聯會社를 설립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36). 이러한 경 향은 雇傭制度도 貯量(stock)型에서 流量 (flow)型으로 변모시키며37), 이에 따라 종전 의 終身雇傭制를 전제로 한 훈련방식이 부적 합하게 되어 個人指向型 敎育・訓練投資가 증 대되고 年功序列制에 있어서도 능력주의가 더

욱 강화되고 있다.

4. 新製品開發의 戰略과 組織

위에서 강조하였듯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企業戰略에 있어서 新技術과 新製品開發은 기업의 生存과 직결되는 重要性을 갖고 있다. 일본의 대기업은 賣出과 利益의 創出手段으로 新製品開發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高品質・低費用・製品差別化라는 기본적 요건외에 경쟁의 격화로 인한 製品陳腐化의 加速, 消費者階層의 分化, 製品壽命週期의 短縮, 自動化에 의한 範圍의 經濟性(economies of scope) 등으로 신속성과 유연성도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본의 기업은 예컨대 미국의 기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美國企業의 製品開發過程은 좀 더 분석적으로서, 그 典型은 製品開發의 段階 마다 엄격한 분석과 검사를 하여 전체의 調整 과 統合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제품개발과정 을 일련의 意思決定過程으로 본다면, 美國型 體制에 있어서는 전 계층을 통하여 情報 및 意見決定負荷의 多樣性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 며 그런만큼 조직의 상층부에서 하는 것이 효 율적이다. 이러한 체제는 미국의 기업에 있어 서 개인적으로 유능한 인재가 分析的 接近方 法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고, 각 단계에 서 專門化가 엄밀히 행하여져 개개의 전문분 야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성립하고 企業內構造 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 美國型 製品開發體制의 한가지 특색은 고급인 력의 전문성에 근거를 두는 "깊이 있는 學習" (learning in depth)이지만, 전문화가 지나치

消費者欲求의 多樣化 및 複雜化 등에 效果的으 로 對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體制의 構築을 强調하였다. 이는 同一業種企業의 組織 化를 基本으로 한 종래의 中小企業政策의 大轉 換으로서 과거의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縱型 「피라밋」構造의 崩壞에 대응하여, 異業種企業 을 融合한 組合의 形成을 助長하려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分野의 技術力・市場力・經營力 등 을 融合하여 技術・製品・業態 및 需要의 開發이 라는 새로운 事業을 開拓하고 나아가 이러한 事業의 共同化量 추구하려는 것이다. 1987년 3 월 현재로 이러한 類型의 集團은 471個로 총 1만7천여個의 企業이 참여하고 있다. 通產省은 이 集團을 組合化함과 아울러 새로운 組合의 結成을 促進・支援하기 위하여「中小企業新事業 開發促進法」을 금년중 國會에 提出할 豫定으로 있다.

³⁶⁾ 大藏省, 第5卷(1985).

³⁷⁾ 貯量型 企業은 거대한 資本設備의 尨大한 人的 資源의 內部蓄積을 갖고 生產活動을 행하는 企業으로 重化學工業의 巨大企業이 典型이며 流量型 企業은 固有의 資本設備는 그만큼 크지 않으며 雇傭勞動力의 人的資本도 반드시 內部蓄積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資本서비스나 勞動서비스를 短期的인 契約이나 外部調達에 의하여 流量으로서 구입하여 解決한다.

게 되면 分割主義 (segmentation)의 問題가 발생하기 쉬운 약점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日本企業에 있어서 신제품의 개발과정은 일단 經營責任者가 개발의 필요성 을 인정하고 必要人員을 선정하면 상당히 自 由裁量的으로 관리된다. 開發프로젝트의 中心 人員은 販賣・生産・研究開發部署, 심지어 關聯 企業社員 등 職能이나 氣質이 다양한 자들로 구성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일하고 가 능한 한 많은 정보를 共有한다. 다시 말하여, 經營責任者는 새로운 製品概念을 창출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개념에 混沌을 媒介하고, 開發 팀에 自律性, 自己超越, 異種交配의 條件을 부여하면 팀은 스스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낸다. 팀 내부에서는 情報의 共有와 自由討論 을 통하여 概念創造가 同時化한다. 또한 개발 초기부터 기업내의 각 부문 및 관련기업이 참 여하여 '共有된 分業'이라고 할 만큼 개발의 각 단계를 중첩시켜 관계자가 상호의 기능을 침식하면서 이동하므로 槪念實現化 過程도 同 時化된다38)

이와 같이 日本企業의 開發過程의 本質은 分析的·直列的이기보다는 全體的·重複的이다. 이것은 각 단계에서의 多樣性 縮小가 엄밀하게 행하여지지 않고 시장이나 생산의 정보가들어올 때마다 증폭되거나 삭감되는 신축적인 과정이며, 開發人員에는 시장에 좀더 가까운 기능을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製品概念의 形成과 實現이 시장으로부터의 반응에 민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美國型의 製品開發이 新品種(seeds)指向이라면, 日本型의 製品開發은 欲求(needs)指向의 性格을 갖는다. 다시 말

하여, 前者는 獨創的 新技術의 研究開發, 後

製品開發이 開發段階의 중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당연히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의 학습활동이 활성화되어 "幅이 있는 學習"(learning in breadth)을 특색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담당자의 전문능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폭넓은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게된다. 따라서 종래에는 한 기능에 우수하면서도 폭이 넓은 'V字型 人間'으로 되는 것을 조장하였으나, 최근에는 多才多能하면서 폭을 갖는 'U字型 人間'으로 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의 육성에는 配置轉換이나 社內敎育 등의 인사관리제도가 적절할 것이며, 長期雇傭下에서는 사람을 통한 제품개발의 성공이나 실패의 축적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日本企業의 製品開發過程에 있어서는 統制가 制度에 의하기보다는 情報의 共有化, 社會的 相互作用의 過程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自己統制, 즉 凝集性에 근거를 두는 통제나 동료간 압력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촉진하는 요인에는 業績評價基準의 曖昧性과集團指向性, 製品의 全體的 情報의 共有를 통한 경영자와의 情報隔差의 除去, 大部屋(오우혜야:多數의 人員이 露出된 채로 일하는 大事務室)制度에 의한 可視性의 提高 등을 들수 있다.

결국 日本企業의 제품개발방법은 日本型 經營制의 構造內에서 환경변화에 最適反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식의 개발체제가 신속히 작동하려면 참여자간의 社會的 相互作用이 창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對面的 相互作用이 가능한 규모의 개발에

者는 市場欲求를 반영한 具體的 製品開發에 適合하다.

³⁸⁾ 竹內弘高·野中郁次郎(1986).

한정되어 巨大開發프로젝트에 대한 적응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製品概念의 有效性이 불명확한 流動期나 脫成熟化 段階에서는 개념 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型의 製品開發過程이 유효하나 特定期에는 概念 自體는 명확하므로 直列開發方式에 의한 제품개발이 좀더 유효할 것이다. 또한, 日本企業의 製品開發은 체제보 다는 과정에 의하여 움직인다. 따라서 體制中 心의 多樣性 縮小에 비해 좀더 많은 社會的 相互作用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直列的이기보 다는 並列的으로 일어나므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모든 관계자 의 특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끝으로, 「프로젝트 팀₁型의 製品開發은 기한 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技術追求過程에 있어 서 최종적으로 어딘가에 프로젝트를 완결시키 기 위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국에서 처럼 전문가를 중심으로 特定分野에 있어 極 限追求型의 開發을 이룩하기가 어렵다.

5. 日本型 經營制의 進化方向

이상에서는 최근의 與件變化가 종래의 일본의 전형적인 기업에 어떠한 과제를 부여하였으며 일본의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에 對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對應의 樣態와 方法은 日本型 經營制의 傳統的 構造 안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구조를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모색되고 있다.

최근의 한 設問調査의 結果를 보면39), 經營

者와 從業員 兩側이 다같이 日本型 經營制의 改善方向으로서 ① 年功序列制度의 改善 ② 環境變化에 따른 最高經營者 主導型의 戰略意 思決定의 强化 ③ 특히 大企業에 있어서의 조 직의 柔軟性 ④ 財務 및 經營管理의 精緻化가 긴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日本企 業이 금후로도 유지해야 할 것으로 ① 多面的 企業活動의 加一層의 追求 ② 人的資源重視 ③ 合意에 의한 決定 ④ 終身雇傭制 ⑤ 企業 內組合을 들고 있다.

「新日本的 經營論」⁴⁰⁾은 이상과 같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日本企業의 새로운 경영체제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戰略行動의 變化를 보면, 생산활동중심의 전통적인 日本企業의 전략행동으로부터 新事業領域・國際化・多邊化・技術開發 등에 관한 기본전략으로 기업의 基本構想의 重點을 옮기고 製品中心 革新追求型의 戰略行動을 추구하여야 한다.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의 對處가 戰略課題로 되기 때문에 機動的인 資源展開 혹은 外部의 經營資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企業間 組織面에서도, 이제까지의 피라밋型에서 水平分業型構造의 組織으로 移行해 간다나. 여기에서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높은 자율성을 갖고 專門分化한 단위가 평등한 관계에서 연하게 결합한다. 이 組織構造는 종래의 垂直型 下請關係를 독자적으로 혁신을 창조하는 유기적인 連結組織(network)으로 변화시키며, 資金・人力・財貨의 經營資源보다도정보를 통하여 결합된다. 또한 連結組織에서는 권한이 분산되므로 종래 생산부문에 가리워져 있던 연구개발부문의 힘이 증대되어 자유로운 발상을 촉진하여 革新을 촉발한다.

新日本的 經營에 있어서, 종래의 경영제도

³⁹⁾ 大島國雄(1987) 參照.

⁴⁰⁾ 經濟同友會(1987).

이에 관하여는 다음의 V章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가장 크게 수정되어야 할 것은 年功序列制이다. 앞 으로 日本經營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組織成 員의 創造性의 發揮로서, 높은 전문능력을 보 유하는 成員이 자신의 능력을 올바로 평가받 는 것이 혁신의 원천이므로 能力主義를 가일 층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企業內 組合은 존속시키되 그 존재가치를 새로이 창조해야 하며, 終身雇傭制, 人的資源 開發 및 福利厚生制度도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高度情報化社會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經營資源이나 情報를 창출하는 것은 人間으로서, 창출된 정보는 인간에 부착되어 있다. 앞으로는 人的資源이 경영의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人的資源을 企業內에 確保・開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끝으로, 이상의 新日本的 經營體制를 실천하려면 새로운 企業行動原理, 즉 새로운 企業家 精神이 필요하게 된다. 日本企業에서는 종래 경제성장과정 속에서 運營(operation)中心의 戰略이 지배적이었고 선진국의 後發追及者로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혁신은 기본적으로 生產現場의 微增的 革新(incremental innovation)이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경제사회와

결국 日本企業의 장래는 젊은 세대의 勤勞 意識·市場需給條件 등의 변화 속에서 종래의 日本型 經營制를 발전적으로 진화시키는 새로 운 企業行動에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 닐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企業家精神을 새 로운 세대의 생활행동양식과 가치관에서 여하 히 涵養해 나갈 것인지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다.

V. 企業間 組織 및 關係의 變遷

1. 下請制

日本 下請制의 社會組織的 特性은 江戶時代의 年功序列制에서 그 淵源을 찾을 수 있다. 당시의 도매상이나 대규모 소매상은 주인과同宿하면서 일하는 丁稚(뎃치), 手代(테다이), 番頭(반토우), 大番頭(오우반토우)의 하위종업원과 그럴 필요가 없는 상위종업원인宿人(야도이리)간에 정확한 위계질서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最上位 從業員인 暖簾內(노렌우치)는 자신의 分店을 차릴 수 있었다43). 小工場에서는 구분이 다소 달라 小僧(코조우), 職人(쇼쿠닌), 職長(쇼쿠쇼우)의 서열로 되어

는 달리 금후의 高度情報化社會는 혁신·창조적이며 개성적인 개인, 그리고 범세계적인 視野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日本企業의 행동에 필요하게 된다. 이는 이제까지와 같은 '物'中心의 세계에서의기업가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좀더 知識 創造的인 활동이다⁴²⁾.

⁴²⁾ 經濟同友會(1986)에 의하면 앞으로 日本企業의 바람직한 經營者像에 대한 設問應答의 分布는 새로운 未來觀을 제시하고 變革을 促進하는 革新型 49%, 戰略의 立案遂行能力을 重視하는 專門經營人型 25%, 企業의 組織力을 重視하는 調和型 19%, 其他 7%로서 이미 이러한 方向으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⁴³⁾ 暖簾分는 雇用主가 장기간 충실하게 봉사한 從業員에게 分店을 開設시켜 自己와 같은 屋號와家紋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때資本援助, 商品貸與, 去來處 配分도 행한다. 前雇用主의 暖簾(shop curtain)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從業員으로서는 최고의 榮光이며 그에대한 끊을 수 없는 恩과 義理를 象徵한다.

있었다. 일반적으로, 暖簾內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債務를 辨濟하고 獨立하게 된다. 工場에서도 職長은 母工場에 대한 下請으로서 分工場을 차릴 수 있다. 그는 母工場의 營業을 奪取하지 않는 한 자신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결국 財務的으로 獨立할 수 있게 된다40.

母企業과 下請企業은 모두 공동체를 형성하여 年功序列制는 組織內部에서뿐만 아니라 母企業과 下請企業, 下請企業간에서도 尊重된다. 종업원이 완전히 독립한 다음에도 前雇傭主가 의뢰하는 것은 자신의 영업에 대한 支障與否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職人의 경우 기업의 영업이 부진하다면 독립하여여러 기업을 상대로 거래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조직 전체를 위하여 受注活動을 강화한다.이것은 일반적으로 중도에 조직에서 이탈하여불확실한 장래에 살기보다는 조직과 함께 성장한 다음에 共同體的關係下에서 자신의 獨立企業을 설립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雇傭傳統이 下請制를 포함하

는 日本의 企業經營體制에 직접·간접으로 침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企業內部의 終身雇傭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의 周邊部分이나 從屬部分을 분리시킨다는 관점에서 企業集團이 형성된다는 논리로도 발전하는 것이다⁴⁵⁾.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전통은 日本 中小企 業者의 典型的인 特質을 형성하여 왔다. 中小 企業者는 企業去來에 있어서 거래처나 동업자 간의 '仲間'(나카마:同僚)의 의리를 중시하 여 왔다. 특히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록 이러한 仲間意識이 작용하여 중소기업의 대응력•적응력을 발현시키고 있다46). 中小企 業者는 母企業과 下請企業이라는 상하관계에 의해 연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호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연대감을 조성하는 형태로 발 전하여 간다. 中小企業者는 경우에 따라 同業 者의 仲間, 去來關係의 仲間 또는 공통의 利 害關係에 선 仲間으로서 經營行動을 고려한 다. 물론 사회적·경제적인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이해관계도 얽혀 있지만, 중소기업은 均 等性이 강하며 仲間의 속에서 경영을 유지해 가려는 인식도 공통되어 있다. 또한 경영에 있어 公私의 구분이 애매한 만큼, 조직이 개 인을 흡수해 버리는 全體性이 강하므로 中小 企業者에는 특히 仲間意識이 뿌리 깊고 이것 이 經營行動의 큰 支柱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볼 수 있는 集團性에는 義理· 人情·恩惠라는 감정이 작용하고 縱的으로 연 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中小企業者의 集 團意識 내지 仲間意識은 상당히 개방적이다. 이는 개방적인 養子制度등 일본의 가족제도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적 행동

⁴⁴⁾ 上位從業員에게 獨立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經濟的 意味를 갖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從業員의 俸給은 職長이나 大番頭까지 昇進하 면서 上昇한다. 上位從業員이 獨立할 수 없으 면 下位從業員이 昇進할 수 있는 上位職位가 부족하게 되어 組織全體가 老化하게 된다. 동 시에 結婚하는 從業員에 대하여는 住居를 提供 해야 하지만 賃金을 완전히 凍結시킬 수는 없 다. 이 費用을 調達하는 방법은 價格引上밖에 없으나 이는 競爭力을 低下시키게 된다. 그러 므로 이러한 事態를 피하기 위해서는, 上位從 業員이 分店을 차리도록 하고 실제로 거의 無 報酬로 일하는 小僧이나 丁稚를 雇傭함으로써 從業員의 上向移動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이 는 또한 下位從業員들의 勤勉性을 誘發하는 制 度로서도 機能한다.

⁴⁵⁾ 青木倉彦·小池和男·中谷巖(1987).

⁴⁶⁾ 梅木晃(1984).

도 물론 일정한 한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中小企業者 仲間의 競爭意識도 조직내에서는 일종의 권위에 의해 억제되며,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각자는 어느 정도 권리와 의무가 분명한 가운데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열중할 수 있는 것이다.

中小企業者의 仲間意識은 인간적 접촉에 의하여 강화되어 그들은 單一集團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그 속에서의 공동체적 의식이 강화된다. 單一集團에 속하는 것은 他集團에 대한競爭意識을 야기하게 되어 이 對抗意識이 성장의 원동력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單一集團의 사회에서는 橫的關係의 形成이 어렵고, 내부에서도 상호간에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경쟁이 격화될수록 상하관계의 결속은 강화된다. 일본에서 母企業・下請企業이라는 관계가매우 특이한 존재인 것,혹은 資金・技術의 援助나 交流가 원활하였던 것도 상하의 연결을 전제로 한 單一集團의 仲間意識이 강하기 때문이다.

中小企業者의 集團性向은 경영활동을 사무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契約'의 概念이 희박하여 일상적 거래의 내용에 관해서도 去來慣行에 따라 그때그때 상대방과의합의에 의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이 성립하는 根底에는 집단의 구성원이 지향하는 경영의방향이 같거나 서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며 이 때문에 집단의외부에서 다른 기업과의 連繫를 摸索하여 水平的 連結組織을 형성하면서 多邊化를 지향하

그러나 일본의 전통적인 意識構造에 근거를 두고 있는 企業의 垂直的 關係는 경제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浮沈을 계속해 오고 있다⁴⁷⁾. 明治初期의 殖產興業政策 이래 在來產業의 分解·沒落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은 전혀 새로운 독점적 大工業體制下에서 일방적인支配·從屬의 性格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二重構造가 아직도 일본의 중소기업의 本質的 問題로 殘存한다는 것이 일본의 中小企業學者의일관된 주장이다⁴⁸⁾.

1929년의 世界恐慌後 국제적 자립을 서두른 日本獨占資本은 强權的인 海外市場 獲得競爭에 나서, 이를 위한 보강수단으로 중소기업을 下請的 形態로 활용하였다. 더우기 中日戰爭 (1937~45) 이래로 下請中小工業은 대기업 특히 軍需工業에 있어 일층 필요불가결한 구성 분자로서 편입되었다. 즉 下請工業化한 중소 기업은 2次大戰(1941~45)의 준비과정중에 '協力工業'의 美名 아래 戰時經濟의 중요한 일 환으로서 대기업의 경영내에 고정화된 존재로 서 集團體制에 편입된 것이다.

1945년의 패전후 중소기업은 財閥解體, 왕성한 民間消費需要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었으나 獨占禁止法의 緩和와 '傾斜生產 方式'에 의한 산업정책으로 獨占企業이 日本經濟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재차從屬的部分으로 전략하였으며, 특히 1949년의

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다만 최근에 급속한 技術發展과 円高 등 급박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기존의 집단관계를 넘어 이질적인 기 업간에 새로운 연결을 모색하는 경향이 증대 하고 있지만 그러한 異業種組合도 일단 固着 化되면 위와 같은 組織論理가 어느 정도 지배 할 것으로 본다.

⁴⁷⁾ 日本의 戰後 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 技術發展 과 下請制간의 關係에 대하여는 拙稿(1986) 參

⁴⁸⁾ 예로서, 藤田敬三・竹田正巳(編)(1987).

강력한 디플레政策下에서 중소기업은 다시금 下請的 存在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1954년의 불황을 전후하여 일본의 獨占企業이 국제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서 자신의 存立基盤强化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소기업의 構造的 改編을 시도하게 되었다. 즉 중소기업 중에서 근대화·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대기업의 肢體로서 효율적으로 편입되는 '系列化'가 진전되었다. 이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戰前의 '量的 結合'에서 '質的 結合'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生產面은 물론 流通·金融에 이르기까지 獨占企業을 정점으로 피라밋型 企業集團體制 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企業系列化가 母企業의 '經營合理化'를 전제로 하는 이상, 여기에는 엄격한 '個別的' 選別過程이 개재하게 마련이며,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도 '自助的'인 經營努力을 계속해야만 하였다. 더우기 점차 격화되는 국제경쟁과 최근의 多品種少量生產技術의 발달로대기업에 있어서 內製와 外製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한편, 중소기업으로서도 독특한 技術力과 市場規模의 擴大를 배경으로 점차 독자적인 市場力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母企業과 中小下請企業間의 관계가 좀더계산적으로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軍國主義下에서는 중소기업의 被掠奪的 從 屬性이 강하더라도 국가목표에 대한 追從 때 문에 기업간의 봉건적인 인간관계가 존중될 수 있었고 패전 이래의 고도성장기에는 대기 업 스스로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였으므 로 그러한 관계가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급격한 技術變化와 가중되는 競爭壓力에 따라 대기업의 下請企業 選定基準 에서 '오랜 去來關係에 의한 信賴性'의 중요성 이 현저히 감소한 반면 下請中小企業에 있어 서는 아직도 '人間的 紐帶感'이 가장 강력한 受注要因으로 간주되고 있다⁴⁹⁾. 이것은 大企 業과 中小下請企業間의 市場位置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企業間 連結組織

日本의 製造業에서 典型的인 企業間 連結組 織은 어느 정도 계속적인 財貨나 서비스의 거 래관계로 정보의 전달·교환의 관계가 생기고 이것이 信賴・義務 등의 規範的인 關係를 낳아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資本的・人的 關係가 가해지는 企業集團과 같은 강한 연결 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市場去來 속에서 형성 되는 軟한 連結로서 시장과 조직의 요소가 융 합되어 있는 '市場과 組織의 相互浸透'인 것이 다50). 이러한 連結組織은 革新에 대하여 특별 히 유효하다. 革新은 의외성 때문에 반드시 대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며, 혁신을 수행 하는 조직은 流動化, 즉 構成要素의 活動의 자유도가 높아야 하는데, 약한 연결은 集權化 된 강한 연결에 비해 새로운 情報의 流入이나 異質的인 思考에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므 로 접촉의 빈도가 높아 신뢰성이 유지되면 혁 신의 의외성과 이질성이 발현될 수 있다.

日本의 企業間 連結組織은 新製品開發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인다. 일본의 혁신은 전형적으로 基本技術의 部分的 改良, 즉差異化(narrow focusing)의 累積에 입각한 高

⁴⁹⁾ 中小企業廳(1985).

⁵⁰⁾ 今井賢一(1984, 1986)。

品質의 新製品開發을 중심으로 하는 微增的 革新이다. 이와 같이 하여 개개의 要素技術이 개선되면 그 다음에는 이들을 연결하는 接面 (interface)의 개선이나 또는 전혀 새로운 접 면이 필요하게 되는 일면, 어떤 要素技術의 革新은 그것과 관련한 다른 要素技術의 革新도 불가피하게 하여 새로운 접면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部分改良의 連鎖가 連結組織化를 촉진하는 기반으로 되는 것이다. 日本에서는 市場과 組織間에 系列企業・下請企業・關聯企業 등 다양한 중간조직이 존재하여 이들이 連結 組織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製品開發 連結組織의 대표적인 예는 東京・ 川崎의 下町(시타마치)工業地帶에서 볼 수 있 다51), 이곳에는 小企業과 零細企業의 生產性 이 높고 新規開業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社長 자신이 熟練工 出身으로 기술력이 매우 높고, 少量의 特殊品이나 試作品을 만드는 기 업이 많다. 이들은 각각 독립해 있으면서 상 호간에 連繫되어 注文을 消化하고 약한 連結 의 連結組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工業集 積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여기에는 下町社 會의 전통 외에도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즉 한 기업이 다양한 注文者로부터의 특별한 주 문을 소화하려면, 각각의 수요자로부터 거리 가 가까운 중심에 처하여 短時間內에 협의차 왕래하거나 材料·製品을 운반하는 것이 필요 하며, 또한 어떤 주문에도 응할 수 있고 주문

을 융합하거나 분할하려면 多種多樣한 專門業 者가 일정한 地域範圍內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連結組織 分業은 시장에서의 고립적인 분업이나 大企業 內部에서의 제약된 분업과 달리각 자율성을 가지면서 밀접한 相互依存關係에 있는 분업으로서 각자는 連結組織에 있어서의 '位置'와 '他人'과의 '距離'를 고려하면서행동한다. 分業의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의존한다는 명제와 같이 高度成長過程에서 東京과같이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는 분업은매우 세분화되고 동시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던技能工이 독립하여 자신의 零細企業을 설립할수 있다.

이들은 과거에 硏磨한 특정한 技術을 더욱 심화하여 特殊技術者로 독립한다. 과거의 조 직 속에서의 制約된 分業과 달리 技能을 자유 롭게 伸張하므로 技能이 더욱 分化되고 새로 운 용도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伸縮的 專 門化'(flexible specialization)는 技術의 專門 化를 초래함과 아울러 市場을 스스로 創出하 고 그것이 自己組織化에 의해 連結組織으로 連結된다. 극도로 세분화된 분업은 필연적으로 각각의 분업을 담당하는 小企業間의 連帶 를 발생시켜 그들은 지역내에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사업을 신장할 수 없다. 또 한 相互의 特技에 응해 일을 융합하는 데 필 요한 정보교환을 위해서도 평소의 밀접한 교 류가 불가결하다.

企業間 連結組織에서는 試作品의 경우에 注 文이 少量이지만 '配列의 學習'(learning in arrangement) 때문에 學習效果(learning effect)가 성립한다. 즉 微細한 分業 속에서의 試作品의 注文은, 發注處가 다르고 試作品의

⁵¹⁾ 下町은 원래 封建時代의 城下(丞우카: castle town)의 低地帶에 있던 商人과 職人地域으로, 舊都市 특히 江戸의 傳統的인 商業地域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地域은 地理・歷史的 背景, 社會・文化的 傳統, 社會的 身分, 經濟生活面에서 독특한 性格을 갖는 都市의 일부분이다.

종류가 달라도 같은 技術·技能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서 재료나 작업수순의 배열만이 다르므로 이에 習熟된다면 同一製品의 連續生產에 의한 것과 같은 學習效果가 발생한다.

連結組織에서의 거래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행하여진다. 이것은 長期契約에서와 같이 안정적인 거래가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市場條件에 따라 수시로 決濟되는 去來이지만 개개의 去來條件에 있어서는 장기적인고려가 작용한다. 이러한 거래의 繼續過程에서 쌍방간에 信賴關係가 생기게 되고, 이 의미에서 거래도 市場去來와 組織內去來의 中間型으로 된다. 즉 거래의 성질은 短期的 觀點에서의 市場交換과 愛情・信賴의 交換이라는 贈與의 世界의 中間的인 社會的 交換이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的 交換의 過程에서 兩當事者中 어느 한 쪽에 힘이 생기게 된다. 예 컨대, 下請關係에서 母企業이 下請企業에 대하여 技術·資本을 제공하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종래에는 下請企業의 從屬的地位를 강화한 것이나 고도성장과 함께 母企業은 連結組織의 核으로서 연결조직 전체를 유지·발전시키는 지도자의 역할을 발휘하는형태로 발전하였다. 최근의 情報·通信技術의 發達은 연결조직의 地理的 近接性의 條件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情報連結組織으로서 기존

3. 企業集團

企業集團의 源流는 2次大戰 終了前의 財閥 (자이바츠)로 소급된다. 舊日本의 상황에서 財閥은 同族에 의해 지배되고 封建的 氣風과 方針下에서 운영되며 本社인 持株會社를 정점으로 다수의 사업분야에 걸쳐 독점적인 기업을 株式所有,任員兼任,融資,繼續的 去來關係 등의 紐帶에 의해 本社一直系會社,子會社一傍係會社의 피라밋型으로 結合된 複合的企業集團이며,沿革的으로는 政商的인 存在라고 정의할 수 있다.

財閥形態의 起源은 明治政府의 富國强兵政策에 의한 資本의 高度集中化에서 찾을 수 있지만, 大財閥로서의 지위를 構築한 것은 1次大戰 이후이다. 大戰中에 막대한 이익을 얻은 재벌은 그 후의 불황을 거쳐 弱小企業을 傘下에 거느려 經濟支配力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였으며, 昭和 初期에는 대부분의 主要產業에서 거의 절대적인 市場支配力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財閥은 그 이후 軍國主義의 支持勢力으로 한 膨脹을 가속하여 1944년에는 10大財閥이전체 日本企業의 總拂入資本金의 35.2%를 占有하기에 이르렀다.53).

財閥의 弊害를 넓은 시아에서 보면,產業支配權의 집중은 勞資間의 半封建的 關係를 존속시켜 勞賃을 引下하고 勞動組合의 發展을 저해하였다. 또한 獨立的 企業家의 創業을 방해하고 中產層의 勃興을 저지하였으며, 중산층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독립하는 經濟的 基盤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軍部에 대항하

의 亂雜性을 정리하고 오히려 連結組織의 장 점을 振作시키고 있다.

⁵²⁾ 小林良彰(1970) 參照.

^{53) 2}次大戰 終了時에 三井, 三菱, 住友, 安田의 4 大財閥과 그 이하의 6大財閥(日產, 淺野, 占 河, 大倉, 中島, 野村)은 각각 761個 및 436個 合計 1,197個의 企業을 포함하였으며 拂入資本 金額의 合計로는 각각 全國總額의 24.5%와 10,7%를 점하였으며 4大財閥의 海外投資額의 、 80.1%에 달하였다.

는 세력도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軍事的 意圖에 반대하는 民主主義的·人道主義的인 國民感情의 발전도 볼 수 없었다. 더우기 이러한 特權的 財閥支配下에서 低賃金과 利潤集積은 국내시장을 狹小하게 하여 商品輸出의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결국 日本을 帝國主義的 戰爭으로 치닫게 하였던 것이다⁵⁴.

이러한 역사적 평가 위에서 終戰後 日本을 統治하였던 聯合軍總司令部는 '經濟民主化'를 위한 '產業民主化'政策으로서 財閥의 人的·資本的 紐帶와 支配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財閥解體를 실시하였으며, 이의 재발을 항구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獨占禁止法」의 골격을 마련하였다⁵⁵⁾. 이에 따라 財閥의 傘下企業은 本社의 拘束에서 解放되고 새로운 젊은 경영진에 의해 自主的으로 활동하게 되었

다.

그러나 極東情勢의 變化에 따른 美國의 對日 觀修正, 日本經濟復興의 心要性, 獨禁法의 非日 本的 理想에 대한 反撥 등에 입각하여 舊財閥 은 占領終了(1952) 전후부터 재결합을 시도하 였다. 三井, 三菱, 住友 등 舊財閥系銀行은 1952년의 財閥商號 使用禁止解除와 함께 財閥 商號를 부활하였으며, 舊財閥傘下의 기업에 대한 융자를 유지・확대하며 結合關係를 강화 하였다. 그 위에 기업에 대한 1953년의 獨禁 法 改正에 따른 企業結合規制의 완화에 의해 舊財閥系銀行 및 기타 금융기관은 舊財閥系會社 에 대한 持株比率의 擴大나 任員兼任의 再開 를 통해 資本的・人的結合關係도 緊密化하였 다56). 財閥 再編成의 주체로 된 것은 占領下 의 反獨占構造政策에서 거의 면제되었던 銀行 과 戰前의 財閥直系企業에 의해 內的協助組織 으로서 형성된 社長會였다. 社長會의 參加 企業은 相互持株比率을 높였으며 또한 상호협 조를 통하여 外國技術 導入, 新產業分野 進 出,內部相互去來 緊密化 및 業務提携의 역할 을 수행하였다⁵⁷⁾.

이처럼 舊財閥系 企業은 재결합하였지만 財閥家族에 의한 同族的 支配가 배제되고 피라 밋型 資本結合과 持株會社에 의한 강력한 指令機構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戰後의企業集團은 資本的·人的 紐帶가 戰前에 비해약하고 따라서 社長會의 內的協助行動도 약하며 집단내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⁵⁸⁾. 여타의 舊財閥도다소 늦게 재편성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앞서 말한 3個는 舊財閥系 企業集團, 이들 3個는 新企業集團이라고 한다⁵⁹⁾.

6個集團의 資本的 結合狀態를 보면60), 社長

⁵⁴⁾ 美國이 日本에 派遣한「財閥調査委員會」(1945) 의 評價內容의 要旨이다.

⁵⁵⁾ 이 法의 正式 名稱은「獨占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로서 1947년 新憲法에 의해 구성된 日本 國會에서 通過되었다.

⁵⁶⁾ 財閥解體를 前後한 자세한 經緯에 관하여는 公正取引委員會(1977) 參照.

⁵⁷⁾ 平和經濟計劃會議(編)(1978).

⁵⁸⁾ 植草益(1982).

⁵⁹⁾ 安田系의 富士銀行은 淺野·森·大倉系企業도 편 입하여 '芙蓉'集團을 형성하였으며, 또 古河·川 崎系의 일부를 중심으로 하는 '三和'集團이 形 成되었다. 各企業集團別 名稱과 結成日時 및 企業數는 다음과 같다:

三井(二木會:1961年, 24社), 三菱(三菱金曜會:1955年, 28社), 住友(白水會:1951~52年頃, 21社), 芙蓉(芙蓉會:1966年, 29社), 三和(三水會:1967年, 40社), 第一勸銀(三金會:1978年, 45社).

企業集團에는 또한 각각의「總合商社」(general trading company)가 銀行과 더불어 中心的인 企業으로 되어 있다:

三菱商社(三菱), 三井物產(三井), 住友商社(住友), 丸紅(芙蓉), 伊藤忠商社(第一勸銀), 日商巖井(三和).

⁶⁰⁾ 이하 企業集團에 관한 상세한 資料는 公正取引 委員會(1983a) 參照.

會 會員社間의 平均持株率은61) 1.8%로서 개 개의 회원사간의 株式所有를 통한 結合程度는 높지 않지만 株式所有關係頻度는⁶²⁾ 平均 50. 6%에 달한다. 그러므로 企業集團內의 개개의 회원사에 의한 株式所有關係는, 株式의 所有 比率을 저하시키면서 株式所有의 상대방을 증 가시킨다는 '얕고 넓은' 所有關係를 갖고 있 다. 株式相互保有率도63) 平均 25.5%라는 상 당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은 1960년 후반의 資本自由化 속에서 外 國企業에 의한 引受를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 企業集團의 또다른 특징으로 '系列融資'가 지적되어 왔으 나 각 社長會 會員企業의 會員金融機關에 대 한 借入金依存率은 平均 18.8%로서 同一企業 集團內의 금융기관과 다른 會員企業間의 結合 度가 融資面에서 약하며 그나마 계속 감소해 오고 있다.

企業集團의 行動面에서는 新規事業分野로의 共同進出, 共同廣告活動, 共通商標의 管理, 社長會의 開催 등을 볼 수 있으며 근년의 貿 易摩擦 問題와 관련하여서는 企業集團內의 폐 쇄적인 거래에 대한 해외의 비난도 漸高하여 왔다. 실제로 각 기업집단의 社長會 會員企業 中 金融關係企業을 제외한 集團內 去來의 狀 況은 賣出依存率이 10.8%, 購入依存率이 11. 7%의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社 長會 會員企業, 즉 中核企業間의 去來로서 각 기업집단은 생산의 技術的・物的 關聯을 갖는 다수의 系列會社를 維持함으로써 投入•產出關 係를 가능한 한 집단에 內部化하려는 自己充 足主義(소위 one set 主義)를 추구하여 왔 다64) 이에 따라 系列會社의 數는 계속 증가 하여 6個 企業集團의 社長會 會員社는 總 182 個이지만 이들의 子會社(持株率 50% 이상) 4,271個 및 關係會社 7,529個를 합하면 11,982 個로 企業集團當 平均 1,997個의 企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정확한 자료는 입수할 수 없지 만 關係會社에는 다수의 下請企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日本經濟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中核企業만으로는 企業數, 總資產、 賣出額에 있어 全法人企業中 각각 0.01%, 26.0%, 15.8%이나 關係會社까지 포 함하면 0.7%, 34.0%, 27.6%로 되어 큰 비 중을 나타내고 있다.

財閥解體는 經濟的 側面에서 競爭의 促進을 통하여 日本經濟의 飛躍的 成長을 가능하게한 가장 결정적인 產業組織政策으로 평가될수 있다. 그렇다면 財閥解體 이후 생성된 기업집단이 經濟成長過程에서 기여할 수 있었던원인은 무엇인가. 기업집단은 持株會社 設立을 금지하는 한편 企業結合 規制를 완화한「獨禁法」의 범주내에서 內·外의 區別, 戰前財閥企業간의 仲間意識,集團으로서의 競爭 등일본의 社會組織 傳統이 적응함으로써 생성된측면도 있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經濟的 動機에 관하여는 利潤極大型 互惠去來, 販路確

⁶¹⁾ 平均持株率은 社長會 會員企業의 1社가 같은 社長會 會員인 다른 企業 1社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경우의 平均的인 持株率로서 個個의 社長會 會員企業間의 結合度를 나타내는 指標 이다.

⁶²⁾ 株式所有關係頻度는 개개의 社長會 會員企業이 같은 社長會 會員企業中 어느 企業의 株式을 실제로 어느 정도 所有하고 있는가 하는 企業 間 株式所有關係의 進展을 나타내는 指標이다.

⁶³⁾ 株式相互保有率은 社長會 會員企業이 같은 社 長會 會員企業 全體에 의해 어느 정도의 株式 을 所有당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指標이다.

⁶⁴⁾ 이에 관한 좀더 상세한 分析은 二木雄策(1976) 參照.

保,價格安定,外部效果의內部化 등 獨占動機說,去來費用節減,情報費用 및 不確實性減退,資金利用費用減少 등 資本市場假說,配當詐取說 등 여러 가지 學說이 있으며⁶⁵⁾ 최근에는 雇傭安定의 視角에서 설명하려는 保險的機能說도 제시되고 있다⁶⁶⁾.

企業集團은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共同效果(synergy)를 누리면서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動態的인 效率性을 증진시킬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하였던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獨禁法」에 의해 戰前의 財閥과 같은 所有集中 및 이에 수반되는經濟의 共同獨占化 및 退嬰的인 경영체제가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집단간의 경쟁은각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제시장에서의 위치를 견고히 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革新的 獨立企業의 出現도 초래하였다. 財閥과 企業集團의 根本的인 差異는 所有集中 與否로 歸着되며 이 점은 우리나라의 財閥問題에 대하여도 귀중한 示唆點을 제공하고 있다.

VI. 結 言

本稿에서는 日本經濟社會의 몇가지 특징적 인 組織構造 및 行動과 그 文化的·歷史的 배 경을 논의하고 이것이 時代狀況의 變化에 따라 어떻게 進化하면서 적응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日本의 經濟的 成果는 결국 日本 經濟社會의 基底가 뒷받침한 것이므로 금후 일본의 장래를 전망함에 있어서도 이를 충분 히 이해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주의깊게 관찰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근세 이래 日本의 社會를 움직여 온 動因은 기본적으로 과거 100여년에 걸쳐 先進國 追及 을 國家目標로서 國民的 合意 속에서 추구하 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 이를 經濟成長이라는 成果로서 실현시켜 온 과정에 서 本稿에서 지적한 諸般 組織的 特性이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先進經濟大國으로 성장한 현재에는 금후의 國家政策目標에 대하 여 日本內에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으며, 適應 的 集團主義에 입각한 政策形成過程도 의식변 화와 中心目標의 消滅로 종래와 같은 힘을 행 사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의 힘을 응집시켜 온 목표가 달성된 현시점에서 일본은 금후의 發展軌道를 스스로 모색해야 하며 바로 이 점 에서 일본의 성공은 일본의 좌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日本이 先進國 追及을 실질적으로 끝낸 것은 70년대 초로 先進工業國의 戰後 高度成長이 終了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근년에 이르러 歐美先進工業國의 成長鈍化는 人工原材料와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하는 大量生產指向의 20世紀型 技術의 발전이 한계에 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先進工業國은 현재 尖端產業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활성화하려고 하며 日本의 先進國 追及은 바로 이러한 21世紀型 技術이 출현하는 시점에서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歐美先進國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工業國은 산업의 기술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변화는 工業國 相互의 國境을 넘어 부문별 또는 산업별로 生產能力을 調整해야 한다

⁶⁵⁾ 상세한 關聯文獻은 植草益의 前揭書 參照.

⁶⁶⁾ Aoki(1984).

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政治的・社會的 問題가 발생하고 이것이 국제적 마찰로까지 轉化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관점에서의 日本의 位置 變化와 함께 日本 内部에서는 人口의 高齢化, 都市化, 人間의 同質化의 個別化의 同時進行 現象, 情報化와 서비스化에 의한 소프트化가 독립적으로 또는 相互誘引的으로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一連의 복잡한 國內外的인 추세에 대응하여 일본의 經濟的・政治的・社會的 制度 는 변모해 가고 있다. 좀더 기본적인 가치관 은 변화의 속도가 늦어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주요한 원천이 되겠지만 이를 구체 화하는 行動樣式이 반드시 고정된다고 할 수 는 없다. 그러므로 일본이 현재 경험하고 있 는 過渡期的 變化는 주로 技術的・經濟的인 것 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社會的•文化的 變化가 초래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될 것 인지 또는 社會的・文化的 變化가 오히려 過渡 期的 現象에 안정성을 부여할 것인지가 일본 의 장래를 照望함에 있어 本質的인 疑問이 될 것이다.

日本은 先進國 追及의 緊張感과 이에 따른 장기간의 國家總動員的인 努力의 결과로 80 년대에 들어 世界 GNP의 10%를 차지하는 先進經濟大國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최대의 債權國으로 浮上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일본인은 國家로서의 日本의 富의 蓄積과 개인의 生活의 質과의 隔差, 일본의 경제적인 험과 國際政治的인 험의 乖離, 追及의 相對가 실질적으로 소멸함에 따른 彷徨意識, 排他主義下의 輸出立國의 成果에 대한 自己陶醉와 文化의 世界性 내지 固有性 缺如간의 混沌 등을 경험해 왔으며, 특히 막대

한 貿易收支黑字로 미국을 위시한 交易相對國으로부터의 강력한 通商壓力에 직면해 있다.

日本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국민의 저력을 동원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지 國家的·歷史的으로 보아 危機狀況 속에서 오히려 發展의 契機를 찾는 것 같다. 先進國 追及이라는 國家的 目標가 달성된 현재 일본에서는 通商摩擦을 근본적으로 文化摩擦로 보고, 日本文化는 독특하고 우월하다는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危機'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危機를 克服하려면 그 원인의 일부이기도한 국내의 요인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日本經濟社會의 근본적인 方向轉換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최근의 人口構造・產業技術・意識構造의 變化는 그 필요성을 일층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전통적인 適應的 集團主義를 발휘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日本政府가 주동이 되어 여러 審議會·研究會 등에서 각 방면에 걸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서히 그 윤곽을 浮刻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6~87년에 걸쳐 발표된 소위 '前川'(마에카와)報告書이다.이 보고서의 基本構想은 輸出指向的인 종래의經濟政策 및 國民生活의 樣態를 '歷史的'으로전환하여,內需主導型 및 國際協助型 經濟를실현함으로써 '國際國家 日本'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1986년에 通商產業省이 발표한 「21世紀 產業社會의 基本構想」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성된 것이다. 여기서도 종래 일본의 思考·行動을 지배해 왔던 '追及意識'과 '小國論理'를 탈피하고 세계경제의 潮流와 意識·價值觀의

變化에 입각하여,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 부합하는 主體的・創造的 貢獻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前川 報告書와 같은 發想으로서 금후의 政策運營에 있어서 創造的成長의 추구, 自由經濟體制의 유지, 국제사회에의 공헌, 세계적 시야에 선 협조의 네 가지를 基本理念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일본은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정부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위에서 근본적인 發想과 行動의 變革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이 국제사회 속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지는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아직도 일본을 주도하고 있는 戰前世代가 스스로의 思考와 行動樣式을 실제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점에서 시대적 흐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國際的인 名分과 自尊的인本心과의 葛藤은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다.

일본의 장래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한하여 보더라도 단순한 經濟變數의 움직임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先進國圈 進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장래를 예측하는 것은 本稿의 目的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나 結言으로서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은, 현재 美國의 衰退와 日本의 擴張 및 이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은 19세기말 中國의 沒落과 日本의 勃興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일면 상통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이다. 우리는 일본을 좀더 정확히이해하고 우리의 國際的 位相을 확인함으로써 先進國 追及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며 과거의 불행한 경험을 극복하여 世界 속의韓國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李奎億,「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産業組織的 關係」,『韓國開發研究』, 1986 가을號。
- 一一,「情報化斗 產業組織」, 韓國開發研究院, 政策討論資料 8707, 1987.
- 經濟企劃廳,『2000年の日本シリーズ』,第2卷, 1982.
- -----, 『日本經濟の現況』, 1986, 1987.
- ----, 『世界經濟國家日本へ』, 1986.
- -----, 『輸入品の流通及び商慣行』, 1986(a).

- 經濟調査研究會、『經濟構造の變化と產業構造』, 1987.
- 高橋龜吉,『戰後日本經濟躍進の根本要因』, 日本經濟新聞社, 1981.
- 公正取引委員會, 『獨占禁止政策三十年史』 1977.
- -----, 『企業結合の實態について』, 1983 (a).
- -----, 『總合商社の事業活動の實態調 査』, 1983(b).
- 館龍一郎(編),『21世紀の日本經濟と企業』,東 洋經濟新報社,1986.

- 金森久雄・日本經濟センター(編),『日本經濟』, 日本經濟新聞社,1984.
- -----, 『ダイナミクス日本經濟』, 中央經 濟社, 1985.
- 今井賢一, 『情報ネットワーク社會』, 岩波新書, 1984.
- ---(編著), 『イノベーションと組織』, 東洋經濟新報社, 1986.
- 磯村隆文, 『日本型市場經濟』, 日本評論社, 1982.
- 吉川元信,「前川レポートを再評價する」,『經濟評論』, 1987.2.
- 大島國雄, 「日本的經營の進路」, 『公益事業研究』, 1987.3.
- 大藏省、『ソフトノミックス・フォローアップ研 究會報告書シリーズ』、(1984~)
- 大前研一,『日本企業生き殘り戰略』, プレジデント社, 1987.
- 藤田敬三·竹內正巳(編), 『中小企業』 第3版, 有斐閣, 1986
- 梅木晃,『明日を生きる中小企業』,中小企業リサーチセンタ,1984
- 梅子猛,「國民性と歷史的變化」,總合研究開發 機構(編),『對應力-日本とアメリカの將 來性』,1985.
- 保坂直達,「日本の倫理と企業の責務:二つの 分配理論」,『經濟評論』,1987.6.
- 上田正昭·姜在彦(編),『日本と朝鮮の二千年』, 大阪書籍, 1985.
- 小宮隆太郎・奥野正寛・鈴木興太郎(編), 『日本 の産業政策』,東京大學,1984.
- 小林良彰,『日本財閥の政策』, 千倉書房, 1970.
- 植草益,『產業組織論』, 筑摩書房, 1982.
- 龍円惠喜二, 『日本發展の活力』, 毎日新聞社, 1983.
- 二木雄策,『現代日本の企業集團』, 東洋經濟新 報社, 1976.
- 日本經濟新聞社(編), 『セミナール日本經濟入 門』, 日本經濟新聞社, 1986.

- 竹内宏,『日本だけがなぜ强いか』,太陽企劃出版,1981。
- 竹内弘高·野中郁次郎,「新製品開發の戰略と組織」, 今井賢一(編著), 前掲書。
- 中小企業廳,『中小企業白書』, 1985.
- G.C.アレン・西山天明,『日本經濟を考える』, 講談社, 1976.
- 青木昌彦・小池和男・中谷巖, 『日本企業の經濟 學』, TBS ブリタニカ, 1987.
- 村上泰亮,「現代日本の政治・經濟モデル」,總 合研究開發機構(1987)。
- 總合研究開發機構, 『產業勞動における勤勉性 に關する研究』, 1985.
- -----, 『現代日本の政治經濟』, 1987.
- 通商産業省, 『21世紀産業社會の基本構想』, 1986.
- 平岩外四・赤澤璋一・官崎勇外,「經濟特別部會中間報告の考え方」, ESP, 1987. 5.
- 平和經濟計劃會議·獨占白書委員會(編),『國民の 獨占白書:企業集團』 御茶の水書房, 1978.
- 丸茂明則,『經濟大國日本の强さともろさ』,中 央經濟社,1987.
- Aoki, M.(ed.),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Japanese Firm*, Amsterdam: North-Holland, 1984.
- Kanamori, H. et als., The Industrial Structure in the Year 2000: Are the Propositions Made in the "Maekawa Report" Feasible?, 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April 1987.
- Kodansha, Kodansha Encyclopedia of Japan, Tokyo, 1983.
- Lodge, George C., and Ezra F. Vogel(eds),

 Ideolog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n Analysis of Nine Countries, Boston,

 Mass: Harvard Business School, 1987.
- McCraw, Thomas K., ed., *America versus Japan*, Boston, Mas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86.

- Morishima, M., Why Has Japan 'Succeeded'?: Western Technology and the Japanese Etho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Nato, T,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on Life-Innovations in the Japanese Social-Economic Order",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 Ethics, Vol. 1, 1986.
- Pye, Lucian W., Asian Power and Politics, Boston, Mass: Belknap Press, Harvard University, 1985.
- Shichihei, Y., "A Protestant Ethic in a Non-Christian Context", Shibusawa, M. et als.(eds.), *Entrepreneurship: The Japanese Experience*, Tokyo: PHP Institute, 1982.

「TVBVAR 模型을 이용한 三低效果의 分析」: 論評

金 基 禾

*

달러價值의 下落, 國際金利의 下落, 國際原 油價格의 下落으로 대표되는 三低現象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이 없었던 점에 비 취 볼 때 朴佑奎박사의 논문은 그 시도 자체로 서도 공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巨視經 濟理論의 한 흐름인 巨視時系列分析을 이용하 여 위의 문제에 접근한 시도는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상의 利點과 아울 러 또 한 가지의 공헌은 巨視經濟理論의 핵심 명제라 할 수 있는 Lucas 批評의 타당성 여 부를 三低效果의 분석과정에서 확인해 보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朴박사 는 三低現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價格效 果와 構造變化效果로 代別하여 분석하고자 했 으며 그 접근방법으로서는 時系列分析技法인 VAR模型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圖 4.1]에

서 [圖 4.12]에 나타난 것처럼 MAR을 통해 구조변화를 파악하고자 한 시도는 훌륭한 착상이라 할 수 있겠다. 분석의 결론으로서 朴박사는 1985년 1/4분기 이후에 발생한 三低 現象으로 인해 經濟의 民間主體 및 政策當局의 행동양식이 변화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은構造變化效果가 단순한 價格效果 못지 않게 매우 컸다고 보고 있다(p.24). 차박사가 제기한 문제의 중요성 및 분석방법의 참신함과 결론이 갖는 理論 및 政策的인 중요성에 미루어볼 때 차박사의 논문은 깊이 음미할 가치가 있음에 틀림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實證分析의 약점은 그 결론이 分析方法 및 模型設定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데서 연유한다. 評者의 견해로는 차박사의 논문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차박사가 사용한 VAR模型은 특히 이러한 취약점에 노출되기가 쉽다. 이러한 관점에서 評者는 차박사가 사용한 접근방법 및 그분석과정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지적함으로써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상의 신중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차박사의 논문에 나타

筆者:高麗大學校 經商大學 助教授

난 문제점을 大別하면 分析技法 및 模型設定의 문제와 구체적인 分析方法上의 문제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로 分析方法上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三低現象에 따른 構造變化 與否의 파악을 위 해 차박사가 사용한 방법은 三低現象 기간동 안에 걸쳐서 각 實驗에 따른 모형들의 豫測能 力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실험이 채택되었으며 이 중에서 三低現象 및 構造變化를 동시에 고려한 <實驗 C>의 예 측능력이 가장 뛰어나므로 이로부터 朴박사는 上記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朴박사가 의도하고 있는 결론에 비추 어 볼 때 이러한 평가기준은 적합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뛰어난 豫測模型 이 반드시 구조변화를 포함한 모형이라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TVBVAR 模型이 아닌 통상의 BVAR模型에 의해서나 또는 제약을 가하지 않은 UVAR模型(Unrestricted VAR Model)에 의해서도 훌륭한 예측모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모형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三低現象에도 불구하고 構造變化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 렇게 볼 때, 豫測能力에 기초하여 결론을 유 도하려는 시도는 그 결론의 차이가 TVBVAR 模型에 의해 파악되어진 구조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각 모형들간의 豫測能 力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게 되는 遇를 범하게 된다. 구조변화의 파악이 목적이었다면 [圖 4.1]에서 [圖 4.12] 에 나타난 MAR을 강조하는 것이 더 나았으 며, 만일 三低效果의 파악 그 자체가 목적이 었다면 구태여 TVBVAR模型까지 이용할 필 요가 없이 UVAR模型만 가지고서도 충분했을 것이다.

朴박사가 구조변화의 파악을 위해 이용한 세 가지의 實驗들은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實驗 C>에 나타난 過多情報의 問題를 지적할 수 있다. 同 實驗에서는 1986년 3/4분기까지의 推定結 果를 이용하여 1985년 2/4분기부터 1986년 4/4분기까지를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경제주체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豫測視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예를 들면 1985년 2/4분기의 예측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1985년 1/4분기까지 의 정보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예측에 있어서 는 1986년 3/4분기까지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러한 문제점은 合理的期待假說의 實證的分析 過程에서 Barro가 범한 오류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방법보다는 차 라리 매기간마다 觀測値가 추가됨에 따라 추 정을 다시 하고 이에 기초하여 예측을 행하 고, 또다시 추정과 예측을 반복하는 실험이 더욱 현실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 측기간을 짧게 하여 그 豫測誤差를 최소화시 키는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 오히려 나올 것 이다. 더우기 이와 같이 過多情報를 인정하 고 <實驗 C>를 행한다면 굳이 TVBVAR模 型이 아닌 固定係數를 가정한 BVAR模型이 나 UVAR模型에 의해서도 三低效果의 分析 이 가능해질 것이다. 만일 <實驗 B>의 실 행과정에서도 <實驗 C>에서와 마찬가지로 過多情報를 인정하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도출한 <實驗 B>의 결과로부터도 예측능력

이 우수한 모형이 나온다면 이로부터 얻어지는 결론과 〈實驗 C〉에서 얻어진 결론을 어떻게 比較,解釋할 것인가? 차박사가 구조조정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사용한 각 실험에 따르는 展望値들의 비교작업은 논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기준이 못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模型設定에 따라 각 실험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朴박사가 사용한 時系列分析技法上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관점 에서 경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안 된 VAR模型, 특히 BVAR模型은 그 결론이 모형설정 여부에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 고 있다. Prior의 選擇, 時差의 選定 및 常數 項에서의 추세변수(trend)의 포함 여부 등이 결론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Prior의 선정이 예측능력 향상이라는 목적달 성을 위해 대부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 며 BVAR模型의 주관적인 약점이 바로 이 점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朴박 사가 사용한 Doan·Litterman·Sims型의 Prior 를 통하여 構造變化를 파악하는 데는 難點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P. Miller and W. Roberds, 1987). 構造變化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또한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TVBVAR模型이 필요한 것이었는가 에 대한 한 설명으로서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 를 제시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三低現象으로 인해서 경제구조의 변화가 실제 로 발생하였다면 이는 곧 VAR模型의 계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의 확인을 위해서 각 方程式 내에 포함된 自 體變數들의 係數값의 변화, 특히 一期時差變 數의 係數값(coefficient of first own lag)들의 時間經路를 보여줬더라면 구조변화 여부 및 그 중요성 여부가 파악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朴박사가 사용한 모형의 安定性問 題를 지적할 수 있다. [圖 4.1]에서부터 [圖 4.12]에 나타나듯이 충격에 따른 각 변수들의 반응이 대부분 24분기가 지나도록 균형치에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의 목적이 경제구 조의 분석에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모형의 안 정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안정성이 결여된 모형을 사용한 比較動態分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분석의 목적이 경제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분석에 있다 면 Prior에 민감한 BVAR模型보다는 UVAR 模型의 사용이 分析者의 주관적인 자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았을 것이 다. BVAR模型은 예측 목적을 위해 개발된 VAR模型이기 때문이다. 模型設定과 관련된 또 한 가지 문제는 變數選定에 관한 점이다. p. 7에서 보면, 모형에 通貨政策變數가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三低現象에 따른 政 策反應의 變化를 모형내에 직접 포함된 네 變 數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한다면 計量模型 의 構造方程式 내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전부 다 外生變數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냐하면, 構造方程式들은 결국에는 外生變數들 의 函數인 最終型(final form)으로 풀리기 때 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巨視時系列들을 해석 한다면 GNP, 輸出, 輸入, 物價의 네 변수를 포함시킬 필요가 어디 있는가? GNP와 物 價, 혹은 GNP 한 변수만 분석하고서도 원하 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분석에 사용된 模型經濟(model economy)는 그 안에 포함된 변수들만으로 구성된 한정된 세계일

뿐이다. 모형내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을 이용하여 도출해 내는 결론은 理論의 비약이며 과장된 해석인 것이다. 차박사의 의도가 三低 現象에 따른 民間部門과 政策部門간의 구조변화 여부 및 그 상호작용의 분석에 있었다면 通貨變數도 마땅히 모형에 포함시켰어야만 했다. 모형에서 제외된 변수를 해석단계에서 거론할 수는 없으며 巨視時系列分析의 客觀性은 바로 이 점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構造變化의 파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의 不

適合함과 分析模型設定의 자의성 및 채택된實驗들의 推定,豫測過程에서의 差別的인 처리로 인해 차박사의 分析結果는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모형에 따른 결론의 차이가 과연 구조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모형설정 (model specification)의 차에 기인한 것인지의 판별여부는 朴박사의 논문결과만을 가지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차佑奎,「TVBVAR模型을 이용한 三低效果의 分析」,『韓國開發研究』, 第9卷 第1號, 1987 봄, pp. 3~26.

Miller, P. and W. Roberds, "The Quanti-

tative Significance of the Lucas Critiqu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Staff Report 109, April 1987.

「TVBVAR 模型을 이용한 三低效果의 分析」:應答

朴 佑 奎

*

本人의 論文1¹(以下 論文이라 略함)을 읽고여러 가지로 자세한 論評을 해준 金基禾 教授²¹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특히 金教授의 論評은 논문에서 설명이 부족하였던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부연 설명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하겠다. 金教授의 논평의요점은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變動係數模型의 사용의 必要性與否, 둘째, 논문의 實驗 C의 意味가 무엇이며 과연 정당한豫測實驗인가, 세째로, 논문의 MAR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모형에 대한 충격의 영향이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사실로 보아 논문에서사용된 모형이 豫測模型으로서 유용한가 하는점 등이다.

筆者:本院 研究委員

첫째, 왜 굳이 係數가 시간에 따라 변하도 록 허용한 變動係數模型을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즉 金敎授의 지적대로 固定係數를 가 정한 모형을 사용하여도 三低效果를 분석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논문 의 목적이 三低效果의 숫자상의 분석에 있었 던 것이 아니고, "對外與件이 변화하면 經濟 主體의 行爲가 변화하고 그 결과로 縮約型模 型의 係數 자체가 변화한다."는 Lucas의 批 評에 위배되지 않도록 三低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즉 Lucas의 批評에 어 긋나지 않으려면 外生變數를 포함하는 모형 (論文의 式(1))의 係數값이 外生變數의 급격 한 변동에 따라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는 固定係數를 사용하는 모형에서 係數推定値 가 변화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固定係數를 가정하여 OLS로 係數 推定을 할 경우 資料數의 증가에 따라 係數推 定値가 변할 수도 있으나 이는 經濟主體의 행 위가 변화해서 係數推定値가 변하는 것이 아 니고 資料數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래의 진정 한 係數의 값(즉 經濟行爲主體의 고정된 진정

¹⁾ 朴佑奎, 「TVBVAR模型을 이용한 三低效果의 分析」, 『韓國開發研究』, 第9卷 第1號, 1987 봄. pp.3~26.

²⁾ 金基禾,「TVBVAR模型을 이용한 三低效果의 分析:論評」,『韓國開發研究』,當號.

한 행위의 表現(representation)에 접근하기 때문이다(論文의 附錄 참조).

따라서 變動係數模型을 사용하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變動係數模型의 豫 測力이 固定係數模型(예를 들면 BVAR. 혹 은 「베이지안」先驗的係數(Bavesian prior)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VAR模型)보다 반드시 뛰어난가 하는 점이 의문시된다. 이는 模型의 過度係數化(overparameterization)의 過度單 純化(oversimplification) む의 相衝(tradeoff) 問 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過程(specification search)이 요구된다고 하겠 다. 따라서 어느 한 모형이 언제나 더 정확한 豫測値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과 거의 豫測力을 Theil의 U-統計值(U-statistics)등의 값과 비교해 봄으로써 검토할 수 있 다 하겠다. Litterman(1985)은 단순한 VAR 模型보다는 「베이지안」先驗的係數를 쓸 경우 에 예측의 정확도가 더 좋아짐을 보였고. Litterman(1984)은 變動係數模型이 固定係數 模型보다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을 보였다 하겠다.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과 정을 통하여 모형을 확정하였는데 그 결과 1983년 1/4분기부터 1985년 1/4분기까지 3 년간 매분기에 1분기부터 7분기 후까지를 예

측한 후 얻어진 Theil의 U-統計値의 값은 實質GNP의 경우 0.61~0.34, 輸出은 0.74~0.61, 輸入은 0.66~0.39, 그리고 都賣物價指數의 경우는 1.18~2.65로 나타났다. 都賣物價指數를 제외하고는 Litterman(1985)의 결과보다 나쁘지 않다 하겠다³.

따라서 과거의 예측력이 나쁘지 않았던 TVBVAR模型을 사용했는데도 實驗 A와 實 驗 B의 結果는 왜 實驗資料를 제대로 설명하 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 이유는 三低現象이라고 불리워지는 급격한 對外與件 의 變動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金敎授가 인용한 Miller・ Roberds(1987)에서도 그러한 實驗結果가 나타 나고 있다. Miller·Roberds는 1979년 10월의 美國의 通貨政策變化의 效果를 살펴보기 위해 非條件附豫測(unconditional forecasting)과 條 件附豫測(conditional forecasting)(論文의 實 驗 B와 유사)49을 행하여 그 결과를 實際値와 대비하여 보았는데 實際値와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條件附豫測은 非條件附 豫測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다. Miller·Roberds는 그 이유가 條件附豫測 역시 政策變化 이후의 係數變化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라고 結論 짓고 있다.

둘째, 논문의 공헌은 實驗 C를 정의하였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三低效果를 분석한 것은 하나의 부차적인 응용이라고 할 수 있다⁵⁾. 實驗 C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분석하는 데에만 유용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는 實驗이다. 즉 實驗 A와 實驗 B는 豫測實驗(forecasting exercise)인 데반해 實驗 C는 模型의 適合度를 事後的으로

³⁾ 한편 本模型에서는 都賣物價指數의 여타 변수에의 「베이지안」先驗的係數를 조정하여 작게함으로써 模型 전체에의 영향을 작게 하였다.

⁴⁾ 實驗 B역시 條件附豫測인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Miller· Roberds의 條件附豫測에서는 政策의 內生性 즉 經濟與件이 變化하면 經濟政策도 變化할 可能 性을 고려하였고, 論文에서의 對外與件의 變動 은 內生性이 없는 순수한 外生變數의 變動이기 때문이다.

⁵⁾ 아래의 설명은 Park(1987)에 부연 설명되어 있다.

살펴보는 것에 가깝다 할 수 있는데 그 解析 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計量經濟學者와 經濟行爲主體를 想定하자. 計量經濟學者 甲은 三低期間 이전의 經濟行爲主體의 行爲를 파악 하고 있으며 그 자신 역시 三低期間 이전에 있다. 이때 甲은 미래의 外部與件의 變動을 實驗 A 혹은 實驗 B에서와 같이 가정하고 經濟行爲主體가 미래에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 해 볼 수 있다:한편 計量經濟學者 乙은 이미 三低期間을 경험하여 三低期間중의 經濟行為 主體의 行爲를 歷史的 事實로 잘 알고 있으며 實驗 C를 통하여 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 다. 이때 三低期間이 1년인지 논문에서처럼 7분기인지는 論外로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實驗 C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變 動係數模型을 가정하여 經濟行爲主體의 行爲 變化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다면 [圖 4]의 MAR과 [圖 5]가 나타 내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즉 構造變化 를 파악하려면 MAR를 보든 [圖 5]를 보든 마찬가지이다. [圖 5]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計量經濟學者 乙은 매우 중요하였던 것 으로 결론짓고 따라서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 아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政府의 政策 을 포함하는 모든 經濟行爲主體의 行爲가 構 造的으로 變化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것이다.

세째, 金敎授가 지적한 대로 [圖 4]의 MAR이 24분기 이후에도 충격의 영향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은 TVBVAR模型(式(1) 및 (2)]을 작성할 때의 基本假定이 Doan,

Litterman and Sims(1984), Miller · Roberds (1987) 등에서와 같이 內生變數들이 任意變動 (random walk(with drift))의 성질을 가졌다 는 假定(論文의 p.6 참조)을 중심으로 「베이 지안」先驗的係數를 조성하였기 때문인데, 美 國의 경우 주요 巨視經濟變數는 이러한 任意 變動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Nelson·Plosser(1982), Campbell·Mankiw(1987) 등을 참 조], 특히 Campbell·Mankiw는 美國의 實質 GNP에 대한 충격의 영향이 4, 5년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Doan, Litterman, and Sims의 논문에서 보이는 MAR의 그림 역시 實質GNP에 대한 충격의 영향이 4 년 이후에도 소멸은커녕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에 대한 충격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 아니라 恒久的일 수도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충격의 특성(供給衝擊, 需 要衝擊 등) 및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더 이 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結論的으로 本人의 論文은 Miller・Roberds(1987)의 論文의 중요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의 논문에서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았던 問題一條件附豫測(conditional forecasts)으로는 Lucas의 批評이 실제로 중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를 實驗 C를 정의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Lucas의 批評이 실제로 중요하였던 하나의 예를 제시하였다 하겠다.

▷參考文獻◁

- Campbell, John, and Gregory Mankiw, "Permanent and Transitory Components in Macroeconomic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Papers and Proceedings. Vol. 77, May 1987. pp.111~117.
- Doan, Thomas, Robert Litterman, and Christopher Sims, "Forecasting and Conditional Projection using Realistic Prior Distributions," *Econometric Reviews*, Vol. 3, 1984. pp. 1~100.
- Litterman, Robert B., "Forecasting with 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Five Years of Experience," Working Paper,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1985.
 - "Specifying Vector Autoregressions for Macroeconomic Forecasting," Staff

- Report,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1984.
- Miller, Preston and William Reberds, "The Quantitative Significance of the Lucas Critique," Staff Report, Federal Reserve and Bank of Minneapolis, 1987.
- Nelson, Charles and Charles Plosser, "Trends and Random Walks in Macroeconomic Time Series: Some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10, Sept. 1982. pp.139~162.
- Park, Wookyu, "An Example of Using the BVAR Model and Not Violating 'the Lucas Critique:' An Explanation of the Recent Korean Economic Boom," Forthcoming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1987.

「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論評

金 在 源

1. 序 言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雇傭吸收力의 低下에 대한 論議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實證的 分析이 없던 시점에서 최근 KDI의 張鉉俊(1986), 金仲秀(1987) 博士에 의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된 것은 그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金仲秀 博士의論文은 우리나라의 雇傭吸收力의 減少要因이勞動一資本의 相對價格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

인지 또는 投資의 변동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촛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橫斷面資料를 이용한 微視的인 측면에서 勞動需要行態를 분석하고 있다.

위論文의 실증적 분석결과 우리 경제의 雇傭吸收力의 감소는 相對要素價格의 變動보다는 固定資本形成의 변동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의 雇傭吸收力의 증대를 위해서는 投資誘因策 등을 통한 투자환경의 개선이 效率的 政策手段이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투자의 증대는 산출물 증대 및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다 줄 것이며, 代替效果보다는 規模(또는 產出)效果가 더 크게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결론은 Bognanno, Lee and Kim(198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金博士의 巨視的 勞動需要函數 推定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筆者: 漢陽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2. 推定上의 隘路

勞動需要函數 推定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이

¹⁾ 이 논문에 의하면 代替效果보다는 規模의 效果가 彈力値의 絕對値가 더 크고, 회귀분석에서 統計的 有意性도 後者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規模效果의 長·短期 비교에 있어서 한국 제조업의 生產職 및 非生產職從業員勞動需要의 規模(또는 生產)效果가 장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경기가 好況일 경우 노동수요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不況일 경우 解雇시키는 事業主들의 雇傭行態에 근거하는 바, 이와같이 事業主들이 종업원에 대한 책임의식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事業體 特殊的(firm-specific) 人的資本 投資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겪는 어려움은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경제이론이 제시하는 대로 부호가 나 타나지 않는 경우와 둘째는 推定된 係數의 統 計的 有意性이 결여된 경우이다²⁾.

金仲秀 博士의 논문에 나타난 式 (5)는 Ball and St. Cyr의 雇傭函數의 變型으로서, 誘導型(reduced form) 短期勞動需要函數로 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式 (6)은 위 基本模型에 資本스톡係數 및 相對要素價格係數의 相互作用變數를 포함시켜 이들이 시간의 경과에따라 可變的이 되는 함수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式 (5)의 기본모형에 나타난 獨立變

數(時差從屬變數 L_{t-1} 을 제외한), Q_t , K_t , $(\frac{w}{r})$ 중 Q_t 를 제외한 두 변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可變的일 것이라는 事前的 豫測에 근거한 것이며, 雇傭 吸收力의 低下가 資本스톡의 변동과 相對要素價格의 변동 중 어느 것에 더 민감한지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3 .

推定結果에 의하면 기본방정식 式 (5)보다는 相互作用項을 첨가한 式 (6)이 일반적으로 係數의 符號 및 統計的 有意性 면에서 結果가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推定式 모두 理論이 事前的으로 제시하는 바를 충족시

用項을 회귀방정식에 포함시킨 이유를 살펴보자. 예 를 들어 $t \frac{w}{r}$ 이 포함된 이유는 $\frac{w}{r}$ 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t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다. 즉 $\frac{w}{r}$ 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기술변동에 따라 中立的(또는 獨立的) 이 아님을 의미한다. $t \cdot K$ 項이 포함된 이유도 후자의 변동이 노동수요에 미치 는 영향이 기술수준의 변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 를 內在하는 것이다. 기술수준의 변동에 따라(즉 보 다 勞動 또는 資本集約的으로) 擴張線의 형태가 달라 질 것이므로 $\frac{w}{r}$ 또는 K의 변동이 노동수요에 주는 영향이 t의 변동과 무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연장해 볼 때 Q의 변동의 노동수요에 대한 영향도 기술수준의 변동 방향에 달려 있으므로 $t \cdot Q$ 의 相互 作用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나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Q는 기술선택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 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 경우에도 t의 변동은 노동수요에 영향을 주 며 그 정도는 Q의 변동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 라는 反論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相互作用項을 회귀방정식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곧 그 두 獨立變數 간의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特定 相互 作用項을 포함시킨 이유는 한 獨立變數의 變動이 從 屬變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獨立變數의 變動과 無 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t·Q項을 추가시킬 경우 推定 결과가 더 나아질지의 여부는 事前的으로 알 수가 없다. 참고로 Bognanno, Rhee, Kim(1987)의 경우 正의 規模效果는 長期에 있 어 더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t·Q項을 모형에 첨가할 경우 이의 係數가 負의 부호를 갖게 될 가능 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²⁾ 경제학자들이 實證分析을 시도할 때마다 당면 하는 문제는 자신(또는 經濟理論)이 옳다고 판 단하는 假說이 실증분석에 의해 기각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특히 만족 스럽지 못한 자료나 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을 한 경우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경제학자들에게 推定値들의 統計的 有意性 檢定 이외에 資料의 신빙성(reliability)검토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요 구된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計量經濟學者 (econometrician)들이 回歸分析의 주된 목적은 檢定(testing)보다는 豫測(forecasting)이라고 보 는 견해라던가 또는 假說檢定時 歸無假說(또는 對立假說)이 採擇(또는 기각)되었다는 표현 대 신에 기각(또는 채택)되지 않았다는 보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貫行은 測定(measurement)보 다는 理論(theory)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內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Zellner의 주장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theory without measurement," 또는 "measurement without theory"의 양 극단을 조화시키는 노력 이 요구될 것이다. 즉 이론을 보는 計量經濟學 者의 견해와 時系列論者(time-series analyst) 의 견해의 양극단은 모두 회피되어야 할 것이 며, 이론의 有用性과 보편타당성의 어느 한쪽 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 다. 理論과 測定이 符合되지 않는 경우 경제이 론이 본질적으로 옳다고 보고 測定을 理論에 符合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만이 최선인가에 대한 計量經濟學者와 時系列論者간의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는 Granger and Newbold(1974), Zellner(1980) 및 Gujarati(1979, pp. 1~5)를 참조.

³⁾ 이제 變數 t를 技術變化의 假變數로 보고 相互作

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金 博士가 지적한 대로 독립변수간의 多重共線性 (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리라는 점이다. 사실상 독립변수인 $Q_t, K_t, (\frac{w}{r})_t, t$ 가 모두 상호관련성이 높으리라는 것은 利潤極大化 또 는 費用最小化로부터 자본 및 노동수요를 도 출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多重共 線性 問題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 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事前的인 '올바른'정보를 알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 '올 바르지 않은' 事前的 情報를 모형에 적용시켜 多重共線性을 해결할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논의할 資料(data)上 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노동수요함수의 올바 른 추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政策的 示唆點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은 勞動需要의 변동은 相對要素價格의 변동보다는 投資의 변동에 의해서 더 크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相對要素價格의 변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 통계적으로 有意的이지 못하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價格의 自動調節機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일부노동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產出物市場은 정부의 독과점규제 등으로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이 위축되어 왔지만,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의 勞動市場政策등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노동시장에서의 價格機能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이 견해가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주장은 金博士의 실증분석 결과와는 다르다는점에서 본 논문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보여진다.

4. 資料上의 問題點

우리나라 통계자료 중 가장 낙후된 부문이 노동과 자본에 대한 통계라는 점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가 밝혔듯이 勞動需要의 分析은 理論的 側面보다 도 代替效果와 規模의 效果 등을 추정하는 實 證的 側面이 강조되므로, 자료의 선택은 추정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⁵⁾.

본 연구에는 從屬變數인 산업별 부가가치는 全事業體가 그 대상이나 임금이나 근로자 수의 경우 시계열자료는 常傭從業員 10인 이상 사업체가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堅持하지 못하고 있다. 資本스톡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상이한 시리즈가 가능하나 이들 시리즈간의 연도별 변동추이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減價償却이 稅制上 혜택등의이유로 매우 크게 나타나 통계자료에 나타난

⁴⁾ 相對價格 變數의 계수는 相互作用項을 첨가할 경우 全產業 및 製造業의 경우 負의 符號는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계수가 零과 같다는 귀 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있다.

⁵⁾ 경제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의 수집이 불가피하므로 KDI, 學界 등에서 건의를 통해서 새로운 survey 또는 기존 survey의 보완·개선을 기획원등에 요구하는 것도 경제학자들의 책임일 것이다. Judge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경제이론 및 계량경제학의 발전은 PSID, NLS, EOPP, Income Maintenance Project Data등이 이용가능한 데서 기인한 바가 매우크다고 밝히고 있다.

회계상의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상각과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固定資本形成 및 減價償却 자료를 어느 시리즈에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資本스톡의 변동률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회귀분석에서 구하는 推定値들은 그 절대값의 크기가 아닌 변수의 변동률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著者가 추정기간을 1970~84년으로 한정시킨 이유는 郭泰元 博士의 資本스톡 시리즈가 1985년 이후에는 이용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본 및 노동의 자료는 資本의 경우 稼動率, 勞動의 경우 勤勞時間등 이 감안되지 않은 스톡 자료이다. 이것은 노

6) 기존 한국의 資本스톡 자료의 문제점은 宋致榮 (1987), 表鶴吉·宋致榮(1987)을 참조할 것.

女性의 경제활동상태를 정의함에 있어서―특히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중 일시적 휴직 사유에 관한 문제―男性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예는 韓國女性開發院(1986, 12, p.321)을 참조.

8) 劉鍾九 教授(1986)는 資本의 賃借率(r)을 다음 에 의해서 算定하였다. 즉,

$$r = \frac{V - W \cdot L}{K}$$

단, V=부가가치, W=名目賃金率, L=근로자수, K=資本스톡.

그러나 이렇게 算定된 r의 값이 全產業의 경우 매우 不安定하고 非現實的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9) McKinnon(1973)은 韓國의 定期預金에 대한 實質收益率을 算定하는 데 도매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 定期預金者의 대부분이 기업이 아닌 家口이며 분석의 목적도 저축성예금의 변동요인에 있었다.

동의 경우 상용종업원의 근로시간 자료는 산업별로 구할 수 있으나 資本의 稼動率을 산업별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보인다. 앞으로 「파트타임머」등 임시근로자의비중이 늘어나고 또한 기업주가 新規採用과기존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연장 중에서 보다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勞動에서 「플로우」資料의 중요성이 점차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5. 「디플레이터」의 選定問題

이상의 이론 또는 자료상의 제약점은 모든 경제학자가 당면하는 문제로 보여진다. 金仲 秀 博士의 실증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資本의 賃借率(R)의 개념과 이를 실질개념으 로 사용한 디플레이터의 문제이다.

資本의 價格의 代變數로는 市場利子率, 私 債利子率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私 債利子率은 市場利子率보다는 그 변동폭이 적 으며 움직이는 방향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 다8)

资本의 賃借率의 算定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지한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金仲秀 博士의 논문에서 勞動과 資本의 相對價格은 實質價值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實質賃金의 경우는 名目賃金을 產業別GDP로, 資本의 實質價格은 消費者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한 것으로 보인다⁹⁾.

資本의 賃借率이란 新機械의 價格, 利子率, 企業의 投資支出에 대한 所得稅制面에서의 혜택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업의 노동수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資本의 價格(R)을 實質 概念으로 變換시키는 디플레이터는 실질임금

⁷⁾ 資本(機械)이 상대적으로 希小한 후진국의 경우 자본의 가동률이 더 낮으며, 자본과 노동간의 생산요소의 效率的 利用이 잘 이루어지고있지 않다는 연구에 대해서는 Gordon C. Winston(1971), Louis T. Wells(1972)를 참조, 노동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曺尤鉉(1985)을 참조.

에서와 마찬가지로 產出物價格指數로 디플레이트시키는 것이 경제이론과 부합된다. 다음의 비용최소화 문제를 생각해 보자¹⁰⁾.

$$\min_{NK} C = WN + RK \dots (1)$$
s.t.
$$Q^0 = f(N, K)$$

단 C는 總費用, W는 名目賃金率, N은 勤勞者數, R은 資本의 賃借率(名目價格表示), K는 資本스톡, Q는 附加價値를 나타낸다. 이때의 最適 N, K를 보장해 주는 균형조건식은

$$\frac{W}{R} = \frac{MP_N}{MP_K}$$
(2)

- 10) 만약 최적 N, K의 결정을 기업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수한 경영 또는 기업 형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래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 11) MP_N, MP_K는 物量概念이다. W 및 R의 측정 단위는 각각 원/勞動1單位 및 원/資本 1 單 位이며 P의 측정단위는 원/生產 1 單位이므로 MP_N, MP_K는 각각 勞動 1單位當 生產量 및 資本1單位當 生產量을 나타낸다.
- 12) 소비자물가지수는 通貨供給, 財政政策, 潜在的 GNP, 輸入價格, 賃金, 農作物의 作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個別企業의 입장에서는 外生變數이다. KIET의 年間產業豫測模型(1987, p.92)에서는 노동수요함수를 $\ln L_t = \beta_0 + \beta_1 \ln O_t + \beta_2 \ln(W/V)$ $(CPI)_t + \beta_3 \ln L_{t-1}$ 로 추정하였는데, 여기서 명목 임금의 디플레이터로 CPI를 사용한 것이 餘他 의 경우보다 설명력과 有意性이 높았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회귀분석의 목적이 豫 測인 경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노동수요함수에서 실질임금의 디플레이터로 CPI가 統計的 有意性이 높을 것 이라는 점은 단적으로 勞總, 經總 및 政府部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질임금의 개념이 모두 명목임금을 CPI로 디플레이트시킨 개념이며, 勞使間의 임금협상시에도 實質賃金으로 이 개 념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미루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勞•使•政의 賃金政策 및 勞•使의 賃金協商戰略에 관해서는 金在源 (1987.9)을 참조.
- 13) 사실상 소비자물가지수는 個人 또는 家口마다 購買하는 商品바스켓이 다르기 때문에 각 個人

가 되며, 1次條件式으로부터

$$f_1 = MP_N = \frac{W}{\lambda} \qquad (3)$$

$$f_2 = MP_K = \frac{R}{\lambda}$$

가 도출된다. 단 MP_N , MP_K 는 각각 勞動 및 資本의 限界生產力, λ 는 限界費用을 나타낸다. 產出物市場이 경쟁적이라고 가정하면 MC = MR = P가 되는 점에서 利潤極大化를 가져다 주므로 式 (3)은 다음과 같이 表記된다.

$$MP_N = \frac{W}{\lambda} = \frac{W}{P}$$
(3)'
$$MP_K = \frac{R}{\lambda} = \frac{R}{P}$$

즉 名目賃金率 및 名目資本價格의 디플레이터는 결국 그 사업체가 생산하는 產出物價格 指數가 된다¹¹⁾.

利潤極大化 模型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 게 된다. 다음을 고려해 보자

$$max. TR - TC \cdots (4)$$

$$= max. \{P \cdot Q - W \cdot N - R \cdot K\}$$

$$= \max_{N,K} \{P \cdot f(N,K) - W \cdot N - R \cdot K\}$$

단 TR은 總收入, TC는 總費用, Q는 生產量을 나타낸다. 式 (4)에서는 R의 디플레이터가 P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보다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消費者物價指數는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外生變數이다¹²⁾.

巨視的으로 보아 한 나라 經濟의 產出物價格의 變動은 消費者價格의 변동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異論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產出物價格은 各 品目마다 (따라서 各 事業體 또는 產業別로) 다르게 나타나나 소비자물가지수는 모든 產業 또는 모든 經濟主體에 單一 指數로 주어진다¹³⁾.

이제 R의 디플레이터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적절하지 않음을 資本과 勞動의 分配몫의 계 산측면에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 名目價格으 로 본 j 번째 사업체 t 期의 勞動 및 資本의 分配率은 다음과 같다.

$$\alpha_{jt} = \frac{W_{jt}N_{jt}}{VA_{jt}}$$
, $\beta_{jt} = \frac{R_{jt}K_{jt}}{VA_{jt}}$ (5)

한편 企業의 입장에서 實質概念으로 본 分配率은 式(5)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alpha_{jt} = \frac{W_{jt} N_{jt}/P_{jt}}{V A_{jt}/P_{jt}}, \quad \beta_{jt} = \frac{R_{jt} K_{jt}/P_{jt}}{V A_{jt}/P_{jt}} \cdots (6)$$

만약 式 (6)에서 R_{jt} 의 디플레이터로 P_{jt} 대 신에 消費者物價指數(CPI)를 사용할 경우 名 目 및 實質概念으로 본 資本의 分配몫은 상이 하게 나타날 것이다¹⁴).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經濟理論에 따르면 W_{it} , R_{jt} 의 디플레이터는 모두 P_{jt} 가 되어야할 것이므로 實質價值로 표시된 相對價格은 다음과 같다. 즉

$$\frac{w_{jt}}{r_{jt}} = \frac{W_{jt}/P_{jt}}{R_{jt}/P_{jt}} = \frac{W_{jt}}{R_{jt}}$$
(7)

단, t는 시간을 나타냄.

相對價格의 디플레이터로 R_{jt} 및 CPI_{t} (소비 자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 實質價值로 표시된 相對價格 w/r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제기된다.

$$\frac{w_{jt}}{r_{jt}} = \frac{W_{jt}/P_{jt}}{R_{jt}/CPI_t} = \frac{W_{jt}}{R_{jt}} \cdot \frac{CPI_t}{P_{jt}} \quad \cdots (8)$$

즉 (7)式과 (8)式을 비교해 볼 때 $(\frac{CPI_t}{P_{jt}})$ 라는 교란요인이 존재하게 된다 15

마지막으로 金仲秀 博士가 <表 2>에 제시한 賃金費用의 概念을 賃金費用=各目賃金增加率—勞動生產性增加率—產出物價格의 增加率로 나타냈더라면 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生產品目의相對價格이 산업별로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은(金仲秀 博士의 註 9 참조) 韓國의 경우 타당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¹⁶⁾.

韓國의 勞動市場의 分析을 위해서는 要素市 場뿐만 아니라 產出物市場에서의 價格決定要 因에 대한 分析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비록 勞動市場에서 賃金率이 비교적 自動調節機能 을 한다 하더라도 產出物市場에서의 價格決定 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개입은 결국 勞動市場 의 機能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⁷⁾.

別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¹⁴⁾ 相異한 實質賃金의 개념 및 勞·使의 입장에서 본 分配몫의 算定方法의 差異點이 存在할 수 있다는 논의는 Nam, SangWoo(1984), 金在源 (1987,2 및 1987,9)을 참조.

¹⁵⁾ 경제이론에 충실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생계의 수단이라는 측면이 看過된다는 反論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률의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의 生計費인데 경제이론에만 의존할 경우 생계비가 고려될 여 지가 없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이해관계가 큰 生計費指數(즉 平均的인 소비자물가지수가 아 닌 저소득층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더욱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反論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와 같이 經濟外的 인 고려가 중요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용납되 기 어려운 낮은 수준의 임금지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생계비가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한 사 회가 또는 기업이 受容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 에 고려되어서 和解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Gary S.Field(1986) 또는 金在源(1987.6 pp. 211~229)을 참조.

^{16) 80}년대의 產業別 產出物價格의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 농림어업이 기타부문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80년대 安定化政策은 결국 농림어업 및 제조업의 희생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金在源 (1987.2)을 참조.

6. 結 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資料上의 문제가 제기되나 현재로서는 좋은 처방이 없

- 17) 예를 들어 임금협상이나 成果配分을 勞使間의 自律的인 노력에 맡긴다고 할 경우, 이것이 성 공적이기 위한 前提條件이 產出物市場에서의 가격의 自動調節機能의 회복이라는 것은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勞使紛糾의 例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18) 相互作用項의 係數 α_s , α_6 의 t-統計量의 비교에 서도 같은 점이 발견된다.

는 실정이다. 또한 相對價格의 實質價值로의 전환에 따른 디플레이터의 算定이 앞에서 논의한 바 대로 추정되었다고 해서 產業別 勞動需要 推定이 보다 有意的인 결과를 가져다 주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金仲秀 博士 論文의 <附表 1>에 나타난 要素價格의 分解에 의한 推定式에서 w에 비해 r의 t統計量이 매우 非有意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18) r 變數의 修正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

- 金仲秀,「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韓國開發研究』, 1987 봄.
- 金常隆 朴容國·金龍煥,『KIET 年間產業豫測 模型』,產業研究院,1987,2.
- 金在源,「賃金政策 40年의 回顧」,『勞動經濟 年鑑(1987)』,韓國經營者總協會.
- -----, 「勞使間의 勞動分配率算定上의 差異가 勞使紛糾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研究」, 『1986年 定期學術大會論文集』, 韓 國經濟學會, 1987. 2.
- ----, 『最低賃金 이야기』, 韓國經濟新 聞社, 1987. 6.
- 宋致榮,『韓國의 資本스톡 推計』,經濟學 碩 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7年 2月.
- 劉鍾九,「韓國의 潛在的 GNP推定에 관한 研究」,『經濟研究』, 第7卷 第2號, 漢陽大學校 經濟研究所, 1986. 11.
- 張鉉俊,「雇傭과 生産技術發展의 相關關係: 한국・일본・대만의 比較」, 『韓國開發研 究』, 第8卷 第3號, 1986 여름.

- 崔淳成,『產出量과 雇傭과의 動態的關係에 관한 實證的 分析-製造業部門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6, 12,
- 表鶴吉·宋致榮,「韓國의 資本스巪推計」, 『1986年度 定期學術大會 論文集』,韓國經 濟學會,1987,2.
- 韓國女性開發院,『女性의 就業實態調査-미亳 女性을 中心으로』, 1986. 12.
- Ball, R.J. and E.B.A. St. Cyr, "Short Term Employment Functions in British Manufacturing Industry," *Review of Economic Studies*, March 1966.
- Bognanno, M.F., Y.S. Lee and S.K.Kim, "Production and Non-production Labor Demanded in Korea's Manufacturing Sector", Presented to Korean-German-American Seminar in Employment Eff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Sponsored by Friedrich Ebert Stiftung, Seoul and Korean Labour Economics Association, Suanbo, March 7 and 8,

1987.

- Field, Gary S., "A Proposed Minimum Wage Scheme for Korea," mimeographed, 1986.
- Granger, C.W.J. and F. Newbold, "Supurious Regressions in Econometrics," *Journal* of *Econometrics*, 1974.
- Gujarati, D., *Basic Econtometrics*, McGraw-Hill, 1978.
- Kim, Jae Won, "Manpower Implications of the 6th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Presented to Korean-German-American Seminars in Employment Eff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Sponsored by Friedrich Ebert Stiftung, Seoul and Korean Labour Economics Association, Suanbo, March 7 and 8, 1987.

- McKinnon, Ronald I.,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3.
- Nam, Sang Woo, "Korea's Stabilization Efforts Since the Late 1970s," KDI Working Paper 8405, 1984.
- Wells, Louis T. Jr., "Economic-man and Engineering-man: Choice of Technology in a Low Wage Country," Harva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November 1972.
- Winston, Gordon C., "The Reasons for Idle Capital," Research Memorandum No.2, Williams College, May 1971.
- Zellner, Arnold, "Causalit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80(supplement).

「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應答

金 仲 秀

*

金在源 教授의 논평은" 筆者의 拙稿(1987)"에서 다루어진 두 課題, 즉 技術進歩와 雇傭吸收力間의 量的關係 및 技術進歩와 勞動形態別人力需要間의 質的關係에 관한 분석내용 중 전자에 국한되어 있다. 金教授의 논평은 資料의 選擇 및 模擬變數(proxy variable) 사용상의문제, 實證分析의 定式化 및 推定問題, 推定

結果의 解析 및 政策示唆點에 관한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실제로 金教授가 지적한 論評 및 提案들은 필자의 논문에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實證研究에서 흔히 대두되는 문제점 들로서 향후의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며 몇 가지 논평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의 일관성 문제는, 金教授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微視分析의경우에는 생산량에 상응하는 投入要素別 데이타가 수집가능하나, 總量分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雇傭 및 賃金 등 勞動市場資料는 國民總生產 및 資本스톡 資料 推計의경우와는 상이한 母集團을 대상으로 한 標本調査에서 수집되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동시에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추계된「파라미터」는 微視的 意味를 충분히 내포하지는 못할것이다"

따라서 總量模型이 概念的으로 微視的 理論 에 근거를 두었을 경우에도 실증분석에 사용

筆者:本院 研究委員

¹⁾ 金在源,「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論評,『韓國開發研究』, 1987 가き호。

²⁾ 金仲秀,「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韓國開發研究」, 1987 봄호, pp 42~67.

³⁾ 統計的으로 볼 때, 이 문제는 $y=X\beta+u$ 의 推定式에서 X 變數들이 計測誤差(measurement error)를 갖는경우에 비유될 수 있으며(즉 X=X+Z, 여기서 Z는計測誤差), OLS 方法으로 위의 방정식을 추정하였을경우 β 의 推定係數는 X와 $u-Z\beta$ 의 상관정도에 따라 X는 자연(inconsistency)의 문제가 야기되며,일반적으로 추정계수는 下向偏倚(downward bias)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計測誤差의 共分散에 대한 特定假定下에 最尤法(maximum likelihood method)을사용함으로써 불일치성의 문제를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한편만일 經濟行爲의 主體들이 獨立變數의 진정한 값을 모를 경우,현실적으로 계측된 값에 따라經濟行態를 결정한다면 위와 같은 추정계수의 불일치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된 자료의 성격에 따라 그 결과로부터 類推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微視와 巨視模型의 連繫性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분석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최선의 자료를 사용하여, 獨立變數의 計測誤差가 있을 경우에도 이러한 計測誤差가 時系列上으로 추정식의 殘差項과 獨立性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논문의 초점이 추정계수의 크기보다는 雇傭吸收力의 減少現象에 대한 假說檢證을 위하여推定係數가 趨勢變數인 t 變數의 函數인가에 맞추어졌다.

資本費用을 나타내는 總量指標가 무엇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말할나위 없이, 金教授의 제안대로 均衡與件下에서 Y=wL+rK의 定義式을 이용하여 r을 逆算할 수 있는 경우가 바람직하겠으나, 이러한추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관된 자료는總量經濟分析에서는 물론 微視分析에서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

실적 제약하에서 資本의 賃借率(rental cost of capital)과 근사한 변화추이를 보이는 模擬變數로서 市場의 利子率變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필자의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公金利보다는 私債市場의 利子率이 실제의 市場與件을 더 잘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사용하였으며, 推定函數式의 定式化도 각독립변수를 積의 形態로 나타내어, 模擬變數사용에 따라 언제나 야기되는 추정계수의 상대적 크기 문제를 「스케일러」(scalar)문제로 귀착시켰던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價格의 機能이 강화되어 왔다는 흥미로운 주장은 앞으로 더욱 자세한 분석이 뒤따라야 검증될 수 있을 것이며, 필자의 분석이 이러한 假說을 檢定하기위하여 시도된 것은 물론 아니다⁵⁾.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要素價格의 상대적 변화에우리나라 勞動市場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의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總量模型에서 보더라도 勞動需要 및 供給이 賃金變數의 變化에 통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결과가 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다⁶⁾.

產業構造가 高度化되어감에 따라 勞動의 質에 따른 노동계층간의 대체성이 낮아질 것이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勞動市場은 공급측면에서의 압력이 상존하였으며, 또한 향후 5년 정도 이러한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完全雇傭狀態에 미달된 여건하에서는 雇傭增大를 위한 公共政策이 지속될 것이므로, 따라서 勞動市場에서 價格의 需給調節機能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⁴⁾ 金教授의 디플레이터에 관한 논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勞動供給 및 需要 모두 賃金의 函數이나 實質賃金으로 전환할 경우 각기 消費者價格 및 生產者價格으로 다르게 換價하여야 한다는 유사한 論文이 필자의 다른 논문(「失業・賃金・物價에 대한 現況, 實證分析과 政策課題」,「KDI 分期別 經濟展望」, 1987 2/4~3/4 合併號, pp. 60~81)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필자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w 및 r 變數의 경우, 각기 동일한 디플레이터로 換價하여 사용되었음을 밝혀둔다.

⁵⁾ 賃金의 變化에 따라 勤勞者의 勞動移動率이 높은 현상을 要素價格機能을 포착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要素價格機能은 기본적으로 產業生產 및 就業構造에서 기술·자본·노동 등 生產要素間의 代替性이 얼마나 높은가의 생산함수의 기술적 관계에 달려 있다고 불 수 있다.

村元巖,「韓國經濟의 分期計量模型」,『韓國開發研究』, 1986 역름호, pp. 25~66.

⁷⁾ 마지막으로「스톡」資料보다는「플로우」資料를 이용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 金數授의 제안은 지극히 타 당하며, 앞으로의 統計資料 蒐集時 고려되어야 할 점 이다.

『地方財政調整制度의 財源配分』:書評

李啓植 著 韓國開發研究院 刊(1987) 總 280面

車 輧 權

*

오랫동안 地方自治制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住民負擔과 地方公共서비스의 給付라는 측면에서 地方財政에 대한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었으나 地方交付金이나 國庫補助金의 형태로 中央財政에서 地方財政에 이전되는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地方財政의 입장에서 보면 自主財源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과 같은 國庫移轉財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地方財政需要의 증대와 함께 國庫財源의 移轉에 대한 요구도 불가피하게 증가되어 왔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재정의 입장에서는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이 財政硬直性을 높이는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대하여는 이를 견제하여 왔다고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가운데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어 왔고 또 地方財政調整制度나 國庫補助金制度도 변천되 어 왔으며 그에 따라 중앙재정에서 지방재정 에 이전되는 국고재원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 기도 하고 또는 그 增加勢가 억제되기도 하였 다.

원래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재정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두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하나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을 배분하는 기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또한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便益의 擴散(benefit spillover), 公平化, 效率化 등의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기능이나 유래가 상통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금이 地方財政調整을 위한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재정수단인 데 반하여 국고보조금은 지방행정에 대한 國家的管理와 誘導를 위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수단인 것이다.

本書는 「우리나라의 현행 地方調整制度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의 摘出과 그 改善에 도움

筆者: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教授

이 될 수 있는 地方財政模型의 開發과 分析, 우리나라 地方財政調整制度의 發展을 위한 政 策方向의 提示」란 세 가지 課題에 대하여 종 래의 서술 위주가 아닌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본격적인 研究書이다. 第1章 序論에서는 研究 의 目的과 構成, 地方財政調整制度의 分類 그리고 地方財政調整制度의 目的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한 후 우리나라의 地方財政調整制度(第2章)와 일본, 미국, 영국, 서독,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地方財政調整制度(第3章)의 現況分析을 통하여 第4章에서 우리나라 現行 地方財政調整制度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깊이 있게 摘出, 分析하고 있다.

지방교부금제도의 문제점으로서는 (1) 地方 交付稅率의 法定化 (2) 交付金의 水平的 財政 均等化機能 未洽(3)交付金의 徵稅努力 誘發 機能 缺如 (4) 交付金의 一般財源으로서의 機 能 未洽 등이 지적되고 있고, 국고보조금제도 의 문제점으로서는 (1) 國庫補助事業의 選定 및 評價基準 缺如 (2) 適正補助率의 算定基準 缺如 (3) 國庫補助金制度의 二元構造 深化 (4) 地方政府의 計劃 및 意思反映 缺如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 와 관련된 지방재정제도의 문제점으로서 (1) 中央・地方政府間 機能配分의 不明確 (2) 地 方移轉財政과 다른 財政政策手段과의 連繫 缺 如(3)地方財政의 基本統計 및 適正財政指數 의 缺如 (4) 地方財政運用의 非民主性 등이 지적되어 있다.

이어 本書의 후반에는 開發的인 研究內容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地方財政模型의 分析이 서술되어 있다. 第5章에서는 地方財政의 適正構造模型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地方移轉財政과 다른 정책수단과의 連繫 및 聯立

性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適正'에 관한 모든 논의가 그러하듯이 지방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적정수준도 여러가지 관련된 변수에 의하여 규정될 수밖에 없다. 중앙재정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모든 지방재정으로 하여금 필요불가결한 最低公共支出 수준을 유지 또는 보장하는 일이나 특정한 공공사업을 장려하는 일도 그러한 목적의 하나이다. 또 중앙과 지 방정부간의 垂直的 財政不均衡(vertical fiscal imbalance)을 조정하는 일이나 지방단체간의 水平的 財政不均衡(horizontal fiscal imbalance) 내지 財政不均第(fiscal inequality)을 조정하는 일도 지방재정조정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지방단체간 재정지출의 公平性(equity)을 높이는 일이나 지방재정지출 의 외부효과를 內部化함으로써 財源配分의 效 率性을 높이는 일 그리고 지방정부의 自助努 力을 유발하고 自治基盤을 확충하는 일도 중 요한 목적이 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재 정조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은 다른 國家目的과 競合할 뿐만 아니라 지방교 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주로 國稅收入 에 의하여 충당된다. 또 지방교부금과 국고보 조금은 地方稅收入과 함께 지방정부의 주요한 歲入財源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歲出水準을 결정하고 歲出構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 므로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적정수준이 란 "國稅뿐만 아니라 地方稅, 地方財政需要의 適正水準을 포함하는 지방재정의 適正構造, 나아가서 國家全體 財政의 適正構造內에서 여 러 가지 다른 財政政策手段과 聯立的인 관계 를 갖고 결정되어야"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포

함하는 지방재정의 適正構造를 분석하기 위해 저자는 개개의 주민,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등 세 經濟主體가 각기 個人效用, 地域 및 社 會全體의 厚生水準을 극대화하는 3段階 最適 化(three stage optimization) 模型을 개발하 고, 가장 단순화된 모형의 特別解와 이 特別 解에 의한「시뮬레이션」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지방재정의 適正構造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 발된 모형은 住民效用과 社會厚生函數가 定式 化되고 外生變數등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주 어지면 이 모형의 「시뮬레이션」결과에 의하여 적정수준의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뿐만 아 니라 지방재정 및 국가재정 전체의 適正構造 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財 政政策의 樹立이나 地方財政調整制度의 改善 을 위한 유익한 기초적인 정책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금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垂直的 財政不均衡을 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지방단체의 재정력이 나 재정지출의 적정한 분포를 위한 지방교부 금의 水平的 財政均等化機能이 미흡하다. 따라 서 지방재정의 均等度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水平的인 財政調整制度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 는데 저자는 第6章에서 制度的 補完策의 하나 로 西獨의 逆交付金制度와 유사한「財政力共 分制度」와 그 分析模型을 제시하고 이 제도에 의한 지방교부금의 適正構造가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에 의 하면 財政力共分制度란 "지방단체간 재정력이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市場機 構와 유사한 형태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재정 력이 빈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교부금을 재정 력이 부강한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 제도는 "富裕團體로부터 餘裕財政力을 貧困團體에 이전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간혹 제기되어 온 逆交付金制度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財政力共分制度에 의한 배분방식이 逆交付金制度와 달리 자발적인 交換과 受益者負擔과 같은 市場經濟의發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財政力共分制度分析模型의 基本構造를 살펴보고 地域無差別曲線을 定式化한 다음 財政均等度指數로서 Atkinson 指數의 特性을 考察한 후 기본모형에 대한「시뮬레이션」결과와 우리나라 13개 廣域地方團體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시뮬레이션」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이 財政力共分制度의 分析模型에 따르면 지 방교부금의 適正構造는 (1) 地方公共支出의 불균등상태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憂慮度 (2) 地方的 公共財斗 國家的 公共財의 代替彈力性 (3) 지방정부의 국가적 이익에 대한 優先度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게 되는데 「시뮬레이 션」결과로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즉 財政力共分制度에 의한 지방교부금의 適正構造는(1) 地方的 公共財斗 國家的 公共 財의 代替彈力性이 낮을수록 (2) 지방재정력 의 불균등상태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憂慮度 가 높을수록 (3) 지방정부의 國家的 利益 優 先度가 높을수록 더욱 누진적인 형태를 취하 게 되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지출도 더욱 균등 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지방교 부금의 適正構造는 地方的 公共財와 國家的 公 共財의 代替彈力性에 의하여 결정되며 代替彈 力性係數σ의 값에 따라 累進的(0≤σ<1일 경 우), 比例的(σ=1일 경우), 逆進的(σ>1일 경

우)이 되고 $\sigma=\infty$ 일 경우에는 定額的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本書가 개발, 분석하고 있는 세번째 政策模型은 第7章에 제시되고 있다. 「國庫補助金政策의 適合性分析」이란 주제에서 저자는 지방재정정책의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방재정정책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 모형은 社會厚生極大化의 評價基準을 이용하여 특정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효율과 공명이란 관점에서 어떤 재정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財政政策「시뮬레이션」모형으로서 이 모형에의하여 재정정책의 선택이나 정책수단에 대한평가 및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저자는 模型의 假定 및 變數에 대 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 특정한 공공사업을 추 진하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財政政策을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어 단순한 2개 의 地方政府 및 우리나라 13개 廣域地方團體 에 대한 네 가지 財政政策「시뮬레이션」결과 를 정리하고 있다. 네 가지 재정정책이란 (1) 각 지방정부가 자체의 地方稅收入만으로 특정 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완전한 地方自治 財 政政策」 (2) 중앙정부가 特定範疇的 公平 (categorical equity)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 는 所得中立的「國庫補助政策 I 」(3) 중앙정부 가 垂直的 公平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稅 源均等化(tax-base equalizing)「國庫補助政策 II」(4) 중앙정부가 소요재원을 國稅로 징수하 여 중앙정부가 직접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완 전한 中央集權的 財政政策」으로 구분된다.

또「시뮬레이션」결과의 정책적 내용은 다음 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1) 特定公共支出需 要에 대한 價格彈力性(α)과 所得彈力性(β)의 상대적인 크기가 특정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여러 가지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인의 하나이다. 특히 $-\alpha = \beta$ 인 경우에는 國庫補助金政策 I및 II와 완전한 中央集權的 財政政策이 동일한결과를 나타낸다. (2) $-\alpha = \beta$ 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α와 β의 값에 따라 여러가지 재정정책의 우선순위가 일정하지 않는결과가 나타나며 특정한 공공사업에 대한 여러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特定公共支出需要에 대한 價格 및 所得彈力性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가 필요하게 된다.

끝으로 第8章에서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과 지방재정규모의 適正水準維持를 위한 政策方向 그리고 본 연구의 發展方向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지방교부금제도의경우(1)法定交付稅率의 漸進的廢止(2)교부금제도의 水平的 財政均等化機能 提高(3)지방단체의 徵稅努力 또는 自助努力을 유발할수 있는 交付稅算定方式의 改編(4)교부금의補助金化 止揚 등이 제안되고 있다.

또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방향으로서는 (1) 國庫補助事業의 객관적인 選定 및 評價를 위한 政策基準의 設定 (2) 國庫補助率의 適正水準을 결정할 수 있는 政策基準의 設定 (3) 教育財政交付金을 국고보조금제도 내지 지방재정제도로 흡수하여 教育投資의 效率性 提高(4) 국고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意思, 計劃 및 判斷이 충분히반영될 수 있는 運營方案의 講究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금 및 국고보조

금제도와 관련된 현행 지방재정제도의 개편방향으로서는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효율적인 財源配分을 위해 政府間 機能의 명확한 구분 (2) 地方移轉財政과 다른 財政政策手段과의 연계 강화 및 지방재정의 適正構造 把握努力의 傾注 (3) 지방재정 전반에 걸친 市場經濟 및 受益者負擔原理의 적용범위 확대(4) 지방재정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 등의 정비 (5) 地方財政運用의 內容 公開 등 地方財政運用의 民主化를 제안하고 있다.

다음에 지방재정규모의 適正水準維持를 위한 정책방향으로서는 (1) 지방재정의 供給能力을 중대시키기 위하여 地方稅의 機能强化,稅外收入의 比重擴大 및 地方經濟 活性化가이루어져야 하고 (2) 지방재정수요를 적정한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市場機能 및 民間部門機能의 擴充,受益者負擔原理의 擴大適用,地方政府機能의 均衡的 發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본 연구의 취약점으로 非現實的 假定에 의한 模型分析, 지방재정과 관련

된 기초적인 經濟變數 및 母數나 지방재정조 정제도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 여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보다 체계적 연 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약점이 보 완되어야 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地方財政規模의 팽창에 따라 또 최근에는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앞두고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本書는 「바람직한 地方財政制度와 이에 바탕을 둔 명실상부한 地方自治制度로 移行해 가는 징검다리의 이름 없는 조약돌」이란 저자의 겸손한 評價 이상의 의미를 갖는 勞作이며 硏究書다운 硏究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本書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地方財政模型에 대한 分析이나 附錄에 정리되어 있는 지방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理論的 分析을 우리나라의地方財政 硏究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였다고볼 수 있고, 앞으로 地方財政制度의 改善이나地方財政政策의 立案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公企業 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技法』:書評

宋大熙 외 3人 著 韓國開發硏究院 刊(1987) 總 220面

郭 秀 一

*

資本主義의 基本精神이라는 選擇의 自由 (freedom of choice), 競爭의 原理(competition), 「인센티브」(incentive), 私有財產(private property)의 保障 등의 네 가지 基本概念下에서 기업은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完全競爭下의 市場價格機構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자동적으로 운영된 다면 非效率的인 企業은 도태되게 마련이다. 完全競爭市場構造에서는 自動評價裝置에 의해 효율적인 기업과 비효율적인 기업이 정확하게 판별되는 체제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私企業에 는 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公企業에는 自動評價裝置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 는 公企業의 대부분은 獨占的產業을 운영함으 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自動的 評價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公企業이 생산하는 財貨는 公共性의 실현에 기초를 둔 것이기에 재화의 생산에서 얻은 결과가 바로 公企業의 效率性이나 競爭力에 직결되지 않기때문에 自動評價裝置의 適用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公企業의 獨占的 性格과 公益性의 추구에 따라 가격이 人為的으로 결정되고 경영에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부의 간섭에 의해 準官僚的 體制化되어서 經濟性의 原理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公企業에 資本主義의 概念을 도입하여 경영을 자율화하고 경쟁을 강화하여경제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私企業의 경우에는 自動評價裝置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나 公企業인 경우에는 人為的 評價裝置의 개발에 의한 평가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公企業을 資本主義 構造에 부합시켜서평가하여야 국민경제에 公企業이 기여할 수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公企業은 국민경제적으로 附加價値 寄與度는 1984년 GDP의 9.7%, 外債比重은 1985년말 현재 25.8%에 달하며 產

筆者: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業聯關效果도 매우 크므로 국가경제에 公企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人為的 評價裝置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지닌 公企業의 人為的 評價 裝置에 대해 韓國開發研究院의 公企業研究室 에서 『公企業 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技 法』이란 題目과「政府投資機關 經營評價를 중 심으로」라는 副題로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公企業評價에 대한 理論的 基 礎와 實務技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著書는 세계에서 최초로 公企業, 즉 政 府投資機關에 대해 經營評價를 實施하는 우리 나라의 公企業評價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기 대된다.

政府投資機關의 國民經濟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公企業의 경영효율성 여부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 비해 그동안 私企業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여왔고 政府 投資機關에 대한 政府의 過剩統制로 말미암아자율성이 결여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에 經營評價에 대한 制度的裝置 또한 未洽하여 政府投資機關의 非能率이 개선 되지 못한 점도 사실이다.

위와 같은 政府投資機關의 非能率을 제거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韓國開發研究院의「政府投資機關 管理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가 1981년 3월에 시작되었다. 그 基本方向은 投資機關의 經營에 대한政府統制를 대폭 완화하고 經濟企劃院에 投資機關 經營評價를 위한 政府投資機關 經營評價調整委員會를 設置하며 最高經營層을 政策決定機能과 執行機能으로 分離하고「인센티브」制度를 대폭 확충하는 것 등이었다.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정부는 각종 법률을 정비하고 새로운 指標에 의거 試驗評價을 거친 후 새로운 基本法에 따라 1983년 年間實績에 대해 經營評價를 처음으로 실시하게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 책은 公企業의 經營評價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독자에게 公企業의 經營評價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매뉴얼」(manual)의 性格을 갖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 많은 사람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指針書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公企業 經營評價의 必要性을 第2章 第2節에서 所有一代理關係理論(principal-agency theory) 에 의해 論理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 公企業部門의 國民經濟的 役割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第3節에서는 公企業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 公權力組織이 소유하고 있는 企 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公企業이 지니는 公共性과 企業性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쾌히 규정짓고 있고 우리나라 公企業의 현실을 적 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第3章에서 公企業 經營評價指標 選 定論을 논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부문이라고 생각된다.

評價指標의 設定은 純粹經營努力評價, 長· 短期 經營評價, 結果中心 經營評價, 公共性 優先評價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公 共利益增進을 위한 단기적 내지 장기적 경영 노력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評價指標 設定時의 重點考慮事項을 公企業의 公共性과 企業性에 입각해서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測定可能性 (measurability), 改善可能性(improvability), 管理可能性(controllability), 相對的 重要性 (relative materiality), 充分性(sufficiency), 比較可能性(comparability)으로 서로 보완적 이면서도 상충되기도 하므로 이 모든 것을 구 비한다기보다는 최소한도로 갖추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評價指標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評價算式과 等級區間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있는 「매뉴얼」이라고 생각된 다.

또 評價指標를 처음으로 대하게 되는 사람에게 유용하도록 評價指標의 設定方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公企業의 主要事業을 분석하는 절차는 관련자료를 수집•검토하여 特定公企業을 이해 하고 公企業의 設立目標에 비추어 기업이 달 성해야 될 最上位의 目標와 그에 따른 下位目 標를 확인하여 주어진 目標達成을 위한 주요 사업을 파악하여 業務흐름圖(flow chart)를 작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정한 평가를 위해 기업의 주요사업과 관련된 統制不能要因 을 파악하여 평가시에 고려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重點管理分野를 파악하는 것으 로 評價指標의 設定方法을 상세히 제시하였으 며, 일단 정립한 指標를 올바로 적용하기 위 해 指標設定時期와 指標管理時期와의 時差에 따른 부조화를 보완•조정하는 評價指標의 수 정에 대해서 第3節에서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다.

第4章은 公企業經營評價 實務論으로 경영실 적을 평가지표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제반 업무절차 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도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중요시되는 經營評價擔當者로 구성되는 評價團의 構成內容에서 부터 경영실적을 문서화하는 經營實績報告書의 作成方法과 構成에 이르기까지 항목별로 잘 정리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매우 좋은 지침이 되도록 상술하고 있다.

評價實績에 대한 評價計劃은 第3節에서 方法論 中心으로 설명되어 있고, 第4節에서는 經營實績의 實查確認과 經營評價調書 作成 및 檢討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經營評價調書의 檢討에 대한 豫備檢討 와 本檢討의 내용은 실무차원에서 유용하리라 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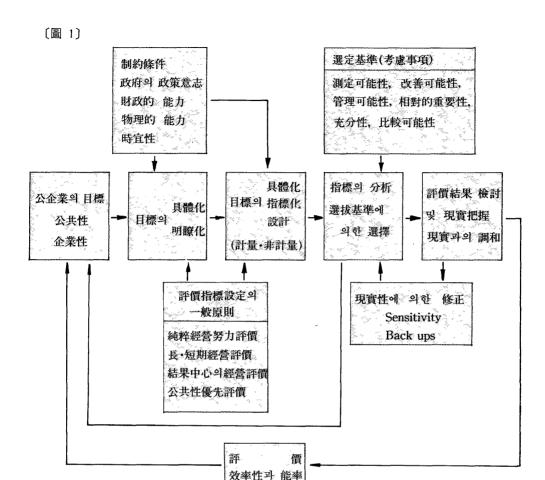
第4章의 마지막에 經營實績 評價結果 確定에 대해 상술하였고, 經營評價報告書 作成의 意義와 目的 그리고 內容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의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章인 第5章에서는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 經營評價制度의 現況에 대해서 經營評價의 意義와 經營評價의 導入背景 그리 고 現行 評價指標의 特徵 등에 대해 앞의 이 론을 바탕으로 현실감각에 따라 적절하고 합 당하게 기술하였다.

이렇게 이 책은 總5章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유용한 정보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內容을 本人이 하나의 圖表로 요약 해 보면 [圖 1]과 같다.

그러나 본 저술에서는 目標의 指標化 및 設計와 指標의 選定基準 등에 관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相互聯關性과 體系的 接近이 미비하다고 생각



된다.

예를 들면, 評價指標의 設計에 있어서 本書에서 논하고 있는 一般原則들 즉, 純粹經營努力評價, 長·短期經營評價, 結果中心經營評價, 公共性優先評價 등이 실제로 特定 公企業의評價指標 作成時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였으면 더욱 좋은 「매뉴 얼」이 되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는, 指標의 選定基準에 있어서 測定可能性, 改善可能性, 管理可能性, 相對的 重要性, 充分性, 比較可能性 등의 6가지를 들고 있으나 이와 같은 選拔基準이 실제로 政府投資機關의 經營指標 作成時에 어떻게 적

용될 수 있는지 예시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評價指標의 設計를 할 때에 더욱 유용하려면 이 책에서 설명한 훌륭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企業事例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보충하였으면 이해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評價指標의 一般原則이 어떻게 公企 業 目標의 指標化에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 과 指標를 기초하여 분석하는데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公企業 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技法』은

世界最初로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經營評價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經營評價方法을 국내는 물론 우리것을 배우려는 他國에 널리 소개하 는 책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되며 이 研 究業績의 功은 이것을 실시하려는 政府의 강 력한 意志와 韓國開發研究院(KDI)의 研究努力 에 있으므로 이들의 功績을 높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실제적인 사례를 통한 적용의 예를 좀 더 보완하고 각 내용의 훌륭한 이론들간의 체 계적인 연관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經 營評價 각 단계별 이론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公企業 經營評價制度가 우리나라에서도 實施段階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서, 公企業 經營評價의 基盤을 구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研究가 앞으로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案内

- []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高級洋裝:3,000위
- ②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 到:158 面 高級洋裝:3,000 到
- ③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執 著 稿級洋裝:4,000원
- 4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高級洋裝:3,000원
- ⑤ 農産物價格分析論~理論斗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高級洋裝・5,000원
- 6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編 18 切 判・254 面 A.O. Krueger 編 高級洋装・4,400원

-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 判 · 294 面 高級洋裝 · 4,400爿

- 9 韓國의 外換・貿易政策金光錫 共著 高級洋裝・5,000号
-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236 面 高級洋装・4,000 원

① 勞動供給斗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判・202 面 高級洋裝・4,000 원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季 著 18 切1到·250 面 高級洋裝·3,500원

[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高級洋装・6,800名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教 編 18 切 判・492 面 高級洋裝・6,400원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教 編 18 切 判・342 面 高級洋裝・5,000 원

- [16] 韓國의 人口問題의 對策 金善雄 編 18 切判・532 面 高級洋装・6,800割
- ⑦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張榮植 者 高級洋装・4,400割
- ・ 市場構造斗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高級洋裝・5,600号
- ⑤ 賃金斗 勞使關係
 金秀坤 著 高級洋裝・4,000원
- 20 韓國의 人口의 人口政策 洪思緩 著 高級洋装・4,000割
-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410 面 高級洋裝・6,000원

- ② 成長斗 構造轉換 金光錫 共著 18 切判・194 面 M. Roemer 共著 高級洋装・3,500割
- ②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高級洋裝・5,000割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18 切 判·204 面高級洋裝·3,500引 南相鈷 著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共著 18 切 判·166 面 林埈卿 共著 高級洋裝·3,500 원

COMMUNITY DEVELOPMENT
26 AND HUMAN REPRODUCTIVE REHAVIOR

> 18 切 判・198 面高級洋装・4,000원 洪思媛 著

27 農業投資分析論

18 切 判・250 面 高級洋装・4,000 원 文八龍 林栽煥 共著

28 繊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18 切 判・180 面 高級洋装・3,500 剁

29 鐵鍋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18 切 判・192 面 高級洋装・4,000 원 南宗鉉 著

30 韓國의 所得分配의 決定要因(上)

18 切 判・470 面 高級洋装・6,400号 朱鶴中 編

3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18 切 判・410 面高級洋装・6,000원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18 切 判·272 面高級洋裝·4,500 원 朴宗淇

33 石油化學工業의 現况과 展望

18 切 判・236 面 高級洋装・4,000 引 具本英 著

34 成長斗 都市化問題

宋丙洛 E.S. Mills 共著 18 切 判·270 面 高級洋裝·4,500 引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18 切 判・306 林浩奎 著 高級洋装・5,000岩 36 韓國工業化패턴과 ユ 要因

18 切 判·272 面 高級洋裝·4,000 원

37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清 共著 18 切 判·336 面高級洋裝·5,500号

38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18 切 判 · 272 面 高級洋裝 · 4,500 원 N.F. McGinn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田英鶴 譯 18 切 判·256 面 高級洋裝·4,000 원

MACROECONOMIC AND 40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18 切 判・414 面 高級洋装・6,000원 朴宗淇 編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18 切 判・384 面 高級洋装・5,000원 朴宗淇 編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1910~75

> 18 切 判・268 面 高級洋装・4,500 원 A. Keidel 著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潘性執 共著 18 切 判・396 面高級洋装・6,000 원 D.H. Perkins

44 需給構造의 物價政策

18 切 判・288 面 高級洋装・5,000 원 李 焼 著

個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 壹 共著 L.P. Jones 18 切 判・410 面高級洋装・6,000 원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18 切 判・214 面高級洋装・4,000원 延河淸 著

- 团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18 切 到•530 面 E.S. 메이슨 外 高級洋裝•6,800월
- 图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李天杓 著 稿級洋裝・4,000割
- 49 韓國의 所得分配斗 決定要因(下)朱鶴中 著 「18 切 判・432 面 高級洋装・7,000월
- 50 國民經濟斗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閱載成 共著 高級洋裝・7,000원
- ①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共著 18 切 判・402 面 李軫周 共著 高級洋裝・7,000원
- 53 韓國의 金融發展: 1945~80 D.C.音 朴英哲 共著 高級洋装: 5,600到

54 韓國의 賃金構造

朴垣求 共著 18 切 判・440 面 **朴世逸** 共著 、高級洋装・5,200원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共著 18 切 判 · 238 面 高級洋裝 · 5,400 원

- 56 轉換期의 韓國經濟의 金融政策 金重雄 南相祐 共著 18 切 判・354 面 高級洋装・5,600 型
- 57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延河清 著 高級洋装・4,200원
- 58 地方財政調整制度斗 財源配分 李啓植 著 18 切 列: 280 面 高級洋装・5,200割